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録
登録番號 바－565

가을호
1981

韓國開發研究

◀論 文▶

都・農間 所得隔差의 再考 朱鶴中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換率決定 李天杓
韓國製造業의
産業別・規模別 生産性分析 金栽元
離職率의 國際比較 및 決定要因分析 金秀坤
韓國의 人口・經濟模型을
통한 長期人口展望 具成烈
國民福祉年金制度 實施와
所得再分配効果 延河清

◀研究資料▶

自由化接近模型과 韓國의 開放政策 金重雄
産業支援의 原則과 現況 및 改善方向 楊秀吉
國民福祉年金制度 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閔載成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1981. 9

◀ 論 文 ▶

都・農間 所得隔差의 再考……朱 鶴 中… 2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換率決定 ……李 天 杓… 23
韓國製造業의 産業別・規模別
生産性分析……金 栽 元… 44
離職率의 國際比較 및
決定要因分析……金 秀 坤… 66
韓國의 人口・經濟模型을 통한
長期人口展望……具 成 烈… 86
國民福祉年金制度 實施와
所得再分配効果 ……延 河 清…119

◀ 研究資料 ▶

自由化接近模型과
韓國의 開放政策……金 重 雄…146
産業支援의 原則과 現況 및
改善方向 ……楊 秀 吉…171
國民福祉年金制度 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閔 載 成…187

「韓國開發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開發과 관련되는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關聯研究資料를 수록하여 年 4回(3月, 6月, 9月, 12月) 發行한다.

이 研究誌는 本研究院의 研究結果에 立脚한 論文과 研究資料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紹介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特別招請形式으로 外部人士의 原稿도 수록할 수 있다.

本誌에 실린 論文의 結論과 政策建議를 포함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意見이며 결코 本研究院이나 編輯委員會의 公式意見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本誌의 內容은 出處明示 慣例를 지키는 限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다.

編輯委員

司空 壹(委員長)
南 相 祐(幹 事)
具 成 烈 金 栽 元
朴 烜 求 延 河 清

編輯問議：研究調整室(967-2670)
購讀問議：圖書室(967-6240)

都·農間 所得隔差의 再考

朱 鶴 中

▷ 目 次 ◁

Ⅰ. 序 言
Ⅱ. 所得隔差의 實證的 根據
Ⅲ. 都·農間所得比較의 問題點
Ⅳ. 實效生活所得의 試算과 比較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都農間 所得隔差에 관한 論考는 두가지 意味를 지닌다. 먼저 近年에 所得分配에 대한 學者의 관심이 크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硏究에 있어서 그 問題意識을 중심으로 한 所得의 槪念이 무엇인가에 관한 理論的 定說이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試圖한 바 있다[1]. 이러한 여러가지 所得槪念을 이용하여 所得을 計數的으로 調整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都農間所得의 調整比較로서 例示的으로 實證하는데에 그 첫째 意義가 있다. 둘째로 우리가 지니는 經濟社會現象에 대한 認識 및 先入觀은 急變하는 經濟社會에 있어서 未來指向的인 政策課題를 다루는데 하나의 沮害要因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都農間 所得隔差에 관한 事例를 통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都農間 所得隔差의 問題는 우리의 意識 속에 뿌리깊은 것이라고 하겠다. 近代國家가 形成되기 이전에 封建社會에 있어서 農民의 生活은 支配者의 收奪 속에 아주 비참했던 것으로 描寫되어 있고 近代國家가 形成된 이후에도 近代的 意味의 經濟成長을 成功的으로 成就하지 못한 오늘날의 開發途上國家나 60年代 初이전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農業의 比重으로 보아 그 當時에는 큰 문제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農民의 相對的 比重이 先進國의 경우 全國民의 10%미만이며 우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1980年 28.9%에 불과하고 都農間의 生活樣式과 生計費의 差異가 都市生活에 더욱 過重하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委員

1) 朱鶴中, 「所得分配硏究에 있어서 所得의 槪念과 決定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pp.32~62.

게 되는 경향에 비추어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再吟味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着眼點을 가지고 이 論文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都農間 所得隔差의 實證的 根據를 檢討한 다음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旣存統計資料가 지니는 槪念上 및 調査統計上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所得을 現存하는 資料가 허용하는 한 調整하여 이른바 實效生活所得의 槪念에 따라 都農間 所得을 調整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 論文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論文에서 지적한 바와같이[2] 統計資料의 分析的 利用에 좀더 세심하여야 한다는 統計資料硏究(data research)를 중요시하는 것이 經濟學者의 바른 態度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 學界에 아직도 形成되지 않은 經濟統計硏究에 대한 關心이 이 小考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喚起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朱鶴中, 「社會指標의 體系와 活用」, 『韓國開發硏究』, 1981, 여름호, pp.50~51.

3) Abraham, W.I.,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pp.4~7.

4) 經濟企劃院이 발표하고 있는 『主要業務指標』에는 〈表 2〉의 農家와 非農家所得比較를 農家所得에 대한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의 比率을 사용하고 있다.

5) 例를 들어 農家所得과 都市勤勞者所得을 各各 1970年 不變價格基準 農家購入價格指數와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로 換算한 都農間 實質所得比較(都市勤勞者=100.0)를 같은 방법으로 1975年으로 基準年度를 바꾸어 몇개년만 비교하면 아래 表와 같이 작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 「디플레이터」에 의한 偏倚의 정도를 實感케 한다.

基準年度變更에 따른 都農間所得隔差의 乖離

(단위 : %)

	1965	1970	1975
1970年 基準 (A)	106.9	67.2	86.7
1975年 基準 (B)	111.2	74.6	101.6
(A)−(B)	−4.3	−7.4	−14.9

Ⅱ. 所得隔差의 實證的 根據

1.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比較

都市·農村間의 所得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資料가 이용되고 있다. 하나는 國民所得資料를 이용한 農業과 非農業家計의 平均家口所得 및 1人當 所得比較이고[3] 다른 하나는 都市家計調査와 農家經濟調査資料上에 나타난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家口所得 比較이다[4]. 이러한 家口所得은 經常價格 또는 不變價格으로 比較된다.

〈表 1〉은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經常價格 및 不變價格의 農家所得에 대한 非農家所得의 對比率과 1人當 所得의 對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農家와 非農家所得의 對比率은 基準年度 「디플레이터」(deflator)의 偏倚로 인하여[5] 전반적으로 不變價格比率이 1965年부터 1973年頃까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고 그 이외의 年度에는 약간 낮으나 時系列로 본 經常價格과 不變價格의 農家와 非農家와의 所得隔差는 비슷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 즉, 경상소득과 불변소득은 1965年의 48.9%와 61.4%로부터 1968年까지 37.2%와 49.5%로 所得差異가 확대되다가 作況에 따라 약간 起伏이 있으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經常 및 不變價格의 1人當 所得對比도 家口所得의 對比와 같은 추세를 보이나 家口所得對比率의 趨勢와의 차이는 年度別로 集計된 農家와 非農家의 家口員數變動에 起因하고 있다.

國民所得資料를 이용한 農業과 非農業部門

〈表 1〉 年度別 非農家에 대한 農業所得 對比率
(國民總生產 基準)

(非農家所得=100.0)

	家口所得		1人當 所得		農外所得比率 (%)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1965	48.9	61.4	59.5	73.9	20.9
1966	45.4	63.7	53.1	75.4	22.1
1967	38.0	52.2	45.3	63.1	22.1
1968	37.2	49.5	44.1	57.6	23.5
1969	39.2	50.8	46.2	59.8	23.3
1970	45.5	54.0	49.6	59.5	24.2
1971	45.5	49.6	48.1	52.4	18.1
1972	45.8	49.2	51.2	54.5	17.7
1973	44.3	46.2	49.2	50.4	18.8
1974	52.0	53.3	54.5	55.8	19.6
1975	55.0	55.0	61.2	61.2	18.1
1976	56.3	56.8	60.9	61.7	20.3
1977	59.6	55.9	60.9	57.8	27.7
1978	61.9	51.3	63.7	52.5	28.1
1979	63.4	57.4	64.3	58.3	31.3

資料 :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0.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78~80.

의 家計所得比較는 資料의 性格上 〈表 1〉의 右端에 나타낸 農家의 農外所得이 제외되므로 農家所得이 低評價되고, 1人當 農業所得은 就業者 基準이든 農業人口 1人當所得이든 간에 農業部門의 平均家口員數가 많으므로 農家所得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1人當 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가 더욱 不利하게 表示된다.

반면에 非農家의 平均所得은 統計學的으로 極端値에 대하여 강한 偏倚를 나타내므로 少數의 高所得家口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分析的인 立場에서의 都農間所得 比較에는 國民所得計定資料가 이용되는 경우가 例外的이라 하겠고 家計所得調査資料가 國民所得計定資料와 어느 정도의 一貫性을 지니고 있으면 都農間 家計所得은 家計調査結果로써 比較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家計調査資料에 의한 比較

우리나라에 있어서 흔히 都農間 家計所得의 比較分析에 이용되는 資料는 〈表 2〉와 같은 都農間 家計所得의 對比이다. 이러한 對比表를 이용함에 있어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점은 이 表가 함축하고 있는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所得의 同質性이다. 都市勤勞者는 그 所得을 주로 勞動의 代價로서 받는 給與가 그 주종을 이루는데 비하여 農家는 農耕에 投入한 自己勞動의 代價는 물론 農地와 中間投入에 따른 資本所得과의 複合物이다. 따라서 都市勤勞者와 農家의 所得이 平面的인 比較對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都·農間의 家計

〈表 2〉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에 대한 農家所得對比率(家計調査所得基準)

(都市勤勞者 家口所得=100.0)

	家口所得		1人當 所得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1965	99.1	111.2	87.3	98.0
1966	80.2	89.6	70.6	78.8
1967	59.8	67.0	53.3	59.8
1968	62.6	67.1	56.5	60.7
1969	65.3	72.0	59.1	65.2
1970	67.2	74.6	60.6	67.3
1971	78.8	89.8	71.4	81.3
1972	83.0	95.3	76.6	88.0
1973	87.5	98.6	80.2	90.5
1974	104.5	105.7	96.2	97.3
1975	101.6	101.6	93.0	93.0
1976	100.3	97.9	91.5	89.2
1977	102.0	96.3	87.9	83.0
1978	98.3	89.7	85.5	78.0
1979	84.7	74.7	75.6	66.7

資料 :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所得比較는 같은 금액의 資本額과 同質同量의 勞動投入을 필요로 하는 農家와 自營業者家口가 그 比較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으나 可用資料가 制約되고 變數의 統制가 어려운 社會科學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적절한 比較對象에 대한 比較分析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를 比較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계층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對比함으로써 所得의 相對的 變化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表 2〉에 나타나는 家口平均所得의 전반적인 추세는 60年代 후반에 農家平均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가 1971年부터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不變價格 家口平均所得도 經常價格所得과 같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70年代 후반에 이르러 都市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한 農家購入價格指數의 相對的上昇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可用資料를 時系列로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平均所得間에 1966~1971年間과 1979年에 상당한 所得隔差가 統計上 나타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1人當 家口所得의 비교에 있어서 農家의 平均家口員數는 都市勤勞者의 그것에 비하여 많은 편이어서 農家所得이 보다 낮은 것으로 計算된다. 이상적으로는 家口所得 또는 消費水準의 測定은 家口員의 수에 따라 단순히 사람수가 아닌 成人基準標準單位로서 換算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成人基準單位를 實證的으로 測定할 基礎資料의 缺如로 이를 算出할 수 없기 때문에 不完全하나마 外國의 資料를 利用하여 後에 검토해 보기로 한다. 〈表 2〉에 나타난 바와같이 1人當 經常價格 및 不變價格所得의 都·農間 比較는 家口當 所得比較보다 대체적으로 더욱 隔差가 擴大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1人當所得의 都·農間 比較는 都農間의 生計費가 같다는 假定을 含蓄하여 계산된 것으로 都·農間의 生計費 차이를 감안하면 여기의 比較가 都·農間의 所得差異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都市勤勞者家計調査가 1977年까지 간헐적으로 변경한 所得上限線의 적용으로 平均所得의 推定에 下向偏倚(downward bias)가 있고 農家家計調査는 1단보 이상의 耕作農家를 그 調査對象으로 하여 1단보 미만의 耕作農家와 農業勞動者家口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다소의 上向偏倚(upward bias)가 介在하고 있다. 또한 農家의 在庫評價, 消費者物價指數와 購入價格指數의 적용, 都農間, 生計費의 差異등 여러가지 문제가 介在하므로 이러한 比較에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3. 農家所得의 調整比較

農家經濟調査를 통한 農家所得의 推定에 있어서 在庫評價上 資本利得이 포함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지적은 다음에 검토된 바와 같이 論理的으로 타당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農業經濟學者가 農家所得을 調整·推計하였고[6] 이것을 都市勤勞者所得과 比較하였

6)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分析』, 韓國開發硏究院, 1977, pp.11~27.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pp.111~179.
文八龍·潘性紈·「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硏究院, 1981, pp.268~269, pp.384~386. 都·農間所得比較는 「퍼킨스」(D.H. Perkins)의 推計임.

다. 調整의 根據로서는 農産物 및 生産資材 在庫의 年度別 차이 및 過大評價와 農業「센서스」와 農家經濟調査上의 耕作規模別 農家比率의 차이를 들고 있다. 세學者의 調整方法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所得의 調整된 幅이 다음表와 같이 각각 다르다.

〈表 3〉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대한 農家所得調整値의 對比率

(都市勤勞者 家口所得=100.0)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姜奉淳・文八龍[1]	潘性紈[2]	「퍼킨스」[3]	姜奉淳・文八龍[1]	潘性紈[2]	「퍼킨스」[3]
1965	93.8	94.7	97.4	102.8	103.6	106.6
1966	75.7	77.8	72.8	82.7	84.8	79.7
1967	56.1	56.6	55.8	62.7	63.3	62.3
1968	56.9	57.3	56.3	63.1	63.6	62.4
1969	59.8	60.2	56.0	65.2	65.6	61.0
1970	61.7	59.6	60.4	68.7	66.4	67.3
1971	74.0	73.9	70.1	82.7	82.7	78.6
1972	76.9	74.7	69.4	84.8	82.3	76.7
1973	79.0	75.3	77.6	82.3	78.6	80.9
1974	91.0	80.8	72.3	90.0	79.7	71.4
1975	98.5	88.2	84.1	98.6	88.2	84.2
1976	—	89.8	—	—	82.9	—
1977	—	91.8	—	—	79.7	—

資料 : 1)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硏究院, 1977, pp.26~27.
2)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pp.120~122.
3) 文八龍・潘性紈・「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硏究院, 1981, p.269 및 부록③.

〈表 4〉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 1人當所得에 대한 1人當農家所得 調整値의 對比率

(都市勤勞者 1人當所得=100.0)

	經常價格 調整所得對比率			1975年 不變價格 調整所得對比率		
	姜奉淳・文八龍	潘性紈	「퍼킨스」	姜奉淳・文八龍	潘性紈	「퍼킨스」
1965	82.4	83.4	84.9	90.2	91.2	93.0
1966	66.2	68.6	64.2	72.5	74.6	70.0
1967	50.0	50.5	49.8	55.9	56.5	55.6
1968	51.4	51.8	50.8	57.0	57.5	56.4
1969	54.1	54.5	0.6	58.9	59.4	55.2
1970	55.7	53.8	54.5	61.9	59.9	60.7
1971	67.0	67.0	63.5	75.0	75.0	71.1
1972	71.1	68.9	64.2	78.3	76.0	70.8
1973	72.3	69.1	71.2	75.6	72.2	74.3
1974	83.7	74.4	66.5	82.6	73.4	65.7
1975	90.2	80.7	77.0	90.2	80.7	77.0
1976	—	81.8	—	—	75.6	—
1977	—	79.1	—	—	68.7	—

資料 : 〈表 3〉과 같음.

〈表 3〉과 〈表 4〉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姜奉淳·文八龍의 調整所得系列은 1970年 이후부터 가장 작게 修正된데 비하여 潘性紈의 修正所得은 1969年까지는 작고 그 이후는 크며 「퍼킨스」(Perkins, D.H.)가 조정한 所得은 1971年 이후 가장 큰 幅으로 修正되었다. 즉, 姜奉淳·文八龍의 경우는 最低 1975年의 3.0%에서 最高 1974年의 13.1%, 潘性紈의 경우는 1966年의 最低 3.1%에서 1973年의 最高 13.9%, 「퍼킨즈」의 경우 1965年의 最低 2.7%와 1974年의 最高 30.9%이다. 農家 1人當 所得의 調整値도 비슷한 趨勢를 보이나 時系列上 對比率의 增減은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平均家口員數가 각각 1965年의 5.5人과 6.3人에서 1977年의 4.8人과 5.5人으로 減少한 趨勢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이와 같은 農家所得의 調整에 있어서 가장 큰 項目은 農產物 在庫增減에 따른 이른바 資本利得의 제외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項에서 충분한 再檢討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言及을 피하기로 한다. 姜·文兩敎授가 지적한 農家經濟調査의 標本의 代表性에 대한것은 옳으나 都市勤勞者家計調査에 있어서도 家口主職種의 比率로 보아 標本의 代表性이 문제시되며[7] 前者에 대하여는 調整을 가하고 後者에 대한 調整은 하지 않은 채 對比한다는 것은 一貫性이 결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調整이 갖는 의미이다. 이 調整所得의 比較에 의하면 都農間 所得比較는 최소한 1965年 이후 계속 惡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經常價格基準으로 1974年~1977年間 都市勤勞者所得보다 높았던 農家所得의 公式的인 集計에 대하여 하나의 큰 挑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調整된 農家所得으로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비교하면 「工業化위주의 開發政策過程에서 所得不均衡은 深化一路에 있다」[8]고 할 수 있는 根據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農家所得調整의 正當性이야말로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Ⅲ. 都·農間所得比較의 問題點

1. 所得槪念上의 問題點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部門間의 分配問題의 하나로서 提起된다고 보면 分配問題의 本質에 따라 所得의 槪念이 生活水準 또는 福祉水準을 반영하도록 調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都農間 所得比較에서 흔히 이용되는 課稅前 所得(income before taxes)을 統計資料가 許容되는 범위내에서 福祉水準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所得槪念으로 調整하려는 試圖는 마땅한 學問的인 良識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槪念的으로 어떠한 調整이 가하여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7) Hakchung Choo,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eminar jointly sponsored by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December 16-20, 1974, Vol. I. July, 1975. pp.69~72.

8) 文八龍, 「農產物價格政策과 農家所得」,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硏究院, Vol.1, No.2, 1978.8, p 40.

가. 直接稅 및 公課金의 負擔

現行 租稅制度와 財政支出은 所得再分配機能은 물론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도 重視되어야 할 큰 變數이다. 租稅制度에 의한 直接稅負擔은 可處分 所得을 결정하고 間接稅負擔은 實質的 消費水準에 負의 項目으로 作用한다. 반면에 財政支出에 의한 階層別 歸屬은 實質的 所得 또는 消費水準에 加算된다. 財政收支의 階層間 및 地域間 所得再分配機能은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直接稅를 제외한 租稅負擔과 財政支出의 歸屬을 實證的으로 推定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9]. 그러므로 여기에서 現行 稅制上 例外的인 農業所得의 非課稅와 地方稅로서 農地稅의 賦課를 감안하여 直接稅와 公課金이 都農間 可處分所得比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農家經濟調査와 都市家計調査의 結果로 나타나는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의 負擔은 〈表 5〉와 같이 年度別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農家의 負擔率이 예외없이 낮으며 따라서 課稅前所得이 같다면 農家의 可處分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보다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都市勤勞者의 租稅負擔率은 매년 조정되는 免稅點과 稅率에 의하여 결정되나 農家의 農地稅는 보다 間歇的으로 免稅點과 稅率이 調整됨으로써 年度別 租稅·公課金의 平均 負擔率은 물론 農家所得

〈表 5〉 農家·都市勤勞者家計의 租稅·公課金比率

(단위 : %)

	農 家	都市勤勞者
1965	2.73	3.31
1966	2.59	3.38
1967	1.75	4.70
1968	1.69	7.91
1969	1.98	7.24
1970	1.28	6.78
1971	1.16	7.05
1972	1.00	6.60
1973	1.33	6.99
1974	1.29	1.87
1975	1.45	2.85
1976	1.69	3.60
1977	1.87	3.04
1978	1.68	2.38
1979	2.10	2.12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階層에 따라 그 比率도 상당히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10]. 그 이유는 인플레와 實質所得增加로 複合된 經常價格 所得增加가 대단히 높은 현실적 여건 아래 免稅點을 每年 조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實效稅率을 높이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都市勤勞者의 租稅 및 公課金 負擔率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낮아 可處分所得比率은 높으며 이로 인한 所得平準化效果가 近年에 이르러 「지니」係數 再分配指數로서 2% 「포인트」 내외로 推定되어 있다[11]. 그러므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都·農間 租稅와 公課金負擔의 差異는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나. 生計費構成의 差異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都·農間에 生活樣式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生計費의 차이는 所得比較에

9) Luc Henry de Wulf,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XXII, March 1975, p.102.
10)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79 가을호, pp.58~60 참조.
11) 上揭書 p.62, 〈表 17〉 參照.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農村에 필요하지 않는 都·市의 所要經費, 둘째는 都市·農村間 購買力評價(purchasing power parity)의 차이, 셋째 都農間 生活의 質的 差異등을 들수 있다.

都市生活에 필요한 經費의 認定은 國民所得概念을 本來의 福祉概念에 접근시키려는 近來의 理論的 試圖로서 都市 生活費支出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른바 方便的 支出(regretables)로 간주하려는 것과 같은 格이다[12]. 農村과 比較하여 都市生活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都市家計所得 가운데 生計費의 차이에서 오는 報償的 성격의 부분으로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出退勤에 所要되는 交通費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같은 所得水準에서 農村家口가 都市家口보다 더욱 윤택한 生活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農民은 논밭까지 걸어가서 作業을 하고 都市勤勞者는 버스나 電鐵을 타고 出退勤하는 都農間生活의 質的 差異를 어느 정도 差減하는 것이 적정한 報償水準인가 하는 것이다. 都市勤勞者가 직장 근처에 居住地를 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工場規模나 產業立地 등의 배려로 職住間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社會的 費用은 規模와 密集의 非經濟로서 이에 따르는 經費는 僻地手當과 같이 被傭者에게 報償되어야 한다.

都·農間 購買力評價의 차이를 감안한 所得의 調整比較는 「크라비스」(Kravis)敎授에 의한 國家間의 所得比較에 各國間의 購買力評價를 감안하여 주는 것과 똑같은 論理的 根據를 지니고 있다[13]. 다시 말하면 各國에 있어서 生計費構成品目의 폭넓은 價格차이는 先進國의 數千弗 所得이 後進國의 數百弗 所得의 열배의 生活水準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都農間 所得比較에서 住居費의 차이도 그러하다. 물론 都·農間의 住居費差異를 推定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같은 都市內에서도 그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都市의 집세나 월세가 두드러지게 비싸며 결해에 따라서는 이것이 都市生活의 便利한 便益을 享有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生產活動에 있어서 필요한 人力이 어떤 특정지역에 고용되었을 때 生活給으로서의 所得은 이러한 불가결한 費用의 차이를 報償하여야 한다[14].

그외에도 生必品의 價格差異도 住居費의 차이를 고려하여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엥겔」係數의 比重이 높거나 우리나라처럼 流通構造가 복잡하여 段階마다 큰 商業「마진」이 붙는 여건 아래 基本的인 食生活에 소요되는 費用도 都·農間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都市勤勞者의 所得은 都市의 높은 生計費를 一部 반영하고 이에 대한 所得分은 정당한 都·農間의 所得差異로서 認定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都市生活의 필요경비와 都·農間 購買力評價의 차이를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論議되는 것이 都·農間 生計費의 차이이다. 비교적 可用統計와 統計的 分析이 풍부한 先進國에 있어서 〈表 6〉과 같이 中小都市는 10여%, 大都市는 20여% 가량으로 추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에 있어서는 都農間 生

12) Nordhaus, W. & Tobin. J,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B.E.R. 1972, p.28.

13) Irving B. Kravis and Others,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Chap Ⅱ.

14)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硏究院, 1978, pp.55~65.

〈表 6〉 都農間 生計費差異의 國際比較(1973)

(農村=100.0)

	農 村	中小都市	大 都 市
韓 國	100.0	119.4	
日 本	100.0	110.9	121.9
카 나 다	100.0	115.0	128.8
美 國	100.0	117.1	

資料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여름호, p.18.

活樣式의 현저한 차이와 流通構造上의 문제로 더욱 그 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表 6〉에서와 같이 1973年 약 2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都農間 生計費 차이를 都市人力을 이용하는데 대한 追加費用으로 인정하거나 都農間所得이 지니는 購買力의 差異로써 감안하여 준다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은 農家所得에 비하여 平均 20%내외, 여기에 都農間의 生活의 質的 差異를 감안하면 이보다 약간 낮은 比率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家口員數의 차이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看過되어서는 안될 것은 家口員數의 차이이다. 〈表 7〉과 같이 家口員數의 차이는 이에 따른 就業人數의 차이를 의미하여 家口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을 過大하게 하는 반면에 1人當 所得比較는 家口員을 같은 比重으로 다루어 過小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計數上의 偏差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家口員數에 따른 生計費의 차이를 成人基準으로 標準化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成人基準單位에 대한 推定은 試圖된 바 있으나 有意한 結果는 현재 없기 때문에[15] 外國의 경우를 參考資料로 보면 〈表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家口員數 4名부터 6名까지의 變動範圍는 成人基準單位의 4名基準의 불과 4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表가 비록 外國의 資料를 토대로하여 作成되었다고 하나 家口員 1人當 平

15) 金光錫·金大泳, 「單位消費者尺度의 推定試圖」,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pp.156~175.

〈表 7〉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家口員數

(단위 : 名)

	農 家	都 市 勤 勞 者
1965	6.29	5.54
1966	6.22	5.47
1967	6.12	5.46
1968	6.02	5.44
1969	5.99	5.42
1970	5.92	5.34
1971	5.83	5.28
1972	5.71	5.27
1973	5.72	5.25
1974	5.66	5.21
1975	5.63	5.15
1976	5.54	5.05
1977	5.52	4.76
1978	5.38	4.68
1979	5.20	4.64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表 8〉 美國의 貧困線生計費 標準單位(1974)

(非農家 2人家族 生計費=100.0)

家 族 數	非 農 家	農 家	平 均
1人	77.7	65.2	77.5
2人	100.0	84.3	99.4
3人	122.6	103.7	121.8
4人	156.9	134.0	156.0
5人	185.3	157.5	184.1
6人	208.6	177.5	207.1
7人以上	257.0	218.6	254.3

資料 : U.S. Bureau of 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evel: 1974",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 102, Table A-2의 資料로서 計算.

均所得의 槪念이 成人 1人當基準에 비하여 얼마나 큰 分析上의 差異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類推할 수 있다.

라. 平均値의 屬性

都市·農村間의 所得은 흔히 그 平均値로서 比較되고 있다. 平均値는 많은 觀測値의 대표치로서 統計學的 의미는 갖고 있으나 平均値에 해당되는 家口가 얼마나 되며 그 代表性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比較分析에 이용되는 算術平均値는 그 統計學的 屬性의 하나로 극단치에 대하여 극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所得分布形態上 그 分散度가 클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흔히 利用되는 平均所得에 의한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所得分布狀態의 都農間差異가 等閑視되고 있다[16]. 따라서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間의 平均所得에 差異가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分散度가 낮은 農家所得分布를 前提한다면 많은 比率의 農家가 都市勤勞者의 경우 보다 平均以上의 所得을 享有하고 있음을 排除할 수 없다.

2. 統計資料上의 問題點

가. 農家의 在庫評價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外國學者의 지적으로 많은 物議가 있는 項目이 農家所得推計過程에서의 在庫問題이다. 「아브라함」(W.I. Abraham)은 우리나라의 "農家經濟調査의 數値는 在庫蓄積의 資本利得(capital gains in inventory accumulations)을 포함하기 때문에 經常所得(또는 經常所得의 貯蓄)을 測定하지 않으며 따라서 穀價의 上昇幅이 크면 클수록 포함된 資本利得의 比率이 크다"고 지적하였다[17]. 사실상 「아브라함」의 지적은 그의 誤解로서 아주 특수한 경우, 다시 말하면 在庫가 2年 이상 계속 累增될 경우, 그 累增分에 대하여 발생하나 近刊된 硏究에서 調整한 것과 같이 모든 在庫에서 발생하지는 않으며 현재 農家經濟調査結果로서 公刊되고 있는 在庫增減額으로서는 올바르게 修正할 수 없다. 「아브바함」의 主張을 해석해 보면 特定時期에 決定되는 穀物價格과 翌年에 移越되는 在庫量으로 결정되는 在庫評價를 注目한 反面에 農家所得決定의 會計學的 方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즉, 資本利得에 대한 그의 主張은, 前年度의 年末在庫인 주어진 年度의 年初在庫額(I_{t-1})은 前年度의 農產物價格(P_{t-1})으로, 그리고 주어진 年度의 年末在庫額(I_t)은 그 해의 農產物價格(P_t)으로 評價되어 실질적인 在庫量의 變化가 없이도 在庫額增減(ΔI_t)은 農產物價格差異에 物量을 곱한 額數만큼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當年初在庫量(Q_{t-1})과 當年末在庫量(Q_t)이 같다고 하더라도 $\Delta I_t = I_t - I_{t-1} = P_t \cdot Q_t - P_{t-1} \cdot Q_t = (P_t - P_{t-1})Q_t$이므로 인플레와 高米價政策下에서는 $P_t > P_{t-1}$이 되어 $\Delta I_t > 0$으로서 資本利得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시된 修正方法은 在庫評價額의 變化에서 오는 資本利得을 經常所得에서 差減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6) 자세한 것은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硏究』, 創刊號, 1979. 3, pp.37~41, 참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分配問題의 核心은 都農間과 같은 部門間의 소득격차라기보다는 部門內部에 있어서 家口間의 所得隔差에 촛점이 있다고 하겠다.

17) William I. Abraham,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p.4.

〈表 9〉 農家經常總生產推定의 例示的 資料

	現行調査方法			「아브라함」에의 한 修正方法		
	物量	單價	價額	物量	單價	價額
期初在庫(I_b)	20	10	200	20	10	200
當年度生產(Q)	80	12	960	80	12	960
自家消費(C)	40		440	40		440
(在　庫 C_i)	(20)	(10)	(200)	(20)	(10)	(200)
(生產量中 C_o)	(20)	(12)	(240)	(20)	(12)	(240)
販　　賣(S)	35	12	420	35	12	420
期末在庫(I_e)	25	12	300	25	10	250
在庫變動(ΔI)	5		100	5	10	50

이러한 意見은 세밀한 檢討가 없이 受容되고 있는 바 「아브라함」의 誤謬에 대하여 구체적인 數値로써 例示하여 그 그릇됨을 여기에 밝혀 둔다.

〈表 9〉는 農家經濟調査에서와 같이 總收入을 自家消費, 販賣 및 在庫變動으로 구분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物量과 單價를 例示的으로 표시하였다.

農家所得의 올바른 추정은 總生產額을 올바로 계산하는 데에서 出發하며 그것은 두가지 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즉, 한가지는 그해의 總生產量에 生產當時의 時價를 곱하여 계산하거나 在庫 및 生產量 중에서 自家消費, 販賣, 在庫變動을 合算하는 것이다.

〈表 9〉의 資料를 토대로 하면 現行農家經濟調査方法으로 當年度 總生產額(O)은 $O=C+S+\Delta I=C_i+C_o+S+\Delta I=960$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修正方法은 期末在庫를 期初在庫價格으로 修正하는 것이기 때문에 當年度 生產額은 같으나 $O \neq C+S+\Delta I$, 즉. $960>910$이 된다. 이 式의 差額 50은 在庫評價의 單位價格의 修正에서 基因한 것이며 당해년도의 總生產과 다르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資本利得은 前年度의 在庫가 2年以上 移越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엄밀하게는 期初在庫가 當年度 自家消費量을 능가할 때에만 발생하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耕作規模나 在庫量, 作況의 變動 및 햅쌀의 選好傾向 등으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크게 양보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經營體로서의 農家家計가 在庫品의 時價變動에 따른 利得을 所得의 一部로서 計上하는 것은 國民所得計定上 經常所得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一般企業體의 價格變化로 인한 超過利潤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추측컨대 그가 제시한 在庫變動修正方法은 한마디로 會計學의 經濟學的 이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기 主張의 論理的 歸結을 면밀히 檢討하지 않은 데에서 基因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誤謬의 하나라고 하겠다.

나. 農家所得과 自家所有의 換價所得

우리나라에 있어서 都農間의 家口所得 比較에서 이때까지 論議되지 않은 것은 農家經濟調査에서 自家所有住宅에 따르는 換價所得이 제외됨으로써 農家所得이 過少評價되어 있다는 사실이다[18]. 農家經濟의 特殊性으로 農家所得推定은 前述한 바와 같이 自家消費와 販賣에 대한 收入과 生產에 따르는 諸經費의 支出을 토대로 하여 所得을 推定하는 過程에 國民所得計定이나 都市家計調査에서 포함하고 있는 自家所有의 換價所得이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自家 및 傳貰의 評價所得의 차이는 所得水準比較는 물론 消費比較에도 적지않은 영

18) 農水產部, 經濟統計擔當官室, 『農家經濟 및 農產物生產費調査項目分類符號解說』, 1977, pp.41~55.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都農間 所得의 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에 포함되어야 할 住宅換價所得의 規模가 어느 정도인가를 推定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推計作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調整한 數値를 提示하기는 어려우나 比較上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都農間 所得比較는 〈表 10〉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서 약 10%內外를 차지하는 傳貰 및 自家評價額을 調整시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表 10〉 都市勤勞者家口의 家口所得對比 傳貰·自家評價所得의 比率

(단위 : 千원, %)

	家口所得 (1)	傳貰·自家評價所得 (2)	對比率 (2)/(1)
1963	80.2	8.3	10.4
1964	97.2	9.4	9.7
1965	112.6	11.2	10.0
1966	161.5	20.5	12.7
1967	248.6	30.5	12.3
1968	286.0	30.7	10.7
1969	333.6	37.8	11.3
1970	381.2	43.1	11.3
1971	451.9	51.8	11.5
1972	517.4	60.5	11.7
1973	550.2	65.6	11.9
1974	644.5	71.2	11.1
1975	859.3	72.8	8.5
1976	1,151.8	92.5	8.0
1977	1,405.1	134.2	9.6
1978	1,916.3	182.2	9.5
1979	2,629.6	292.6	11.1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都市家計年報』, 1980, pp. 34~50.

19) 여기서 한가지 더 指摘되어야 할 것은 農家의 住宅換價所得의 漏落이 갖는 農業部門內의 所得分配(intra-sectoral distribution)에 미치는 영향이다. 農家의 自家保有率은 1977年에 96.9%로서 都市의 59.4%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所得階層別로 보더라도 低所得階層의 自家保有率이 都市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그러므로 住宅의 換價所得을 감안하지 아니한 資料로서 推計된 農家所得分布는 그 不平等度가 다소 過少評價되어 있다.

물론 〈表 10〉의 비교도 調整上의 上限을 限定하는 것일뿐이고 理想的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農家住宅의 自家評價額이 都市의 그것에 크게 未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農家經濟調査에 農家의 自家所有에서 발생하는 換價所得이 推定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下限線을 提示하는 것이고 같은 換價所得이라 하더라도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 똑같은 水準의 住居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능한 調整方法으로는 農家所得에 自家所有에 따른 換價所得을 加算하여 주고 住居費를 生計費의 차이로서 감안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19].

다.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疑問

農家實質所得의 時系列分析이나 都農間 實質所得比較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經常價格所得을 不變價格所得으로 환산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의 선정이다. 일반적으로 農家所得을 經常價格에서 不變價格으로 換算하는데 이용되는 「디플레이터」는 都市消費者物價指數, 農家購入價格指數,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 등이다. 分析的인 硏究에 있어서 어느 指數를 「디플레이터」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으나 資料의 可用性의 制約이 分析에 미치는 영향을 흔히 看過하는 경향이 있다.

都市消費者物價指數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할 경우 含蓄된 假定은 都·農間의 消費者購入品目과 그 加重値가 同一하고 선정된 基準年度가 價格構造와 消費類型에 있어서 代表的이라는 것이다. 이 「디플레이터」로써 調整한 不變價格所得의 都農間比較는 經常價格所得의 比較와 같은 것이므로 무의미하며 農村의 相

對價格과 消費者行態는 都市의 그것과 전혀 다르므로 農家의 不變價格所得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더우기 農家의 實質所得을 서울消費者物價指數로서 계산한다는 것은[20] 앞에서 지적한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보다 價格構造와 消費行態의 차이에서 오는 더 큰 誤差를 內包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經常價格 農家所得의 「디플레이터」로서 이용되는 農家購入價格指數는 원래 農業의 販賣價格과 購入價格의 「패리티」指數(parity ratio)를 구할 목적으로 作成되는 價格指數이다. 여기에는 農家家計用品은 물론 農業中間財와 賃料金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1975年의 基準年度에 있어서 加重値는 家計用品이 562.7/1,000, 農業用品이 353.7/1,000, 農業賃料金이 83.6/1,000이다. 따라서 指數의 性格上 農業總收入의 「디플레이터」로서는 적합하나 總收入에서 中間財費用과 農業勞動力에 대한 人件費支出과 其他費用을 차감하고 經常價格 農家所得을 不變價格化하는데는 不適合하다.

물론 農家購入價格指數의 세 構成部分이 같거나 비슷한 比率로 變動한다면 이와 같은 「디플레이터」의 적용은 그대로 용인될 수 있으나 〈表 11〉과 같이 1962年부터 1979年까지의 農家購入價格指數의 平均上昇率이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平均上昇率보다 높다. 따라서 農家購入價格指數에 의한 不變價格農家所得의 算定은 높은 「디플레이터」의 적용으로 不變所得을 過少評價하는 부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6年 이후에 農業用品購入價格指數와 農村賃料金購入價格指數의 上昇幅이 農家家計用品을 크게 上廻하여 이러한

〈表 11〉 農家購入價格指數의 項目別 上昇率

(단위 : %)

	總指數	農業用品	家計用品	農村賃料金
加重値	1,000.0	353.7	562.7	83.6
1962	10.8	14.4	9.9	11.1
1963	11.3	−0.7	11.1	26.3
1964	27.0	16.7	29.4	34.7
1965	33.5	62.3	18.4	13.2
1966	12.0	10.6	12.3	14.3
1967	7.8	3.5	10.2	17.6
1968	11.9	4.9	15.5	22.2
1969	14.5	21.7	9.4	21.7
1970	13.7	8.9	15.4	24.0
1971	12.9	15.7	10.6	19.9
1972	13.3	15.7	10.8	17.5
1973	9.2	15.1	5.0	10.6
1974	31.0	22.0	38.7	30.6
1975	23.9	17.8	26.7	28.7
1976	24.9	35.3	18.1	26.3
1977	17.1	19.7	14.0	24.3
1978	30.0	43.1	18.3	41.3
1979	13.7	−4.2	22.4	50.8
平均 1962～66	18.9	20.7	16.2	19.9
1967～71	12.2	10.9	12.2	21.1
1972～76	20.5	21.2	19.9	22.4
1977～79	20.3	19.5	18.2	38.8
1962～79	17.1	17.9	16.5	24.2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偏倚는 近年에 더욱 심하고 이에 따라 近年의 不變價格 農家所得을 부당하게 낮게 評價하는 統計上의 不合理를 內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考察해 볼 때 「디플레이터」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農家購入價格指數중에서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發表하는 都市消費者物價指數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査部에서 集計發表하는 農家購入價格指數 중의 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都農間의 所得比較를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동일한 次元에서 같이 취급할 수 없는 統計調

20) 經濟企劃院, 『주요업무지표』, 1979, p.182.

査上의 두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價格指數의 調査項目에 있어서 〈表 12〉와 같이 都市消費者物價指數는 調査項目이 349個 品目인데 비하여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불과 94個 品目에 불과하다. 費目別로 보면 光熱費는 調査項目數가 비슷하여 비교될 수 있으나 다른 費用項目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가 都市消費者價格指數보다 훨씬 적어 前者의 代表性이 극히 의문시된다.

둘째 農家와 都市消費者의 消費行態에 차이가 많아 두 指數의 加重値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農家消費支出形態를 잘 반영하지 않는 듯하고 따라서 〈表 12〉와 같이 都市消費者物價指數와의 加重値에 차이가 크다. 또한 加重値가 큰 農家家計用品의 價格變動에 農家購入價格指數가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여 준다. 특히 被服費와 雜費項目은 品目數에 비하여 加重値가 비교적 높아 선정된 品目의 代表性과 그 品目價格의 騰落이 指數의 변동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表 12〉 都市·農村間 消費者物價指數의 調査品目數 및 加重値比較(1979年)

	都市消費者物價指數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	
	調査品目數	加重値	調査品目數	加重値
食料品費	131	458.0	32	225.4(126.8)
住居費	60	110.1	18	98.1(55.2)
光熱費	7	56.0	6	46.0(25.9)
被服費	57	92.5	14	175.4(98.7)
雜費	94	283.4	24	455.1(256.1)
合計	349	1,000.0	94	1,000.0(562.7)

註 : ( )속의 數値는 農家購入價格 및 賃料金指數를 1,000.0으로 보았을 때의 加重値임.
資料 :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80.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물가연보』, 1979.

〈表 13〉 消費項目別 消費者物價 上昇率의 都農間比較

(단위 : %)

	1970~1973年間平均			1974~1978年間平均		
	都市	農村	差異	都市	農村	差異
總指數	5.0	4.2	0.8	15.4	19.2	−3.8
飲食料品費	5.5	5.5	0.0	17.8	21.2	−3.4
被服費	5.5	4.0	1.5	13.2	20.0	−6.8
住居費	4.6	4.7	−0.1	11.3	14.3	−3.0
光熱費	4.3	4.1	0.2	17.0	13.6	3.4
雜費	4.3	4.5	−0.2	13.1	20.1	−7.0

資料 : 經濟企劃院, 『물가연보』, 1979.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80.

이상과 같은 이론적 偏倚의 가능성은 두 物價指數의 期間別 上昇率에도 반영되어 있다. 〈表 13〉에 의하면 1967~72年間 都市消費者物價指數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움직임과 비슷한 動向을 보이며 前者가 後者보다 약간 높은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74~79年間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가 都市消費者價格指數보다 上昇率이 年平均 5%「포인트」높다. 後期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價格指數上의 乖離는 調査品目의 代表性이 의심스러운 被服費와 雜費로서 대부분 說明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統計調査上의 문제와 같은 脈絡을 이루고 있다[21].

21) 한 가지 더 附記하여 둘 것은 두 價格指數上 乖離가 발생할 수 있는 時代的 背景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1974年以後 國內外要因으로 인하여 우리의 慢性的인 인플레가 더 큰 刺戟을 받은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8.3措置등 一連의 강경한 政策的 對應으로 經濟安定을 의욕적으로 追求하였고 政策當局은 物價上昇에 대단히 敏感한 反應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소의 副作用이 物價指數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憂慮가 없지 않다. 이에 따라 政策的 關心이 되었던 消費者物價指數와 그렇지 않았던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乖離는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러한 推測이 假說로서 認定된다면 政策的 配慮가 統計에 미친 影響이 計量分析을 歪曲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 警戒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겠다.

Ⅳ. 實效生活所得의 試算과 比較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平均所得으로 비교되는 都·農間 所得比較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을 要約·列擧하면 家計調査上의 所得槪念, 都·農間의 生計費, 平均家口員數, 租稅公課金의 負擔 등에 差異가 있고 이 차이를 감안한다면 都農間 實效所得과 그 可處分所得은 名目所得과는 달리 評價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러한 차이를 調整하여 都·農間의 實效所得을 試算하는 방법을 略述하고 이에 따라 試算된 實效生活所得을 비교함으로서, 都農間 所得隔差에 대한 再考와 올바른 認識을 환기시켜 보기로 한다.

1. 調整方法

여기에 試圖된 都農間 所得의 調整比較는 그 實效生活所得으로 換算하여 時系列比較와 「크로스·섹숀」比較로 구분하였다. 前者는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理想的인 所得調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次善의 方法으로 두가지로 구분하여 試算하였다. 두가지 接近이 다같이 都農間의 生計費와 家口員數 및 租稅·公課金의 차이를 감안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첫째 試算에서는 都市勤勞者 家口所得에 포함된 傳貰 및 自家所有에서 오는 評價所得에 調整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試算에서는 農家所得의 槪念과 一貫性있게 自家所有에서 발생하는 評價所得을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서 差減하여 實效生活所得으로 試算·比較하였다.

이 方法이 지닌 脆弱點은 1974年 美國에 있어서 貧困線을 推定하는데 이용된 成人消費基準單位와 都農間의 生計費차이에 관한 資料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換算値가 과연 우리나라의 實情에 적합하느냐 하는 疑問이 提起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調整基準値는 첫째, 美國의 平均値가 아닌 貧困階層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開發途上國인 우리 現實에 가까우며 둘째, 〈表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은 都農間의 生計費가 어떤 先進國보다 平準化되어 있어 우리 現實에 비추어서도 하나의 保守的인 調整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外國資料의 援用은 이 論文이 目的하는 바 하나의 試算으로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 온 混亂을 바로잡는 데 次善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크로스·섹숀」資料의 比較는 分配問題와 관련된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平均所得의 比較보다도 都市勤勞者와 農家의 部門內分配狀態(intrasectoral distribution)가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試圖한 것이다. 「크로스·섹숀」資料에 의한 比較는 1976年을 基準으로 하였고 都市家計調査結果 발표되는 所得階層別 分類에 自家評價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表 15〉의 試算Ⅱ와 比較될 수 있는 所得階層別 實效生活所得比較에 限定하였다.

2. 時系列 比較

前述한 바와 같은 實效生活所得의 調整方法으로서 試算된 調整所得과 調整可處分所得을

要約, 比較한 것이 〈表 14〉와 〈表 15〉이다. 두 表의 어느 試算에 의하든지 名目所得이나 名目可處分所得의 都·農間 비교는 농가의 비교적 많은 家口員數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認識하고 있는 바와 같이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比較表에 나타난 都·農間 所得比較는 1976年까지의 都市家計調査의 所得上限線 設定과 間歇的 調整의 영향으로 인하여 解釋上에 문제가 다소 있다. 예를 들면 1967年부터 1969年까지의 급격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증가는 1963年부터 1967年까지 所得上限線이 年間 50萬원 이상이던 것이 1967年에는 年間 150萬원으로 조정되었고 다시 1969年에는 200萬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70年代初, 특히 1974年의 낮은 都市勞動者家口의 평균소득은 年間 240萬원의 所得上限線이 작용한 下向偏倚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비교적 有意한 比較時點은 1965年, 1970年과 1976年 前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22].

都·農間 實效生活 所得의 調整比較를 보면 試算 I 의 경우 농가의 상대적으로 많은 家口

〈表 14〉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時系列比較(試算 I)

(단위 : 千원, %)

	名目所得			實效生活所得			名目可處分所得[1]			實效生活可處分所得[3]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2]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1963	93.2	80.2	116.2	95.5	80.2	119.1	91.2	77.5	117.7	93.5	77.5	120.7
1964	125.7	97.2	129.3	127.5	97.2	131.2	122.9	94.7	129.8	124.7	94.7	131.7
1965	112.2	112.6	99.6	117.3	112.6	104.2	109.1	109.6	99.5	114.1	109.6	104.1
1966	130.2	161.5	80.6	137.1	161.5	84.9	126.8	157.3	80.6	133.5	157.3	84.9
1967	149.5	248.6	60.1	160.5	248.6	64.6	146.9	240.1	61.2	157.7	240.1	65.7
1968	179.0	286.0	62.6	196.1	286.0	68.6	175.9	269.2	65.3	192.8	269.2	71.6
1969	217.9	333.6	65.3	239.7	333.6	71.9	213.6	315.4	67.7	234.9	315.4	74.5
1970	255.8	381.2	67.1	280.9	381.2	73.7	252.5	361.4	69.9	277.3	361.4	76.7
1971	356.4	451.9	78.9	393.1	451.9	87.0	352.2	427.4	82.4	388.5	427.4	90.9
1972	429.4	517.4	83.0	479.2	517.4	92.6	425.1	491.3	86.5	474.4	491.3	96.6
1973	480.7	550.2	87.4	534.1	550.2	97.1	474.3	520.3	91.2	527.0	520.3	101.3
1974	674.5	644.6	104.6	751.3	644.6	116.6	665.7	634.8	104.9	741.6	634.8	116.8
1975	872.9	859.3	101.6	972.4	859.3	113.2	860.2	838.8	102.6	958.3	838.8	114.3
1976	1,156.3	1,151.8	100.4	1,282.3	1,151.8	111.3	1,136.7	1,116.4	101.8	1,260.6	1,116.4	112.9
1977	1,432.8	1,405.1	102.0	1,523.1	1,405.1	108.4	1,406.1	1,369.0	102.7	1,494.7	1,369.0	109.2
1978	1,884.2	1,916.3	98.3	2,012.3	1,916.3	105.0	1,852.6	1,870.7	99.0	1,980.7	1,870.7	105.9
1979	2,227.5	2,629.6	84.7	2,416.8	2,629.6	91.9	2,180.6	2,573.8	84.7	2,369.9	2,573.8	92.1

註 : 1) 名目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한 數値임.
2) 名目農家所得에 都市·農家의 家口員數에 해당하는 미국의 빈곤선 標準農家·非農家의 家口員數別 標準單位 (表 8)를 적용한 농촌對比 도시표준단위의 비율을 곱한 수치임.
3) 實效生活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한 수치임.

資料 :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22)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階層別 所得分布를 1965, 1970, 1976年에 대하여 그 推計가 시도되었다.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pp.83~86 참조.

〈表 15〉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標準化實效生活所得의 時系列比較(試算 Ⅱ)

(단위 : 千원, %)

	名目調整所得			實效生活所得			名目調整可處分所得[3]			實效生活可處分所得[3]		
	農 家	都市勤勞者[1]	對比率(都市=100.0)	農 家[2]	都 市 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 家	都 市 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 家	都 市 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1963	93.2	71.9	129.6	95.5	71.9	132.8	91.2	69.3	131.6	93.5	69.3	134.9
1964	125.7	87.8	143.2	127.5	87.8	145.2	122.9	85.3	144.1	124.7	85.3	146.2
1965	112.2	101.4	110.7	117.3	101.4	115.7	109.1	98.4	110.9	114.1	98.4	116.0
1966	130.2	141.0	92.3	137.1	141.0	97.2	126.8	136.8	92.7	133.5	136.8	97.6
1967	149.5	218.2	68.5	160.5	218.2	73.6	146.9	209.7	70.1	157.7	209.7	75.2
1968	179.0	255.2	70.1	196.1	255.2	76.8	175.9	238.4	73.8	192.8	238.4	80.9
1969	217.9	295.8	73.7	239.7	295.8	81.0	213.6	277.6	77.0	234.9	277.6	84.5
1970	255.8	338.2	75.6	280.9	338.2	83.1	252.5	318.4	79.3	277.3	318.4	87.1
1971	356.4	400.1	89.1	393.1	400.1	98.3	352.2	375.6	93.7	388.5	375.6	103.4
1972	429.4	457.0	94.0	479.2	457.0	104.9	425.1	430.8	98.7	474.4	430.8	110.1
1973	480.7	484.6	99.2	534.1	484.6	110.2	474.3	454.7	104.3	527.0	454.7	115.9
1974	674.5	573.5	117.6	751.3	573.5	131.0	665.7	563.8	118.1	741.6	563.8	131.5
1975	872.9	786.5	111.0	972.4	786.5	123.6	860.2	766.0	112.3	958.3	766.0	125.1
1976	1,156.3	1,059.2	109.2	1,282.3	1,059.2	121.1	1,136.7	1,023.8	111.0	1,260.6	1,023.8	123.1
1977	1,432.8	1,270.9	112.7	1,523.1	1,270.9	119.8	1,406.1	1,244.1	113.0	1,494.7	1,244.1	120.1
1978	1,884.2	1,734.1	108.9	2,012.3	1,734.1	116.0	1,852.6	1,699.7	109.0	1,980.7	1,699.7	116.5
1979	2,227.5	2,337.0	95.3	2,416.8	2,337.0	103.4	2,180.6	2,296.3	95.0	2,369.9	2,296.3	103.2

註 : 1) 都市勤勞者의 名目調整所得은 名目所得에서 傳貰 및 自家評價額을 控除한 數値임.
2) 〈表 14〉와 같은 방법에 의함.
3) 名目調整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함.

資料 : 〈表 14〉와 같음.

員數를 감안하여도 生計費差異로 인하여 實效生活 總所得은 〈表 14〉에 提示된 名目家口所得比較에 비하여 10餘%「포인트」가량, 實效生活可處分所得으로는 實效生活總所得比較보다 1~3%「포인트」 정도가 農家에 有利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면 1960年代 후반과 특히 1967年에는 都·農間의 所得隔差의 문제가 實效生活所得의 槪念으로서도 있었으나 1972年부터는 오히려 농가의 平均實效生活所得이 높은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都市家計와 農家所得의 統計調査上 自家評價額에 대한 都農間의 實效性生活所得을 比較한 〈表 15〉의 時系列 試算Ⅱ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試算Ⅰ과 같은 추세를 보이나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試算Ⅰ보다 農家所得水準이 10여%「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 있다. 이리하여 1966年부터 1971年頃까지 농가의 實效生活平均所得과 可處分所得이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낮다가 1972年부터 1978年까지는 농가가 앞서고 1979年에 實效生活農家所得이 약간 낮은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表 15〉에서 주목되는 것은 1973年 부터 농가의 實效生活所得과 可處分所得間의 差異가 최초한 平均値로서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農地稅의 免稅點調整이 정부의 高米價政策과 名目所得增加에 相應하게 調整되지 않는데서 오는 현

상이라고 하겠다[23].

3. 「크로스·섹숀」分析

위에서 시도한 時系列分析은 분석방법상 都·農間의 평균소득이 이용되었다. 平均値는 階層別分布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特定年度를 선정하여 「크로스·섹숀」分析을 시도함으로써 實效生活所得의 調整比較가 所得階層別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기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對象年度는 도시가계조사의 上限線設定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와 관련된 餘他의 硏究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1976年을 選定하였다.

上述한 바와 같은 實效生活所得의 試算Ⅱ의 調整方法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都·農間 實效生活所得 및 可處分所得을 都農間의 生計費와 家口員數의 차이로 調整·比較한 것이 〈表 16〉이다. 試算에 의하면 低所得農家의 實效生活所得이 高所得農家에 비하여 높게 調整되고 都農間의 그 對比率도 低所得農家일수록 보다 有利하게 나타나 있다. 農家의 實效生活所得과 그 可處分所得의 比較는 80萬원 이하의 農家所得階層에는 中立的으로, 80萬원~170萬원의 農家所得階層에는 다소 有利하게, 그리고 170萬원 이상의 農家所得階層에는 다소 不利하게 計算되어 있다. 1976年에 있어서 農家의 租稅 및 公課金의 歸着은 中間所得階層에 상대적으로 작고 高所得階層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약간의 再分配效果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1976年 현재 年間所得 80萬원이하의

〈表 16〉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階層別所得比較(1976)

	名目調整所得			實效生活所得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50萬원미만	360.4	409.1	88.1	468.5	409.1	114.5
50萬~80萬	664.0	717.3	92.6	746.3	717.3	104.0
80~110	949.8	1,021.3	93.0	1,045.7	1,021.3	102.4
110~140	1,248.1	1,329.9	93.9	1,382.9	1,329.9	104.0
140~170	1,545.2	1,653.1	93.5	1,687.4	1,653.1	102.1
170萬원이상	2,437.3	2,756.2	88.4	2,359.3	2,756.2	85.6

	名目可處分所得			實效生活可處分所得			家口比率(%)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50萬원미만	358.6	406.6	88.2	466.7	406.6	114.8	12.6	14.2
50萬~80萬	658.0	711.2	92.5	740.3	711.2	104.1	24.4	30.1
80~110	939.6	1,006.4	93.4	1,035.5	1,006.4	102.9	22.5	22.7
110~140	1,231.8	1,300.8	94.7	1,366.6	1,300.8	105.1	14.5	13.3
140~170	1,517.5	1,593.7	95.2	1,659.7	1,593.7	104.1	8.9	6.8
170萬원이상	2,374.4	2,586.8	91.8	2,296.4	2,586.8	88.8	17.1	12.9

23)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79. pp.50~51.

도시근로자가구비율이 44.3%로서 농가의 37.0%보다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수는 1,211千家口로 농가의 923千家口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推定되어 下位生活水準家口의 數는 都市가 農家보다 오히려 많다.

1976年 이후에도 就業構造가 農家와 農業의 比重이 낮게 계속적으로 變化함으로 그 實效生活所得이 농가의 그것에 못미치는 低所得都市勤勞者家口가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970年代 후반과 같은 수준으로 농가의 相對所得이 유지된다면 分配問題의 중요한 문제는 都·農間의 所得差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實效生活所得의 관점에서 생활의 壓迫을 받으며 高所得階層과의 生活隔差를 느끼고 사는 低所得都市勤勞者階層에 있음을 재삼 認識할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都農間의 所得隔差에관한 오랜 認識은 經濟社會의 構造的 變化와 이에 따르는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가 發生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우리의 視角을 타성에 젖게 하는 경향이 있다. 급속한 成長에 의하여 中進國에 이른 오늘날까지 均衡發展을 이루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可用統計이며 統計上制約으로 因하여 都農間所得隔差에 대한 認識이 옳고 그른 것인지가 識別이 곤란한 實情이다. 흔히 社會科學硏究의 방향은 問題의 認識과 假定에서 出發하고 그 認識이 옳고 그르든지간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實證的 根據는 어느정도 蒐集할 수 있다. 社會科學硏究에 있어서의 이러한 伸縮性은 充分히 감안되어야하며 보다 客觀性을 띠우기 위해서는 兩論을 가름할 수 있는 分析的檢討에 힘쓰는 學問的 態度가 있어야 하겠다.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現存하는 統計資料로써 올바른 比較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都農間 所得隔差는 사실로서 認定되고 근래 이에 관한 硏究는 農家 在庫의 過大評價分의 除去, 都農間 不變價格 所得比較, 都農間 1人當 所得比較 등으로 統計調査됨으로서 公表된 都農間 所得比較보다 더한 隔差가 있는 것으로 硏究發表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考察한 바와같이 이러한 農家所得의 調整에 있어서 在庫評價의 問題는 推計方法의 直觀的 誤解로서 부당하고 不變所得의 比較는 1974年 이후 物價指數上의 일관된 乖離를 나타내어 農家所得의 「디플레이터」(deflator)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統計上의 문제점이 있으며 平均 家口員數에 의한 1人當 所得比較는 生計費所要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를 도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農家所得의 調整과 都市勤勞者家口所得과의 비교는 農家所得을 부당하게 過少評價하는 偏倚를 內包하고 있다.

반면에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에는 農家所得에 포함되지 않은 傳貰 및 自家所有에 의한 換價所得이 포함되고 都市家口所得에 상당한 生計費的 給與部分이 포함되어 있다. 直接稅 및 公課金의 부담은 분명히 都市勤勞者家口가 農家보다 많고 아직도 間接稅 歸着에 관한 分析은 없으나 間接稅도 消費形態로 보아 都市家計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

괄적인 都農間의 所得分布差로 인하여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의 個別家口所得比較에 있어서 극단적인 都市高所得家口를 제외하면 낮은 所得階層에서는 農家比率이 상대적으로 작고 中上位 所得階層에는 農家比率이 많은 現象을 나타낸다.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의 比較優位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要因은 오늘날까지 都農間 所得分析에 있어서 排除되어 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分配問題로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部門內 階層間 所得隔差나, 都市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間의 所得隔差, 產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都市貧困등 새로운 分配問題에 注目하지 않고 20年前이나 60年代 後半에 부각되었던 問題인 都農間所得隔差를 아직도 중요시하는 것은 問題意識에 대한 時代的 錯誤로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問題意識을 새롭게 가지고 實證的 分析을 試圖하려 할 때 직면하는 것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서 上述한 바와같은 調整을 통한 實効生活所得의 推計로서 보다 올바른 都農間의 所得比較를 試圖하는데 있어서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上述한 바와같은 여러 調整項目을 可用資料의 制約 속에 가능한 한 調整하고 아직도 定說化되지 않은 調整比較의 試圖이기 때문에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間의 所得比較를 調整하여 두가지 試算을 제시한 것이다. 이 두 調整試算에 있어서 試算表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固守하려고 意識的으로 努力하였으며 또한 分配問題의 要諦인 部門內 分配에 미치는 影響까지 감안하려고 하였다.

그 結果 60年代後半에 都農間 實効生活所得의 隔差는 分配의 問題로서 그 重要性이 인정되나 1970~71年과 1979年을 제외하면 큰 問題가 될 수 없으며 70年代의 高度成長過程에서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擴大되었다고 斷言하기 어렵다. 1976年「크로스·섹숀」分析이 妥當性을 지닌다면 都農部門의 最高所得階層을 제외한 國民大多數에게는 상술한 3個年에 있어서도 都農間의 實効生活所得上의 隔差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分析이 지니는 問題點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國內外資料를 活用한 次善의 試圖라는 것이다. 可用資料의 制約은 앞으로 보다 많은 經濟專門家가 統計資料硏究에 參與하고 統計生產機關의 活動이 政策的으로 支援되어야 解決될 課題이다. 당분간은 可用한 資料를 잘 利用하여 次善의 試算으로 斷片的으로 나마 우리의 經濟現實을 보다 바르게 照明하는 努力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1980.

_____, 『主要業務指標』, 1979~81.

_____, 『물가연보』, 1979.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8~80.

_____, 『농림통계연보』, 1980.

農水產部 經濟統計擔當官室, 『農家經濟 및 農產物生產費 調査項目分類符號解說』, 1977.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0.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硏究院, 1977.

金光錫・金大泳, 「單位消費者尺度의 推定試圖」,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79 가을호.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硏究院, 1978.

文八龍, 「農產物價格政策과 農家所得」, 『農村經濟』 Vol. 1, No. 2,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78.

文八龍・潘性紈・「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硏究院, 1981.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院發硏究院, 1979.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79 여름호.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79 가을호.

_____, 「所得分配硏究에 있어서 所得의 槪念과 決定要因」,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_____,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硏究』, 創刊號, 韓國開發硏究院, 1979.

_____, 「社會指標의 體系와 活用」, 『韓國開發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81 여름호.

Abraham, W. I.,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Choo, Hakchung,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July 1975, Vol. I.

Kravis, Irving B. and others,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Luc Henry de Wulf,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XXII, No. 1, March 1975.

Nordhaus, W. & J. Tobin,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2.

U.S. Bureau of 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evel: 1974",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 102.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換率決定

李 天 杓

▷ 目 次 ◁

Ⅰ. 序 論
Ⅱ. 換率政策의 素地
Ⅲ. 換率決定의 論理
Ⅳ. 實證作業
Ⅴ. 餘 言

Ⅰ. 序 論

이 글[1]의 目的은 世界經濟를 支配하는 새로운 換率制度인 管理變動換率制度와 汎世界的인플레이션이라는 經濟的 與件 아래에서 輸出主導型 開發途上經濟, 특히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取해 왔으나 石油를 비롯한 資源은 不足하며 世界市場에 대한 영향력은 相對的으로 微弱한 小規模開發途上經濟인 韓國經濟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經濟가 取해야 할 換率決定의 方法을 深求해 보려는 데 있다.

韓國經濟는 60年代 중반부터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擇하여 相當한 成果를 거두었다. 小規模 開發經濟이고 對外依存이 큰 開發途上經濟인 韓國經濟는 輸出을 重視하고 輸出增大에 努力함으로써 經濟開發을 위한 資本財 및 中間財의 輸入 等에 必要한 外換을 장만하면서 內部的인 經濟行爲의 合理性 또는 效率性을 培養提高할 수 있었다. 韓國經濟는 輸出을 媒介手段으로 하여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에 參與하였으며 國際競爭에서 存續해 나가기 위해 必須的으로 各種 不合理한 制度와 慣習을 相當히 淸算하게 되고 그로써 企業 및 經濟政策의 設計와 運營面에서 內部的인 能率性을 確保할 수 있었다[2].

앞으로도 당분간은 韓國經濟가 小規模 開發經濟이고 對外去來의 比重이 대단히 클 開發途上經濟일 것은 分明하므로 韓國經濟의 次後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그의 存立과 發

筆者 : 서울大學校 社會大 敎授

1) 이 小論은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 韓國經濟의 경우」라는 硏究의 換率決定 部分에 대한 編約이다. 硏究에서는 換率決定 以外에 換率變更에 대한 限界狀況, 他國의 經驗, 外換保有 및 構成이 또한 다루어진다.

2) 이 點에 대한 追加說明은 A. Krueger, *Liberalization Attempts and Its Consequenc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8 을 參考.

展에 대해 絕對的 與件이 되는 國際經濟狀況을 십분 消化하고 活用하여야 하며 時時 變化되는 國際經濟環境의 展開에 效果的으로 適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이글은 時時 展開되고 있는 國際經濟의 實狀을 換率政策과 關聯하여 鳥瞰하고 그것에 適應하기 위해 換率이라는 手段은 어떻게 決定·使用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Ⅱ. 換率政策의 素地

1. 國際經濟의 實狀

1973年 10月 石油價格이 4倍 가까이 上昇한 事態를 契期로 하여 國際經濟에서는 새로운 樣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樣相의 主要한 面面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石油가 代表가 되는바 生產過程에서 土地가 核心的인 役割을 하는 土地集約的인 財貨(land-intensive goods)의 土地集約財가 아닌 財貨에 대한 相對價格이 높아지게 되었다[3]. 地球上에 存在하는 土地의 有限性이 새삼 認識되게 되었고 이러한 有限한 生產要素를 集約的으로 投入하는 것이 必須的인 土地集約財는 相對的으로 그 價格이 繼續 上昇하리라는 것이 理解되게 되었다.

石油價格의 上昇과 더불어 從來 寡占價格決定(oligopolistic pricing)의 論理에 따라 그 價格決定이 說明되곤 하던 資本財의 價格도 높아지게 되었다. 各種 投資財와 高度의 施設財를 生產하는 先進經濟들은 石油價格 등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들이 輸出하는 資本財의 價格이 多少 올라가는 것을 結果할 수 있었다.

이러한 相對價格 構造의 變化에 따라 國際競爭이 比較的 심한 輕工業製品 等의 資源 및 資本財에 대한 相對價格은 反射的으로 下落하게 되었다.

둘째, 國際經濟의 主要 經濟들 사이에서 變動換率制度가 適用되게 되었다. 1974年 以後 國際經濟狀況의 急變으로 從來의 브레튼·우즈體制에 따른 "調整 可能하지만 調整이 있기 前까지는 固定되는 換率制度(adjustable peg system)"는 先進經濟들 사이에 그대로 持續될 수 없게 되고 이들 사이의 國際收支 調整에 있어 價格의 變動에 보다 크게 依存하는 管理變動換率制(manag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가 登場하게 되었다. 外換當局의 外換市場에의 介入이 完全히 排除된 自由變動換率制度(fre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는 아니요, 政策的으로 換率決定에 介在할 素地가 없지는 않으나, 主要 通貨 사이의 交換比率은 固定되지 않고 可變的이 되게 되는 換率決定의 메카니즘이 發現되게 되었다.

세째, 1970年代末과 1980年代初에 第2次石油類價上昇과 汎世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景氣沈滯(worldwide stagflation)가 觀察되었고, 이러한 現象은 적어도 1980年代 前半 동안에는 事實上으로 解消되지 않으리라는 豫見이 있다[4].

3) G. Haberler, "Reflections on the US Trade Deficit and the Floating Dollars", *Contemporary Economic Problems, 1978*,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R. Dornbusch, "Exchange Rate Economics: Where Do. We St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0.

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0; A. Rojko, "The Choices Before Us: Alternative World Food Balances to the Year 2000",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s 1977~1999*, H. Zandt (ed.), Bobb-Merill Educational Publishing, 1978.

2. 새로운 與件에 대한 適應

小規模 開發途上經濟인 韓國經濟는 獨自的으로 이러한 與件의 變化를 逆轉시키거나 交換시킬 수는 없겠기에 이러한 與件變化에 대한 最善의 對應을 摸索해야 하겠다.

資源價格과 資本財의 輕工業製品에 대한 相對價格이 높아 惡化된 交易條件의 好轉을 쉽게 豫見할 수 없으면서 日常的 經濟의 維持와 經濟發展을 持續시키기 위해 輸入을 크게 減縮할 수 없는 韓國經濟는 一種의 構造的인 經常收支赤字를 적어도 短期間에는 감수해야 하겠으되, 그 途中에서 外部的 與件의 好轉을 기다려 가면서 內部的인 效率性의 提高에 보다 積極的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 適應의 方途를 찾기 위한 실마리로써 이러한 世界經濟의 與件의 變化가 非產油 小規模 開發途上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살펴보자.

石油類를 비롯한 土地集約財의 相對價格의 上昇은 土地集約財의 生產에 比較劣位를 가지는 소위 非產油經濟에 대해 당장의 負擔이 된다[5]. 日常的 經濟의 維持 및 多少間의 經濟開發을 위해 原油를 비롯한 여러가지 資源의 維持輸入(maintenance import)과 經濟發展 目的의 各種 資本財의 輸入, 즉 開發輸入(development import)이 不可避한 開發途上經濟는 資源價格上昇으로 매우 큰 貿易收支의 赤字를 記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前述한 대로 이러한 經常收支赤字는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構造的인 性格의 것이다.

交易條件의 相對的 不利化를 經驗해 온 非產油 開發途上經濟가 이러한 貿易收支上의 어려움을 相對價格의 矯正을 通하여 克服한다는 것은 적어도 國際經濟의 與件의 變質的인 變化가 없는 短期에서는 不可能할 것이라 여겨진다. 輕工業製品 等의 輸出價格이 改善되면서 同時에 輸出規模도 커지게 되리라는 것은 期待하기 困難하다. 交易條件의 惡化 속에서 輸出의 增大를 通하여 輸入을 모두 充當하여 經常收支均衡을 꾀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非產油 開發途上經濟에게 남은 길은 維持輸入과 開發輸入의 規模를 줄임으로써 貿易收支의 惡化에 對處하든지 海外로부터 資本을 導入함으로써 늘어난 維持輸入 또는 開發輸入에 對處하는 길 뿐이겠다. 나아가 經濟規模의 縮小와 實質生活水準의 低下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積極的으로 資本導入에 努力해야 하며, 특히 石油달러의 還流(oil dollar recycling)에 能動的으로 介入해야 하겠음을 推論할 수 있다[6].

한편 主要 通貨 사이의 價格構造의 變化는 小規模經濟가 交易하는 交易財의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이 심하게 變할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게 된다. 小規模經濟는 그의 영향력 밖에서 일어나는 主要 通貨 사이의 換率構造의 變化에 따라 그의 輸出品의 價格이 오르거나 내리고 그의 輸入品의 價格이 騰落하게 됨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沉世界的 인플레이션과 景氣沈滯는 小規模經濟에 그대로 波及되게 된다. 즉 外貨表示

5) 世界銀行의 年次報告書에서도 近年에 들어 開發途上經濟를 產油開途國과 非產油開途國으로 2分하여 非產油開途國의 經濟問題가 開發途上經濟一般과 等値될 수 없는 特殊한 事情을 지니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6) *The Economist*, 1980 March, 22—28. "Shifting Sands: A Survey of International Banking".

交易財價格이 上昇하게 됨을 小規模經濟는 하등의 영향력을 못 미치면서 輸入인플레이션의 現象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先進經濟의 景氣가 나빠져 이들 經濟에 대한 輸出이 어려워지고 이들 經濟로부터의 資本導入이 까다로와질 수 있는 點도 避할 수 없게 된다.

3.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適應

非產油 開發途上經濟가 어려운 事情을 건너나가는 데에는 여러가지 조처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非產油 開發途上經濟 中에서도 輸出主導型 成長經濟라고 韓國經濟를 把握한다면 韓國經濟의 適應方法은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事情을 充分히 考慮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韓國經濟의 維持와 發展에는 輸出部門이 매우 主要한 部門이라 할 수 있겠기에 輸出部門이 效率性을 지니고 存立하여 소위 國際競爭力을 繼續하여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輸出部門은 國際市場과의 媒介의 場이기에 經濟 全體가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이라는 試驗을 항상 느끼게 하는 窓口가 된다.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輸出部門은 全體 經濟가 가질 수 있는 無理와 非合理性을 一定 限度內로 抑制하여 小規模 成長經濟의 全般的 效率性을 維持하게 하는 하나의 關鍵이 된다.

그런데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輸出部門은 다른 部門과 獨立·分離되어 存立할 수 없고 다른 部門과 均衡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輸出主導型經濟의 輸出部門의 效率性維持를 위해서는 輸出部門에서의 生產物과 非輸出部門의 生產物 사이에 該當經濟의 變化하는 實態에 相應하는 均衡價格으로써 올바른 相對價格이 保障되어야 한다[7].

部門 간의 올바른 相對價格을 찾아 維持하기 위해서는 모든 部門이 包括된 經濟 全般이 直接 論議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輸出部門뿐만 아니라 輸入部門도 包括되어야 함은 勿論 이들 輸出部門 및 輸入部門을 합한 交易財部門과 더불어 國際的 去來의 對象이 아닌 非交易財를 生產하는 非交易財部門도 考慮되어야 한다.

經濟全體를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으로 兩分할 경우 나타나는 가장 重要한 相對價格은 交易財價格과 非交易財價格의 相對價格인 實質換率(real exchange rate)이다[8]. 또 非交易財價格은 非交易財의 需要와 供給에 따라 內生的으로 決定되나 外換表示 交易財價格은 國際市場에서 外生的으로 주어지고 國內에서의 交易財價格은 이러한 外換表示 交易財價格에 名目換率을 곱한 것으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實質換率은 名目換率과 非交易財價格에 의해 左右되겠는데 非交易財價格이란 여러가지 複雜한 要因의 영향을 받아 쉽게 政策的으로 變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名目

7) 變化하는 事態에 對應하는 均衡價格으로써 올바른 相對價格을 理解하는 限 올바른 相對價格은 經濟實態와 均衡의 認識에 依存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올바른 相對價格을 經濟의 歪曲을 排除하는 均衡價格으로써 規範的으로 認識하고 經濟實態와 均衡에 對應하는 올바른 相對價格의 決定은 뒤의 實證作業을 通하여 圖謀한다.

8) 交易財와 非交易財를 對立시키는 모델을 依存經濟모델(dependent economy model)이라 하며, 이들은 오오스트레일리아 經濟學者들인 Salter, Swan, Corden 等에 依해 開發, 活用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R. Dornbusch, *Open Economy Macroeconomics*, MIT Lecture Note 5章 및 그곳의 參考文獻을 참조.

換率이 實質換率을 決定짓는 가장 效果的인 政策手段이 된다. 올바른 實質換率을 決定하고 持續的으로 維持하기를 願하는 輸出主導型 成長經濟는 名目換率 變更이 交易財의 國內價格을 變化시키는 面과 非交易財의 需要와 供給에 영향을 미치어 非交易財價格을 變化시키는 面을 함께 考慮하여 適合한 名目換率의 水準을 찾아내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名目換率의 水準을 決定하는 데 어떠한 方法이 利用되어 이러한 要因들을 감안할 수 있게 되겠는가를 摸索한다. 나아가 探索된 方法을 韓國經濟에 대한 統計를 利用하여 試驗해 본다. 理論的 推論을 通하여 얻어진 關係가 韓國經濟라는 具體的인 경우에 대해 어느 程度 適用되는가를 實驗해 본다.

4. 換率政策의 素地

小規模經濟의 換率決定을 위해서는 올바른 實質換率의 水準이 찾아지고 非交易財의 價格과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을 確定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때 올바른 實質換率을 決定함에는 非產油開發途上經濟라는 狀況的 事情과 輸出部門이 主導部門이 되어 經濟의 成長을 꾀한다는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內的 事情이 감안되어야 하겠다.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이 意味있게 區分되고 交易財價格과 非交易財價格이 識別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外換表示 交易財價格이 確定되는 데에서는 一般的 變動換率制라는 制度 아래에서 항상 變化하고 있는 主要 通貨들 사이의 換率을 效果的으로 要約하는 方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어떤 一定 時點에서 把握된 올바른 實質換率이나 交易財價格, 非交易財價格은 時間이 經過하고 狀況이 바뀜에 따라 變動하게 된다. 그런데 換率政策의 目標가 모든 瞬間에 대한 올바른 實質換率의 維持라고 한다면, 이들 各種價格이 變化한다는 이야기는 實際的으로 換率政策을 위해서는 올바른 實質換率, 非交易財價格, 그리고 外換表示 交易財價格이 各各 또는 이들 사이의 關係가 어떻게 變化해 가느냐 하는 데 대한 論理를 發見해 내야 하겠음을 意味한다. 올바른 實質換率이 作動하고 있어 輸出部門을 비롯한 全體經濟가 效率的으로 存續하고 있는 어떤 一定 時點을 基點으로 하고 그러한 基點으로부터 狀況과 與件이 變化하여 갈 때에도 계속 올바른 實質換率을 지켜나가기를 願할 때 名目換率을 어떻게 調整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課題도 解決하여야 하게 된다.

Ⅲ. 換率決定의 論理 : 올바른 實質換率의 決定과 變化

위에서 어떠한 經濟의 實態에 對應하는 均衡相對價格으로써 올바른 實質換率을 認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올바른 實質換率이 어떻게 決定되고 變化되어야 하겠는가를 살펴본다.

종래 生產可能性曲線과 一定하게 주어진 經常收支赤字를 根幹으로 하여 生產可能性關係上에서 生產이 이루어지는 것을 內的 均衡으로 理解하고 주어진 經常收支赤字 以上의 國際收支가 나타나지 않는 狀況을 外的 均衡으

로 理解하여 內的 均衡과 外的 均衡을 同時에 達成하게 하는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을 深求하는 理論的 論議가 있었고, 또 어떤 一定 時點에서 相對價格이 適正했다고 보고 그 以後 經濟事情이 變化하였을 때 일단 成立하고 있었던 實質換率을 어떻게 變化시켜야 계속 適正한 相對價格을 維持할 수 있느냐에 대한 實證作業의 努力이 있었다[9].

이들은 모두 여기에서의 올바른 實質換率의 摸索에 대한 先例가 되는 作業들이다. 이들은 內部的인 效率性 또는 生產活動의 歪曲의 豫防을 위해서는 生產可能性曲線上에서 그와 接하는 것으로 認識되는 相對價格이 保障되어야 함을 摘示하고 있고 어떠한 一定한 經常收支不均衡과 同一한 外的 不均衡이 確定되면 生產可能性關係와 接하는 여러가지의 相對價格中 하나의 相對價格이 決定되게 된다는 論理를 提示해 주고 있다.

이러한 論理體系를 따를 때 生產可能性曲線과 經常收支赤字가 주어진다면 理論的으로는 올바른 相對價格 또는 올바른 實質換率이 決定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問題는 生產可能性曲線과 주어진 經常收支赤字란 理論的인 槪念이요, 이를 實用化하기 위해서는 生產可能性曲線과 같은 理論的인 槪念이 實績 統計値가 存在하고 있는 經濟變數로 交換되어 表現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換率決定의 政策的 必要性은 어떤 一定 時點의 換率決定으로 足한 것이 아니라 變化하는 事情에 따라 各 時點에서 그러한 狀況에 對應하는 換率이 항상 決定되어 實現될 수 있어야 한다는 面을 包含하고 있다. 따라서 換率決定에 대한 課業이 보다 實用性을 가지려면 變化하는 事態에 對應하여 政策手段으로 認識된 바 名目換率을 어떻게 變更시켜야 계속 올바른 實質換率을 維持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包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理解에 따라 以下에서는 變化하는 事態라고 막연히 表現해 본 것 中 換率決定과 關聯을 가지는 因子들을 確實히 하고, 다음 그러한 因子들을 說明變數로 하고 올바른 實質換率을 被說明變數로 하는 關係式을 찾아본다. 同時에 이렇게 決定된 올바른 實質換率과 對應하는 名目換率을 찾아 그것을 輸出主導型 成長經濟가 取해야 할 換率로 본다.

올바른 實質換率을 規定하는 關係式은 回歸모델(regression model)을 通해서 찾으며, 回歸方程式을 求하는 데 쓰이는 推計期間 中에는 平均的으로는 올바른 實質換率이 成立되고 있었다고 假定하기로 한다[10].

回歸方程式은 韓國經濟가 괄목할 成長을 보여 온 期間 中 最近의 外的 與件의 效果를 相對的으로 많이 받은 1970~79年을 基盤으로 하고 이 期間中 個別 年度에는 올바른 實質換率이 成立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平均的으로는 올바른 實質換率이 成立했다고 봄을 前提로 한다.

韓國經濟는 1970年代에 外部的 衝擊을 받고 또 內部的인 構造의 變換을 겪으면서 結果的으로 다른 經濟에 比해 優秀한 經濟成長의 成果를 보였는바, 그러한 成果란 實質換率이 根本的으로 歪曲된 狀態에서는 얻어질 수 없으

9) 앞의 註 7)參照. 또 R. Mckinnon, "International Transfers and Non-traded Commodities: The Adjustment Proble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Developing Countries*, D. Leipziger (ed.), AID, 1976와 註 1)에서의 參考文獻.

10) 오랜 期間에 대한 平均的 趨勢를 根據로 하여 어떤 規則性을 推論하려는 이러한 着想은 恒常所得假說과 類似한 着想이다.

〔圖 1〕 生產可能性 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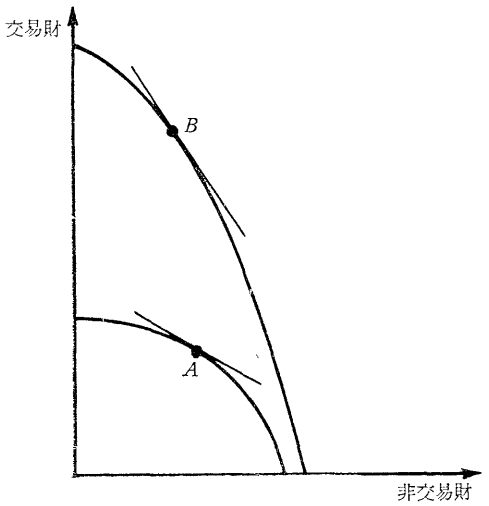

註 : *B*點에서는 *A*點보다 交易財의 相對價格이 낮으나 交易財의 生產은 많다.

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論理를 따를 때 確定해야 할 問題는 實質換率을 說明하는 外的 및 內的인 因子들이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輸出主導型 小規模의 成長經濟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특히 重要하다 하겠다.

첫째 要因으로서 海外에서의 어떤 平均的인 인플레이션率과 相異한 國內의 인플레이션率이 摘示될 수 있다. 어떠 經濟이든 巨視經濟는 그 獨自의 財政政策이나 通貨政策을 遂行하는 게 보통이요, 또 어떤 國民經濟에 內在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豫想(inflationary expectation)은 國際經濟社會의 平均과 다를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經濟社會의 인플레이션率이 國際經濟社會의 인플레이션率의 平均과 不一致하게 하는 가장 重要한 因子가 된다. 그리고 이때의 인플레이션率의 隔差가 實質換率을 變化시킨다.

둘째, 實物經濟의 發展 및 成長過程에서 있게 되는 內部的인 構造變動이 同一하지 않을 때 各種 財貨들 사이의 相對價格構造가 相異해지고 相異한 相對價格構造는 올바른 實質換率의 變化를 要望하는 因子가 된다. 例로서 어떤 經濟의 交易財部門의 成長이 非交易財部門의 그것보다 生產可能性曲線은 위의 〔圖 1〕처럼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이 同一하지 않게끔 膨脹하고 交易財의 供給은 相對的으로 많아지면서 交易財의 相對價格은 떨어지게 되기가 쉽다. 그리고 交易財의 相對價格이 下落하는 裏面에 存在하는 非交易財의 相對價格上昇이 實質換率의 變化를 要求하는 構造的 因子가 된다.

세째, 海外에서의 外換表示 交易財價格이 變化할 수 있다. 小規模開發經濟에게는 外生的으로 주어지는 外換表示 交易財價格도 汎世界的 인플레이션의 渦中에서는 上昇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輸入인플레이션의 形態로 小規模經濟에 流入되고는 한다. 또한 流動換率制度 아래에서는 主要 通貨들 사이의 換率이 항상 變化하고 있는데 交易財란 이러한 通貨들로 去來되는 것이기에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은 이러한 換率構造의 變化를 反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小規模經濟에게는 主要通貨들 사이의 換率構造의 變化가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의 變化로써 消化되어야 한다.

輸出主導型 成長經濟는 經濟發展을 追求해감에 있어서 換率의 決定 以外에도 通貨政策이나 財政政策 등 여러가지 政策手段을 驅使한다. 또 經濟發展의 過程에서 여러가지 政策의 영향을 直接的 間接的으로 받으면서 產業構造가 바뀌게 된다. 通貨政策이나 財政政策은 總體的으로 인플레이션率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同時에 製品 間의 相對價格構造에도 變化

를 준다.

以上의 要因들은 實質換率을 變化시킨다. 설사 애초에 實質換率 水準이 올바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要因들의 變化가 있고 나면 結果되는 實質換率은 먼저의 올바른 水準과 相異하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 展開된 狀況에서 올바르지 않은 實質換率을 올바른 水準으로 移行시켜 나가는 데 名目換率을 變更하는 換率政策의 役割이 찾아진다.

換率決定은 先行하는 여러 因子들의 作動을 前提로 하면서 올바른 實質換率을 確保하고 輸出部門의 效率性, 經濟 全般의 效率性을 結果하게끔 되어야 한다.

1. 스칸디나비아 모델[11)]

이러한 換率決定의 課業을 위해서는 實質換率을 左右하는 위의 因子들을 綜合하여 名目換率을 變更시키는 데 利用하게 하는 디딤돌이 必要하다. 이런 디딤돌의 마련을 위해서 앞에서 提示된 표의 延長으로써 理論的으로 하나의 根據를 提示해 주는 스칸디나비아 모델(scandinavian model)을 보고 다음에 거기에서 擴張된 實證 方程式을 求해 보자.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을 지니고 있는 小規模經濟에 대한 것으로 이들 兩部門에서의 生產性 向上率이 相異할 때 實質換率은 어떻게 變化하게 되는가를 照明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交易財部門 및 非交易財部門 모두에서 勞動이 主된 生產要素(prime factor of production)가 되고 生產이 이루어지고 外生的으로 決定되는 生產性 向上率이 있으며, 各 部門에서의 價格 決定은 마크·업方式(mark-up pricing)을 따른다고 본다. 小規模經濟의 勞動市場은 同質的이라고 假定하여 兩部門에서의 勞動에 대한 名目賃金率은 同一하다.

이제 交易財部門의 名目賃金을 W_T, 非交易財部門의 名目賃金을 W_N 이라고 表示하기로 하면 勞動市場이 持續的으로 同質的이라는 事情은

$$\hat{W}_T = \hat{W}_N \quad \cdots\cdots\cdots\cdots (1)$$

을 內包한다.

이때 W_T나 W_N 위에 붙은 모자(^)는 相對的 變化率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例컨대

$$\hat{W}_T = \frac{\Delta W_T}{W_T} = \Delta \log W_T$$

모자에 대한 이러한 用法은 次後의 다른 變數에 대해서도 同一하다.

다음 兩部門에서의 마크·업 價格 決定을 數式으로 나타내 보면

$$(1+Z_T)W_T L_T = P_T Q_T \quad \cdots\cdots\cdots\cdots (2)$$

$$(1+Z_N)W_N L_N = P_N Q_N \quad \cdots\cdots\cdots\cdots (3)$$

여기에서 下添字 T와 N은 各各 交易財 및 非交易財를 나타내는 것이고, $Z_i(i=T,N)$은 마크·업率, $L_i(i=T,N)$은 勞動投入, P_i 및 $Q_i(i=T,N)$은 各各 i財의 價格과 生產量

11) O. Ankrust, "Inflation in the Open Economy: A Norwegian Model", *Worldwide Inflation*, L. Kranse and W. Salant(ed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A. Lindbeck, "Imported and Structural Inflation and Aggregate Demand: The Scandinavian Model Reconsidered", *Inflation and Employment in Open Economics*, North-Holland, 1979.

이다.

生產要素 中 主된 要素로서 勞動만이 考慮되는 이러한 單純한 모델에서는 生產性이란 勞動生產性 (labor productivity)과 同一하며 $q_i=Q_i/L_i(i=T,N)$으로 把握할 수 있다. 生產性에 대한 이러한 定義를 利用하고 또 兩部門에서의 마크·업率 $Z_i(i=T,N)$은 外生的으로 決定된다고 한다면, (2)式과 (3)式은

$$\hat{W}_T=\hat{p}_T+\hat{q}_T \quad \cdots\cdots(2)'$$

$$\hat{W}_N=\hat{p}_N+\hat{q}_N \quad \cdots\cdots(3)'$$

으로 交換될 수 있다.

이들을 (1)式에 代入한 다음 整理하면

$$\hat{p}_T-\hat{p}_N=\hat{q}_N-\hat{q}_T \quad \cdots\cdots(4)$$

이 式의 左邊은 實質換率의 變化에 相當하는 것이기에, (4)式은 實質換率의 變化란 兩部門에서의 生產性向上率의 隔差라는 實物的이고 構造的인 因子에 의해 決定됨을 알려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構造的 因子와 換率과의 關係는 購買力平價說을 吟味하는 過程에서 「발라싸」에 의해 처음 觀察된 것인바, 部門 間의 生產性向上率의 隔差가 準用한 購買力平價說을 修正하는 根本的 因子가 된다는 점을 알려 준 것이다[12].

一般的으로 經濟成長이 빠른 經濟일수록 製造業部門으로 代表되는바 交易財部門의 生產性 向上率이 非交易部門의 그것보다 높다. 따라서 (4)에 의하여 볼 때 經濟成長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經濟에서는 交易財의 相對價格이 떨어져가야 하겠음을 알 수 있다.

2. 名目換率 變更을 위한 方程式關係

以上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一部分을 살펴 보고 生產性 向上率의 隔差가 나타내는 實物的 構造的 因子가 實質換率의 決定에 主要 役割을 해야 하겠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實物的 因子란 事實上 經濟發展의 한 現象에 不過하기에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貢獻은 經濟成長過程의 實物的 側面이 實質換率을 左右하게 됨을 明示的으로 알려주는 基本的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하겠다.

그런데 巨視經濟를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으로 二區分하는 것은 理論的 造形의 產物이다. 實際로 實證作業을 염두에 두고 各種 統計를 살펴보면 巨視經濟를 兩分한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 各各에 대한 價格, 生產量, 生產性 등의 資料를 加工해 發表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4)式이 實證作業에 그대로 使用될 수는 없고 얻을 수 있는 統計値와 相應하는 變數로 表現될 수 있게끔 (4)式의 形態가 交換되어야 하겠다.

「발라싸」의 先例를 따라 公表되고 있는 價格指數인 GNP디플레이터와 製造業製品에 대한 都賣物價指數를 檢討해보면 前者는 交易財와 非交易財를 모두 包括하는 產出物 全般에 대한 價格指數임에 比해 前者는 오직 交易財의 價格指數라고 보아도 되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製造業製品 都賣物價指數와 GNP 디플레이터의 比를 注目해 본다면, 이러한 比는

12) B. Balassa, "The Purchasing Power Parity Doctrine: A Reapprais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4.
R. Dornbusch, *Open Economy Macroeconomics*, MIT Lecture Note, 1979.

交易財價格과 非交易財價格 사이에 規定되는 相對價格과 正的인 依存關係를 가지겠음을 또한 推論할 수 있다. 이는 實證作業 目的을 위해서는 實質換率에 대한 統計資料로서 製造業製品 都賣物價指數와 GNP디플레이터의 比를 代身 써도 좋겠다는 것이 된다.

以下 說明의 便宜를 위하여 製造業製品 都賣物價指數를 p_T, GNP디플레이터를 p라고 하고 이들 사이의 比를 p_T/p로 써 보자. 그러면 p_T/p는 交易財價格과 非交易財價格 사이에서 定義되는 實質換率에 正的으로 依存한 것이요, 나아가 該當 巨視經濟의 構造的 要因과 어떤 聯關을 맺을 것이다.

어떤 經濟가 스칸디나비아 모델에 의해 充分히 記述되고 또 交易財部門 및 非交易財部門에 대한 生產性關係 統計가 있다면 (4)式이 直接 利用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經濟의 實物部門의 構造가 스칸디나비아 모델에서 提示하는 兩部門의 生產性 向上率의 差異 以上의 複雜한 構造的 因子를 지니고 있거나 部門別 生產性에 대한 統計가 可用하지 않다면 적어도 實證作業에서는 (4)式의 意圖를 살리되 그 實質的인 意味를 延長하여 實物的 構造的 事情을 (4)式 以上으로 記述하는 關係式을 찾아 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構造關係式은 統計的으로 意味있는 體系的인 關係式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라싸」는 여러 國家에 대한 橫斷面 資料(cross-country data)를 가지고 p_T/p에 대한 構造關係式을 探求하는 데 있어 各 經濟의 1人當 製造業生產額을 構造的 因子로서 使用하였다. 1人當 GNP가 國家間의 實物的 構造的 差異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假定에서 出發한 것이요, 結果的으로 意味있고 體系的인 關係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韓國經濟의 構造를 反映하는 어떤 體系的인 關係式을 導出하자는 것이 目的이다. 單一經濟에 대해 異時點에 대한 時系列資料를 基盤으로 하여 여러 構造的인 因子와 p_T/p를 결부시켜야 하겠다.

그런데 單一經濟에 대한 時系列資料는 여러 國家에 대한 橫斷面資料보다 그 種類에 있어 더 많을 터이요, 各 數値 사이의 同質性으로 보아서도 優秀하다. 따라서 1人當 製造業生產額이 利用될 수도 있고, 그 以外에 構造的 側面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다른 統計를 活用할 수 있게 된다.

韓國經濟의 實物部門은 前述한 대로 非產油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構造的인 經常收支赤字, 輸出品을 主로 한 製造業 生產과 對應하는 높은 製造業의 比重, 經濟成長 目的의 높은 投資率 等이 構造的 說明變數가 될 수 있다. 實質換率이 問題되는 限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對立이 있어야 하고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對立關係를 다룬 모델이 次後 引用되는 바 Salter-Swan모델이기 때문에 構造的 因子를 찾는 데는 Salter-Swan모델의 아이디어가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構造的 因子를 미처 確認해 놓지 않은 이 段階에서 그들을 막연히 y, w, z 等으로 表示하고, 이들을 p_T/p와 關聯시키면

$$p_T/p = f(y, w, z \cdots)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5)$$

이러한 關係式을 實證的으로 識別해 낼 수 있다면, 그러한 推定式(estimated equation)은 各 構造的 因子 y, w, z의 變化에 대응하는 올바른 實質換率의 水準을 迂廻的으로나마 代理하는 關係式이 되겠다.

잠시 (5)式에 對應하는 推定式이 얻어졌다고 하고, 그러한 推定式이 換率決定에 어떻게 쓰일 수 있나를 생각해 보자. 名目換率의 變更을 위하여 巨視經濟의 實物的 構造的 因子가 어떠한 役割을 어떤 經路를 通하여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小規模經濟라는 事情에 따라

$$p_T = E \cdot p_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6)$$

여기에서 E는 名目換率이고, p_T^*는 外換으로 表示된 交易財價格이다.

(5)式을 (6)式에 代入한 다음 整理하면

$$\hat{E} = \hat{p} + \hat{f} - \hat{p}_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7)$$

平面的으로 觀察하면 (7)式은 交易財市場의 「아르비트라쥐」關係에서 由來되는 恒等式의 一種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hat{f}$의 값이 (5)式이라는 構造式에 의해 얻어지는 限 그것은 單純한 恒等式 以上의 制度方程式이 된다.

다음 (7)式의 構成因子들을 項目別로 보자.

$\hat{p}$는 어떤 經濟의 總體的 物價騰貴率로써 어떤 經濟의 經濟政策이나 인플레이션이 世界의 平均과 相異할 때에는 世界經濟 全體의 平均物價上昇率과 相異해질 수 있는 것이다. $\hat{f}$는 (5)式에 대한 推定式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 바 構造變化를 나타내는 要因이고, $\hat{p}^*$는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으로 性質上 小規模經濟에게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나 變動換率制 아래에서는 可變性이 커진 것이다.

이들은 各各 앞에서 言及된 바 實質換率을 變化하게 하는 3要因과 對應하는 것이다. (5)式에 대한 推定式이 주어지고 $\hat{p}$ 및 $\hat{p}_T^*$에 대한 統計値가 確保되기만 하면 名目換率의 變更率이 (7)式에 의해 주어진다.

그런데 自由變動換率制가 아니며 換率調整이 遲延되고는 하는 經濟에 대해서는 交易財市場에서의 「아르비트라쥐」에 根據하고 있는 (7)式이 看過하고 있는 重要한 一面이 있다. (7)式에서는 적어도 形式的으로는 인플레이션이 名目換率을 調整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만이 考慮되고 있다. 實上 換率調整이 흔히 遲延되고는 하는 經濟에서는 換率調整이 또한 物價水準의 變化에 대한 直接的 原因이 되고 있는데, (7)式에서는 인플레이션의 進行이 名目換率 變更의 原因이 된다는 事情과 더불어 名目換率의 引上이 또한 인플레이션의 原因이 된다는 事情 兩面이 明示的으로 考慮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인플레이션率이 平價切下에 依存하는 關係를 구태여 形式化해 본다면

$$\hat{p} = \hat{p}(\hat{E}, \cdots)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8)$$

論理的으로 (8)式을 (7)式에 代入한 다음 $\hat{E}$에 대하여 풀면 $\hat{E}$가 $\hat{f}$ 및 $\hat{p}_T^*$에 의해 說明되는 關係가 導出될 수 있다.

그런데 (8)式과 같은 關係는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安定的이지 못할 可能性이 많다. 平價切下란 보통 遲延되고 廻避되다가 어떤 極端的인 狀況에 가서 斷行되는 조처이기에 非連續的이다. $\hat{E}$의 內容이 非連續的이고 不規則하다면 (8)式의 關係를 識別해 내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8)式이 나타내 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hat{p}$가 $\hat{E}$의 영향을 받음을 否認하지는 못하나 (8)式이 安定的이고 規則的인 關係를 形成하리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8)式을 利用하여 $\hat{p}$를 消去해 버리게 된다면 $\hat{p}$에 대한 統計値는 제대로 活

用하지 못하게 되는데, $\hat{p}$와 같이 綜合的이고 有意한 情報源을 看過하거나 無視한다는 것은 實證作業의 慣行上 결코 賢明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8)式의 關係는 利用하지 않기로 한다. 同時에 $\hat{p}$로 因해 $\hat{p}$가 직접 變化하게 되는 事情은 $\hat{p}$와 $\hat{E}$에 대한 統計數値를 選別·確定하는 過程에서 多少 恣意的인 方法(ad hoc method)을 通해 $\hat{p}$의 數値를 調整하는 方式으로써 감안하기로 한다.

(7)式이 나타내는 關係는 換率變更은 關聯되는 經濟의 物價上昇率의 差와 같도록 하면 된다고 보는 單純한 購買力平價說의 一般化라고 볼 수가 있다. 關心의 對象이 되는 經濟의 構造變化가 없고 또 小規模經濟에게 주어지는 外貨表示 交易財價格의 變化率이 海外의 인플레이션과 同一하다고 한다면 (7)式은 名目換率의 變更은 國內의 인플레이션率 $\hat{p}$와 海外의 인플레이션率 $\hat{p}^*$의 差와 같게끔 確定할 것을 提示해 주어 單純한 購買力平價說과 同質的이 된다.

그런데 大部分의 經濟는 交易財部門보다 큰 非交易財部門을 지니고 있으며 內部的인 構造變動을 經驗하고 있다. 따라서 構造變動과 관련된 相對價格의 變化 및 그것의 올바른 實質換率에의 영향을 無視함은 正當化되기 어렵다.

다음 購買力平價說에 依據하여 換率을 變更하려 할 때 當面하는 實務的 問題의 하나로서 인플레이션率을 나타내는 價格指數로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겠느냐 하는 問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都賣物價指數가 價格指數로 쓰이고 다른 경우에는 GNP디플레이터나 消費者物價指數가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價格指數들은 各各 獨自의 用途와 實用性을 지니고 있어 購買力平價와 同一視되는데 나름대로의 長短點을 지니고 있다[13].

實證作業을 試圖할 때 利用하는 統計値들 사이에는 그것을 밑받침하는 理論的 틀이 前提되어 있어야 하는데 單純한 購買力平價說의 경우에는 購買力平價와 理論的으로 결부되는 價格指數의 選定에 대한 基盤이 缺如되어 있다.

그것에 比해 單純한 購買力平價說의 一般化인 (7)式의 關係는 構造變動을 감안하여 특히 構造變化가 심한 成長經濟에 대해 有效하며, 또 어떠한 價格指數들을 利用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理論的 基礎를 지니고 있어 能率的이라 하겠다.

또한 쉽게 確定되기 어려운 資料인 海外의 인플레이션率과 달리 $\hat{p}_T^*$는 小規模經濟의 實際·對外去來에서 찾아질 수 있어 海外의 인플레이션率이라는 統計를 加工하는 데 드는 恣意性이 排除될 수 있다. 나아가 國際的「마케팅」過程에서 小規模經濟가 能熟하지 못하여 어떤 具體的인 小規模經濟에 대한 交易財價格이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平均基準보다 높을 수가 있는데, $\hat{p}_T^*$는 이러한 事情도 包括할 수 있어 보다 實際的이다.

13) L. Katseli-Papaef strafiou, *The Purchasing Power Parity Doctrine in the 1970s'*, Special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1979.

Ⅳ. 實證作業

1. (5)式의 推定式

여기에서는 앞에서 미루어져 왔던 바 構造變動因子에 대한 推定式을 求해 본다. 우선 (5)式의 左邊에 있는 p의 資料로는 GNP디플레이터를 쓰고, p_T^*의 資料로는 輸出單價指數(export unit value index)와 輸入單價指數(import unit value index)를 「파아셰」方式에 따라 複合하여 交易財價格指數를 만들어 使用한다. 또 p_T^*를 p_T로 置換하기 위해 必要한 E의 資料로는 公定換率에다 輸出에 대한 補助 또는 輸入에 따르는 「프레미엄」을 감안한 實效換率(effection exchange rate)을 利用한다[14].

다음 (5)式의 右邊에 있는 構造的 因子로서는 1人當製造業生產額을 代身하는 1人當 GNP 以外에 製造業 附加價値의 GNP에 대한 比率, 貿易赤字의 GNP에 대한 比率, 投資額의 GNP에 대한 比率 等을 動員한다.

交易財와 非交易財를 對立시키는 靜態모델로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實例가 되는 Salter-Swan-Corden 모델의 立論에서 본다면, 1人當 GNP는 生產可能性의 크기에 相當하는 것이요, 製造業 附加價値/GNP나 投資/GNP는 生產可能性曲線의 形態에 대한 것이며, 貿易赤字/GNP는 生產 以上인 吸收(absorption)를 可能하게 하는 非產油 開發途上經濟에 대한 構造的 經常收支赤字를 反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들 說明變數들의 p_T/p에 대한 영향력을 豫想해 보면 다음과 같다. 1人當 GNP가 커질수록 經濟가 開發되고 生活水準이 向上되며 交易財에 比해 各種 서비스 等 非交易財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非交易財의 比重이 커진다는 것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이 높아져야 實現될 수 있겠다. 따라서 1人當 GNP가 클수록 非交易財의 相對價格은 높아져야 하겠으며, 이러한 事情은 p_T/p와 1人當 GNP가 負的인 依存關係를 지녀야 하겠음을 알려 준다.

다음 生產可能性曲線의 形態 또는 交易財部門과 非交易財部門 中 어느쪽으로 더 膨脹하였는지 與否를 나타내는 製造業 附加價値/GNP는 p_T/p와 正的인 依存關係를 가질 것이다. 1人當 GNP에 의해 生產可能性曲線의 規模가 이미 把握된 다음이니 주어진 生產可能性의 規模에서는 相對的으로 交易財의 生產이 많다는 것이 높은 交易財의 相對價格과 一貫性을 지니는 것이 되겠다.

貿易收支 赤字/GNP는 p_T/p와 逆方向의 關係를 가져야 妥當的일 것이다. 貿易收支의 赤字가 相對的으로 크면 클수록 自國에서 生產되지 않은 交易財의 供給이 많다는 것이요, 다른 事情이 不變일 때 交易財의 供給이 많아진다는 것은 交易財의 相對價格을 下落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構造因子로 쓰려는 投資/GNP는 p_T/p와 一意的으로 判斷할 수 없는 多少 複雜한 關係를 內包한다고 보여진다. 投資란 原則

14) 具體的인 補助에 대한 數値의 根據로는 南宗鉉, 「韓國의 貿易政策과 產業保護」, 『韓國開發硏究』, 여름호, 1980.

的으로 生産可能性曲線의 擴張을 가져오는 가장 核心的인 要因이라 하겠는데, 總體 投資를 가지고는 그것이 交易財部門에 대해 얼마나 이루어지고 非交易財部門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 그에 따라 生産可能性曲線이 어느쪽으로 더 크게 膨脹하겠는지를 알 수가 없다. 만약 交易財部門에 相對的으로 많은 投資가 이루어졌다면 交易財의 供給이 增加되어 交易財의 相對價格이 떨어져야 할 것이요, 반대로 非交易財部門에 보다 많은 投資가 이루어졌다면 交易財의 相對價格은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에서는 交易財部門에 대한 投資가 相對的으로 장려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交易財의 相對價格은 投資가 增大되면서 떨어지게 될 可能性이 크다.

한편 觀點을 바꾸어 開發途上經濟에서는 輸入 中 큰 部分이 開發輸入의 性格을 지니리라 함을 想起하면, 投資는 輸入과 正的인 依存關係를 가져 貿易收支赤字와도 正的인 關係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貿易收支赤字와 p_T/p가 正的인 依存關係를 가지리라는 것을 위에서 推論했으니 投資와 p_T/p가 正的인 相關關係를 지니게 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1970～79年을 推計期間으로 하고 몇가지 定式化(specification)에 의해 (5)式에 對應하는 回歸方程式을 구해 보면 다음의 (9)式 또는 (10)式과 같다[15]. 여기에서

VPH는 1人當 GNP(10億원),

VMV는 製造業 附加價値/GNP,

$TDEF$는 國民所得統計로 부터 얻어진 貿易赤字의 GNP에 대한 比率,

$TDEF(\$)$는 달러로 把握된 貿易赤字를 名目換率로 置換한 것의 GNP에 대한 比率,

IV는 投資/GNP

이다.

또 $PTVP$는 p_T/p에 該當하는 것이고, $PTVPIV$는 $PTVP$를 IV로 나눈 것이다. $PTVPIV$를 被說明變數로 하는 定式化로 實驗해 본 理由는 첫째로는 限定된 數의 觀察値밖에 없는 狀況에서 可能한 限 많은 自由度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요, 둘째로는 IV는 VPH나 VMV와 正的인 相關關係를 가지는 데서 由來할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을 避하고자 한 것이다.

$$PTVPIV = 2224.79 - 19691.8VPH + 20440.3VMV \cdots\cdots\cdots (9)$$

$$\log PTVPIV = 8.20198 - 3.95101\log VPH + 3.82597\log VMV - 0.114712\log TDEF(\$) \cdots\cdots (10)$$

아래에서는 以上과 같은 (5)式에 대한 推定式을 根據로 하여 1980年 및 1987年에 대한 名目換率을 計算하는 例를 提示한다.

2. 名目換率變化率의 計算

(9)式 또는 (10)式에 의하여 $PTVPIV$가 計算될 수 있고 거기에 IV를 곱하면 $PTVP$가 求해지는데, $PTVP$란 다름아니라 (5)式

15) 以下 報告된 2個의 方程式 以外의 다른 推定式에 대해서도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韓國의 경우」의 〈表 3-1〉～〈表 3-6〉을 參照.

의 $f(y,w,z,\cdots)$에 該當하는 것이다. 따라서 連續되는 數個期에 대한 f를 計算하면 그것에 對應하는 $\hat{f}$도 計算할 수 있다.

名目換率의 變更을 위해서는 (7)式에서 볼 수 있듯이 $\hat{f}$ 以外에 $\hat{p}$ 및 $\hat{p}_T^*$가 必要하다.

以下에서는 이들의 값이 各各 어떻게 算出되는가를 說明한다. 〈表 1〉~〈表 3〉에는 이들에 대한 計算結果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表들의 數値에서 1970~79年에 대한 數値는 實績値이고 1980年과 1981年에 대한 것은 推定値이다. 이들이 推定値라는 事情이 그것에 根據하여 計算되는 다른 數値에 그만큼의 限界를 賦與하는 것이요, 次後 보다 나은 推定値가 마련될 경우에는 그러한 推定値로서 代置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준다 하겠다[16].

$\hat{p}_T^*$는 p_T^*를 每期 計算한 다음 그 計算에서 算出하면 되겠는데, p_T^*의 計算은 f에 對한 推定式을 深求할 때 使用한 基礎資料인 輸出額과 輸入額을 加重値로 쓴 輸出單價指數와 輸入單價指數의 複合指數로써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러한 計算結果가 〈表 1〉에 주어져 있다.

$\hat{p}_T^*$의 決定은 機械的이다. 그러나 $\hat{f}$의 計算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前述된 대로 (7)式은 交易財市場의 「아르비트라쥐」關係에 相應하는 (6)式을 交換시켜 얻어진 것이기에 一種의 定義式이라고도 볼 수 있는 一面이 있다. 그러나 (7)式의 項目 中 $\hat{f}$의 값이 經濟社會의 實物部門의 構造를 反映하는 構造方程式 (9)式 또는 (10)式에 의해 決定되는 限 이러한 $\hat{f}$를 包括하는 (7)式에 의한 名目換率의 決定은 定義式의 反復이 아니요, 將來의 事態를 豫見하는 데 使用할 수 있는 構造式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9)式 또는 (10)式이 그 推計期間인 1970~79年에 대해 成立하고 있었던 平均的 構造變動을 記述한다는 것을 認定하는 限 그러한 構造式은 1980年이나 1981年에 대한 構造變動도 說明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當面하는 問題는 (9)式이나 (10)式이 (5)式에 대한 推定式이기 때문에 推定式으로서의 여러가지 限界를 갖는다는 것이다. 推計期間이 짧았던 것이 그 하나요, 平均的 趨勢를 把握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자 하며 線型 또는 對數線型의 形態를 띄었다는 것이 그 둘이며, (9)式이나 (10)式이 얻어진 推計結果 中에서는 가장 優秀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휫팅」이 充分히 滿足스럽지는 못했다는 것이 그 셋이다.

〈表 2〉에는 (9)式과 (10)式에 의한 $\hat{f}$의 計算結果가 各各 揭示되어 있다. 豫見할 수 있었던 바대로 이들 兩式으로부터의 結果는 同

〈表 1〉 $\hat{p}_T^*$의 計算

	輸出單價指數	輸入單價指數	加重値		交易財價格指數 (p_T^*)	交易財價格의 變化率 ($\hat{p}_T^*$)
			輸出	輸入		
1970	67.4	46.2	0.66	0.34	54.6	
1971	66.5	46.0	0.60	0.40	61.2	12.1
1972	67.3	46.8	0.50	0.50	60.3	−1.5
1973	85.2	62.5	0.44	0.56	76.2	26.4
1974	107.9	97.2	0.48	0.52	97.1	27.4
1975	100.0	100.0	0.41	0.59	100.0	3.0
1976	111.7	98.1	0.36	0.64	107.2	7.2
1977	122.3	100.2	0.35	0.65	116.8	9.0
1978	135.4	105.8	0.34	0.66	135.8	16.3
1979	161.8	129.2	0.38	0.62	162.9	20.0
1980	170.5	163.8	0.38	0.62	174.4	7.1
1981	180.7	204.8	0.36	0.64	196.1	12.4

16) 여기서 쓰인 說明變數의 1980年 및 1981年에 대한 推定値를 確定하는 데 韓國開發硏究院 金春培氏의 큰 도움을 받았다.

一하지 않으며 70年度 初期에 대해서는 外見以上의 實質的인 差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式 및 (10)式으로부터의 計算結果가 同一하지 않을 때 實證作業의 進行을 위해 당장 解決하여야 할 課題는 과연 어떠한 方途를 通하여 次後段階에서 쓰일 수 있는 $\hat{f}$에 대한 推定値를 確定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9)式으로부터의 結果와 (10)式으로부터의 結果가 적어도 基準點(reference point)으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하겠음은 當然하다. 따라서 $\hat{f}$에 대한 推定値는 (9)式으로부터의 結果나 (10)式으로부터의 結果의 어떤 한 쪽을 全的으로 取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들 兩者로부터의 計算結果를 選別的으로 利用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는 데 參考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實績値인 $PTVP$에 根據하여 計算된 $\widehat{PTVP}$가 〈表 2〉의 다섯번째 列에 提示되어 있다. $PTVP$는 (9)式이나 (10)式을 推定할 때 使用하였던 基礎資料이었고 또 理論的으로 f에 相應하는 것이기에 그것의 相對的 變化率인 $\widehat{PTVP}$는 $\hat{f}$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widehat{PTVP}$값은 (9)式으로부터의 $\hat{f}$값이나 (10)式으로부터의 $\hat{f}$값 어느 것 하고도 同一하지 않다. 그것은 이들 값의 크거나 적은 어떤 한 쪽에 處하기도 하고 그들 中間에 處하기도 한다. 數値가 計算된 1971~79年의 9個年에 대해 (9)式으로부터의 計算과 (10)式으로부터의 計算이 實質的으로 方向이 다르지 않은 7個年中에서 1978年 1個年에 대해서만 $\widehat{PTVP}$의 方向이 (9)式으로부터의 計算이나 (10)式으로부터의 計算이 內包하고 있는 方向과 相異하다. 따라서 $\widehat{PTVP}$는 (9)式으로부터의 計算値와 (10)式으로부터의 計算値를 選別하여 推定値를 決定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選別行爲를 指導할 수 있는 한 根據가 될 수 있겠다.

以下 作業을 위한 $\hat{f}$의 推定値를 決定하는 過程에서는 各個年에 대하여 (9)式으로부터의 計算値나 (10)式으로부터의 計算値를 그대로

〈表 2〉 $\hat{f}$의 計算

	(9)式에 依存하는 경우		(10)式에 依存하는 경우		$\widehat{PTVP}$	$\hat{f}$의 推定値
	f	$\hat{f}$	f	$\hat{f}$		
1970	557.97		539.57			
1971	566.48	1.53	541.77	0.41	15.61	1.53
1972	523.50	−7.59	566.04	4.48	−10.48	−7.59
1973	576.74	10.17	608.41	7.49	15.39	10.17
1974	665.86	15.45	631.39	3.78	12.85	9.62
1975	636.73	−4.37	611.72	−3.12	−18.63	−4.37
1976	493.70	−22.46	492.60	−19.47	−7.79	−19.47
1977	460.98	−6.63	487.07	−1.12	−2.72	−3.88
1978	494.27	7.22	493.20	1.26	−7.23	1.26
1979	496.11	0.37	476.20	−3.45	1.61	−1.54
1980	637.41	28.48	536.41	12.64		20.56
1981	599.69	−5.92	500.51	−6.69		−6.31

使用하거나 이들의 平均을 쓰기로 한다. 즉 $\widehat{PTVP}$의 값이 兩式으로부터의 計算 結果의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widehat{PTVP}$의 값에 가까운 計算値를 $\hat{f}$의 推定値로서 取하고, $\widehat{PTVP}$값이 兩式으로부터의 計算値의 中間에 있다면 이들 두 計算値의 單純 平均을 가지고 $\hat{f}$의 推定値로 하기로 하였다. 또 推計期間 밖이며 實績値가 주어져 있지 않은 1980年 및 1981年에 대한 $\hat{f}$값은 兩式으로부터의 計算値의 平均값을 擇한다.

두말할 必要가 없이 $\hat{f}$의 推定値에 대한 具體的 數値는 많은 異見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결코 零에 가깝다고는 할 수 없는 $\hat{f}$의 값이 導出되고 있고 이것이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서 內在되어 온 實體的인 構造變動을 反映하고 있다는 點은 어떠한 見地에서도 否認될 수 없겠다.

〈表 3〉에서는 實績値인 GNP디플레이터에서 平價의 變更에 直接 基因하는 價格引上分을 差減하려는 作業이 試圖되고 있다. 前述한 대로 (7)式의 意味에 合當한 $\hat{p}$의 資料를 얻고자 하니 어떤 恣意的인 方法이 動員되어 實績値인 $\hat{p}$가 調整되어야 하겠다. 그래 問題는 調整의 方法이 과연 어떠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韓國經濟의 1970～79年 동안에 實質的인 平價切下가 단지 4번밖에 없었으며 平價切下란 價格上昇을 가져 오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되어 왔다는 事情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名目換率의 變更이 있고 나면 1年 以內에 그것의 100% 또는 75%만큼 $\hat{p}$에 反映된다고 假定하였다. 이에 따라 公式的인 $\hat{p}$에 대한 資料에서 $\hat{E}$의 100% 또는 75% 만큼을 뺀 것이 〈表 3〉에 計算되어 있다. 이러한 恣意的 計算의 結果는 公式的으로 發表되는 $\hat{p}$에 대한 資料가 韓國經濟의 獨自的인 通貨政策이나 財政政策 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豫想을 反映하는 外에도 $\hat{E}$도 包含하고 있다고 보고, $\hat{E}$의 效果를 除去한바 上述된 理論에 合致하는 $\hat{p}$를 얻으려는 努力의 產物이다.

$\hat{p}^*_T$, $\hat{p}$ 및 $\hat{f}$의 推定値에 根據한 $\hat{E}$의 計算이 〈表 4〉에 주어져 있다. 零과 相當히 다른

〈表 3〉 調整된 $\hat{p}$의 計算

	$\hat{p}$ 實績値	$\widehat{EX}$	$\widehat{EXOF}$	$\hat{p}$-$\widehat{EX}$	$\hat{p}$-$\widehat{EXOF}$	$\hat{p}$-0.75$\widehat{EX}$	$\hat{p}$-0.75$\widehat{EXOF}$	調整된 $\hat{p}$
1970								
1971	8.8	12.3	10.2	−3.5	−1.4	−0.4	1.1	0.0
1972	19.2	10.2	10.4	9.0	8.8	11.5	11.4	10.0
1973	13.2	2.2	8.1	11.0	5.1	11.5	7.1	9.0
1974	29.6	15.1	21.0	14.5	8.6	18.3	13.8	14.0
1975	24.7	3.1	0.0	21.6	24.7	22.4	24.7	22.0
1976	17.7	2.7	0.0	15.0	17.7	15.7	17.7	16.0
1977	14.0	7.7	0.0	6.3	14.0	8.2	14.0	10.0
1978	20.6	−2.9	0.0	23.5	20.6	22.8	20.6	21.0
1979	19.3	0.9	0.0	18.4	19.3	18.6	19.3	18.0
1980	30.0	42.9	28.1	−12.9	1.9	−2.2	8.9	8.0
1981	25.0	0.4	12.9	24.6	12.1	24.7	15.3	18.0

註 : 여기에서 *EXOF*는 公定換率, *EX*는 名目換率이고, *EX*가 理論的 槪念인 *E*와 가깝다고 하겠다.

$\hat{f}$의 값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計算된 $\hat{E}$는 $\hat{f}$를 論外로 하는 單純한 購買力平價說에 根據하는 名目換率의 變更率과 實體的으로 相異할 수밖에 없겠다.

〈表 4〉의 마지막 列에는 $\hat{f}$값 대신 $\widehat{PTVP}$를 取했을 때 얻어지는 $\hat{E}$가 1970~79年에 대해 算定되어 있다. $\hat{f}$값으로서 그 推定値 대신에 實績値에 對應하는 $\widehat{PTVP}$를 使用한 경우이기에 이때의 $\hat{E}$의 計算은 計量經濟모델의 實驗에서의 事後的 시뮬레이션(ex post simulation)에 相當한다 하겠다. 따라서 $\widehat{PTVP}$에 依據한 $\hat{E}$의 값은 事實上 零이라고 보아도 좋은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widehat{PTVP}$에 根據한 $\hat{E}$와 (9)式과 (10)式에 根據한 $\hat{E}$가 實質的으로 相異하다는 結果는 1970~79年 사이에 韓國經濟의 實質換率이 그 올바른 水準에 가깝기 위해서는 보다 잦은 平價의 變更이 必要했을지 모른다는 點을 알려준다. 〈表 4〉에서 提示된 두가지 $\hat{E}$의 計算은 約 5年을 한 單位로 묶어 보았을 때는 그 累績値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widehat{PTVP}$에 根據한 $\hat{E}$는 時間의 經過에 不拘하고 相對的인 變化幅이 적은 反面 이 글이 提案하는 方法에 따라 計算된 $\hat{E}$는 보다 큰 規模를 가지고 자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事象은 名目換率의 調整이 보다 積極的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았겠음을 示唆하는 바이요, 그러한 示唆는 높은 成長率을 지녔던 成長經濟에게는 매우 自然스러운 成長經濟의 한 斷面의 발로라고 하겠다.

〈表 4〉에 의해 $\hat{E}$가 計算되고 나면 다음에는 올바른 實質換率이 成立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基準年度를 찾아야 하겠다. 基準年度의 한 候補는 基礎收支에 있어 赤字幅이 가장 적고 또 石油波動에 이은 適應도 어느 程度 이루어졌으리라고 볼 수 있는 1976年이다. 또 다른 候補는 마찬가지로 石油波動에 따른 適應이 어느 程度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서 貿易收支赤字가 最少이고 經常收支上으로는 黑字를 示顯한 1977年이다. 反面 1978年은 지나친 過熱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正常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1979年은 1978年의 이러한 非正常을 이어받다가 다시 石油價格 上昇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 경우이다. 때문에 이들 兩年은 基準年度로 잡기 힘들겠다.

〈表 4〉 $\hat{E}$의 計算($\hat{E}=\hat{p}+\hat{f}-\hat{p}_T^*$)

	調整된 $\hat{p}$	$\hat{f}$	$\hat{p}_T^*$	$\hat{E}$	$\widehat{PTVP}$에 根據한 $\hat{E}$
1970					
1971	0.0	1.53	12.1	−10.6	3.5
1972	10.0	−7.59	−1.5	0.9	1.0
1973	9.0	10.17	26.4	−8.2	0.0
1974	14.0	9.62	27.4	−3.8	−0.5
1975	22.0	−4.37	3.0	14.6	−0.4
1976	16.0	−19.47	7.2	−10.7	1.0
1977	10.0	−3.88	9.0	−2.9	−1.7
1978	21.0	1.26	16.3	6.0	−2.5
1979	18.0	−1.54	20.0	−3.5	−0.4
1980	8.0	20.56	7.1	21.5	
1981	18.0	−6.31	18.0	−6.3	

〈表 5〉에는 1980年 및 1981年에 대한 名目換率의 水準이 計算되어 있다. 基準年度로는 1976年과 1977年의 2가지 경우가 選定되었으며, 이들 兩者에서 出發하여 올바른 實質換率을 가져오는 名目換率의 水準이 各各 表示되어 있다.

올바른 實質換率을 內包하는 名目換率 水準은 어떤 해를 基準年度로 했느냐에 따라 크게 相異하다. 그 形式的 理由는 基準年度로서의 1977年의 名目換率이 1976年보다 높은 데 있는데, 〈表 4〉에서는 基準年度를 1976年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올바른 實質換率을 가져오기

〈表 5〉 E의 計算

	$\hat{E}$	E	
		基準年=1976	基準年=1977
1976	−10.7	(568.4)	
1977	−2.9	507.6	(589.9)
1978	6.0	492.9	572.8
1979	−3.5	522.4	607.2
1980	21.5	504.1	585.9
1981	−6.3	612.5	711.9

위한 $\hat{E}$가 零 以下의 數値를 가져 1977年의 名目換率이 1976年의 水準보다 낮도록 强制되기 때문이다.

同時에 이러한 相異함은 $\hat{f}$에 대한 推定値의 不安定性 또는 1976年이나 1977年이 모두 올바른 實質換率이 成立하고 있는 基準年度로서의 要件을 充足하고 있지 못하다는 點도 示唆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10年 程度의 비교적 짧은 期間에 石油波動이 實質的으로 두번이나 있었고 또 國際的인 通貨制度에 대한 큰 變動도 있었다는 것을 想起하면 事後的으로나마 이러한 예민성(sensitivity)은 納得할 수 있는 바라 하겠다.

限定된 期間이 推計와 觀察의 對象이 되었기에 基準年度로서 選定될 수 있었던 경우가 두해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의 基準年度의 候補에서 出發하여 基準年度 以後의 名目換率을 計算하였을 때 그러한 計算結果는 基準年度가 어떤 해이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랐다. 즉 感應度分析은 基準年度에 대한 恣意에 選定이 지니는 恣意性의 效果를 排除할 수 있을 만큼의 安定된 數値를 基準年度以後의 期間에 대해 排出할 수 없었다. 이러한 事情은 올바른 實質換率을 保障하는 名目換率의 水準이 적어도 安定的인 基準年度가 찾아지기까지는 確定될 수 없겠음을 알려준다.

韓國經濟의 換率水準은 1970年代를 通해 올바른 實質換率을 保障하지 못했다는 點에서 均衡 밖에 있어 왔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事情은 1980年代 初에 대해서도 그대로 移越되리라고 여겨진다. 小規模經濟인 韓國經濟에 대한 外部的 與件의 變化가 1980年代 前半에 安定化되어 意味있는 基準年度가 찾아지기 以前까지는 名目換率의 變更을 通한 올바른 實質換率에의 到達이라는 積極的 要請은 쉽게 充足될 것 같지 않다. 그래 당장 올바른 實質換率을 招來하는 名目換率水準을 確定하여 그것에 즉각적으로 移行해 간다는 積極的 處身보다는 旣存의 實質換率이 올바른 實質換率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事態는 最少限 避한다는 消極的인 欲求에 充實함이 보다 賢明하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寡欲이나마 채우려 함에 있어 〈表 4〉가 提示하는 바 1980年과 1981年에 대한 $\hat{E}$의 값의 方向 및 대체적인 크기가 제대로 消化될 수 있어야 하겠다.

V. 餘　言

여기에서는 換率決定과 關聯되어 言及되는 몇가지에 대한 評價를 試圖한다.

첫째, 換率決定 내지 變更을 通貨바구니(currency basket)를 選定하여 그것에 依存해 보자는 생각이 있다[17]. 一般的 變動換率制度

17) M. Flanders and P. Helpman, "An Optimal Exchange Rate Peg in a World of General Float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79.
L. Lipschitz, "Exchange Rate Policy for a Small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tandard", IMF Staff Papers, 1979.

아래에서 各種 通貨들 사이의 換率이 바뀌게 되면 어떤 하나의 通貨의 價値도 다른 하나의 通貨로서 나타내어질 수 없고 時時로 變化하는 換率構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래 常時的으로 變化하는 換率構造의 內容을 綜合하여 算式化하고 그러한 算式에 의해 어떤 通貨의 實質價値를 表示해 보려는 欲求에서 通貨바구니가 發想되었다. 즉 通貨바구니는 國際市場에서의 價格體系의 變動에도 不拘하고 自國通貨의 交易財에 대한 實質的인 購買力을 一定하게 維持하게 하고, 또 換率變更을 非人格化시키기 위해 創案되었다.

그런데 本文에서 提示되고 있는 바와 같이 換率은 海外에서의 換率構造의 變化에 따른 交易財價格의 變化 뿐만 아니라 自國에서의 인플레이션 및 構造變動도 감안하여 變更시켜야 한다. 따라서 通貨바구니의 「메카니즘」에 사로잡혀 換率變更이라는 政策活用을 오로지 海外의 換率構造에 대한 對處로서 限定的으로 쓰게 된다면 그 成果는 洽足스럽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通貨바구니에 대한 着想이 從來 換率變更時 따라오던 政治的인 意味를 除去하고 換率變更을 어떤 特定한 政策決定者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機械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印象을 주어 換率變更을 非人格化하려고 하는 動機에서 出發하였다면 그것은 小規模經濟에서의 換率의 役割을 잘못 理解한 데서 由來되는 것이라 하겠다. 外換市場의 沈度가 옅은 小規模經濟에서는 換率決定은 市場에 全的으로 委讓되거나 어떤 機械的인 法則에 依據하기만 해도 좋은 對象이 아니요, 責任지고 이루어져야 할 政策決定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換率決定을 위해 通貨바구니, 購買力平價 및 기타 政策調整에 依據하는 機械的 算式을 마련한다고 하면, 通貨바구니나 購買力平價의 因子는 기타 政策調整의 項目에 包含되지 않을 수 없겠으며 實質的으로 기타 政策調整을 둘러싼 實質的인 內容이 明示되지 않는 한 기계적 算式이란 하등의 實質的인 意味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째, 先物換市場에 있어 各種 通貨에 대한 先物換市場을 모두 마련할 必要는 없다. 現物換과 마찬가지로 先物換에 대해서도 主要 通貨들 사이에 成立하는 換率構造란 小規模經濟에게는 外生的으로 주어진 小規模經濟는 先物換市場에서의 換率構造를 海外의 그것과 相異하게끔 維持할 수 없으니 하나의 主要通貨에 대한 先物換市場이 開設되면 足하다. 더 하여 하나의 通貨에 대한 先物換市場에서 外換當局의 介入이 있을 때 去來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理由는 當時의 先物換率에서 先物換을 供給하여 危險을 負擔하려는 側과 先物換을 需要하여 危險을 회피하려는 側이 對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는 先物換率이 變化하게끔 外換當局의 介入의 程度를 바꾸어야 하지 適當하지 못한 先物換率에서 억지로 先物換의 供給 또는 需要를 强制하려고 해서는 안된다[18].

18) 韓國銀行, 「先物換制度」, 外換硏究資料 76-5, 1976; 韓國外換銀行, 『우리나라 換率制度 變更에 대한 考察』, 調査速報 80-1.

▷ 參 考 文 獻 ◁

Alejandro, D.,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Post-1977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incet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1977.

Bacha, E., "Note on the Brazilian Experiences with Mini-Devaluation, 1968-76,"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979.

Black, S., "Exchange Policies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in a World of Floating Rat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Developing Nations*, Leipzeiger(ed.), AID, 1976.

Cline, W.,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1976.

Cooper, R., "Currency De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86, Princeton, 1976.

Frankel, J., and H. Johnson, *The Economics of Exchange Rates*, Addison-Wesley, 1978.

Holden, P., M. Holden, E. Suss, "The Determinants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9.

Nykerg, L., and S. Viotti, "Optimal Reserves and Adjustment Policies", in *Recent Issues in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E. Classen and P. Salin(ed.), North-Holland, 1976.

Taylor, L., *Macromodels for Developing Countries*, McGraw-Hill, 1979.

Yeager, L.,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eory, History and Policy*, 2nd Edition, Harper and Row, 1976.

韓國製造業의 産業別·規模別 生産性分析

金 栽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企業의 規模와 中小企業 및 大企業의 共存條件
Ⅲ. 生産性分析의 理論的 背景과 勞動生産性增加에 대한 寄與度分析：諸理論의 比較考察
Ⅳ. 實證的 檢證
Ⅴ. 要約, 結論 및 앞으로의 課題

Ⅰ. 序 論

韓國은 過去 20餘年에 걸쳐 經濟의 急激한 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특히 우리의 經濟成長은 二次産業의 成長이 밑거름이 된 輸出主導의 成長이었으며 成長過程을 通해 經濟全體의 構造 또한 急變하여 왔다. 一次産業中心의 一次産品輸出이 大宗을 이루던 50年代의 經濟에서 二次産業中心의 二次産品輸出이 大宗을 이루는 工業化의 經濟構造를 갖게 된 것이다.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그러나 이와같은 急激한 成長과 經濟의 構造高度化가 技術의 蓄積이나 生産要素의 生産性向上에는 소홀한 반면 生産要素의 量的 投入增加에 의한 成長이어서 成長의 費用이 相對的으로 높았지 않았느냐하는 反省도 없지 않다. 特히 成長의 推進力을 輸出의 增加로부터 얻고자 했으며 輸出의 增加를 위하여서는 國際競爭力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過去의 經濟政策은 한편으로는 低賃金 다른 쪽으로는 規模의 經濟效果에 焦點이 놓여지게 된 것이다. 그 結果는 中小企業의 相對的 위축과 大企業의 不均衡的 肥大를 招來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硏究의 基本目標는 韓國의 製造業에 있어서의 産業別 規模別 生産要素의 生産性을 比較分析하여 오늘날 强調되고 있는 中小企業育成政策에 必要한 基本資料를 提示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음의 2節과 3節에서는 理論的 側面을 다루었고 4節에서는 위의 理論的 考察에 바탕을 둔 實證的 檢證을 시도하였다. 먼저 2節에서는 企業의 平均規模決定要因을 說明하였으며

同時에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한 產業內에서 共存할 수 있는 條件을 說明하였다. 3節에서는 生產要素의 生產性을 測定하는 여러가지 理論을 比較考察하였으며 특히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中立的 技術進步 및 勞動의 資本裝備率增加가 갖는 寄與率을 測定하는 方法을 論議하였다. 4節에서는 以上에서 論議된 諸理論을 바탕으로 實證的 檢證을 시도하였으나 資料의 制約으로 약간의 制限的인 結論을 導出하는 것으로 滿足할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5節에서는 우리의 論議에 대한 要約과 結論을 略述하였는데 우리의 檢證結果는 一般的 期待와는 달리 中立的 技術進步가 製造業의 成長(또는 勞動生產性 增加)에 크게 寄與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硏究結果를 좀 더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課題를 列擧하였다.

Ⅱ. 企業[1]의 規模와 中小企業 및 大企業의 共存條件

企業의 規模는 어떻게 決定되며 企業의 適正規模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問題는 產業組織論에서 널리 硏究되고 있는 課題中의 하나이다. 企業의 適正規模를 說明하는 尺度의 하나가 所謂 最少効率規模(least efficient scale, 즉 長期平均費用이 最低가 되는 범위중에서 最少의 規模)로서 企業의 長期平均費用이 最少가 되는 規模를 意味한다. 그러나 어느 特定企業이 最少効率規模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企業이 直面하는 需要函數에 依存하게 될 것이다. 完全競爭下에서는 모든 企業이 長期에 있어서 最少効率規模를 갖게 되겠지마는 獨占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 Pryor(1972)는 企業의(平均)規模를 決定하는 세가지 要因을 說明하고 있다. 그 세가지 要因中의 첫째는 經濟의 環境이다(environment model). 例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느 特定企業이 自己 生產物의 主要市場을 서울과 釜山에 가지고 있을 때 이 企業은 서울과 釜山에 各各 生產工場(事業體)을 갖는 方法과 서울에 大規模單一工場을 갖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釜山까지의 輸送費가 單一大規模工場에서 오는 規模의 經濟効果보다도 더 크다면, 이 企業은 서울과 釜山에 各各 작은 規模의 工場(事業體)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市場規模가 큰 經濟에서는 多事業體 企業(multi-establishments enterprise)이 登場하는 것이 그 特徵인데 多事業體企業에 屬해 있는 事業體들은 一般的으로 그 規模가 크다. 셋째, 國際收支의 改善을 위하여 政府는 輸入代替產業을 育成하기 위한 諸般經濟政策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國際競爭力이 적은 生產物을 生產하게 되므로 最適規模보다 작은 生產單位에 投資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以上의 세가지 要因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모두가 窮極的으로는 모두 市場의 規模에 의해서 左右됨을 알 수 있다. 또 市場의 規模

1) 이 글의 全體를 통해서 우리의 分析對象은 엄격하게 말해 事業體이다. 事業體(establishment)란 어느 特定의 場所에 設立된 出產單位로서 하나 또는 數個의 作業場 또는 工場을 包含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이 單一經營(single management)에 있을때 우리는 이것을 事業體라고 稱한다. 그러나 中小事業體를 通稱 中小企業이라고 부르듯이, 特別한 說明이 없는 한 이 글에서는 企業과 事業體를 區別하지 않고 使用하기로 한다.

란 그나라(또는 지역)의 人口의 크기와 國民所得의 水準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Pryor (1972)의 觀察에 의하면 지나간 半世紀동안에 모든 國家에서 事業體의 平均規模가 크게 伸張되었음을 發見하였다.

韓國의 경우도 위의 結果와 一致한다. 우선 1968~77년 期間동안에 製造業部門의 附加價値年平均增加率은 19.6%인데 반해서 製造業의 事業體數는 위의 全期間을 通해 불과 10.8%밖에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事業體의 平均規模가 크게 伸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業員規模 5~9人의 小規模 事業體數는 같은 期間 동안에 그 絕對數가 減少한 것이 特徵的이며 事業體數의 增加倍率은 從業員規模가 클수록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以上은 Pryor(1972)의 企業規模에 關한 動態的 關察에 基礎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Singh와 Whittington(1968)은 企業規模와 利潤率에 대하여 靜態的 考察을 시도하였다. 1950年代와 1960年代의 英國의 產業을 中心으로 한 企業規模와 利潤率 및 企業의 伸張率과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먼저 企業의 最善規模(best firm size—이것은 optimum size와는 區別되는 槪念임)를 評價하는 네가지 基準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① 最大利潤率(maximum profitability)
② 利潤率의 最少分散度(smallest dispersion of profit rates)
③ 最大伸張率(maximum average growth rate)
④ 伸張率의 最少分散度(smallest dispersion of growth rate)

Singh와 Whittington의 結論에 의하면 企業의 規模가 클수록 利潤率은 떨어지는 반면에 利潤率의 分散度는 적어진다. 큰 企業에서 利潤率의 分散度가 적어지는 理由는 큰 企業일수록 여러 方面의 經濟活動에 同時에 參與하기 때문에 어느 特定部門에서 생겨난 損失은 다른 곳에서 發生한 利潤으로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利潤의 確實性을 選好하는 企業家에게는 利潤率이 다소 낮더라도 큰 規模에 더 큰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큰 企業일수록 伸張率이 큰 반면에 작은 企業에서는 伸張率의 分散度가 낮음을 發見하게 되었다. 以上에서 우리는 企業의 規模가 企業家의 効用函數에 크게 左右됨을 알 수 있으며 危險度(risk)와 利潤率이 効用函數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 規模別(全製造業) 事業體數

(단위 : 個, %)

	計	5~9人	10~19人	20~49人	50~99人	100~199人	200~299	300~499	500人 이상
1968年	24,109	12,751	6,026	3,237	1,025	516	365		189
	(100)	(52.9)	(25.0)	(13.4)	(4.3)	(2.1)	(1.5)		(0.8)
1972年	23,729	12,198	5,557	3,176	1,210	755	535		298
	(100)	(51.4)	(23.4)	(13.4)	(5.1)	(3.2)	(2.3)		(1.3)
1977年	26,726	9,731	5,903	5,210	2,415	1,720	662	498	587
	(100)	(36.4)	(22.1)	(19.5)	(9.0)	(6.4)	(2.5)	(1.9)	(2.2)

資料 : 經濟企劃院, 『鑛工業 統計調査 報告書』, 各年度.

이제 한 産業內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어떻게 하여 共存할 수 있는지 그 共存條件을 經濟的 側面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는 Pryor(1972)의 歷史的 考察보다는 Singh와 Whittington(1968)의 利潤率(rate of return on capital)에 根據를 둔 分析을 통해서 共存의 條件을 誘導하고자 한다.

만약 모든 市場(生產物 및 生產要素市場)이 完全競爭的이고 技術 및 管理能力(production technology and managerial ability)을 包含한 모든 生產要素가 同質的(homogeneous)이며 生產要素間의 代替가 완전히 自由롭다면(perfect factor mobility) 모든 生產要素는 同一한 報酬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同一한 生產物을 生產하는 生產單位들은 同一한 規模를 갖추게 될 것이다. 即 Pareto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生產技術이나 管理能力은 같은 產業內에서도 企業마다 다른 것이 現實이며 生產要素間의 代替는 그렇게 自由롭지 못하다. 따라서 同一한 財貨를 生產하는 같은 產業內에서라도 生產單位의 規模는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하여 같은 產業內에 効率性이 서로 다른 企業들이 共存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Singh와 Whittington (1968)의 利潤率에 依한 假說이 合理的이라고 假定하기로 한다. 即 中小企業에서의 利潤率이 大企業에서의 利潤率보다 더 크면 中小企業들은 그 產業內에서 大企業과 競爭的으로 共存할 수 있다고 假定하는 것이다[2].

이제 利潤率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자 한다.

$$r_{ij}=\frac{Q_{ij}-w_{ij}L_{ij}}{K_{ij}}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

r : 利潤率

Q : 附加價値

w : 平均賃金

L : 投入勞動量

K : 資本量

$i=1\cdots I$ 企業의 規模

$j=1\cdots J$ 產業分類

위의 式(1)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r_{ij}=\frac{q_{ij}}{k_{ij}}-w_{ij}\frac{1}{k_{ij}}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

$$q_{ij}=\frac{Q_{ij}}{L_{ij}},\quad k_{ij}=\frac{K_{ij}}{L_{ij}}$$

우리의 假定에 의하면, 中小企業이 한 產業內에서 大企業과 共存할 수 있는 必要·充分條件은, 그 產業內에서의 모든 規模의 企業들이 利潤率의 極大를 추구하고 있을 때 中小企業에서의 利潤率이 大企業의 利潤率보다 커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利潤率의 極大條件은 (必要條件),

$$\frac{\partial r_{ij}}{\partial k_{ij}}=0=\frac{1}{k_{ij}}\left(\frac{\partial q_{ij}}{\partial k_{ij}}-\frac{q_{ij}-w_{ij}}{k_{ij}}\right)$$

따라서

$$\frac{\partial q_{ij}}{\partial k_{ij}}=\frac{q_{ij}}{k_{ij}}-w_{ij}\frac{1}{k_{ij}}\ (=r_{ij})\cdots\cdots\cdots(3)$$

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의 限界生產物이 資本單位當 利廻額과 같아야 한다(이것은 企業의 利潤極大 條件과 一致하는 것임).

둘째(充分條件), 위의 必要條件이 이루어졌을 때, 中小企業의 j 產業에서의 利潤率(r_{Sj})이 大企業의 利潤率(r_{Lj})보다 커야 한다($r_{Sj}>r_{Lj}$). 利潤率은 또다시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으

2) 中小企業에서는 비록 利潤率의 分散度가 大企業에 比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 利潤率의 絶對水準이 大企業의 그것보다 높으면 共存의 條件이 成立한다고 假定하기로 한다.

므로,

$$r_{ij}=\frac{Q_{ij}}{K_{ij}}-w_{ij}\frac{L_{ij}}{K_{ij}}=\frac{Q_{ij}}{K_{ij}}\left(1-w_{ij}\frac{L_{ij}}{Q_{ij}}\right)$$

$$=\alpha_{ij}\frac{Q_{ij}}{K_{ij}}$$

$\alpha_{ij}=1-\beta_{ij}=1-w_{ij}\frac{L_{ij}}{Q_{ij}}$: 資本의 要素所得 配分率

위의 充分條件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alpha_{Sj}\frac{Q_{Sj}}{K_{Sj}}>\alpha_{Lj}\frac{Q_{Lj}}{K_{Lj}}\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4)$$

즉,

$$\frac{\alpha_{Sj}}{\alpha_{Lj}}>\left(\frac{Q_{Lj}}{K_{Lj}}\right)\Big/\left(\frac{Q_{Sj}}{K_{Sj}}\right)\cdots\cdots\cdots\cdots\cdots(4)'$$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에서의 資本에 대한 要素所得配分率과 大企業에서의 資本에 대한 要素所得配分率과의 比率이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資本의 平均生產性(average productivity 또는 partial productivity of capital) 比率보다 더 커야 됨을 意味한다[3].

그러나 만약 外部經濟의 効果(externalities)가 매우 커서 大企業에서의 資本의 生產性이 中小企業에서의 그것보다 더 크게 되면 式(4)의 條件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그 產業은 大企業을 中心으로 편성되게 되고 그 產業內에서의 中小企業의 經濟活動은 침체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式 (4)의 條件이 成立되지 않는 또하나의 例는, 經濟的 諸般條件을 갖추지 못한 小規模企業이 一時的으로 存在하는 경우이다. 이는 小規模의 企業을 시작하는데는 小量의 資本으로도 可能하므로(easy entry) 위의 條件이 充足되지 않은 상태에서 企業活動을 시작하는 것인데, 長期에 있어 위의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Ⅲ. 生產性分析의 理論的 背景과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寄與度分析 : 諸理論의 比較考察[4]

生產要素의 生產性을 測定하는 데는 앞에서 說明한 部分生產性(partial productivity 또는 average productivity)이 있고 다른 하나는 總生產性(total productivity)이 있다. 總生產性은 實質總產出額의 增加分에서 生產要素의 投入增加로 因해서 增加된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를 意味한다. 이를 指數로 表示하면

$$A=\frac{Q}{wL+rK}$$

이며, w와 r은 勞動投入物과 資本投入物에 대한 加重値를 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總生產性은 生產技術의 進步를 意味하는 것이다.

總生產性에 관한 槪念은 總生產物의 增加가 보편적 方法으로 測定된(conventionally measured) 勞動과 資本의 投入量만으로는 說明되지 않는 殘餘分(residual)이 생겨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總生產性이란 生產要素의 投入量을 測定할때 생겨나는 誤差(例를 들어서 embodied technical progress

3) 式(4)로 표시된 우리의 假說(hypothesis)은 第4節에서 檢證하게 될 것이다.

4) 總生產性에 關한 包括的이고 體系的인 文獻의 考察은 Nadiri(1970), Kennedy and Thirlwall(1972), M. Brown(1968), Lave(1966), Salter(1969) 등에도 자세히 說明되어 있음.

에 依한 投入要素의 質的 向上에 수반되는 生産性의 增加分) 또는 資本과 勞動以外의 生産要素(例를 들어, 敎育이나 改善된 管理能力 등)가 적절하게 배려되지 않은 데서 오는 差異가 投入要素의 總生産性으로 測定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總生産性을 測定하는 데는 흔히 두가지 方法이 論議되고 있다. 첫째는 Abramobiz(1956)와 Kendrick(1961)에 依한 算術指數(arithmetic index)이고 다른 하나는 Solow(1957)에 依한 幾何指數(geometric index 또는 Solow指數)이다.

1. 算術指數(arithmetic index)

算術指數는 어느 特定産業에서의 總生産物의 價値(附加價値; Q)가 거기에 投入된 生産要素인 勞動과 資本에 대한 報酬의 合과 같다는데서부터 出發한다. 即 어느 基準年度의 總生産物의 價値는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Q_0 = w_0 L_0 + r_0 K_0$$

여기서 w_0와 r_0는 各各 基準年度에 있어서의 平均賃金과 利子率이다. 이때 어느 特定年度의 總生産物을 基準年度의 勞動 및 資本의 價格(w_0 및 r_0)으로 分配하면 殘餘分이 남게 될 것인데 이것을 生産性의 增加로 보는 것이다. 即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生産函數를 具體的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Q_1 = A(w_0 L_1 + r_0 K_1)$$

따라서 總生産性 指數는

$$A = \frac{Q_1}{w_0 L_1 + r_0 K_1} = \frac{Q_1/Q_0}{\frac{w_0 L_0}{Q_0}\frac{L_1}{L_0} + \frac{r_0 K_0}{Q_0}\frac{K_1}{K_0}}$$

$$= \frac{Q_1/Q_0}{\beta_0 \frac{L_1}{L_0} + \alpha_0 \frac{K_1}{K_0}}$$

가 된다. β와 α는 各各 勞動과 資本에 대한 要素所得 配分率을 意味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算術指數를 使用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問題가 提起된다. 첫째 여기서 假定하고 있는 生産函數는 各 生産要素의 限界生産物(部分生産性)이 生産要素의 結合比率에는 關係없이 오직 技術進步「파라메터」(A)의 變化에만 依存한다고 보는 것이며, 둘째는 限界代替率(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left(\frac{\partial Q}{\partial L}\right) \Big/ \left(\frac{\partial Q}{\partial K}\right) = Aw_0/Ar_0$)은 항상 一定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技術進步「파라메터」가 一定하다면 投入生産要素의限界生産性은 生産要素의 投入比率(또는 配合比率)에는 關係없이 一定하다고 假定하는 것으로 이 點이 算術指數가 갖는 重要한 弱點이다. 限界代替率이 一定하다는 것은 모든 生産要素가 항상 同率로 變化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賃金과 利子率은 오직 技術의 進步에 依하여서만 變化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非現實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

2. 幾何指數(geometric index)

이에 비해서 Solow의 幾何指數는 위에서 指摘한 算術指數의 弱點을 극복한 形態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olow 指數에서는 投入生産要素의 限界生産物이 生産要素의 配分比率에 따라 變化가 可能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Solow가 다음과 같은 一般的 形態의 生産

5) 이에 대한 더 자세한 說明은 Yotopoulos and Nugent (1976, CH.9)와 Lave(1966, CH.2) 參照.

函數를 假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Q=A(t)F(K,L)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5)$$

Solow指數를 誘導하기 앞서, 위의 生產函數가 暗默的으로 가지고 있는 假定들을 열거하면, 첫째, 同次의 生產函數(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를 假定하고 있고, 둘째는 生產物 및 生產要素市場이 競爭的이라고 보는 것이며 셋째는 위의 式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cks의 體化 안된(disembodied) 技術進步를 假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式(5)를 成長率을 利用하여 다시 表示하면

$$\frac{\dot{Q}}{Q}=\frac{\dot{A}}{A}+\frac{\dot{F}}{F}=\frac{\dot{A}}{A}$$
$$+A\frac{\partial F}{\partial L}\frac{\dot{K}}{Q}+A\frac{\partial F}{\partial L}\frac{\dot{L}}{Q} \cdots\cdots (6)$$

($\dot{Q}, \dot{A}, \dot{F}, \dot{K}, \dot{L}$은 各各의 變數를 時間에 대하여 미분한 것임)

이 된다. 이제 위에서 열거한 諸假定中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假定(同次性과 競爭的 市場形態)에 依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關係를 갖게 된다.

$$\frac{\partial Q}{\partial K}=A\frac{\partial F}{\partial K}=r \text{ (利子率 또는 資本의 利子廻率)}$$

$$\frac{\partial Q}{\partial L}=A\frac{\partial F}{\partial L}=w \text{ (賃金率)}$$

$$\frac{rK}{Q}=\alpha \text{ (資本에 대한 要素所得配分率)}$$

$$\frac{wL}{Q}=\beta \text{ (勞動에 대한 要素所得配分率)}$$

따라서 式(6)은 다음과 같이 다시 表示할 수 있다.

$$\frac{\dot{A}}{A}=\frac{\dot{Q}}{Q}-\alpha\frac{\dot{K}}{K}-\beta\frac{\dot{L}}{L} \cdots\cdots\cdots\cdots (7)$$

만약 우리가 두 時點에서의 總生產性 增加를 測定하고자 한다면 式(7)은 다음과 같이 不連續函數(discrete function)로 表示할 수 있다.

$$\frac{\Delta A}{A}=\frac{\Delta Q}{Q}-\alpha\frac{\Delta K}{K}-\beta\frac{\Delta L}{L} \cdots\cdots (8)$$

이제 우리가 式(8)을 利用하여 生產要素의 總生產性의 增加를 測定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技術的 問題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첫째는 加重値 α와 β를 使用할 때 基準年度分(base year)을 使用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特定年度分(current year)을 使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α와 β는 時間的으로 또는 產業에 따라서 一定치 않으며, 또 같은 產業內에서라도 企業의 規模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둘째, 產出量과 資本投入量의 增加率을 測定할 때에도 基準年度値(Q_0)를 使用하는 경우와 特定年度値(Q_1)를 使用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實證的 檢證을 行할 때에는 위의 두가지 點을 留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6].

式(8)이 意味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即 總生產性의 增加率(또는 技術의 進步率)은 總產出量의 增加率中에서 投入要素의 增加率로 說明되지 않는 殘餘部分을 總稱하는 것이다.

이제 위의 Solow指數를 좀더 集約된 形態로 다시 表示해 보기로 한다. 우선 式(5)의 生產函數를 다음과 같이 다시 表示하기로 한다.

$$q=A(t)g(k),\ q=\frac{Q}{L},\ k=\frac{K}{L} \cdots\cdots (9)$$

6) 곧이어 설명되겠지만 이 點은 Massel(1962)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指摘된 바 있다.

따라서

$$\frac{\dot{q}}{q}=\frac{\dot{A}}{A}+\alpha\frac{\dot{k}}{k}\text{ [7]}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0)$$

임을 알게 된다.

3. 勞動生產性 增加에 대한 寄與度

以上에서 說明한 Solow 指數는 勞動生產性의 增加分中에서 어느만큼이 純粹技術進步(또는 shift of the production function)에 依한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勞動의 資本裝備率增加($\frac{\dot{k}}{k}$ 또는 capital deepening)에 依한 것인지를 分析할 수 있게 한다. 이제 式(9)의 生產函數를 基準年度(q_0)와 特定年度(q_1)에 따라 각각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q_0&=A_0g(k_0)\\ q_1&=A_1g(k_1)\end{aligned}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1)$$

따라서

$$\begin{aligned}\Delta q=q_1-q_0&=A_1g(k_1)-A_0g(k_0)\\ &=(A_1-A_0)g(k_1)+A_0[g(k_1)-g(k_0)]\end{aligned}$$

즉

$$\Delta q=\Delta Ag({}_1k)+A_0\Delta g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2)$$

가 된다.

式(12)가 意味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일 技術의 進步없이 勞動의 平均生產性이 오직 資本장비율의 增加에만 依存한다면 $t=T$에서의 勞動의 平均生產性$g(k_1)$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g(k_1)=q_0+A_0\Delta g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3)$$

따라서 그 나머지인

$$q_1-g(k_1)=\Delta Ag(k_1)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4)$$

이 技術의 進步에 의해서 얻어지는 勞動生產性의 向上이다. 이를 比率로 表示하면 式(12)는

$$1=\frac{\Delta Ag(k_1)}{\Delta q}+\frac{A_0\Delta g}{\Delta q}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15)$$

이 된다. 따라서 오른편의 첫번째 項은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技術進步가 갖는 寄與度이고 두번째 項은 資本장비율의 增加가 갖는 寄與度이다.

4. Massel의 修正

Massel(1962)은 위의 Solow方式에 있어서 두가지의 非一貫性(inconsistency)을 指摘하였다. 첫째는(式(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成長率을 計算할 때 基準年度의 勞動生產性을 基準(initial value)으로 하느냐 또는 特定年度(end-of-period value)를 基準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結果를 얻게되고, 둘째는 比較時點의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基準年度를 t=0로 하고 特定年度(end-of-period)를 $t=T$라고 한다. 이제 特定年度 ($t=T$)의 勞動生產性을 基準으로 한 경우에 技術進步가 갖는 寄與率 Π는 式(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Pi=\frac{\Delta Ag(k_1)}{\Delta g}=\frac{[A(T)-A(0)]\frac{q(T)}{A(T)}}{q(T)-q(0)}$$

$$=\frac{\frac{A(T)-A(0)}{A(T)}}{\frac{q(T)-q(0)}{q(T)}}=\Pi(T)\cdots\cdots\cdots(16)$$

---

7) $\frac{q}{q}=\frac{\dot{A}}{A}+\frac{\dot{g}}{g}$이고, $g=\frac{\partial g}{\partial k}\ \frac{\partial k}{\partial t}=\frac{\partial g}{\partial k}\cdot k\cdot\frac{k}{k}$이며 $\frac{\partial g}{\partial k}\cdot k=r\cdot k$는 1人當 資本量에 대한 利廻額이고 $\frac{k}{k}$는 1人當 資本量의 增加率을 意味한다. 따라서 $\frac{\dot{g}}{g}=\frac{rk}{g}\cdot\frac{\dot{k}}{k}=\alpha\frac{\dot{k}}{k}$ $\left(g=\frac{q}{A}\right)$을 얻게 된다.

式(16)은 Π가 T의 函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lim_{T\to 0}\Pi=\left(\frac{\dot{A}}{A}\right)\Big/\left(\frac{\dot{q}}{q}\righ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7)$$

$$\lim_{T\to\infty}\Pi=1$$

이며 이는

$$\dot{\Pi}(T)>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8)$$

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式(18)은 다른 事情이 同一할 때 特定年度의 勞動生產性$q(T)$를 基準으로 하여 計算된 技術進步의 寄與率은 比較時點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基準年度의 勞動生產性을 基準으로 하여 計算된 技術進步가 갖는 寄與率(σ)을 보면,

$$\sigma=\frac{\dfrac{A(T)-A(0)}{A(0)}}{\dfrac{q(T)-q(0)}{q(0)}}=\sigma(T) \quad \cdots\cdots(19)$$

여서 σ가 역시 T의 函數임을 알 수 있고 式(11)에서

$$A_0=\frac{q_0}{g(k_0)}=\frac{q(0)}{g(0)}$$

$$A_1=\frac{q_1}{g(k_1)}=\frac{q(T)}{g(T)}$$

이므로 이를 式(19)에 넣고 다시 쓰면

$$\sigma=\frac{\dfrac{g(0)}{g(T)}-\dfrac{q(0)}{q(T)}}{1-\dfrac{q(0)}{q(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0)$$

이 된다. 따라서

$$\lim_{T\to 0}\sigma=\frac{\dfrac{\dot{A}}{A}}{\dfrac{\dot{q}}{q}} \text{ (式(19)에서)} \quad \cdots\cdots\cdots(21)$$

$$\lim_{T=\infty}\sigma=0 \text{ (式(20)에서)}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22)$$

임을 의미하므로

$$\sigma(T)<0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3)$$

이 된다. 다시 말해서 基準年度의 勞動生產性을 基準으로 하여 技術進步가 갖는 寄與率을 計算하는 경우에는 比較時點의 간격이 커질수록 그 값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느 年度의 勞動生產性을 基準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比較時點의 간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結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Π와 σ가 모두 T(比較時點의 간격)의 函數이기 때문에 發生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Massel은 이와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즉

$$q(t)=q(0)e^{\eta t}$$
$$A(t)=A(0)e^{\lambda 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4)$$

로 하면 式(16)에서

$$\theta=\frac{\Delta Ag(k_1)}{\Delta q}\simeq\frac{dA\dfrac{q(t)}{A(t)}\cdot\dfrac{1}{q(t)}}{\dfrac{dq}{q(t)}}$$

$$=\frac{\dfrac{\dot{A}}{A}}{\dfrac{\dot{q}}{q}}=\frac{\lambda}{\eta}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5)$$

(θ : 技術進步의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寄與率)

가 되어 比較時點의 간격(T)에 關係없이 一定하고 一貫性있는 값을 얻게 된다.

5. Johansen 方式

勞動生產性의 增加에 대한 寄與度를 分析하

는 데는 Johansen(1961)의 方式이 있다. Solow 指數를 求하는 데에는 資本스톡에 關한 資料가 必須不可缺인데 資本스톡에 관한 資料는 求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求한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그 신빙성에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스톡에 關한 資料를 使用하지 않고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寄與度를 分析하는 方法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資本스톡에 관한 資料를 使用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좀더 制限的인 假定(restrietive assumption) 을 設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制限的인 假定이란 첫째, 一次同次의 Cobb-Douglas生產函數를 假定하는 것이고[8] 둘째는 生產要素의 相對價格이 全產業에 걸쳐 同一하거나 아니면 같은 比率로 變化한다는 것이며[9] 要素所得配分率이 比較時點期間동안에 一定하다는 것이다.

우선 t年에 있어서의 i·產業의 生產函數는

$$Q_{it}=A_{it}K_{it}^{\alpha i}L_{it}^{\beta i},\quad \alpha_i+\beta_i=1 \cdots\cdots\cdots\cdots (26)$$

또는

$$q_{it}=\frac{Q_{it}}{L_{it}}=A_{it}\left(\frac{K_{it}}{L_i}\right)^{\alpha i} \cdots\cdots\cdots\cdots\cdots (27)$$

이다.

이제 두時點 間의 勞動生產性을 比較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比率로 表示하면,

$$\frac{q_{i1}}{q_{i0}}=\frac{A_{i1}}{A_{i0}}\left(\frac{\frac{K_{i1}}{L_{i1}}}{\frac{K_{i0}}{L_{t0}}}\right)^{\alpha i}\ ^{10)} \cdots\cdots\cdots\cdots\cdots (28)$$

이 된다. 따라서 왼쪽項은 勞動生產性의 增加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첫번째 項은 生產函數의 中立的移動(neutral shift of production function) 또는 總生產性의 變化를, 두번째 項은 勞動의 資本裝備率增加(資本의 深化)를 各各 意味하는 것이다.

이제 生產者가 주어진 要素價格(賃金 w_i 및 利子率 r_i)下에서 어떤 주어진 量을 生產하기 위한 費用最少化條件을 求하면

$$\frac{w_iL_i}{\beta_i}=\frac{r_iK_i}{\alpha_i}\ ^{11)}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9)$$

α와 β는 一定하다고 假定하고 두 時點을 比較하면

$$\frac{w_{i1}L_{i1}}{w_{i0}L_{i0}}=\frac{r_{i1}K_{i1}}{r_{i0}K_{i0}}$$

가 되고, 마지막으로

$$w_i=\frac{\left(\frac{K_{i1}}{L_{i1}}\right)}{\left(\frac{K_{i0}}{L_{i0}}\right)}=\frac{\left(\frac{w_{i1}}{w_{i0}}\right)}{\left(\frac{r_{i1}}{r_{i0}}\right)} \cdots\cdots\cdots\cdots (30)$$

이다.

즉 w_i는 利子率增加에 대한 相對的 賃金增加率을 表示하는 것이다.

따라서 式(30)을 式(28)에 넣고 統計的 方法

---

8) 이것은 Solow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임.

9) 두번째 假定이 成立되기 위하여서는 賃金과 利子率이 全產業을 通해서 一定한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Johanson은 이를 뒷받침하는 實證的 증거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10) 만일 우리가 一年을 基準으로 한 變化率(annual rate)을 使用하면 式(28)은 Solow의 方法과 같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binomial expansion을 利用하면 $\frac{A_1}{A_0}=\frac{q_1}{q_0}\left(\frac{k_0}{k_1}\right)^{\alpha}=\frac{q_1}{q_0}\left(1-\frac{\Delta k}{k_1}\right)^{\alpha}=\frac{\Delta q}{q_0}+1-\alpha\frac{\Delta k}{k_1}-\alpha\frac{\Delta k}{k_1}\frac{\Delta q}{q_0}$ ……가 된다.

만일 $\frac{\Delta k}{k_1}=\frac{\Delta k}{k_0}$, 그리고 $\alpha\frac{\Delta k}{k_1}\frac{\Delta q}{q_0}$ 이하의 값을 무시한다면 윗식은 Solow의 指數와 一致하게 된다.

11) $G=w_iL_i+r_iK_i+\lambda(Q_0-A_iK_i^{\alpha i}L_i^{\beta i})$

$$\frac{\partial G}{\partial L_i}=w_i-\lambda\beta_iA_iK_i^{\alpha i}L_i^{\beta i-1}=0$$

$$\frac{\partial G}{\partial K_i}=r_i-\lambda\alpha_iA_iK_j^{\alpha i-1}L_i^{\beta i}=0$$

$$\frac{\partial G}{\partial \lambda}=Q_0-A_iK_i^{\alpha i}L_i^{\beta i}=0$$

따라서 $\lambda=\frac{w_i}{\beta_iA_iK_i^{\alpha i}L_i^{\beta i-1}}=\frac{r_i}{\alpha_iA_iK_i^{\alpha i-1}L_i^{\beta i}}$

분모와 분자에 L 및 K를 곱하여 주면

$\lambda=\frac{w_iL_i}{\beta_iA_iK_i^{\alpha i}L_i^{\beta i}}=\frac{r_iK_i}{\alpha_iA_iK_i^{\alpha i}L_i^{\beta i}}$ 또는 $\frac{w_iL_i}{\beta_i}=\frac{r_iK_i}{\alpha_i}$

에 의한 추계를 위하여 誤差項(disturbance term; ε)을 첨가하면[12)]

$$\frac{q_{i1}}{q_{i0}}=\frac{A_{i1}}{A_{i0}}w_i^{\alpha_i}\varepsilon_i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1)$$

가 된다. 이제 w_i는 全産業을 通해 一定하다고 보고 위 식을 代數를 利用하여 다시 쓰면

$$ln\left(\frac{q_{i1}}{q_{i0}}\right)=ln\left(\frac{A_{i1}}{A_{i0}}\right)+(lnw)\alpha_i+\varepsilon_i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2)$$

가 되므로 「크로스·섹숀」資料를 利用하여 계수들을 推計할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項은 中立的 技術進步가 勞動生産性增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두번째 項은 資本의 深化가 갖는 영향을 보여주며 그 殘餘分은 그 外의 要素들이 갖는 効果이다.

以上의 Johansen方法을 Massel이 提示한 方式을 利用하여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寄與度를 分析할 수 있다. 式(31)에서

$$q_1=q_0e^{bt}$$

$$w_1=w_0e^{ct}$$ [13)]

라고 하면 ($A_0=1$이라고 한다).

$$A(t)=e^{(b-\alpha c)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3)$$

가 된다. 따라서 技術進步의 勞動生産性增加에 대한 寄與率은(式(25)에서)

$$\theta=\frac{b-\alpha c}{b}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4)$$

가 된다.

Ⅳ. 實證的 檢證

1. 資料의 利用 및 利用上의 問題點

우리나라는 比較的 統計資料가 잘 정비된 國家中의 하나이지만 資本스톡에 關한 資料는 아직 未備된 狀態에 있다. 특히 規模別 資本스톡을 求得하기는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좀더 正確한 資料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1977年에 實施된 國富統計調査 Tape를 利用하였으며 오직 1977年에 限해서만 資本과 勞動의 比率 및 資本의 生産性(附加價値와 資本의 比率)을 求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使用한 資本스톡이란 1977年 國富調査에 나타난 資産——國民經濟內에 所在하는 再生産이 可能한 有形固定資産(家計資産包含), 在庫資産, 對外純資産——중에서 政府, 法人 및 個人企業의 有形固定資産(土地, 建設假計定, 大動植物은 제외)의 合計이다[14)]. 또 各 規模別로 使用資本量을 集計할 때에는 所有資産의 自己使用分과 賃借資産합의 純資産額을 總使用資本量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建物을 除外한 경우와, 建物을 포함한 경우를 區分하여 比較하였다. 資本스톡에 關한 資料가 한해에 限해서만 集計가 可能하므로 Solow指數에 의한 總生産性分析은 不可能하며, 따라서 우리는 Johansen의 方式을 利用하였다.

附加價値와 勞動投入量에 關한 資料는 鑛工

12) 이것은 本來의 Johansen과 약간의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Johanen은 $\frac{A_{i1}}{A_{i0}}$를 誤差項으로 취급하였으나, 여기서는 순수 體化 안된 (disembodied) 技術變化와 資本의 深化 以外의 要素 即 敎育이나 管理能力의 改善에 의한 勞動生産性 增加가 誤差項에 包含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13) 利子率(r)이 比較時點 間에 一定하다고 하면 w의 增加率은 平均賃金의 增加率과 같게 된다.

14) 鑛工業 統計調査報告書(經濟企劃院)에도 資本에 대한 資料가 있지만 이는 企業의 帳簿價格에 依存한 것이어서 統計資料로 使用하기에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業統計調査報告書를 利用하였다. 그러므로 資本과 勞動의 比率이라든지 資本의 生産性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統計의 源泉이 서로 다른 두가지 資料를 使用한 셈이다. 따라서 使用된 資料 間의 一貫性있는 連關性에 있어서는 약간의 問題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各 變數(資本과 勞動의 比率 또는 生産物과 資本의 比率등)의 絶對値보다는 相對的分布가 주는 結果가 우리에게는 더 큰 意味를 갖는다. 또한 要素의 所得配分率을 計算할 때에도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를 利用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附加價値에는 勞動과 資本에 直接分配되지 않는 間接稅, 減價償却額 및 其他 間接費 등이 包含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使用할 경우 勞動所得配分率(β)이 事實보다 낮게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β를 먼저 推計한 후 α(資本에 대한 要素所得配分率)는 $1-\beta$로 推計하였음〕 따라서, 우리는 1968年부터 1977年까지의 年年의 賃金(總給與額) 및 附加價値의 變化를 利用하여 規模別 勞動의 要素所得配分率을 추계하였다[15].

2. 産業의 分類

實證的 檢證에 있어서 우리는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 細分類(3 digit industry)를 基本으로 하였다. 細分類에 의한 28個 産業을 다시 4個産業群으로 再分類하였는데 그 4個의 群과 分類 基準은 다음과 같다.

먼저 産業再分類에 使用된 基準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S－中小企業, j－産業, Q－附加價値, L－勞動投入量이며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區分은 中小企業基本法이 定한 300人 基準으로 하였음)

$$\mathrm{I}_Q=\left\{\frac{Q_{Sj}}{Q_j}\geqslant 50\%\right\} \qquad \mathrm{I}_L=\left\{\frac{L_{Sj}}{L_j}\geqslant 50\%\right\}$$

$$\mathrm{II}_Q=\left\{50\%>\frac{Q_{Sj}}{Q_j}\geqslant 30\%\right\}$$

$$\mathrm{II}_L=\left\{50\%>\frac{L_{Sj}}{L_j}\geqslant 30\%\right\}$$

$$\mathrm{III}_Q=\left\{\frac{Q_{Sj}}{Q_j}<30\%\right\} \qquad \mathrm{III}_L=\left\{\frac{L_{Sj}}{L_j}<30\%\right\}$$

다시 말해서 I_Q는 어느 特定産業(例를 들어 j－産業)에서 中小企業의 附加價値合計가 當該産業 附加價値合計의 以上을 占하는 경우이며, I_L은 中小企業에서의 雇傭合計가 當該産業雇傭合計의 50%以上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II, III도 같은 方法으로 定義되었음).

위와 같은 分類基準에 따라 28個의 細分類別 産業을 다음과 같이 四分하였다.

---

15) 勞動의 要素所得配分率을 推計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便法이 使用되었다. 즉, $\beta_t=\frac{1}{T}\sum_{t=1}^{t}\left(\frac{w_{t+1}-w_t}{Q_{t+1}-Q_t}\right)$ 要素所得의 配分率은 生産要素의 配合比率에 依存하고, 또 生産要素의 配合比率은 企業의 規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産業內에서라도 要素所得配分率은 規模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使用한 便法의 論理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subscript ij는 생략하기로 함).
$Q_{t+1}=Q^*_{t+1}+E_{t+1}$, $E_{t+1}=(t+1)$年의 間接稅, 減價償却額 및 其他間接費의 合計
따라서
$\beta=\frac{1}{T}\sum_t\frac{(w_{t+1}-w_t)}{(Q^*_{t+1}-Q^*_t)+(E_{t+1}-E_t)}$이 되어 E_{t+1}과 E_t가 어느 정도 相殺되도록 한 것이다. 만일 $E_{t+1}-E_t=0$이라고 가정하고, $\beta'=\frac{1}{T}\sum_t\frac{w_{t+1}-w_t}{Q^*_{t+1}-Q^*_t}=\frac{1}{T}\sum_t\beta'_t$ 라고 하자. 만약 β의 事實値(true value of β), $\beta_*'\left(=\frac{w_t}{Q^*_t}\right)$가 一定하다면 $\beta^*_t=\beta^1_t$이 될 것이다. (β^*_t가 t의 변화와 더불어 변한다고 하더라도 $\beta^*\left(=\frac{1}{T}\sum_t\beta^*_t\right)\simeq\beta'$이 될 것이다.) 그러나, $E_{t+1}-E_t\geqq 0$이면 β는 β^*보다 낮게 測定될 것이다. 그러므로 $\alpha(=1-\beta)$는 事實値보다 약간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α값을 利用하여 測定된 技術進步率(式(10)參照)은 「最少의 技術進步率」(minimum value of the rate of technical progrees)이 될 것이다.

〈表 2〉 産業의 分類

A. 中小企業 競爭産業	$\frac{(AP_L)_S}{(AP_L)_L}$(%)
AⅠ. 固有中小企業中心産業	
323 가죽毛皮製造業(신발, 衣服除外)	67.89
332 家具 및 裝置物製造業(金屬家具除外)	67.33
354 其他石油 및 石炭製品製造業	80.34
369 其他非金屬 鑛物製品製造業	100.00
381 組立金屬製品製造業(機械除外)	88.36
390 其他製造業	91.46
*311 食料品 製造業	75.19
*356 프라스틱製品製造業	75.11
*361 陶器瓷器土器製造業	67.46
AⅡ. 專門的 中小企業産業	
322 衣服製造業(신발除外)	74.89
324 신발製造業(프라스틱신발除外)	72.34
331 나무製品製造業(家具除外)	96.57
355 고무製品製造業	97.88
385 專門科學 光學製造業	88.54
B. 中小企業 脆弱産業	**$\frac{(AP_L)_S}{(AP_L)_L}$(%)**
BⅠ. 輕工業關聯産業	
313 飮料品 製造業	32.61
321 纖維 製造業	50.43
341 종이 및 종이製品 製造業	42.70
342 印刷出版 및 關聯産業	51.97
351 産業用 化學物製造業	50.28
BⅡ. 重化學工業 關聯産業	
353 石油精製業	10.23
362 유리 및 유리製品 製造業	29.54
371 第1次 鐵鋼産業	34.09
372 第1次 非鐵金屬産業	31.14
383 電氣機械器具製造業	49.46
384 運輸裝備製造業	5.45
*352 其他化學製造業	47.51

* 表안의 數値는 當該産業에서 中小企業의 大企業에 대한 平均勞動生産性의 比率임(%).

** 우리가 使用한 分類基準으로는 BⅠ에 속하게 되지만 AⅠ과 BⅠ의 경계에 속하게 되어 産業의 性質上 AⅠ에 包含시켰음.

A : 中小企業 競爭産業

AⅠ : 固有中小企業中心産業($Ⅱ_Q - Ⅰ_L$)

AⅡ : 專門的中小企業産業($Ⅱ_Q - Ⅱ_L$, $Ⅲ_Q - Ⅲ_L$)

B : 中小企業 脆弱産業($Ⅰ_Q - Ⅱ_L$, $Ⅰ_Q - Ⅲ_L$, $Ⅱ_Q - Ⅲ_L$)

BⅠ : 輕工業關聯産業

BⅡ : 重化學工業關聯産業

이와같은 分類方式에 따라 四分된 28個細分類別産業은 〈表 2〉와 같다. A群에 屬하는 産業들은 一般的으로 中小企業에서의 勞動生産性이 大企業에서의 勞動生産性의 70%以上을 維持함으로써 中小企業이 競爭的인 産業群이며 B群에 屬하는 産業들은 中小企業에서의 勞動生産性이 大企業에서의 勞動生産性이 50%에도 못미치는 中小企業이 相對的으로 脆弱한 狀態에 있는 産業群이다. AⅠ群은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附加價値와 雇傭이 當該産業全體의 50%以上을 占함으로써 傳統的 中小企業이 密集되어 있는 産業群으로 볼 수 있으며 AⅡ群에 屬해 있는 産業에서는 中小企業과 大企業에 있어서의 勞動生産性差異가 微微한 경우로 여기에 屬해 있는 中小企業들은 技術集約인 專門的 中小企業이라고 볼 수 있다. BⅠ과 BⅡ는 各各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과 關聯된 産業들로 分類하였다.

3. 勞動 및 資本의 生産性과 假說의 檢證

〔圖 1〕은 産業群別·規模別 勞動生産性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68年의 경우를 보면 勞動生産性의 規模別 變化가 全産業을 통해

〔圖 1〕 勞動生產性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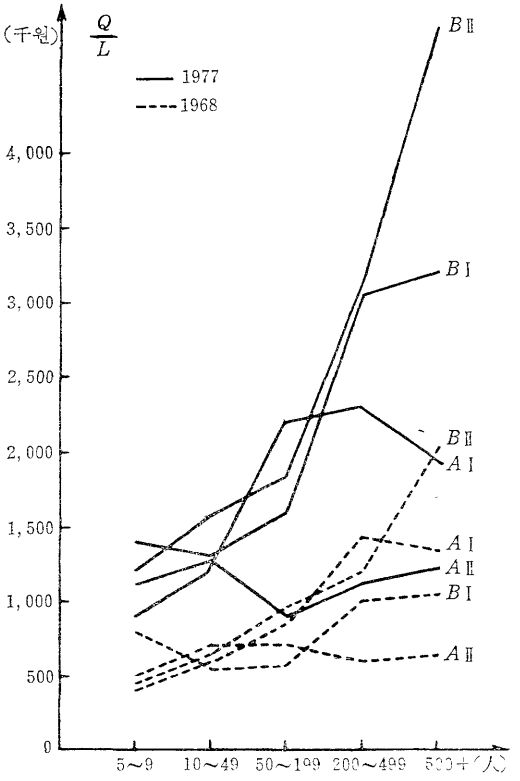

별로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77年의 경우에는 *A*群의 產業에서는 勞動生產性의 規模別 變化가 (*B*群에 比해서)相對的으로 작은데 比해 *B*群에서는 規模에 따라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70年代 중반以後 政府의 重化學工業育成政策에 의해서 重化學쪽의 大企業이 急伸張한 結果라고 보여진다.

이제 우리의 觀察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一般的으로 *B*群에서의 勞動의 平均生產性이 *A*群에 比해서 더 크다. 이를 〈表 4〉의 勞動의 資本裝備率(資本과 勞動의 比率)과 比較하여 보면 *B*群에서의 勞動의 資本裝備率이 *A*群에서의 그것보다 더 큼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一般的인 假說 即 比率變化의 法則(또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適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Ⅱ에서 勞動生產性이 제일 낮은데 〈表 4〉를 보면 *A*Ⅱ에서의 勞動의 資本裝備率이 제일 낮다. 따라서 *A*Ⅱ는 規模와 關係없이 매우 勞動集約產業임을 알 수 있다. 둘째, 勞動生產性의 規模別 變化推移를 보면 *A*群에 있어서는 從業員規模 50~199人(*A*Ⅰ)규모와 10~49人(*A*Ⅱ)규모에서 급격한 上昇을 보이고 있고 *B*群에 있어서는 200~499人規模에서 急激한 上昇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그 規模에서 資本裝備率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A*群에서는 50~199人規模(*A*Ⅰ)와 10~49人規模(*A*Ⅱ)가 가장 効率的인 規模라고 볼 수 있으며 *B*群에서는 200~499人規模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셋째, (*B*Ⅱ를 除外한) 全產業을 通해서 50~199人規模가 가장 勞動集約이다. 따라서 이 規模에서는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率이 가장 높다(*B*Ⅱ에서는 200~499人規模가 여기에 該當됨). 네째, *A*群에서는 50~199人規模에서 資本이 가장 効率的으로 使用되고 있으며(資本의 生產性이 가장 높음) *B*群에서는 200~499人規模가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말하여 *A*群에서는 50~199人規模가 適正規模에 近接한 狀態라고 볼 수 있으며 *B*群에서는 200~499人規模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2節의 式(4)에서 說明된 우리의 假說을 檢證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假說이란 小規模企業에서의 利潤率(資本에 대한 利廻率)이 大企業에서의 그것보다 더 커야 (즉 $\alpha_{Sj}\frac{Q_{Sj}}{K_{Sj}}>\alpha_{Lj}\frac{Q_{ij}}{K_{ij}}$) 中小企業은 大企業과 競爭的으로 共存할 수 있다는 것이다. 〈表 3〉의 마지막 두 란에서 檢證의 結果를 보여주고 있

다. A群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假說이 中規模(50~199人) 以後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16] B群에서는 大規模(200~499人)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假說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B群의 産業에서 規模의 經濟効果가 매우 크거나 技術의 進步에 의한 資本의 生産性(embodied technical progress)이 크게 提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B群에서는 中小企業들이 相對的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축된 狀態에서도 小規模企業들이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理由는 小規模企業의 경우 自己所有資産에 대한 機會

〈表 3〉 産業群別, 規模別 勞動 및 資本의 生産性(1977) (Q/L의 단위 : 1,000원)

	$\frac{Q}{L}$ [1]	$\frac{Q}{L}$	$\frac{Q}{K_A}$	$\frac{Q}{K_B}$	$\alpha(\%)$	$\alpha\frac{Q}{K_A}$	$\alpha\frac{Q}{K_B}$
A I							
전 체	837.61	1,898.53	1.39	0.86	72.8	—	—
5~9人	413.16	902.78	0.82	0.41	68.0	0.5576	0.2788
10~49人	589.06	1,224.66	1.11	0.58	61.0	0.6771	0.3538
50~199人	832.19	2,230.10	3.02	1.82	79.2	2.3918	1.4414
200~499人	1,425.48	2,293.47	2.11	1.32	67.7	1.4284	0.8936
500人이상	1,379.76	1,959.22	0.85	0.57	66.6	0.5661	0.3796
A II							
전 체	648.04	1,177.89	2.92	1.70	62.7	—	—
5~9人	514.44	1,132.38	2.80	1.26	60.2	1.6856	0.7585
10~49人	705.92	1,265.70	1.90	1.10	54.7	1.0393	0.6017
50~199人	650.56	893.91	3.92	1.99	55.3	2.1678	1.1005
200~499人	607.38	1,125.38	3.47	1.71	57.0	1.9779	0.9747
500人이상	698.18	1,237.13	2.83	1.78	63.5	1.7971	1.1303
B I							
전 체	778.51	2,156.04	1.34	0.87	74.3	—	—
5~9人	569.32	1,407.77	0.95	0.65	67.2	0.6384	0.4368
10~49人	513.70	1,317.70	1.12	0.66	60.0	0.6720	0.3960
50~199人	575.25	1,606.00	1.75	0.96	67.4	0.7920	0.6470
200~499人	999.91	2,629.23	1.76	1.21	71.6	1.2601	0.8664
500人이상	1,005.57	2,700.53	1.15	0.78	77.6	0.8924	0.6053
B II							
전 체	1,326.53	3,648.35	1.15	0.87	77.2	—	—
5~9人	489.35	1,222.31	0.80	0.37	49.2	0.3936	0.1820
10~49人	643.06	1,576.23	1.64	0.86	62.8	1.0299	0.5401
50~199人	822.02	1,824.52	1.17	0.92	78.3	0.9161	0.7204
200~499人	1,237.94	3,202,00	2.45	1.64	60.5	1,4823	0.9922
500人이상	1,972.30	4,797.18	1.03	0.82	78.4	0.8075	0.6429

註 : 1) 1968年의 부가가치임.

16) 小規模(5~49人)에서는 資本스톡이 다소 過大評價되어 우리의 假說과 어긋나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附表 2 參照).

費用을 무시하는 경향때문이다. B群에 屬해 있는 中小企業들은 앞으로 專門的이고 技術集約的인 方向으로 發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大企業과의 關係가 水平的이 아닌 垂直的 共存의 關係이어야 할 것이다. 또 資本스톡에 建物을 包含시킨 경우도 위의 分析結果에 根本的 變化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4.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寄與率分析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中立的技術進步의 寄與率 및 資本裝備率增加가 갖는 寄與率이 〈表 5〉와 〈表 6〉에 要約되어 있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比較時點間(1968年과 1977年)의 資本스톡 資料가 不備하여 우리는 다소 制限的인 假定(restrictive assumption)을 甘受하여 가면서 Johansen의 方式을 擇하지 않을 수 없었다. 〈表 5〉는 Massel의 方式을 응용한 式(33)과 (34)에 依한 것이고 〈表6〉은 式(32)에 依한 것이다. 또 〈表 5〉는 產業群別 勞動生產性變化와 比較하기 위하여 〈表 2〉와 같은 分類方式을 利用하여 產業群別 寄與度를 測定하였으며 〈表 6〉에서는 規模를 좀 더 細分한 대신 A群과 B群을 比較하였다. 따라서〈表 5〉와 〈表 6〉은 서로 直接比較하기는 困難하나 大體的인 趨勢는 同一하다.

먼저 〈表 5〉를 보면 첫째, 技術進步率이 A群보다는 B群에서 더 높으며 勞動生產性 增加에 대한 技術進步率의 寄與度도 A群보다는 B群에서 더 높다. 둘째, AⅠ, AⅡ, BⅠ에서는 50～199人規模에서 技術進步의 寄與率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BⅡ에서는 200～499人規模에서 技術進步率의 寄與度가 가장 높다. 셋째, AⅠ의 경우에 있어서는 勞動生產性의 增加速度가 낮으며, 技術進步의 勞動生產性 增加에 대한 寄與率도 낮다 (특히 大規模에서 위와 같은 現象이 두드러짐). 따라서 AⅠ群은 傳統的 勞動集約的 產業群임을 알 수 있다. 넷째, AⅡ에서는 勞動生產性의 增加速度가 B群에 比해 비교적 낮은 대신에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率이 비교적 높으며 全規模에 걸쳐 그 差異가 微微하다. 따라서 AⅡ群에 屬해있는 產業들은 技術集約的 產業群임을 알 수 있다.

〈表 6〉은 다음과 같이 Dummy變數를 利用

〈表 4〉 產業群別, 規模別 資本/勞動의 比率(1977)

(단위 : 1,000원)

	AⅠ		AⅡ		BⅠ		BⅡ	
	$\frac{K_A}{L}$	$\frac{K_B}{L}$	$\frac{K_A}{L}$	$\frac{K_B}{L}$	$\frac{K_A}{L}$	$\frac{K_B}{L}$	$\frac{K_A}{L}$	$\frac{K_B}{L}$
전 체	1,361.41	2,205.31	403.90	693.93	1,605.55	2,483.32	3,164.43	4,198.66
5～9人	1,099.59	2,212.72	405.08	898.90	1,481.35	2,155.61	1,524.87	3,310.42
10～49人	1,103.34	2,118.08	665.08	1,154.79	1,172.27	2,005.90	963.55	1,830.04
50～199人	738.21	1,227.92	227.93	448.39	916.08	1,672.51	1,564.05	1,986.59
200～499人	1,084.98	1,739.46	323.91	657.18	1,490.08	2,173.22	1,305.02	1,948.71
500人이상	2,293.61	3,409.39	436.79	694.79	2,344.20	3,444.84	4,677.27	5,883.84

* 小規模企業(5～49人規模)에서의 資本裝備率이 中規模(50～199人)보다 더 크게 추계되어 우리의 一般的通念과 相異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使用한 資本스톡이 在庫와 土地를 包含하지 않은 것과 小規模企業에서의 時間外勞動 및 自家勞動者數를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結果라고 보여진다(附表 2 參照).

하여 推計한 結果이다.

$$ln\left(\frac{q_{77}}{q_{68}}\right)_i = ln\left(\frac{A_{77}}{A_{68}}\right) + (ln\ w)\alpha_i + D_i + \varepsilon \cdots\cdots\cdots (35)$$

i =企業의 規模

$$D_i = \begin{cases} 0 & A群 \\ 1 & B群 \end{cases}$$

다시 말해서 同一規模에 있어서는 資本裝備率의 增加가 勞動生產性의 增加에 대하여 갖는 寄與率이 A群과 B群에서 같다고 보는 것이며 技術進步率만이 兩產業群에서 다르다고 假定하는 것이다. 우리의 推定結果에 依하면 小規模(특히 20~99人 規模)에서는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資本裝備率增加가 갖는 寄與率이 매우 높은데 비해 中規模以上(100人 이상)에서는 技術의 進步가 갖는 寄與率이 매우 높다. 그것은 우리의 比較時點 期間동안에 小規模企業에서는 새로운 技術의 開發보다는 資本의 蓄積에 集中的인 努力이 가해진 反面에 大規模企業에서는 資本의 蓄積과 더불어 새로운 技術의 導入에 힘입은 結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過去 中小企業의 경우 施設投資가 너

〈表 5〉 產業群別, 規模別 勞動生產性增加에 대한 寄與率(Ⅰ)

	年平均增加率 (%)			$A_1(A_0=1)$	θ (%)[1]
	q	w	A		
A Ⅰ					
전 체	10.4569	11.8966	1.7962	1.1616	17.18
5~9人	8.6534	9.0632	2.4904	1.2244	28.78
10~49人	8.8172	10.5864	2.3595	1.2123	26.76
50~199人	12.9858	10.5676	4.6163	1.4154	35.55
200~499人	6.2851	8.9732	0.2102	1.0891	3.35
A Ⅱ					
전 체	8.4183	9.1864	2.6584	1.2393	31.58
5~9人	8.8589	8.3131	3.8544	1.3468	43.51
10~49人	6.8329	5.9882	3.5574	1.3201	52.06
50~199人	9.3000	7.8451	4.9617	1.4465	53.35
200~499人	8.6814	7.3426	4.4961	1.4046	51.79
B Ⅰ					
전 체	12.9265	9.7343	5.6939	1.5124	44.05
5~9人	10.4885	9.6381	4.0117	1.3610	38.25
10~49人	11.4592	9.3975	5.8207	1.5238	50.79
50~199人	13.2555	9.3602	6.9467	1.6252	52.41
200~499人	12.3643	9.5990	5.4914	1.4942	44.41
B Ⅱ					
전 체	13.6136	9.3423	6.4013	1.5761	47.02
5~9人	10.5994	8.9763	6.1831	1.5564	58.33
10~49人	11.0003	9.3203	5.1472	1.4632	46.79
50~199人	10.4978	9.5260	3.0389	1.2735	28.95
200~499人	12,7130	7.7675	8.0137	1.7212	63.04

註 : 1) θ는 中立的 技術進步가 갖는 勞動生產性 增加에 대한 寄與率. 따라서, $(1-\theta)$는 資本裝備率 增加가 갖는 勞動生產性 增加에 대한 寄與率임.

무 미약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많은 投資가 이루어진 때문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中小企業은 施設投資의 促進보다는 自體의 技術開發에 더욱 努力하여야 될 것이며 中小企業育成政策도 이를 뒷받침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表 6〉에서도 〈表 5〉에서와 마찬가지로 *B*群에서의 技術進步率이 *A*群에서보다 相對的으로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Massel의 指摘과 마찬가지로) 殘餘分을 어디에 包含시키느냐(即 技術의 進步에 包含시키느냐 또는 勞動의 資本裝備率增加에 包含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結論에 약간의 變化를 가져다 준다.

끝으로 우리의 推定結果와 比較하기 위하여 Johansen Solow 및 Yotopoulous와 Nugent의 推定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Johansen ; 英國의 28個産業, 1924～1950年

θ : 70.1%～9.1%

Solow ; 美國, 1909～1949年

θ : 87%～67%

Yotopoulous와 Nugent ; 하와이 經濟, 1952～1964年

θ : 60.0%

위의 推定結果는 우리와는 달리 規模別로 區分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結果와 直接的인 比較는 困難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약간 높다고 여겨진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技術의進步가 經濟成長에 대하여 갖는 寄與率이 一般的으로 낮다고 理解되고 있으나 〈表 5〉와 〈表 6〉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檢證結果는 위의 一般的期待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Christensen과 Cummings(1981)도 우리와 비슷한 結論을 내리고 있다[17].

〈表 6〉 産業群, 規模別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寄與率(Ⅱ)

(단위 : %)

規 模	$\frac{q_{77}}{q_{68}}-1$	$\bar{\alpha}$ [2]	$exp.\ (\bar{\alpha}\cdot lnw)$ [3]	$[A_{77}/A_{68}-1]$ [4]		殘 餘	
				A 群	*B* 群	*A* 群	*B* 群
10～19人	124.2(100)[1]	0.5074	52.5(42.3)	42.5(34.2)	49.9(40.2)	29.2(23.5)	21.8(17.5)
20～49人	129.0(100)	0.5214	126.4(97.9)	0.1(0.0)	2.2(1.7)	2.5(1.9)	1.4(1.1)
50～99人	96.3(100)	0.5491	70.9(73.6)	2.3(2.4)	26.0(27.0)	23.1(23.9)	−0.6
100～199人	165.4(100)	0.4905	31.2(18.9)	85.0(51.4)	123.9(74.9)	49.2(29.7)	10.3(6.2)
200～499人	101.6(100)	0.5896	32.1(31.6)	56.8(55.9)	77.7(76.5)	12.7(12.5)	−8.2

註 : 1) ( )內는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寄與率(%)=θ
2) 比較時點에서의 平均 資本所得配分率
3) 資本裝備率增加가 갖는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寄與度,
4) 中立的 技術進步가 갖는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寄與度,
* 5～9人規模와 500人 이상規模는 比較時點(1968～1977年)間에서의 分析이 無意味하여 除外되었음.

17) Christensen과 Cummings(1981)의 硏究에 의하면 1960～73年期間동안에 우리나라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9.7%, 生産要素投入增加率은 5.5%, 그리고 生産要素의 總生産 性增加率은 4.1%로서 總生産性增加率이 經濟成長率에 대하여 갖는 寄與率이 42.3%에 이르러 이는 日本을 除外한 대부분의 先進工業國(美國, 카나다, 西獨, 英國,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들 보다도 더 높은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Christensen과 Cummings의 方法은 資本스톡과 勞動投入量을 推計함에 있어서 Divisia指數方法을 使用하였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普遍的 方法을 使用하였다면 技進術步가 갖는 寄與率은 더 높이 推定되었을 것이다 〔Jorgenson과 Griliches(1967)는 總要素投入量을 推計함에 있어서 Divisia指數를 使用하면 技術進步의 成長에 대한 寄與率이 낮게 推定됨을 보여주고 있다〕.

V. 要約, 結論 및 앞으로의 課題

本 硏究의 基本目標는 中小規模의 企業(中小企業)과 大規模企業(大企業)間의 勞動 및 資本의 生産性을 比較分析하는 데 있다. 生産要素의 生産性을 比較하는 데 있어서는 部分生産性(partial productivity)의 槪念과 總生産性(total productivity)의 槪念이 있으며 兩者 모두 一長一短의 分析上의 有用性을 갖는다.

總生産性의 分析에 있어서는 算術指數보다는 Solow의 幾何指數가 좀더 普遍性을 지니므로 Solow의 指數를 利用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勞動生産性增加에 대한 中立的技術進步가 갖는 寄與率과 資本裝備率의 增加가 갖는 寄與率을 論議하였다. 그러나, 實證的檢證에 있어서는 兩比較時點間의 資本스톡資料의 不備로 Solow의 方式을 直接 適用할 수가 없었고 Solow方式의 變形이라고 할 수 있는 Johansen의 方式을 擇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의 實證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硏究對象은 우리나라 産業標準分類에 의한 細分類別製造業이 基本對象이었으며 細分類에 의한 28個産業을 그 特性 또는 各 産業內에서의 中小企業의 比重에 따라 다시 4個 産業群으로 再分類하여 分析하였다(産業群의 分類에 관하여는 表 2와 附表 1 參照). 4個의 産業群(AⅠ, AⅡ, BⅠ, BⅡ)中에서 A群은 中小企業이 비교적 競爭的인 産業群이며, B群은 中小企業이 相對的으로 脆弱한 産業群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같은 方式으로 分類하여 본 各 産業群別 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群의 産業보다는 B群의 産業이 더 資本集約的이며 따라서 A群의 産業보다는 B群의 産業에서 勞動生産性이 더 높다. 둘째, AⅠ에서는 50~199人 規模가 그리고 AⅡ에서는 10~49人 規模가 가장 勞動効率的 規模(勞動生産性이 가장 높다)이며 B群에서는 200~499人 規模가 가장 勞動効率的規模이다. 셋째, A群에서는 50~199人 規模가 B群에서는 200~499人 規模가 가장 適正規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即 위의 規模에서 資本의 生産性이 가장 높다). 넷째, 利潤率을 尺度로 한 우리의 假說 即 中小企業이 大企業과 共存하기 위하여서는 中小企業에서의 利潤率(資本에 대한 利廻率; r_{iS})이 大企業에서의 그것(r_{iL})보다 더 커야 된다는 우리의 假說은 A群에서는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B群에서 그렇지 못하다. 이는 大規模 企業에서의 規模의 經濟効果나 새로운 先進技術의 導入에 의한(資本에 대한) 體化된 技術進步의 効果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中小企業들이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理由는 一般的으로 이들 中小企業들이 自己所有資産에 대한 機會費用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A群보다는 B群의 産業에서 中立的 技術進步率이 더 크며 또한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率도 B群에서 더 크다. 특히 AⅠ의 産業에서는 勞動生産性의 增加率 및 技術進步率이 相對的으로 낮다. 따라서 AⅡ에 속해 있는 産業들이 傳統的 勞動集約的 産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Ⅱ의 産業群에서는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率이 모든 規模에서 고른 分布를 보이며 또 비교적 높은 水準에 있다. 따라서 AⅡ群은 全規模에서 技術集約的 産業群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勞動生産性 增加에 대한 技術進步가 갖는 寄與率을 Johansen

(英國의 경우), Solow(美國의 경우), Yotopoulous와 Nugent(하와이의 경우)의 檢證結果와 比較하였다. 위의 結果에 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가(規模에 따라서 差異는 있으나) 약간 낮게 推定되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서는 技術進步率이 낮다는 一般的 期待와는 달리 상당히 높은 水準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分析은 두 時點(1968年과 1977年)에서의 勞動生產性 增加를 두가지 效果로 分解(decompose)하는 것 即 中立的 技術進步에 依한 것과 資本의 深化에 依한 效果의 結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勞動生產性의 增加가 위의 두가지 效果에 依해서만 決定된다는 것은 너무 單純한 假說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勞動生產性의 動態的變化는 좀더 細分된 각도에서의 檢討가 必要하다. Nadiri와 Schankerman(1981)은 生產要素의 總生產性增加를 價格效果, 總需要效果, R & D 效果

〈附表 1〉 細分類 產業別 中小企業 競爭現況(1977)

細分類別	產業	全製造業			中小企業(%)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
311-312	食料品 製造業	2,897	128,178	448,610	97.4	54.4	47.3
313	飮料品 製造業	1,211	25,990	292,996	99.0	63.5	36.2
314	담 배 製造業	23	14,985	327,175	43.4	10.5	2.9
321	纖 維 製造業	4,176	402,642	758,343	95.4	49.5	36.4
322	衣 服 製造業(신발除外)	2,777	208,337	259,445	94.6	39.6	32.9
323	가죽毛皮 製造業(신발 衣服除外)	346	26,857	46,203	95.7	71.3	62.8
324	신발 製造業(프라스틱신발除外)	192	20,011	31,354	93.8	27.1	21.2
331	나무製品 製造業(家具除外)	1,282	56,249	118,164	98.3	37.0	36.2
332	家具 및 裝置物 製造業(金屬家具除外)	886	14,155	20,069	99.5	78.5	71.1
341	종이 및 製品 製造業	800	42,232	124,379	96.5	69.3	49.1
342	印刷出版 및 關聯產業	1,208	42,349	108,076	97.7	58.6	42.4
351	產業用 化學物 製造業	640	41,618	253,905	95.5	60.1	43.1
352	其他 化學 製造業	570	46,815	273,590	92.3	45.6	32.8
353	石油精製業	43	3,937	233,943	93.0	41.9	6.9
354	其他石油 및 石炭製品 製造業	318	11,246	37,788	98.7	84.4	81.3
355	고무製品 製造業	284	98,266	155,991	90.2	11.1	10.9
356	分類되지 않은 프라스틱製品 製造業	591	36,543	71,482	96.4	50.1	43.0
361	陶器, 瓷器土器 製造業	300	12,843	16,965	96.4	53.9	44.1
362	유리 및 유리製品 製造業	124	14,581	51,262	90.3	54.8	26.4
369	其他非金屬 鑛物製品 製造業	1,321	50,319	223,414	97.8	60.4	60.4
371	第1次 鐵鑛產業	438	58.324	275,107	92.3	35.5	15.8
372	第1次 非鐵金屬產業	226	12,658	50,899	97.4	71.5	43.9
381	組立金屬製品 製造業	1,584	80,247	152,727	97.4	60.1	57.1
382	機械 製造業(電氣除外)	1,395	71,952	164,681	97.5	62.9	58.4
383	電氣機械器具 製造業	1,164	188,841	478,753	89.1	32.3	19.1
384	運輸裝備 製造業	756	95,634	460,830	95.7	29.9	2.3
385	專門科學 光學 製造業	256	31,979	55,385	92.9	46.4	43.4
390	기타 製造業	981	81,143	105,168	93.8	53.6	51.4

* 中小企業의 범주는 從業員規模 300人以下임.

資料 : 경제기획원,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1977.

〈附表 2〉 有形固定資產의 規模別 構成(所有資產, 純資額) (단위 : 億원)

	個人企業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軸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小計 (A)
1~9人	—	—	—	—	—	—
5~49人	152.4	2,215.7	0.5	382.2	174.5	2,925.3
10~49人	—	—	—	—	—	—
50~99人	23.2	386.0	0.0	57.4	25.0	491.6
50~199人	—	—	—	—	—	—
100~299人	21.4	439.0	3.1	35.3	23.9	522.7
200~299人	—	—	—	—	—	—
300人 이상	24.0	124.3	0.6	5.9	8.3	163.1
300~499人	—	—	—	—	—	—
500~999人	—	—	—	—	—	—
1,000人 이상	—	—	—	—	—	—

	法人企業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軸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小計 (B)
1~9人	5	37	1	5	7	55
5~49人	—	—	—	—	—	—
10~49人	40	444	1	62	91	638
50~99人	—	—	—	—	—	—
50~199人	1,112	1,954	26	178	270	3,540
100~299人	—	—	—	—	—	—
200~299人	158	1,400	1	81	106	1,746
300人 이상	—	—	—	—	—	—
300~499人	216	2,294	—	92	112	2,714
500~999人	556	5,499	54	262	299	6,670
1,000人 이상	2,151	14,343	158	488	756	17,896

	資本과 勞動의 比率			
	(C)=(A)+(B)	L (명)	(C)/L(千원)	規模
1~9人	—	—	—	—
5~49人	—	—	—	—
10~49人	3,618.3	309,471	1,169.2	5~49人 (小規模)
50~99人	—	—	—	—
50~199人	—	—	—	—
100~299人	—	—	—	—
200~299人	6,300.3	573,483	1,098.6	50~299人 (中規模)
300人 이상	—	—	—	—
300~499人	—	—	—	—
500~999人	—	—	—	—
1,000人 이상	27,443.1	1,035,977	2,649.0	300人이상 (大規模)

* 個人企業의 경우는 從業員規模의 指數가 常時從業員 數임. ** 小規模에서의 資本·勞動 比率이 中規模보다 큰 것은 우리의 有形固定資產에서 土地, 建物, 建設假計定 및 在庫가 除外된 外에 小規模에서의 時間外勤務 및 自營勞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原因일 수 있다.

資料 : 經濟企劃院, 『國富統計調査報告』, 1977.

및 中立的 技術進步効果로 나누어 分析하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勿論 細分된 効果를 分析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精密하게 構成된 資料가 必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技術의 進步를 測定할 때 우리는 生產函數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다. 그러나 生產函數를 利用할 때에는 事前的(a priori)으로 規定된 條件(例를 들어 一次同次의 生產函數 即 規模의 經濟効果가 없다는 등)下에서 주어진 模型(pre-specified model)을 使用하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그러나 最近에 널리 論議되고 있는 一般化된 生產函數(generalized functional form)를 利用한 「파라메타」 接近方法(parametric approach)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實用性있는 結論을 導出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Abramobitz, M., "Resources and Outpu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70", *AER*, 1956.

Brown, M., *On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Christensen, L.R., and D. Cummings, "Real Product, Real Factor Input, and Productivity in the Republic of Korea, 1960～1973", *J. of Development Economics*, 1981.

Johansen, L., "A Method for Separating the Effect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Shifts in Production Functions upon Growth in Labor Productivity", *EJ*, 1961(December).

Jorgenson, D.W., and Z. Griliches, "The Explanation of Productivity Change", *RES*, 1967(July).

Kennedy, C., and A.P. Thirlwall, "Surveys in Applied Economics: Technical Progress", *EJ*, 1972(March).

Kendrick, J.W., *Productiv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Lave, L.B., *Technical Change: Its Conception and Measurement*, Prentice-Hall, 1966.

Massel, B.F., "Another Small Problem in the Analysis of Growth", *R.E. STAT*, 1962.

Nadiri, M.I., "Jome Approaches to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Total Productivity: A Survey", *JEL*, 1970(Decmber).

Nadiri, M.I. and M.A. Schankerman, "Technical Change, Returns to Scale, and the Productivity Slowdown", *AER*, 1981 (May).

Pryor, F.L., "The Size of Production Establishments in Manufacturing", *EJ*, 1972 (June).

Salter, W.E.G., *Productivity and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Singh, A., and G. Whittington, *Growth, Profitability and Valu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Solow, R.M.,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 STAT*, 1957(August).

Yotopoulous, P.A., and J.B. Nugent, *Economics of Development*, Harper and Row, 1976.

離職率의 國際比較 및 決定要因分析

金 秀 坤

▷ 目 次 ◁

Ⅰ. 序 論
Ⅱ. 韓·美·日 離職率의 比較
Ⅲ. 平生雇傭制度
Ⅳ. 事業體別 離職率 決定要因分析
Ⅴ. 結 論

Ⅰ. 序 論

「우리나라 生産職勤勞者들은 불과 몇푼만 더 준다면 철새처럼 事業場을 옮아다닌다」라고 經營者들이 개탄하는 것을 흔히 본다. 한때는 「스카웃」防止法을 制定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며, 日本의 終身雇傭制度를 導入함으로써 勤勞者의 移動을 줄이자는 사람도 많다. 이는 높은 離職率이 經營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代替人力募集費用이 많이 들 뿐 아니라 他社와의 求人競爭때문에 結果할 勞賃上昇은 使用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技能訓練에 상당한 費用을 支出하고 있는 企業으로서는 離脫해버린 人力에 投資했던 費用은 전부 浪費로 끝나버린 셈이 되며 定着性없는 人力으로 인한 生産過程의 不安定과 그로 인한 品質管理의 問題 및 歸屬感의 缺如로 인한 技術蓄積의 不可能은 企業의 生産性 向上을 沮害하는 큰 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人力의 移動이 使用者側으로 보아 언제나 그렇게 不利益한 것만은 아니다. 不必要한 被傭者가 離職해 줄 때 이는 보다 참신한 人力으로 代替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계기가 되며 他社로부터의 轉入을 통해서 새로운 技術의 傳達이 可能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더우기 不況期이거나 또는 自動化에 의한 人員減縮이 必要할 때 人力이 自進退社해 준다는 것은 雇傭合理化를 위해서 經營者가 오히려 바라는 바이다. 問題는 오히려 好況期, 人力이 달릴 때 勤勞者가 離職을 해버린다거나 使用者가 必要로 하는 良質의 人力이 離職하고 오히려 必要치 않은 人力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될 것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委員

이다.

被傭者의 立場에서도 그 같은 兩面性은 있게 마련이다. 自由로운 移動이 可能함으로 인해 그들의 賃金과 勤勞條件을 向上시킬 수 있는 반면, 빈번한 移動으로 인해 一定한 企業에의 歸屬感과 安定性이 없으며 不意의 災害를 당했거나 解雇를 당했을 경우에 대한 對備策이 缺如되어 있다는 否定的 側面이 또한 없지 않다. 「와이트힐」과 「다깨자와」 兩氏가 말한 바와 같이 「現職場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좋은 勤勞條件이었을 경우에는 자기의 平生職業生涯를 한 곳에 定着하는 것(commitment)이 다시 없는 滿足의 源泉이 될 것이나 現職場의 勤勞條件이 좋지 못하고 장래 展望이 밝지 못할 경우에는 離職以外에는 自己의 能力을 發揮하고 希望을 達成할 길은 없을 것이다」[1].

國家的 次元에서 勞動移動은 어떻게 볼 것인가? 生產의 手段이면서 同時에 目的인 人力은 生產性이 낮은 部門에서 높은 部門으로, 即 賃金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移動하게 마련이다. 이같은 人力의 自由로운 移動은 人力資源을 效率的으로 配置케 하는 原動力으로 理解된다. 때문에 經濟活動參加를 勞動供給의 必要條件이라 본다면 勞動移動은 勞動供給의 充分條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移動이 無制限 有益한 것만은 아니다. 勞動市場이 그만큼 流動的이라는 事實은 同時에 한 職場으로부터 他職場으로 移動하는 期間동안의 失職狀態, 即 摩擦的 失業의 程度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否定的 側面도 또한 없지 않다. 美國의 平常失業率이 日本보다 높은 原因의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勞動의 移動은 때때로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本論文의 目的은 勞動移動의 必要性與否를 論하려는 것이 아니고 勞動移動, 그 中에서도 企業間移動을 나타내주는 離職率을 中心으로 우리나라와 美國 및 日本을 比較해 보고 특히 離職率과 관계가 깊은 日本의 平生雇傭制度(終身雇傭이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이 두가지 表現을 同一視함)에 대한 實狀을 알아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 產業에 導入할 價値가 있으며 그 같은 制度의 移植이 可能한 것인지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그런 後 우리나라 製造業에 있어서 生產職 勤勞者의 離職率이 왜 높은지를 分析함으로써 過度한 離職率을 낮추기 위한 人力政策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韓·美·日 離職率의 比較

日本의 產業關係를 둘러 본 歐美學者들은 日本의 經濟發展相을 非西歐的 資本主義經濟가 成功한 代表的 事例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같은 讚揚論이 極端에 이를 때에는 무엇이든 非西歐的인 것으로서 日本人의 慣習 속에 發見되면 비록 그것이 非合理的인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日本의 急速한 經濟發展에 貢獻을 했던 것처럼 論理를 展開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일찌기 「아베글렌」 敎授는 日本의 經營體制를 說明하는 과정에서 組織體 內部의 運營方

1) Arthur, M. Whitehill, Jr. and Shin-Ichi Takezawa, *The Other Worker: A Comparative Study in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8, p.129.

式은 上下의 關係에 있어서 傳統的이고 家父長的 權威意識과 溫情的 人間關係의 結合에 依存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所謂 終身雇傭制(lifetime employment system)도 또한 이러한 傳統의 발로라고 그는 보았으며, 이는 契約自由의 原則에 입각한 美國의 合理主義的 雇傭體制와는 對照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2].

美國의 雇傭制度를 단적으로 表現한다면 「有能한 者이면 보다 나은 職場을 찾아 移動하나 無能한 者이면 한 자리에 머물러 生涯를 바친다」고 하겠다. 美國人은 平均 4~5年마다 職場을 옮긴다고 한 報告書는 밝히고 있다[3]. 그 반면 日本의 雇傭制度下에서는 일단 常用雇로 選拔이 되면 비록 法的規定이나 雇傭契約에는 明示되지 않았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生涯를 내다 본 雇傭關係(career employment)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베글렌」敎授의 말을 번역한다면,

「日本과 美國의 雇傭制度를 比較할 때 日本工場組織內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特徵은 어느 단계에서 入社하는 被傭者든 入社時에 이미 그 會社에서 餘生을 바칠 것으로 믿고 있으며 會社 역시 극히 異例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一時的으로 從業員을 解雇시키지 않는다. 從業員 또한 다른 職場의 機會를 얻기 위해 쉽사리 그 職場에 辭表를 내지 않는다[4].」

「아베글렌」의 그같은 觀察을 뒷받침할 만한 資料는 얼마든지 있다. 〈表 1〉은 美國, 日

〈表 1〉 年度別(月平均) 入·離職率

(단위 : %)

	美國		日本		韓國		日本(1924~1931)[1]	
	入職率	離職率	入職率	離職率	入職率	離職率	年度	離職率
1960	3.8	4.3	2.8	2.1	—	—	—	—
1965	4.3	4.1	2.2	2.3	—	—	—	—
1970	4.0	4.8	2.5	2.3	5.4	6.0	1924	5.5
1971	3.9	4.2	2.0	2.2	4.5	5.4	1925	5.0
1972	4.4	4.2	1.8	1.9	4.6	4.5	1926	4.3
1973	4.8	4.6	2.0	2.0	5.8	4.5	1927	4.4
1974	4.2	4.8	1.6	1.9	4.8	5.1	1928	4.2
1975	3.7	4.2	1.3	1.7	5.2	4.4	1929	4.4
1976	3.9	3.8	1.4	1.5	5.2	4.4	1930	4.1
1977	4.0	3.8	1.3	1.5	5.5	5.1	1931	5.1
1978	4.1	3.9	1.2	1.4	6.3	5.9	—	—
1979	4.0	4.0	1.3	1.4	5.7	6.3	—	—

註 : 1) 安春植, 『韓國經營組織의 課題』, 全國經濟人聯合會, 1981年 1月 13日.

資料 : U.S. Department of Labor and the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anpower Report of the President*, April 1974.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Monthly Labor Review*, December 1980.
日本勞働協會, 『勞働白書』, 昭和 55年版.
노동청,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80. 9月.

2) James C. Abegglen, *The Japanese Factory: Aspects of Its Social Organization*, Glenco, Ill: Free Press, 1958.
3) Gladys Palmer, *Labor Mobility in Six Cities*, N.Y.,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54.
4) Abegglen, 前揭書, p.11.

〔圖 1〕 韓·美·日 入職率 및 離職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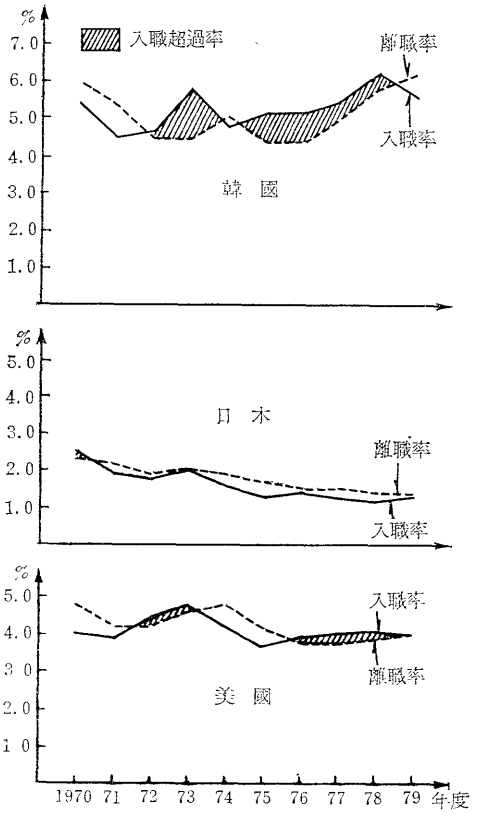

本 및 韓國의 製造業 月 平均 入·離職率을 年度別로 보여주는 것이다. 美國製造業界의 月平均 離職率이 4%를 上廻하고 있음에 比해 日本은 2%未滿의 낮은 離職率을 보이며 더우기 70年代後半에 와서는 더욱 下落하는 傾向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比해 우리나라 製造業 月 離職率은 1970~79年 사이에 年平均 5.2%를 나타내어 美國의 離職率 水準과 비슷하다. 다시 後述하겠지만 日本産業의 離職率이 옛날부터 이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다. 〈表 1〉의 마지막 난에서 볼 수 있듯이 大正時代에 해당하는 1924年以來 1931年까지의 離職率은 平均 4.6%를 上廻하고 있었던 것이다. 輕工業을 위주로 한 勞動集約的 産業構造의 特性이 70年代의 우리나라와 大正時代의 日本 사이에 상당한 類似點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重化學 또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으로 移行해감에 따라 現 日本의 低離職率과 같이, 보다 더 安定的인 雇傭形態를 나타내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先進型 産業構造를 보다 일찌기 形成한 美國은 왜 아직도 그 같이 높은 離職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上述한 構造論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解答을 提示하지 못한다. 때문에 「아베글렌」이나 「에즈라 보겔」[5]과 같은 美國學者들은 日本 特有의 社會的, 文化的 要因에 그 根據를 찾고 있다. 그러나 社會的, 文化的 傳統이란 것이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같이 非西歐的인 傳統의 一環인 韓國이나 中國等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說明해주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離職率이 우리나라나 美國보다 왜 낮으냐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간단하게 糾明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 믿는다. 다만 〈表 1〉에 나타난 現象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재미있는 現象을 엿볼 수 있다(圖 1 참조).

첫째 日本의 경우 1971年以後 계속 入職率이 離職率보다 낮아짐으로 인해 製造業 總雇傭量은 減少해온 것이다. 둘째로 美國에 있어서는 同期間동안에 2회(1972~73年과 1976~78年)에 걸쳐 入職超過現象을 나타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회(1973年과 1975~78年)에 걸쳐서 入職超過現象을 나타냈다. 넷째, 入

5) Ezra Vogel,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 Harrow, 1980.

職超過期를 好景氣라 본다면 離職超過期는 不況期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美國은 다같이 不況期에 離職率이 상당히 높은데 단지 우리나라 製造業에서 그 起伏의 程度가 심할 뿐이다. 이 不況期의 離職은 상당한 量의 非自發的離職者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韓·美 兩國이 다 1974年이 그러했고 1979年이 그러했다. 다섯째 好況인 入職超過期間 中에도 離職率의 絶對値가 上昇하고 있다는 事實은 매우 흥미롭다. 美國의 72~73年이 그러했고 대단히 완만하지만 77~78年이 그러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77, 78年에 離職率은 美國보다 더욱 빠른 速度로 上昇하였다. 好況期의 이같은 높은 離職率은 거의가 自發的인 離職이었으리라 믿어진다. 이 事實은 77~78年에 있었던 극심한 技能工「스카웃」現象과 그로부터 結果한 賃金浮上現象이 잘 證明해 주고 있다[6]. 이로부터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있어서는 企業間 移動을 위한 勤勞者의

〈表 2〉 韓·美·日間 勤續期間別 從業員[1] 構成比의 比較

(단위 : %)

勤續期間	日本	美國	韓國		
			男	女	計
10年 미만	32	64	67.9	85.4	68.4
10年 이상~20年미만 근속자	56	34	31.8	14.6	31.4
20年 이상	12	2	0.3	0.0	0.2
計	100	100	100	100	100

註 : 1) 35~39歲 年齡層

資料 : KDI 勞動移動調査, 1979. 日本과 美國의 資料는 Robert E. Cole, "Permanent Employment in Japan: Facts and Fantas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26, No.1, Oct., 1972, p. 618에서 발췌. 日本資料는 1966年度 結果이나 美國資料蒐集年度는 未詳.

〈表 3〉 우리나라 性別, 年齡別, 學歷別 勤續期間

	國中 卒 中退	中高 卒 中退	高大 卒 中退	大卒	大學院以上	平均	標本數
男子	年 個月	年 個月	年 個月	年 個月	年 個月	年 個月	
14~20세	1, 2	1	11	*	*	11	987
21~25세	2, 4	1, 11	1, 9	1,	*	1, 9	1,800
26~30세	2, 10	2, 11	2, 10	1, 10	2,	2, 6	4,743
31~35세	4, 8	4, 8	5, 5	4, 7	4, 1	4, 11	3,071
36~40세	6, 5	6, 8	8,	7, 8	7, 5	7, 6	1,881
41~60세	8, 10	9, 4	10, 1	9, 1	*	9, 7	1,464
平均	5, 2	4, 4	4, 4	3, 10	4, 9	4, 3	13,946
女子							
14~20세	1, 8	1, 4	1,	*	*	1, 4	2,636
21~25세	3, 5	3, 2	2, 8	1, 4	*	2, 10	3,434
26~30세	*	4, 6	5, 2	3, 11	*	4, 8	265
31~35세	*	*	*	*	*	4, 8	74
36~40세	*	*	*	*	*	4, 1	46
41~60세	*	*	*	*	*	7, 3	30
平均	2, 6	2, 5	2, 3	2, 1	2, 4	2, 4	6,485

註 : *해당난에 標本이 30未滿일 경우는 平均勤務 年, 月數를 계산하지 않았음.

資料 : KDI 人力移動調査結果(1979年 3月 調査).

6)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KDI, 1978 參照.

自發的 離職의 程度가 상당히 높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被傭者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企業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國際間의 比較를 해보기로 하자. 〈表 2〉는 35~39歲 就業者의 勤續期間別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日本에서는 12%가 20年以上 勤續을 했음에 比하여 美國은 겨우 2%만이 20年以上을 現職場에 勤務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2%만이 그러했다. 10年以上 20年未滿 勤續者 比率이 日本은 56%나 되지만 美國과 우리나라의 경우 各各 34%와 31.4%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企業의 年輪이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被傭者의 年齡을 同一하게 한 然後에 본 이와 같은 日本의 長期勤續「패턴」은 日本의 平生雇傭制度의 一面을 反映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表 3〉은 우리나라 全産業에 걸친 2萬餘 標本設問 對象者를 性別, 學歷別, 年齡階層別로 그들의 平均勤續 年, 月數를 내본 것이다. 이 KDI 勞動移動 調査結果에 의하면 男子의 平均 勤續年數는 4年 3個月로서 女子의 2年 4個月의 근 2倍나 된다. 또한 男子의 경우 高年齡으로 갈수록 平均勤續年數가 높아지지만, 女子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는 물론 女性의 대부분이 結婚時期와 더불어 退職을 해야 했으며 旣婚女性에 대한 就業機會가 不足함으로 인해 生涯雇傭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에 그 原因이 있을 것이다. 또한 同表에서 發見할 수 있는 事實은 男女 共히 學歷別 勤續年數의 差異가 거의 없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勞動市場行態에는 終身雇傭的 性格이 大卒 高級職種에 있어서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反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Ⅲ. 平生雇傭制度

日本 企業의 낮은 離職率이나 長期 勤續率을 보면「아베글렌」이 말한 平生雇傭制가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平生雇傭이란 制度는 被傭者가 學校를 나온 후 한會社에 就職해서 停年退職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慣行이라 할 때 그 槪念은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說明하기 위해 統計的으로 이를 파악하려 들면 그 定義가 매우 模糊하기 때문에 쉽게 答할 수 없다.

「고지 다이라」氏는[7] 1960年代에 製造業 被傭者의 約 1/5이 平生雇傭의 惠澤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으며,「우찌」氏는 大企業 從事員들의 約 35%가 平生雇傭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8].「고노스게 오다가」氏에 의하면 平生雇傭制가 勞動市場 全般的으로 普遍化된 것은 아니며 公務員과 大企業 男子從業員에 限定된 惠澤으로서 約 30%前後로 推定하고 있다[9]. 이러한 點에서 日本의 勞動市場은 懸隔한 二重構造의 性格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平生雇傭制度가 언제부터 形成되기 시작했던가에 대해서도 意見은 多樣하다.「아베글

7) Koji Taira,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bor Market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10, Jan., 1962, p.167.

8) William Ouchi, *The Theory Z*, Menlo Park, Calif.: Addison Wesley, 1981, p.17.

9) Konosuke Odaka, "The Japanese Labor Market," Hugh Patrick and Henry Rosovsky(eds.),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6, pp. 589~671.

렌」은 마치 그 根源이 日本 特有의 封建的 價値觀과 文化的 遺產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後 學者들은 여러모로 그 始發點을 糾明하려 했다.

대체로 1920年代 大正末에 시작했다는 說과 二次大戰中 勞動力 不足狀態下에서 發展되었다는 說 및 二次大戰後 勞動組合의 위협에 直面하여 생겨났다는 說等이 있다[10]. 「구니오 오다가」氏는 1920年代에 와서야 비로소 生產職從業員의 勤續年數가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以前에 보던 높은 離職率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이 시기以後부터 終身雇傭制는 形成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고지다이라」氏는 平生雇傭制가 定着하기 시작한 것은 一, 二次 大戰 사이가 아니라 二次大戰 以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11]. 「하리 오시마」氏[12]의 말에 의하면 平生雇傭制의 嚆矢는 二次 大戰前이었으나 그것이 널리 大企業들 가운데 普遍化되기 始作한 것은 역시 戰後 「맥아더」憲法下에서 일어난 一連의 民主改革의 結果라고 한다. 特히 戰爭時 財閥들의 肅淸과 그에 따른 專門經營人의 登場은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를 가져옴으로써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첫째이고, 둘째로는 勞動組合 運動을 合法化시킴으로써 啓蒙된 專門經營人과 勞動組合사이에 民主的인 產業關係秩序가 確立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日本의 平生雇傭制는 어느 一時點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期間을 두고 進化해 온 것이라 믿어진다. 平生雇傭制를 定着케한 要因으로는 日本國民의 社會的·文化的 背景도 전혀 無視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產業構造와 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特記할만하다. ① 二次大戰中 勞動供給이 缺乏됨으로부터 經營者側에서 人的資產의 貴重함을 알게 되었다는 點, ② 戰後의 過剩勞動供給 狀況下에서 組織된 勤勞者로부터 職場保障(job security)을 위한 强力한 要求가 있었다는 點 및 ③ 專門經營人이 등장하여 勞動組合과의 사이에 合理的인 產業民主化의 길을 열었다는 點等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經濟的, 社會的 與件을 無視한채 단순히 經營者의 溫情主義的 動機와 勤勞者의 報恩的 行動에 依해서 日本의 平生雇傭制度가 定着된 것처럼 믿고 이를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너무나 소박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日本의 平生雇傭制가 어떻게 運營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 制度는 주로 大企業에서 男子常傭雇를 爲主로 運營되고 있다. 臨時雇나 女職員은 같은 內部 勞動市場에 있으면서도 平生雇傭의 惠澤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 平生雇傭對象人力을 募集하는 것은 年中 있는 것이 아니라 年 一回 學校卒業時期가 보통이다. 그리고 企業은 直接 學校를 통해 就業斡旋을 依賴하고 學校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選拔한다. 이들 大企業과 學校間에는 서로의 信賴度를 沮害하지 않기위해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선발한다. 昇進은 內部起用을 原則으로 하며 美國會社에서처럼 新規

10) 安春植, 「韓·日 勞務管理의 比較硏究」, 『經營會報』, 韓國經營者總協會, 1981. 6. 25日字 참조. 보다 깊이 있게 終身雇傭을 다룬 硏究로서는 安春植 「韓國勞務管理の基本性格—終身雇用制の形成基盤の日·韓比較硏究—」慶應義塾大學大學院, 1980. 學位論文 참조.

11) Koji Taira,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Columbia Univ. Press, 1970, p. 156.

12) Harry T. Oshima, "Reinterpreting Japan's Growth: The Ris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thcoming)

採用門(hiring port)이 아무 水準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他會社에서 5年이나 10年씩 勤務하던 사람을 採用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 普通이다. 이렇게 일단 社員으로 採用된 사람이면 停年인 55歲까지는 刑事的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않는 한 좀처럼 解雇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停年退職 以前에 自己의 原會社로부터 떠나게 되면 (自意든 他意든 實際 분간하기에 힘들기도 하지만) 前職과 同等한 水準의 他企業에 就業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下에서는 職業生涯의 中間에 轉職한다는 것은 상당한 危險을 隨伴하게되며 이는 總體的으로 人力의 移動에 制動을 加하는 效果를 낳는 것은 勿論이다. 平生雇傭制下에서의 退職은 日本特有의 産業構造와 더불어 特別한 意味를 가졌다. 退職時에는 年俸의 5~6倍分의 退職金을 一時拂로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몸담아 오던 大企業 그룹內의 子會社 또는 下請中小企業에 任命되어 第2의 職業生涯를 시작하게 된다. 母會社와 子會社間에는 「우찌」氏가 말하는 소위 相互獨占的 關係(bilateral monopoly)에 놓여 있어서 日本 特有의 系列化企業間의 協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13].

母會社 停年退職者를 子會社(또는 衛星會社라고 「우찌」氏는 부름)에 雇傭하는 慣行은 母會社 社員의 雇傭安定保障이란 點에서는 매우 좋은 點이겠고 平生雇傭制를 可能케 하는 動機가 되겠으나, 다른 한편 子會社의 野心많은 젊은 社員은 落下傘타고 내려오는 式의 人事行政 때문에 士氣가 떨어지고 만다. 그리고 이들이 55歲 停年이 되면 孫子會社가 없는 限 조그만 「우동」(국수)집이나 세우는 것 이외에 별 신통한 第二의 職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勞動市場은 二重構造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日本會社는 職場을 통한 階層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찌」氏는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落下傘人事行政 慣例는 銀行을 中心으로 가장 현저히 일어나고 있으며 産業通産省官吏 또한 公務員으로서의 職業生涯가 停年後 비슷한 方法의 落下傘式 第二生涯와 연결됨으로써 平生雇傭이 保障된다. 따라서 政府나 銀行 또는 大企業에 젊어서 入職한다는 것은 最大의 生活保障이 되고 一等市民이 되는 길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二次的 勞動市場에 머물면서 2等市民 役割에 한 평생 만족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 더 심각한 問題는 이같은 就業機會를 통한 會社의 階層化가 敎育體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東京大學을 비롯한 一流大學에의 入學은 官吏로의 進出과 銀行等 一流企業에로의 進路가 이미(同窓끼리의 非公式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確率的으로) 決定되는 것이고 보면 大學入學은 人生成敗의 分岐點 役割을 하고 만다는 點에서 오늘날 日本社會는 階層間의 移動이 없이 硬直化되었으며 이것이 大學入試를 위한 下級學校 運營에까지 파급되어 課外授業 및 過熱敎育으로 社會問題化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平生雇傭制度가 社會의 階層化 및 敎育의 階層化現象의 原因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過度한 論理의 飛躍일런지도 모르겠다. 前者가 오히려 後者의 結果인지도 알 수 없다. 因果關係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13) Wiliam Ouchi, 前揭書.

平生雇傭制가 行해지는 一次的 勞動市場과 그렇지 못한 二次的 勞動市場 사이에 뚜렷한 二重構造가 形成되고 이것이 敎育의 階層化現象과 並行하고 있다는 事實을 생각할 때 平生雇傭制가 產業社會 雇傭秩序에 萬病通治藥은 아니라는 것을 示唆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찌」氏는 日本의 平生雇傭制가 社會經濟的 構造의 結果이지 原因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可能케한 세가지 重大한 要因으로는 好·不況에 따른 企業의 융통성있는 「보너스」制度와 好不況에 따라 임의로 調節할 수 있는 女性勤勞者를 포함한 많은 數의 임시직 雇傭員의 存在 및 上述한 바와 같은 그룹內子會社의 存在를 들고 있다. 따라서 「우찌」氏는 日本의 平生雇傭制度가 지닌 以上과 같은 社會的費用을 생각할 때 美國이 日本型 平生雇傭制度를 반드시 導入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만, 平生雇傭制의 一面이라 할 수 있는 信賴 및 會社에 대한 忠誠心과 같은 것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力說한다[14]. 그 같은 信賴와 忠誠心을 어떻게 誘發시키느냐하는 것은 그 社會特有의 產業關係 秩序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 日本式, 西獨式, 美國式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章에서는 우리나라 製造業體 가운데서 어떤 企業이 높은 離職率을 나타내고 어떤 企業體가 낮은 離職率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分析해 보고자 한다. 會社에 대한 信賴나 忠誠心의 發露가 곧바로 離職率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離職率 決定의 要因을 分析함으로써 勞使가 다같이 滿足할 수 있는 方法에 의한 그리고 우리나라 勞動市場 實情에 맞는 方法으로, 離職率을 낮출 수 있는 方案을 導出하고자 한다.

Ⅵ. 事業體別 離職率決定要因分析

1. 資料와 方法論

本硏究에 使用된 資料는 韓國開發硏究院이 사우디 人力諮問用役의 一環으로서 國內 人力貯量 및 移動에 관한 調査를 1979年 봄에 實施한 바 있는데 그 中의 製造業部門의 事業體 및 個人調査內容을 利用한 것이다[15]. 同調査는 事業體調査와 個人調査로 나누어지며 事業體調査部分에서는 生產品은 물론 職種別 技能程度別 現職員 數를 男女別로 파악했으며, 1973年 3月의 1個月間 入社 및 退社人員을 職種別로 파악하였다. 不幸히도 入·離職者 數를 性別로 設問하지 못했던고로 性別 離職率을 구할 수가 없었다. 其外에 事業體에서 賃金決定過程에 있어 重視하는 基準을 물어보았으며 社內訓練 실시여부와 人員을 파악했다. 또한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몇%가 組合에 加入하고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團體協約을 체결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뿐만아니라 勞使協議會를 지난 1年間 몇回 개최하였으며 주된 討議案件이 무엇이었는지도 물었고 보너스를 포함한 月給與의 階層別로 從業員數를 물어보았다. 非農 全產

14) William Ouchi, 前揭書, p.25.

15) 資料蒐集過程 및 標本의 特性에 대한 상세한 內容은 장차 出版될 單行本 報告書에 수록될 것임. 本資料調査를 맡아준 行動科學硏究所의 李薰求博士, 金俊坤硏究員等 職員에게 感謝를 드린다.

業을 통해서 426個 業體를 調査했으나 離職率 分析을 위해 製造業에 限定하고 또한 資料內部의 信憑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業體[16]만을 뽑은 결과 150個 標本業體를 얻고 이를 對象으로 分析을 시도하였다. 各 標本事業場에서는 다시 個別 從業員에 대한 標本抽出을 하고 自揭式 設問紙를 배부하였다. 個人調査表는 敎育程度勤續年數等 身上에 관한 情報外에도 「화이트힐」과 「다께자와」에 의해서 만들어진 意識構造 調査設問(Cultural Continuum Checklist)과 離職性向에 관한 設問 및 「미네소타」 大學産業關係硏究所에서 개발한 職場滿足度測定(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道具를 사용하여 個人의 滿足度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事業體別로 總應答者의 平均滿足度를 얻을 수 있었다.

離職이란 方法論上 勞動移動의 여러가지 形態 中의 하나이다. 이는 職種間, 産業間, 地域間 또는 世帶間 移動에 대한 職場間 移動을 意味한다[17]. 職場間移動에 焦點을 둔 離職問題를 分析함에 있어서 만약 測定의 單位가 個人일 경우이면 그가 몇번 職場을 옮겼는가라고하는 過去의 實際 移動回數를 測定할 수 있고 또한 그가 離職하고 싶어하는 程度 即, 離職性向(propensity to move)을 測定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測定單位가 事業體일 경우에는 月別 또는 年別로 總從業員에 대한 몇 퍼센트의 人員이 離脫해 갔느냐에 대한 統計를 잡을 수가 있다. 이때에 他社로부터의 「스카웃」으로 인한 自發的 離職과 解雇당하는 경우와 같은 非自發的 離職이 槪念上으로는 區別될 수 있다. 그러나 장차의 解雇를 豫想한 나머지 自進辭退하는 경우와 같이 僞裝된 自發的 離職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槪念的 區分은 統計上에서는 無意味하다.

前者 即 個人別 離職性向에 관한 分析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 本論文에서는 다만 後者 即 事業場別 離職率의 決定要因만을 分析키로 한다.

2. 模型과 獨立變數

本硏究에서 從屬變數가 되는 離職率은 1979年 3月 1個月동안 事業場으로부터 退職한 生産系 從業員의 同月末 總生産職 從業員에 대한 百分比이다. 生産職 離職率 S는 아래 模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련의 獨立變數와의 사이에 函數關係가 있다고 假定하였다.

$$S = f(QW, JS, LU, TR, UE, SCL, LC)$$

단, QW : 賃金水準

JS : 職場滿足度

LU : 勞動組合

TR : 社內訓練

UE : 失業率

SCL : 規模

LC : 勞使協議會

여기에 나열한 獨立變數만이 離職率을 決定한다고는 물론 생각지 않는다. 다만 統計的檢證이 可能한 것만을 뽑아서 線型複合回歸方程式을 示圖하였다. 事業場橫斷分析(cross sectional analysis)이므로 各變數의 觀測對象은 個人變數가 아니라 集團變數이다. 따라서 職場滿足度와 같은 個人別로 蒐集된 資料도

16) 例를 들면 技能別 總從業員數와 賃金階層別 從業員數 總合이 一致되지 않은 것과 같은 事業場 標本은 分析에서 除外하였다.

17) 물론 以上 몇가지 形態의 移動이 同時的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事業體別 標本에 포함된 全員의 平均値를 사용함은 물론이다.

(1) 賃金水準(QW)

勞動移動에 관한 「스티글러」[18]의 理論을 빌리면 勞動市場의 情報를 入手한다는 것은 無料가 아니다. 理性的인 인간이면 보다 나은 賃金을 얻기 위해 求職活動을 하되 그 같은 구직활동의 限界費用이 그로부터 오는 限界收益과 같게될 때 더 이상의 求職活動은 중단한다고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勞動市場情報 그 自體는 다른 한 形態의 人間資產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勞動市場 情報蒐集에 소요되는 費用은 장차의 收益을 위한 投資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自發的으로 辭退하고 他職場으로 옮겨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같은 移動으로부터 期待되는 未來의 報償이 現在의 時價로 환산했을 때 그 移動으로 인한 總費用보다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移動費用은 장차의 回收를 위한 投資이기 때문에 移動을 人間資產에 대한 投資라고 「파안즈」는 이야기하는 것이다[19]. 따라서 勞動의 移動이 可能하자면 상당한 賃金의 隔差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職場이 있다는 事實에 대한 勞動市場 情報가 상당히 不完全할 뿐만아니라 단순한 經濟的 收益性의 極大化(maximizing)보다는 自身의 社會的 및 心理的 其他 慾求를 充足(satisfying)시킨다는 경향 때문에 100% 經濟的인 豫想대로만 移動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其他與件이 同一하다고 했을 때 勤勞者는 賃金이 낮은 部門에서 높은 部門으로 移動할 것이고 따라서 賃金水準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離職率이 나타날 것이다.

金滉峒 博士는 우리나라 製造業의 產業別 規模別 橫斷分析을 통해 平均賃金水準과 離職率 사이에 負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發見하였다[20].

一般的으로 單獨企業의 平均賃金이나 中位値(median)賃金水準은 生產職 勤勞者의 賃金水準을 過大評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本硏究에서는 各 事業體의 月 給與水準別 從業員 分布狀態로부터 第一四分位値(lst quartile) 즉 賃金의 最下水準으로부터 25%의 從業員이 있는 水準의 賃金을 찾아서 QW로 使用하였다.

(2) 職場滿足度(JS)

一般的으로 現職場에 滿足한 사람일수록 離職할 確率이 낮다는 것은 많은 硏究結果 立證되었다[21]. 事實 經營者가 自己 從業員들의 職場滿足程度에 觀心을 가지는 理由는 滿足한 職員이라 해서 반드시 더 生產을 많이 할 것이라는 點에서가 아니라 滿足한 從業員일수록 缺勤率 및 遲刻率이 줄어들고 事故率도 적어질 뿐 아니라 離職 可能性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다[22].

職場에 滿足치 못한 個人들 가운데 離脫 可

18) George, J. Stigler,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2, Supplement, pp.80~93.

19) Herbert S. Parne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abor Mobility," *A Review of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Vol.I, IRRA. 1970, pp.5; Larry A, Sjaastad,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2, Supplement, pp.80~93 참조.

20) 金滉峒 「產業別 離職率의 決定要因分析」, 『勞動經濟論集』, 第2卷 第1號, 1978年 9月, pp.29~41.

21) Victor H. Vroom, *Work and Motivations*, N.Y.: Wiley, 1964; Edward E. Lawler, III and Lyman W. Porter, "The Effect of Performance on Job Satisfaction," *Industrial Relations* Vol.7, No.1, Oct., 1967, pp.20~28.

22) Arthur H. Brayfield and Walter H. Crockett, "Employee Attitude and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52, No.5, pp.396~424.

能性이 높다고 한다면 集團別로도 滿足度가 낮은 部署나 事業場일수록 離職率이 높을 것은 사실이다[23]. 그러나 만일 그 離職率이 自發的 離職보다 非自發的 離職을 더많이 포함했다면 集團全體의 滿足度(即 平均滿足度)와의 사이에 아무런 有意한 負的 相關關係를 發見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非自發的 離職이 全體 離職率에 덜 포함되었을수록 높은 負的 相關關係를 나타낼 것이다.

本分析은 事業場 分析이므로 個人調査表에서 測定한 「미네소타」職場滿足度 20個項目의 總點으로부터 그 事業場 應答者全員에 대한 平均値를 얻어서 獨立變數로 사용하였다.

(3) 勞動組合(*LU*)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는 業體는 그렇지 않은 業體에 比해서 離職率이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使用者가 恣意로 解雇시킬 수 없도록 勞動組合이 壓力을 加할 것이기 때문이다. 勞動組合의 主된 觀心事가 好況期에는 賃金 및 勤勞條件의 向上에 있고 不況期에는 雇傭維持에 있다[24]. 뿐만 아니라 勞動組合은 勤勞者의 親睦團體와도 같은 것이므로 그 構成員을 保護하고 勤勞者들의 不滿處理를 위한 安全「발브」的 役割을 하는 것이다. 勞組幹部들은 構成員相互間 뿐만 아니라 使用者와의 사이에도 共同運命體的 連帶意識을 形成함으로써 勤勞者의 離脫性向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勞動組合이 使用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妥協과 協調를 할 줄 아는 幹部에 의해서 指揮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렇지 못하고 鬪爭一邊倒의 非妥協的 幹部에 의해 組合이 運營될 때에는 비록 離職率은 낮더라도 그것이 雇傭合理化에 逆行하는 方向으로만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勞動組合의 存在 自體는 從業員의 凝集力을 强化하는 데 效果가 있을 것이며 단지 그 團結力을 對使用者 鬪爭道具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雇傭合理化를 통한 生産性提高와 福祉增進이란 勞使共同의 目的達成을 위해서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勞使平和는 左右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好況下에서는 自發的 離職이 많고 不況下에서는 非自發的離職이 많겠거니와 〔圖 2〕에서는 不況과 好況下에서 勞動組合이 結成되지 못한 業體와 結成된 業體 그리고 勞組가 있더라도 그것이 鬪爭的이고 非協調的인 幹部에 의해서 指導되고 있을 때와 妥協的인 幹部에 의해서 指揮되고 있을 때와의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離職率을 豫測한 것이다. 不況下에서 勞組가 없는 業體에서는 勤勞基準法이 規定한 바와 使用者의 慈善心에 依存하는 以外에는 높은 解雇의 可能性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離職率은 높을 것이

〔圖 2〕 好·不況下에서 勞動組合이 結成되지 않은 業體와 結成되었으되 鬪爭的인 勞組가 있는 業體와 協調的인 勞組가 있는 경우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離職率 程度

		不況下 (解雇 可能性 多)	好況下 (自發的 離職 可能性多)
勞動組合無		高	高
勞動組合有	鬪爭的 勞組	低	高
	協調的 勞組	低	低

23) Dale Yoder, Herbert G. Heneman, Jr. and E.F. Cheit, *Triple Audit of Industrial Relations*, Minneapolis: Univ. of Minn. Press, 1951에서는 負的 相關關係를 發見치 못했음.

24) 組合選好圖(union preference map)가 景氣變動에 따라 變한다는 事實에 대해서는 Allan M., Cartter, *Theory of Wages and Employment*, Homewood, Ill.: Irwirs, 1959. 참조.

다. 그러나 勞組가 結成된 業體에서는 勞組幹部가 鬪爭的이건 協調的이건간에 상당한 解雇의 可能性을 줄임으로써 不況下에도 離職率이 勞組未結成業體들 보다는 낮을 것이다.

다른 한편 外部勞動市場으로부터의 誘惑이 많은 好況下에서는 勞組未結成業體와 鬪爭的 勞組가 있는 業體 모두가 勤勞者의 離脫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協調的 勞組가 있는 業體에서는 離職率이 낮을 것으로 기대 된다.

本硏究標本으로 뽑힌 業體의 勞動組合들이 鬪爭的인가 또는 協調的인가 하는데 대한 情報는 없다. 그러나 本調査가 實施된 時期는 아직도 景氣後退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던 1979年 3月이었다. 그런고로 만약 勞動組合의 存在가 離職決定에 아무런 相關이 없거나 또는 相關은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勞動組合이 鬪爭的인 幹部에 의해서 지도되어 왔다면 回歸係數는 零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勞組가 協調的인 「스타일」이었다면 勞組結成業體는 낮은 離職率을 보이고 勞組未結成業體는 높은 離職率을 示顯함으로써 回歸係數는 負의 符號를 나타낼 것이다. 勞組있는 業體는 1, 그렇지 않은 業體는 0의 「더미」를 사용하였다.

(4) 社內訓練(*TR*)

社內訓練이라고 한다면 그 種類가 매우 多樣하다. 어떤 訓練은 그 內容이 一般的이어서 그 會社로부터 배운 知識이나 技術이 다른 會社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訓練은 그 會社에만 特有한 것이어서 他社會에 가서는 쓸모가 없는 다시 말해서 移轉 不可能한 知識 또는 技術이다. 前者를 一般技能(general skill)이라 하고 後者는 特殊技能(specific skill)이라 한다[25].

學校나 公共職業練訓所와 같은 곳에서는 一般技能練訓에 置重할 것은 사실이다. 一般訓練을 받을 경우 被訓練者는 그의 限界生產性을 提高함으로써 賃金收取能力을 向上시키게 되므로 本人이 그 費用을 負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特殊訓練을 받았을 경우에는 移轉可能性이 적기 때문에 外部 勞動市場으로부터의 賃金收取能力이 그만큼 向上되는 것은 아니므로 企業이 그 訓練費를 負擔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이는 槪念上의 區分일 뿐이지 現實的으로는 주어진 訓練內容의 얼마만큼이 一般的인 것이고 얼마만큼이 特殊訓練이란 것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26].

一般訓練의 경우에는 本人이 그 費用을 負擔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설혹 修了後 被訓練者가 離職했더라도 問題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特殊技能을 訓練시킨 경우 만약 被訓練者가 自進辭退를 했다면 訓練에 投資한 것을 回收할 길이 없고 또한 같은 이유로 解雇도 잘하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그런고로 「벡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訓練을 안받았거나 一般的訓練을 받은 사람에 比해 特殊訓練을 받은 從業員은 自進辭退할 誘引要因이 적으며 企業도 그런 從業員을 해고할 이유가 적다. 그런고로 自發的 및 非自發的 離職率은 特殊訓練의 程度에 反比

25) Gary S. Becker, *Human Capital*, N.Y.: NBER, 1964, pp.11~29; William McGehee and Paul W. Thayer, *Training in Business and Industry*, N.Y.: Wiley, 1961; Bernard M. Bass, and James A. Vaughan, *Training in Industry: The Management of Learning*, Belmont Calif.: Wadsworth, 1966.

26) 가령 Becker는 「어떤 訓練의 結果가 그 訓練을 實施한 企業에서만 生產性을 높이고 다른 會社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 이를 特殊訓練」이라고 定義하고 OJT의 大部分은 100% 一般的인 것도 100% 特殊的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前揭書 p.18.

例할 것이다[27].

本分析에서는 一般訓練과 特殊訓練을 區分함이 없이 社內訓練을 實施하고 있는 業體를 1로 그렇지 않은 業體를 0으로 記錄하였으며 豫想된 回歸係數의 符號는 負이다.

(5) 外部勞動市場 失業率(*UE*)

어떤 企業體의 離職率이 높다고 했을 때 그 原因을 糾明함에 있어서 內部勞動市場 즉 企業內 人力管理狀態와 外部勞動市場 즉 企業外部의 勞動力需給狀態를 동시에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單位組織體內의 人力管理가 제 아무리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外部市場으로부터의 人力需要가 急增하고 보면 離職率은 上昇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全國的으로 賃金浮上現象을 야기시킬 정도에 이른다면[28] 높은 離職率의 責任을 個別組織體의 人事管理에만 돌리지 말고 巨視的 次元에서 景氣安定政策을 써야 할 것이다.

만약 事業場이 好景氣地域 즉 勞動需要가 供給보다 많은 곳에 位置하고 있다면 높은 離職率을 나타낼 것으로 假定하였다. 따라서 外部勞動市場의 需給狀況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事業場이 位置한 市 또는 道의 失業率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都市別, 道別, 失業率資料는 1974年 特別雇傭統計가 유일한 자료였으므로 本調査와의 사이에 5年이란 時間的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였다[29]. 回歸係數의 符號는 「마이너스」일 것으로 豫想한다.

(6) 勞使協議會 開催件數(*LC*)

事業場設問中에는 지난 1年間 勞使協議會를 몇번이나 開催했으며 주된 討議案件에 소모된 時間의 比率을 물어보았다. 만약 勞使協議制를 勞使雙方이 충실히 對話의 場으로 活用하여 勞使間의 모든 問題를 원만히 풀어왔다고 한다면 勞使協議會 開催件數는 적어도 不滿으로 인한 自進辭退의 件數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同變數의 回歸係數는 負의 符號를 期待해 보는 것이다.

(7) 規模(*SCL*)

事業場規模가 클수록 離職率이 낮다는 것은 國內外的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事實이다[30]. 從業員數에 관한 「더미」變數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200名未滿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로 한것이 *SCLS*이고 200名 내지 1,000名미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로 한것이 *SCLM*, 그리고 *SCLL*은 1,000名 以上을 1로 그렇지 않으면 0로 하였다.

3. 回歸分析結果

事業體間 橫斷分析을 한 結果는 〈表 4〉에 제시되어 있다. 決定係數(R^2)는 이같은 分析에 흔히 그렇듯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各獨立變數의 回歸係數가 나타낸 符號나 t統計値水準을 보면 대체로 만족할만한 結果를 얻었다.

먼저 方程式 1을 놓고 보자. 常數는 32.92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개의 獨立變數들이 負的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며 規模別로 만약 200人 未滿業體였다면 平均離職率이 9.2이고 200~999名業體이면 4.9, 1,000名

27) 前揭書, p.24.
28) 賃金浮上現象에 관해서는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KDI, 1978, 第6章 參照.
29) 市別 失業率 資料는 金秀坤,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KDI, 1976, p.75 參照.
30) 金滉嶢, 前揭書.
Robert E Cole, "Permanent Employment in Japan: Facts and Fantas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26. No.1, October 1972, pp.615~630.

以上의 業體이면 4.4이라는 것을 「더미」變數로부터 알 수 있다.

먼저 一·四分位 賃金水準은 豫想했던 바와 같이 離職率과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負的 相關關係를 가졌음을 發見하였다. 回歸係數의 單位가 小數點以下 6段階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는 一·四分位値 賃金水準의 單位(平均79,467원)가 높으면서도 從屬變數인 離職率의 單位는 적은데(平均 6.37%) 연유한 것이다. 만약 一·四分位値 賃金 즉 各業體의 最下級從業員 25%의 賃金을 1,000원 引上시킨다면 離職率은 0.039% 下落할 것이라는 것으로서 지극히 微細한 영향이나마 끼칠 것으로 나타난다. 一·四分位値 賃金水準대신 中位値 賃金水準을 代入해 보았더니 역시 統計的 有意性은 나타내었으나 回歸係數는 −0.000024로서 一·四分位置를 使用했을 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31]. 이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離

〈表 4〉 製造業 事業體別 生産職 月離職率의 回歸係數

變數 \ 方程式	I	II	III	IV	測定單位	平均値
常數	32.924	34.462	29.164	29.417		
QW	⁑−0.000039	⁑−0.000038	⁑−0.000036	⁑−0.000040	원/月	79466.6
	(−3.86)	(−3.83)	(−3.59)	(−2.00)		
JS	⁑−0.422	⁑−0.399	—	—	滿足度	63.11
	(−2.40)	(−2.21)	—	—		
JSE	—	—	⁑−0.728	—	滿足度	27.89
	—	—	(−2.05)	—		
JSI	—	—	—	⁑−0.586	滿足度	34.81
	—	—	—	(−1.76)		
LU	−1.279	⁑−2.081	⁑−2.057	⁑−2.052	1-0	0.49
	(1.17)	(1.90)	(1.88)	(1.86)		
TR	−0.440	*−2.071	⁑−2.135	*−1.980	1-0	0.45
	(0.31)	(1.61)	(1.66)	(1.53)		
UE	0.28	0.29	0.32	0.32	%	8.87
	(0.94)	(1.00)	(1.10)	(1.09)		
LC	−0.058	−0.067	−0.067	−0.052	件數	7.9
	(−0.60)	(−0.68)	(−0.68)	(−0.53)		
SCLS	⁑4.811	—	—	—	1-0	0.37
	(2.47)	—	—	—		
SCLM	0.496	—	—	—	1-0	0.43
	(0.28)	—	—	—		
R^2adj	0.205	0.147	0.143	0.137		
F	4.553	4.123	3.993	3.787		

註 : 1) N=150
2) 從屬變數 平均値 6.37.
3) ( )內는 *t*統計値.
4) *片側檢定 90%線 有意. ⁑片側檢定 95%線 有意.
資料 : KDI勞動移動調査.

31) $S=34,036-0.000024QW-0.401JS-2.078LU-2.112TR-0.294UE-0.076LC$
⁑(−2.34) ⁑(−2.21) ⁑(1.89) *(−1.63) (1.00) (−.77)
$R^2_{Adj}=0.138$ $F=3.83$
* 片測檢定 90%有意.
⁑ 片測檢定 95%有意.

職率을 줄이기 위한 賃金政策이 만약 必要하다면 25%未滿 下位職種의 賃金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 全般的인 賃金引上보다 더욱 더 效果的이리라는 점이겠다.

다음 從業員들의 平均 職場滿足度와 離職率 사이에는 강한 負的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높은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負的相關關係를 發見했다는 事實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離職의 상당한 部分이 解雇등과 같은 非自發的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離職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미네소타」職場滿足測定道具는 20個項目이지만 그 중 일부는 소위 成就感, 責任感, 昇進機會, 作業內容, 認定等과 같이 積極的 滿足要因(Job Satisfier 또는 Intrinsic Factor라고 하며 이는 주로 일 自體와 直結된 要因들임)이고 기타項目은 社示 또는 行政管理上司와의 關係, 賃金, 對人關係 및 勤勞條件과 같은 消極的 要因 또는 不滿要因(Job Dissatisfier 또는 Hyginene Factor 또는 Extrinsic Factor라고 함)들로 二大別 할 수 있다[32].

前者와 後者를 區分해서 各各의 離職率 說明力을 方程式 Ⅲ과 Ⅳ에서 比較해 보았다. *JSI*의 *t*統計値로 보아 積極的 滿足要因(positive motivator)의 不足으로 인한 離職도 方程式Ⅳ에서 存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消極的 要因(衛生的 要因)에 관한 不滿度와 離職率사이에 더욱 더 강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方程式Ⅲ에서 알아볼 수 있다[33]. 이로써 풀이할 수 있는 것은 專門職 또는 管理職從業員과는 달리 生產職從業員의 離職率을 낮추자면 적어도 現產業構造下에서는 成就慾求의 滿足을 위한다거나 職務의 多樣化나 責任感의 强化등과 같은 積極的 滿足要因改善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賃金이나 勤勞條件 및 上司 및 同僚와의 人間關係改善을 통한 消極的(즉 衛生的)不滿要因除去를 통해 더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方程式Ⅰ에서는 規模變數의 從屬變數와의 相關關係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와 相關關係가 있는 其他獨立變數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實際 事業體의 規模란 것이 獨立的으로 意味를 賦與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規模와 關係가 깊은 他獨立變數의 영향을 규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系列相關을 배제하기 위해서 其他方程式에서는 規模變數를 除外해 버렸다.

그 結果 勞動組合變數의 回歸係數는 95%線에서 統計的有意性을 나타내게 되었다. 풀이를 한다면 勞動組合이 있는 會社일 경우 組合이 結成되지 못한 業體보다 2.07%「포인트」 더 離職率이 낮을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34]. 그 같은 組織業體의 低離職率이 經營者의 解雇를 防害함으로써 얻은 結果일 수도 있고 강한 團結力과 歸屬感으로 인한 自發的 離職의 減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前節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1979年 3月이면 아직 景氣下落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때이고 보면 使用者로부터 解雇의 必要를 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77, 78年의 景氣過熱로 인한 人力難을 아직도 피부로 느끼고 있던 처지였으므로 勞組가 구태여 解

32) 二個要因論에 관해서는 그 創始者의 著書 Frederick Herzberg, Bernard Mausner and Barbara B. Snyderman, *The Motivations to Work*, N.Y.: Wiley, 1967 參照.

33) 離職率과의 單純相關係數는 JSI와는 −0.14이고 JSE와는 −0.17이었음.

34) 同標本에 나타난 結果에 의하면 勞組結成業體와 未結成業體의 平均 離職率은 各各 3.29%와 7.37%이다.

雇를 防止했어야 할 必要도 없었다. 그렇고 보면 勞組가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 勞組들이 鬪爭的이기보다 協調的 幹部에 의해서 지도되어 옴으로 인해 自發的 離職率까지도 낮춘 것이라는 假說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社內訓練回歸係數는 비록 t統計値가 낮기는 하지만 片側檢定의 結果 90%線에서 有意하게 나타났다. 本硏究에서 지적된 社內訓練이 一般的 技能(general skill)인지 會社固有의 技能(specific skill)인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事業體 訓練은 後者를 强調하는 것이 普通이고 그래야 비싼 訓練費用도 正當化할 수 있다는 原則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난 바 社內訓練을 實施하는 業體일수록 離職率이 낮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흔히 듣는 바 「訓練을 시켜놓으면 他社에로 스카웃해 가버리니 訓練은 浪費로 끝난다」고 하는 말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흔히 社內訓練을 통해 支出되는 人力投資費用을 마치 企業의 社會的責任을 다하는 것인양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역시 企業의 屬性을 無視한 채 企業行爲를 너무 美化한 것이라 생각된다. 企業이 自己人力에 投資하는 것은 一次的으로 企業自體의 人的資産을 富하게 만듦으로써 生産性을 提高하고 利潤을 높이겠다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國家社會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企業內의 訓練이 他會社로 옮아가서도 使用되는 一般的 技能의 訓練을 强調하지 않고 그 企業特有의 技能訓練에 集中的으로 投資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離職率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事業場이 存在한 勞動市場(市 또는 道)의 失業率을 써보았으나 回歸係數가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못할 뿐더러 符號조차 豫想했던 것과는 反對이다. 勞使協議會件數도 비록 回歸係數의 符號는 豫想했던대로라 하더라도 統計的으로 有意線에 들지 못하였다.

V. 結　　論

本論本에서는 企業間 勞動移動의 一面이라 할 수 있는 離職率에 관하여 國際比較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企業別離職率의 決定要因을 分析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離職率이 높은 會社의 經營者들이 日本企業의 낮은 離職率을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해서 日本式 平生雇傭制度를 導入하면 당장 離職率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이겠다. 半世紀以上을 통해서 進化해온 남의 나라 制度를 移植한다는 것이 不可能할 뿐더러 第Ⅲ節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平生雇傭制와 並行한 日本內部의 社會的 犧牲역시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日本式 平生雇傭制를 모방하는 것만이 離職率을 낮추게 하는 유일한 方法일 수는 없다. 平生雇傭制가 오히려 낮은 離職率의 結果이리라는 論理역시 可能하겠지만 그것은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大正時代以前에는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았던 離職率이 점차 낮아지게 되고 平生 雇傭制가 定着하게 된 몇가지 要因을 살펴보았다.

社會的·文化的 要因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

니겠으나 이보다는 二次大戰時의 勞動力不足現象과 戰後 民主改革期의 專門經營人의 登場 및 勞動組合活性化를 통한 產業民主化로 인해 오늘날 日本의 平生雇傭制가 定着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해 준다.

우리나라 資料를 分析한 結果에서도 그와 類似한 論理의 展開가 可能함을 알게 되었다. 生產職 離職率의 回歸分析結果 生產職 從業員의 賃金水準이 낮은 企業일수록 離職率은 높고, 從業員의 職場滿足度가 낮은 企業일수록 離職率은 높고, 勞動組合이 結成되어 있는 企業일수록 離職率이 낮으며, 社內訓練을 實施하고 있는 企業일수록 離職率이 낮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우리나라 製造業體 分析에서 얻은 實證的 結果와 日本企業들이 경험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一致點이 있다고 하겠다. 人力不足경험이란 것과 低賃金 解消가 그렇고 專門經營者陣에 의한 近代的 經營哲學의 實現이란 것과 職場滿足度의 提高 및 社內訓練을 통한 人力資源에의 投資가 離職率을 낮춘다는 事實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產業民主化라는 것과 勞動組合이 있는 企業의 離職率이 더 낮다는 事實사이에는 뚜렷한 共通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離職率을 낮추고자 하는 企業家들은 이러한 事實을 감안하여 人力經營의 近代化를 促進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初代經營者들이 그러했듯이 家父長的 權威主義와 溫情主義에 의해서 組織을 運營함으로써 日本을 본받고 離職率도 낮춰보겠다는 생각은 극히 素朴한 舊時代의 遺物이다. 本論文에서 日本式平生雇傭制의 否定的側面을 많이 지적했지만 좋은 點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西歐學者들이 日本의 平生雇傭制를 事實以上으로 美化하고 오늘날 日本의 經濟發展相이 마치 그것때문에 可能했던 것처럼 과장하는 皮相的인 觀察에 대해 異論을 提起하고 西歐人들의 日本禮讚論에 眩惑되어 있는 東洋人에게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大企業들에 있어서 第二世들의 出現이 눈에 뜨이고 專門經營人의 進出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期待하는 바는 脫西歐와 脫日本을 同時에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 新進指導者들은 새 產業社會에 알맞는 價値觀을 세우고 舊時代의 非能率的惰性에서 과감히 벗어나 合理的인 經營哲學에 기반을 두고 健全한 競爭社會風土의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날로 水準이 높아가고 있는 勤勞者들의 期待를 滿足시켜 줄 수 있을 것이요, 資本主義本然의 能率化를 가져오고 競爭力를 배양케 될 것이다. 第二의 經濟挑躍은 이같은 人力經營哲學의 革新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本硏究에서는 內部勞動市場要因은 그나름대로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합쳐서도 겨우 20% 未滿의 離職率變異(variation)를 說明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 以外의 要因들이 다수 있을 것은 事實이다. 外部勞動市場與件이 離職率에 미치는 영향과 離職率의 高低가 產業構造와 어떤 關係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硏究課題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KDI, 1978.

_____,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KDI, 1976.

金滉嵲, 「産業別 離職率의 決定要因分析」, 『勞動經濟論集』, 第2卷 第1號, 1978年 9月.

安春植, 「韓・日 勞務管理의 比較硏究」, 『經營會報』, 韓國經營者總協會, 1981. 6. 25日字.

_____, 「韓國勞務管理の基本性格 — 終身雇傭制の形成基盤の日・韓比較硏究—」, 慶應義塾大學大學院, 1980, 學位論文 참조.

Abegglen, James, C., *The Japanese Factory: Aspects of Its Social Organization,* Glenco Ill: Free Press, 1958.

Bass, Bernard, M. and James, A., Vaughan., *Training in Industry: The Management of Learning,* Belmont Calif.: Wadsworth, 1966.

Becker, Gary, S., *Human Capital,* N.Y.: NBER, 1964.

Bragfield, Arthur, H. and Walter, H. Crockett, "Employee Attitude and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Vo. 52, No.5.

Cartter, Allan, M., *Theory of Wages and Employment,* Homewood, Ill.: Irwirs, 1959.

Cole, Robert, E., "Permanent Employment in Japan: Facts and Fantas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26, No.1, October 1972.

Herzberg, Frederick and Bernard Mausner and Barbara, B. Snyderman, *The Motivations to Work,* N.Y.: Wiley, 1967.

Koji, Taira,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Columbia Univ. Press, 1970.

Koji, Taira,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bor Marke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10, Jan., 1962.

Lawler, III. Edward, E. and Lyman, W. Porter, "The Effect of Performance on Job Satisfaction", *Industrial Relations,* Vol.7, No.1, Oct., 1967.

McGehee, William, and Paul, W. Thayer, Training in Business and Industry, N.Y.: Wiley.

Oaka, Konosuke., "The Japanese Labor Market", Hugh Patrick and Henry Rosovsky (eds.),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6.

Oshima, Harry, T., "Reinterpreting Japan's Growth: The Ris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thcoming)

Ouchi, William, *The Theory Z,* Menlo Park Calif.: Addison Wesley, 1981.

Palmer, Gladys, *Labor Mobility in Six Cities,* N.Y.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54.

Parnes, Herbert, 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abor Mobility", *A Review of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Vol.I. IIRA, 1970.

Sjaastad, Larry, A.,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upplement, Oct., 1962.

Stigler, George, J.,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2.

Vroom, Victor, H., *Work and Motivations,* N.Y.: Wiley, 1964.

Vogel, Ezra,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 Harrow, 1980.

Whithill, Jr. Arthur, M. and Shin-Ichi Takezawa, *The Other Worker: A Comparative Study in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8.

Yoder, Dale, Herbert, G. Heneman, Jr. and E.F. Cheit, *Triple Audit of Industrial Relations*, Minneapolis: Univ. of Minn. Press, 1951.

韓國의 人口·經濟模型을 통한 長期人口展望

具 成 烈

▷ 目 次 ◁

Ⅰ. 序 論
Ⅱ. 人口模型의 發展過程과 우리나라의 現況
Ⅲ. 模型의 設定 및 推定
Ⅳ. 人口政策의 效果分析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人口政策은 주로 家族計劃事業의 成功的 遂行에 힘입어 적어도 人口의 量的規制面에서는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移民事業과 人口分散事業은 事業의 內容이나 效果面에서 아직도 취약한 段階에 머물고 있으며 基幹이 되어온 家族計劃事業에 있어서도 당분간 加重的인 어려움이 豫想되고 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人口對策事業은 加一層 强化되어야 하겠으나 現在의 절박한 國內經濟與件으로 長期課題에 대한 政策優先順位는 낮아지는 데다 人口의 量的規制에 대한 그간의 成果로 말미암아 人口問題에 대한 一般의 認識은 차츰 얕아져 가고 있다.

人口問題에 대한 一般의 認識은 차치하고서라도 人口變數가 開發計劃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은 점차 增大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5個年開發計劃의 推移를 보면 初期의 經濟開發優先에서 점차 社會開發優先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經濟成長으로 인한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社會的 需要의 形態가 종래의 物的인 側面에서 環境, 雇傭, 保健, 敎育, 住宅등 점차 質的인 側面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5次5個年計劃이 產業보다는 社會開發을 强調하여 敎育, 住宅, 保健等 基本需要의 充足을 目標로 한 "社會·經濟開發計劃"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開發計劃에서 質的인 側面이 强調됨에 따라 주어진 計劃部門內의 微視的 혹은 構造的 側面이 追加的으로 考慮되어야 하기도 하는 한편 計劃의 細密化에 따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라 흔히 發生하기 쉬운 計劃部門間의 一貫性 또는 一致性(consistency)의 缺如에 특히 注意를 要하게 된다. 예컨대 人口部門計劃의 경우 종래 全國에 限定하였던 人口推計를 地域別로도 나누어 볼 必要性이 있으며 隣接部門인 敎育·經濟活動등 人力部門과는 물론 產業開發部門과도 相互調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本 硏究는 開發計劃面에서의 이러한 側面을 巨視的 人口·經濟模型을 통하여 적절히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將來人口를 豫測하고 人口에 關聯된 諸般政策이 갖는 效果를 模疑分析(simulation)을 통하여 살펴 봄으로서 人口政策의 立案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人口問題에 대한 意識鼓吹를 그 目的으로 한다. 模型을 통한 分析은 相互複雜하게 얽혀있는 經濟變數와 人口變數間의 關係를 보다 現實的이고 包括的인 側面에서 分析을 可能케함으로써 本硏究의 目的에 符合되는 方法으로 보이며 종래 사용되어온 단순한 人口豫測方法은 本 硏究의 意圖하는 바를 充足시키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 硏究는 人口問題의 分析에 焦點을 맞춤으로서 模型의 設定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限界點을 갖는다. 첫째, 經濟部門模型은 그 規模와 複雜性의 정도가 人口部門模型과 對等한 水準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實物經濟變數의 分析에 限定하였다. 따라서 通貨, 物價등 貨幣經濟變數는 除去되었으며 實物經濟變數에 있어서도 短期變動보다는 長期趨勢를 적절히 考慮하는 정도에 그쳤다. 둘째, 敎育, 保健, 住宅등 基本需要에 關聯된 部門은 각각을 하나의 小部門으로 간주하여 模型을 展開할 수도 있으나 現模型의 均衡上 關聯人口指標로 대신하는 정도로 그쳤다. 세째, 人口部門에 있어서도 地域別 區分은 主要地域 혹은 主要都市別로 細分하여 볼 필요가 있으나 都市·農村의 地域區分에 限定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限界點은 硏究의 課題가 具體的으로 주어지면 現在의 模型을 좀더 細分化함으로써 充分히 對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 硏究는 模型을 통한 人口關聯政策의 效果分析을 試圖하는 하나의 始發點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人口問題를 經濟學的인 側面에서 理論的으로 혹은 實證的으로 分析한 模型의 發展過程을 槪觀하고 우리나라의 人口推計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았다. 第Ⅲ章에서는 模型을 人口, 敎育과 經濟活動, 國民所得의 決定과 雇傭의 3大部門別로 나누어 推定한 結果를 要約하였으며 第Ⅳ章에서는 基本人口展望値를 提示하고 家族計劃事業, 移民事業, 人口分散事業등 諸人口政策이 각기 다른 「시나리오」 아래에서 나타내는 效果를 基本展望値에 對比分析하고 第Ⅴ章의 結論에서 向後人口政策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Ⅱ. 人口模型의 發展過程과 우리나라의 現況

人口는 長期的으로 볼 때는 生產要素의 하나인 勞動力의 供給源으로서 主要한 分析對象으로서 取扱되어 왔으나 短期的으로 볼 때는 큰 變動이 없으므로 大體로 分析對象에서 除外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歷史的으로 볼 때는 古典學派 經濟學에 있어서는 주로 長期分

析이 爲主이어서 人口도 分析의 對象이 되었다. 그러나 新古典學派의 經濟學에서는 限界分析(marginal analysis)의 導入과 함께 分析이 部分的, 短期的이 됨에 따라 人口는 外生變數로 取扱되거나 아예 分析對象에서 除外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最近 開發途上國에서의 爆發的인 人口增加는 이러한 趨勢를 急轉시켜서 종래의 輕視되어 오던 人口分析을 하나의 學問的 領域으로 이끌어 올리기에 이르렀다. 本節에서는 古典學派의 人口分析과 最近의 人口分析을 特히 「模型을 통한 分析」의 立場에서 吟味하여 보고자 한다.

1. 古典學派의 人口分析

다른 어떤 經濟學部門에서나 마찬가지로 人口部門에 대한 分析에서도 「아담·스미드」에게서 그 根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古典學派의 人口分析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말사스」(1798)에 의하여 代表되어 진다. 「말사스」는 產業革命의 初期, 人口變遷(demographic transition)의 初期를 時代的 背景으로 하여 悲觀論을 展開하였다. 즉, 自然資源의 賦存限界性때문에 있어나는 收穫遞減의 法則과 人口의 自然增加 法則을 假定하여 食糧은 算術級數的으로 增加하는 反面 人口는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함으로서 自發的으로 結婚을 延期한다거나 獨身生活을 營爲하는등 이를 事前的으로 防止하지 않는 限(preventive check) 貧困, 疾病, 戰爭등을 통한 死亡率의 增加(positive check)가 不可避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사스」의 人口論은 產業革命以後의 急速한 技術革新를 豫期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高出產, 高死亡이라는 人口變遷의 初期的인 特徵만을 想定하였을 뿐 死亡率·出產率이 약간의 時差를 두고 激減한 人口變遷의 後期的 現象도 豫期치 못했다는 批判을 免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人口論은 長期的 經濟成長過程에서 人口와 經濟를 관련지움으로써 「리카도」등에 의하여 展開된 古典學派의 經濟成長理論에서 人口를 經濟成長의 內生的 要因으로 體系化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즉, 古典學派에 의하면(Bilsborrow, 1976 ; p.30) 生活水準의 向上은 人口 및 勞動力의 增加를 招來하고 勞動力의 增加는 다시 生產을 增大시킨다. 그러나 生產은 勞動力의 增加率만큼 빠른 率로 增大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食糧의 增產을 위하여서는 劣等地를 개간하는 수 밖에 없으며, 둘째, 土地의 制限性때문에 생기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기 때문에 勞動의 生產性은 漸減하기 때문이다.

2. 最近의 人口分析模型

古典學派의 成長理論과는 對照的으로 그 후의 成長理論은 人口를 外生變數로 看做하거나(Swan, 1956; Solow, 1965) 아예 模型에서 除外하는 등(Harrod, 1948 ; Domar, 1957) 成長에서의 人口要因을 輕視하는 傾向이 있다. 이는 이러한 理論이 支配的이었던 期間中 지금의 先進國中 대부분이 人口變遷을 經驗하였다는 事實을 두고 볼 때 지극히 「아이러니컬」한 점이기도 하다.

최근의 人口經濟模型은 원래는 크게 세가지의 類型으로 開發되었다(Sigit, 1975 ; pp.2~11). 첫째는 Enke(1960), Zaidan(1968)등에 의하여 展開된 投資模型으로서 이는 出產防止

兒의 現在價値를 장래의 收益·費用系列을 할인함으로써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接近方法에 의하면 出産力減少는 하나의 投資事業으로 看做되고 이 事業의 費用은 出生防止로 인하여 희생된 장래소득의 흐름이며, 그 收益은 消費의 節約과 이로 인한 人當貯蓄의 增大로 看做하였다. 둘째는 Coale-Hoover(1958)와 Demeny(1965)에 의한 Harrod-Domar模型의 應用으로서 이들은 所得을 資本「스톡」과 限界資本係數의 函數로 보았다. 總投資는 經濟的 投資와 厚生的 支出로 區分하고 厚生的 支出은 人口의 規模 및 年齡構造의 函數로서 經濟的 投資에 비하여 所得에 대한 成長寄與度가 낮다고 보고 이 相對的 寄與度를 加重値로 하여 "等成長支出"(equivalent growth outlay)로 換算하였다. 所得은 資本係數와 "等成長支出"總額의 函數이며 投資의 財源으로서의 貯蓄은 所得과 人口의 函數이다. 따라서 人口增加는 첫째는, 貯蓄의 減少를 通하여, 둘째는, 總投資中投資效率이 낮은 厚生的 支出에의 比重을 높임으로서 所得의 成長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Enke(1967)와 Neuman-Allen(1967)등에 의한 新古典學派 模型의 應用으로서 이들은 Cobb-Douglas生産函數를 使用하였다. Enke(1967)는 技術發展을 時間의 函數로 하여 生産函數를 表示하였다. 勞動人口는 性別經濟活動參加率을 一定하다고 假定하여 人口의 函數로 보았으며 資本「스톡」은 人當所得水準의 函數인 貯蓄水準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人口는 直接的으로는 勞動力人口의 供給을 통하여 間接的으로는 貯蓄水準을 變化시킴으로서 所得水準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人口經濟模型은 最近에 이르러 經濟理論의 人口分野에로의 應用擴大와 더불어 開發計劃에서의 模型分析의 必要性등으로 模型의 質에 있어서나 規模에 있어서 커다란 發展을 보이고 있다. 特히 Lewis(1954), Fei-Ranis(1964)등에 의하여 展開된 都市·農村 혹은 農·非農으로 分類되는 經濟的 二重構造(dualism)는 農村으로부터 都市에로의 人口移動(migration) 現象을 模型에 導入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Becker(1960, 1973)등에 의한 結婚과 出産의 經濟學的 分析과 1960年代初期에 開發된 人間資本理論(Theory of Human Capital)등은 敎育·結婚과 出産등 종래 社會學의 범주에 속하던 領域을 經濟模型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理論의 展開는 1960年代에 고조된 각종개발계획수립—投資, 雇傭, 敎育, 保健, 住宅, 家族計劃, 地域經濟開發등—의 必要性과 더불어 大規模模型을 낳게 하였는바 TEMPO模型(Enke, 1967), 美國센서스局의 長期計劃模型(Long Range Planning Model), Illinois大學의 「人口動態그룹」模型(The Population Dynamics Group Model), FAO/UNFPA模型, Suits-Mason模型(Suits and Mason, 1978)등은 그 例이다.

3. 우리나라의 現況

우리나라의 경우 政策變數의 關心變數에 대한 效果를 分析할 수 있는 計量模型은 經濟部門에 關한 限 比較的 多樣하게 展開되어 왔다. 그러나 大部分의 經濟模型은 短期豫測爲主로 개발되었으므로 人口要因을 外生으로 다루고 있으며 經濟部門과의 相互關聯體系아래서 人口部門을 經濟部門에 對應되는 하나의 部門으로 다루고 있는 長期豫測模型은 아직

開發되고 있지 않은 實情이다. 그러나 經濟豫測模型이 多樣하게 開發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豫測模型의 範周로 간주하기에는 힘드나 人口推計는 多樣하게 試圖되어 왔다. 經濟豫測模型과 지금까지의 人口推計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前者는 人口要因을 外生으로나마 明示的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後者는 經濟變數를 明示的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人口를 包括하는 經濟模型 또는 經濟變數를 包括하는 人口豫測模型, 다시 말하면 綜合的 豫測模型의 開發이 미진한 實情이다. 그러나 그간 4次에 걸쳐 推進되어온 開發計劃은 人口와 經濟의 相互關聯體系를 明示的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으나 實證的으로는 이러한 體系를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또 점차 明示化되어 오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人口對策事業 特히 家族計劃事業의 効果를 計量的으로 分析하려는 努力도 比較的 多樣한 側面에서 試圖되어 왔으나 아직도 人口·經濟要因을 相互關聯體系아래서 分析한 例는 거의 全無한 實情이다(KIFP, 1977, 1981).

人口政策의 効果分析을 위한 模型이 開發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래인구를 推計하려는 노력은 多樣한 形態로 不斷히 추구되어 왔다(金鍊, 1961 ; 崔仁鉉, 1963 ; 高甲錫, 1965 ; 人口問題硏究所, 1969 ; 朴來榮, 1971 ; Kwon et al., 1975 ; 金大泳, 1975 ; 洪思媛, 1978). 이들 推計의 資料는 대부분이 人口센서스를 基礎로 하고 있으며 推計期間은 10~100年까지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推計에 대한 基本假定은 주로 出產力과 死亡力에 대한 것으로서 出產力에 대한 假定은 60年代의 推計는 전부가 粗出生率에 대한 假定을 기초로 하는 반면 歲別出產力에 대한 假定을 기초로 하는 推計는 75年이후에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出產力에 대한 信憑性있는 資料가 75年이전에는 不足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出產力과 死亡力에 대한 假定以外에는 최근에 와서 移民率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人口의 地域別 推計는 試圖되기는 했으나 地域間 人口增加率 差異에 대한 假定을 새로이 追加함으로써 단지 地域別 總人口만 提示하였을 뿐 出產力·死亡力의 地域別 推計를 근거로 한 地域人口推計에는 이르지 못하였다(洪思媛, 1978 ; 金大泳, 1975)

出產力에 대한 假定에 있어서나 地域別 人口推計를 試圖한 점에서 最近의 人口推計는 初期의 人口推計에 비하여 接近方法에 있어서나 推計의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單純한 推計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脫皮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出產力과 死亡力에 대한 水準의 變化를 豫測可能한 社會·經濟的 要因에 結付시킴으로서 主觀的 假定에 根據한 推計보다는 客觀的 豫測을 指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推計의 範圍를 연장하여 人口移動과 人口의 地域分布도 考慮에 넣어야 한다.

本 硏究는 종래인구추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短點을 改善하려는 하나의 試圖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Ⅲ. 模型의 設定 및 推定

1. 模型의 槪觀

本模型은 人口部門, 敎育과 經濟活動 部門, 經濟部門이라는 세개의 큰 部門으로 나누어진다. 人口部門에서는 性別·年齡別 地域別 人口($POP_{a,s,g}$)가 決定되며 敎育과 經濟活動 部門에서는 人口의 敎育水準($EDU_{a,s,g}$)과 經濟活動 水準($LFR_{a,s,g}$)이 決定된다. 한편 經濟部門에서는 國民所得($GNPX_j$ 및 VAD_i)과 雇傭水準($EMP_{g,i}$)이 決定된다. 模型의 흐름을 部門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 참조〕

(1) **人口部門**: 人當所得(PCY)의 水準에 따라 平均壽命의 水準(e_0^s)이 決定되고 이에 준하여 人口의 性別·年齡別 生殘率($Q_{a,s}$)이 決定된다. 이에따라 可姙期 女子人口가 決定되며 이는 歲別 出産力($AFR_{a,g}$)推定値와 더불어 豫測年度의 總出産兒表(BTH_s)를 決定한다. 歲別出産力은 政策目標로서 外生으로 주어지는 合計出産力(TFR_g)의 水準과 人口의 敎育水準($EDU_{a,s,g}$) 및 所得水準(PCY)의 函數인 平均出産年齡(ACB_g)에 의하여 그 構造가 決定되어진다. 總出生(BTH_s)과 總死亡(DTH_s)의 規模가 주어지면 外生으로 주어지는 海外移民($EMI_{a,s}$)을 除外한 全國人口가 性別·歲別로 결정된다. 人口의 地域間 配分(都市·農村)을 나타내는 都市化率(URB)은 勞動生産性(APL)의 函數로 決定되며 移動人口($MIG_{a,s}$)는 外生으로 주어진 性別·年齡別 移動率($M_{a,s}$)에 의하여 決定된다. 性別·年齡別·地域別 人口($POP_{a,s,g}$)는 外生으로 주어진 家口規模(FMS_g)와 더불어 地域別·年齡別 平均家口員數($FMS_{a,g}$)와 家口數(NFM_g)를 決定한다.

(2) **敎育과 經濟活動**: 敎育部門에서는 該當年度의 就學率(中·高校)(ENR)과 卒業率(高校)(EDU_{18})이 所得水準(PCY)과 人口構造(該當人口 對 成人人口 比率로서 敎育費 負擔을 나타냄)에 의하여 決定된다. 高校卒業年齡(18세)에 해당하는 人口의 卒業率(EDU_{18})은 外生으로 주어지는 構造式에 따라 성별·지역별로 다시 細分($EDU_{18,s,g}$)되며 해마다 旣成人口의 敎育水準($EDU_{a+1,s,g}$)으로 연결된다. 經濟活動 部門에서는 經濟活動參加率($LFR_{a,s,g}$)과 經濟活動人口($LFS_{a,s,g}$)를 決定한다. 經濟活動率은 男子의 경우 勞動生産性($APL_{g,i}$)과 年齡에 따라서, 女子의 경우 出産力, 就學率, 年齡에 따라서 決定된다. 性別·年齡別·地域別로 細分된 經濟活動參加率은 軍人($SOL_{a,g}$) 등을 除外한 民間人口와 더불어 經濟活動人口를 결정하며, 人口敎育構造와 더불어 經濟活動人口의 敎育水準을 決定한다.

(3) **國民所得의 決定과 雇傭**: 年年의 國民總生産(GNP)은 政策變數로서 外生으로 決定된다. 그러나 그 構成은 支出部門別($GNPX_j$), 附加價値生産部門別(VAD_i)로 內生的으로 決定된다. 支出部門은 民間消費(CON_p), 政府消費(CON_G), 投資(GCF), 輸出(XPT), 輸入(MPT)으로 構成되며 民間消費는 所得水準, 家口의 規模와 家口員의 年齡構造($FMS_{a,g}$)에 의하여, 政府消費는 民間消費에 比例하여 決定된다. 投資는 經濟成長率의 函數로서 輸出,

〔圖 1〕 模型 全體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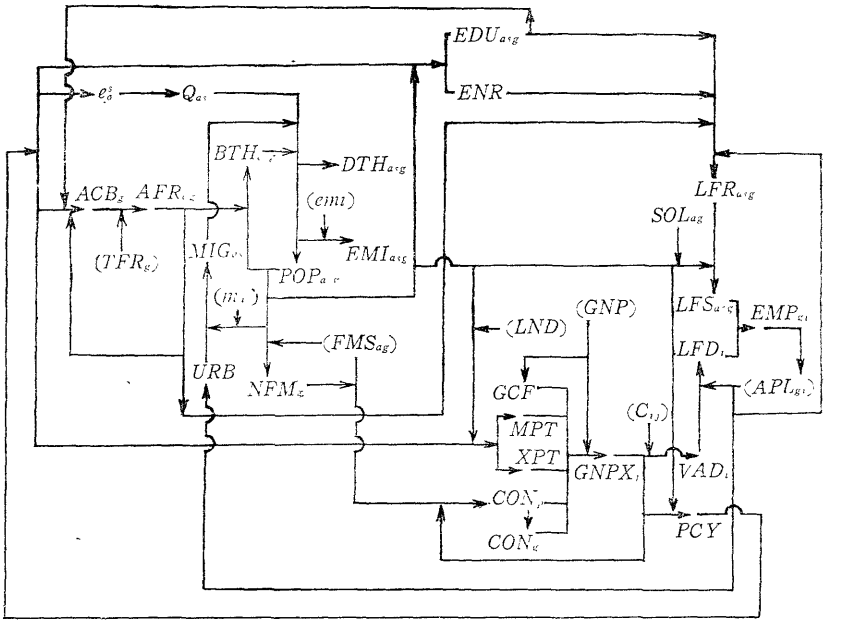

註 : 괄호안은 外生變數를 나타냄.

輸入은 人口規模와 所得水準의 函數로 決定된다. 支出國民所得의 規模와 構成($GNPX_j$)이 決定되면 外生的으로 주어진 附加價値 轉換行列(C_{ij})에 의하여 5개部門別(農水産, 輕工業, 重工業, 社會間接, 其他서비스)附加價値(VAD_i)가 算定된다. 雇傭部門에서는 産業別 附加價値를 3개 産業別(1차, 2차, 3차)로 豫測된 勞動生産性(APL_i) 水準으로 除함으로써 産業別 需要人力(LFD_i)을 求하고 經濟活動 部門에서 決定된 供給人力(LFS_g)과 關聯하여 産業別 就業人口(EMP_i)를 推定한다. 産業別 就業人口는 다시 外生的으로 주어진 「페턴」에 따라 地域別로 區分되어 地域別 就業($EMP_{g,i}$)과 平均生産性($APL_{g,i}$)이 最終的으로 決定된다.

2. 推定模型의 要約

模型의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使用된 變數의 內容과 資料源은 〈表 1〉과 같다. 단 推定係數 아래의 괄호내 숫자는 標準誤差를 나타낸다.

가. 人口部門

1) 平均壽命과 生殘人口

가) 平均壽命[1](女子) : e_0^f

$$ln(77.5-e_0^f)=4.8913-\underset{(0.097)}{0.34738X}$$

$$+\underset{(0.107)}{0.07435X^2D_2}-\underset{(0.095)}{0.25835X^3D_2}$$

$$+\underset{(0.042)}{0.040687[(X-0.5)^3D_1D_2}$$

1) 平均壽命의 推定은 世界各國의 橫斷分析資料를 使用할 수도 있겠으나 地域別模型生命表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地域別로 그 獨特한 페턴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人口의 體質的 特性面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대만과 일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表 1〉 使用된 變數의 內容과 資料源

記 號	單 位	內 容	資 料 源
ACB_g	歲	平均出產年齡	2
$AFR_{a,g}$	1,000名當率	歲別出產力 $a=15\sim44$	2
$APL_{g,i}$	100萬원	就業者 平均 生產性 $i=1\sim3$	1
$BTH_{s,g}$	1,000名	出產兒數	
(C_{ij})		最終需要(j부문)의 附加價値(i부문)轉換行列係數	3
CBR_g	1,000名當率	粗出生率	
CDR_g	1,000名當率	粗死亡率	
CON_G	10억원	政府消費支出	1
CON_P	10억원	民間消費支出	1
DPR_g	率	扶養人口比	
DTH_g	1,000名	死亡人口	
$EDU_{a,s,g}$	率	高校卒業人口의 比重 $a=18\sim$	4
(emi)	率	海外移民率(移民人口/全體人口)	
$EMI_{a,s,g}$	1,000名	海外移住者數	
$EMP_{g,i}$	1,000名	就業人口	4
enr	率	中高等學校就學率	1,5
e_0^s	歲	出生時 期待壽命	5,6,7
$(FMS_{a,s})$	名	平均家口員數	4,8,9,10
GCF	10억원	總固定資本形成	1,11
GNP	10억원	國民總生產	1
$GNPX_j$	10억원	支出國民所得 $j=1\sim5$	
LFD_i	1,000名	需要人力	
$LFR_{a,s,g}$	率	經濟活動參加率	4,12
$LFS_{a,s,g}$	1,000名	經濟活動人口	
(LND)	km^2	國土의 面積	1
$(m_{a,s})$		人口移動率指數	13
$MBTH_s$	1,000名	移動人口의 出產兒數	
$MIG_{a,s}$	1,000名	都市 純轉入人口	
MPT	10억원	總輸入額	1
MPT_C	10억원	商品輸入額	14
NFM_g	1,000家口	家口數	
NRR_g	名	人口의 純再生產率	
$POP_{a,s,g}$	1,000名	人口	15
$Q_{a,s}$	率	生殘率	16
PCY	1,000 $	人當 GNP	
RNI_g	1,000名當率	人口의 自然增加率	
$(SOL_{a,g})$	1,000名	軍人, 防衛兵, 在所者人口	3
SXR_g	率	性比(男子人口/女子人口)	
$(TFR_{a,g})$	1,000名當率	合計出產力	2
$UMPR_g$	率	失業率	17
URB	率	都市化率	4,8
VAD_i	10억원	產業別 附加價値 $i=1\sim5$	1
XPT	10억원	總輸出額	1
XPT_C	10억원	商品輸出額	14

〈表 1〉의 계속

註 : s=性(m=男, f=女), a=年齡, g=地域(u=市郡, r=郡部), i=產業, j=支出部門, $\dot{X}=X$의 年間增加率, $\tilde{X}=X$의 最初推定値

(　) 내의 變數는 常數 또는 時間(年度)에 의하여 그 水準이 豫測되는 外生變者임. 모든 金額은 1975年 不變價格임.

資料 : 1; EPB, 主要業務指標, 1980. 2; KIFP, 1978. 3; KDI, 硏究資料. 4; EPB, 人口센서스, 1960, 66, 70, 75. 5; Japan Stat. Yearbook, 1960~76. 6; Stat, Yearbook of R.O.C., 1977. 7; 洪思媛, 1978. 8; BOS, 常住人口調査報告. 9; BOS, 都市家計年報. 10;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1; UN Stat, Yearbook, 1978. 12; Kim, Sookon, 1974. 13; Kwon, 1975. 14; KDI 硏究資料(16개국자료 : 1965, 73, 75, 78). 15; BOS, 80年人口센서스 잠정추계치. 16; BOS, 인구추계자료. 17; BOS, 경제활동인구연보, 1979.

$$+(0.75X-0.125)(1-D_2)]$$

$$\underset{(0.0017)}{-0.038783}(T-1900)$$

$R^2=0.9846,\ n=40$

$X=0.5735\cdot PCX-1$: 0.5735는 75年 價格을 70年不變價格으로 바꾸는 係數임.

$D_1=1\ if\ -0.5<X\leq 0,$

$D_2=1\ if\ X\leq 0$

나) 生殘率($Q_{a,s}$)[2]과 男子平均壽命(e_0^m)

$$Q_{a,s}=Q_{a,s}^L+(Q_{a,s}^{L+1}-Q_{a,s}^L)\cdot\frac{e_0^f-e_0^{f,L}}{e_0^{f,L+1}-e_0^{f,L}}$$

$$e_0^m=e_0^{m,L}+(e_0^{m,L+1}-e_0^{m,L})\cdot\frac{e_0^f-e_0^{f,L}}{e_0^{f,L+1}-e_0^{f,L}}$$

L은 生命表水準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e_0와 e_0^L간에는 $e_0^L\leq e_0<e_0^{L+1}$의 관계가 있음.

다) 1세 이상 生殘人口 : $\widetilde{POP}_{a,s,g}$

$$\widetilde{POP}_{a,s,g,t}=POP_{a,s,g,t-1}\cdot(Q_{a,s,t-1}\cdot Q_{a,s,t})^{0.1}$$

2) 出產力과 0세 인구

가) 合計出產力 : TFR_g

$$ln(TFR_g-2)=\underset{(0.837)}{6.86119}+\underset{(0.0873)}{0.668153}D_r$$

$$\underset{(0.0116)}{-0.0925494}(T-1,900)$$

$R^2=0.853,\ n=24,\ D-W=1.49$

나) 平均出產年齡 : ACB_g

$$ln(\widetilde{ACB}_g-27)=4.65019$$

$$+\underset{(0.324)}{0.523887}Dr-\underset{(0.309)}{1.39057}lnPCY_{t-1}$$

$$\underset{(0.176)}{+0.134464}\,ln\,EDU_{t-1}^{f,20-44}$$

$$\underset{(2.474)}{-1.53694}\,ln\,ACB_{t-1}$$

$R^2=0.891,\ n=28$

다) 歲別出產力 : $AFR_{a,g}$[3]

(1) $20\leq a<40$:

$AFR_a=TFR\cdot f_a$

$f_a=(F_{a+1}-F_a)D+0.2(F_{40}-F_{35})(1-D),\ D=1\ if\ a<35$

$F_a=\{1+exp[Z(ln\,TFR-3.5)]\}^{-1}$

$Z=-0.57841+4.5206X+3.5155X^2+0.037605X^2\cdot ACB+131.66X^3+\{-163.17X^3+[74.124(X-0.15)^3-82.318(X-0.3)^3D_3]D_2\}D_1$

$X=a/ACB-0.85$

$D_1=1\ if\ X>0,$

$D_2=1\ if\ X>0.15,$

$D_3=1\ if\ X>0.3$

(2) $a<20$

$AFR_a=0.04\cdot(2a-29)\cdot F_{20}\cdot TFR$

2) 1978~79년간 CDS조사(조사통계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생산율패턴이 종래 가정되어오던 것과는 달리 「西部地域模型生命表」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調査統計局의 推計資料를 基礎資料로 利用하였다.

3) 歲別出產力函數는 East-West Population Inst.의 Andrew Mason에 의한 推定結果임.

(3) $a \geq 40$

$$AFR_a = 0.2 \cdot (1 - F_{40}) \cdot TFR$$

라) 出産兒數($BTH_{s,g}$)와 0세 生殘人口 ($\widetilde{POP}_{0,s,g}$)

$$BTH_{t-1} = \sum_{a=15}^{44} AFR_{a,t-1} \cdot POP_{a,f,t-1}$$

$$BTH_t = \sum_{a=15}^{44} AFR_{a,t} \cdot \widetilde{POP}_{a,f,t}$$

$$BTH = 0.5(BTH_{t-1} + BTH_t)$$

$$BTH_m = 0.512BTH,$$

$$BTH_f = 0.488BTH$$

$$\widetilde{POP}_0 = 0.5(BTH_{t-1} \cdot Q_{0,t-1}^{0.25} \cdot Q_{0,t}^{0.5} + BTH_t \cdot Q_{0,t}^{0.25})$$

마) 死亡者數 : DTH

$$DTH = POP_{t-1} + BTH - \widetilde{POP}_t$$

3) 人口增加 指標(地域別)

$$CBR = BTH / [POP_{t-1} + POP_t] / 2000$$

$$CDR = DTH / [POP_{t-1} + POP_t] / 2000$$

$$RNI = CBR - CDR$$

$$NRR = \prod_{a=0}^{45} Q_{a,f} \cdot [D + AFR_a(1-D)]$$

$$D = 1 \ if \ a < 15$$

$$ACB = \sum_a a \cdot (AFR_a / TFR)$$

4) 人口의 地域的 配分과 移動

가) 都市化率(URB)[4)]

$$ln(1 - URB_t) = 1.77085 \ (0.0718) - 0.505249 \ ln \ APL_{t-1} \ (0.0155)$$

$$R^2 = 0.987, \ D-W = 1.4,$$

$$n = 16(1964 \sim 79)$$

$$POP_{u,t} = POP_t \cdot URB_t$$

$$POP_{r,t} = POP_t \cdot (1 - URB_t)$$

나) 人口移動($MIG_{a\ s}$)

$$MIG_t = POP_{r,t-1} + BTH_r - DTH_r - P\cdot OP_{r,t}$$

(1) $a \geq 1$

$$\widetilde{MIG}_{a,s} = m_{a,s} \cdot \widetilde{POP}_{a,s,r}$$

(2) $a < 1$

$$MBTH_{n,t} = 0.512MBTH_t$$

$$MBTH_{f,t} = 0.488MBTH_t$$

$$\widetilde{MIG}_{0,s} = (MBTH_{t-1} \cdot Q_{0,s,t-1}^{0.25} \cdot Q_{0,s,t}^{0.5} + MBTH_t \cdot Q_{0,s,t}^{0.25})/2$$

(3) 歲別 移動人口의 調整

$$k_t = MIG_t / \sum_a \sum_s \widetilde{MIG}_{a,s,t}$$

$$MIG_{a,s,t} = k_t \cdot \widetilde{MIG}_{a,s,t}$$

다) 海外移民

$$EMI_{a,s,g} = POP_{a,s,g} \cdot emi$$

라) 地域別人口 : ($POP_{a,s,g}$)와 構造指標

$$POP_{a,s,u} = (\widetilde{POP}_{a,s,u} + MIG_{a,s}) \cdot (1 - emi)$$

$$POP_{a,s,r} = (\widetilde{POP}_{a,s,r} - MIG_{a,s}) \cdot (1 - emi)$$

$$DPR = (POP_{14-} + POP_{65+}) / POP_{15-64}$$

$$SXR = POP_m / POP_f$$

5) 家口의 平均規模($FMS_{a,g}$)와 家口數(NFM_g)

$$ln(FMS_g - 2) = 2.48065 \ (0.0852) - 0.0180111(T - 1900) \ (0.00118) - 0.133433D_c + 0.149991D_r \ (0.0114) \ (0.0088)$$

4) Suits(1980)에 의하면 農家人口의 比率은 勞動生産性의 逆函數로 推定된다. 우리나라의 農家人口와 郡部人口간에 比較的 一定한 關係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郡部人口의 比率을 農家人口대신 使用하였다. 그러나 行政區域의 改編에 따른 都市化는 考慮하지 않았으므로 推定回歸係數의 過大推定이 다소 不可避하였으며 此後의 移動人口의 移動確率은 實際移動人口의 確率에 의하였으므로 여기서 推定되는 都市轉入人口는 實際보다 性別·年齡別로 다소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한 推計誤差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2=0.956,\ D-W=1.34,$

$n=32(1966\sim78)$

$D_c=1\ if$ 센서스 年度

$NFM_g=POP_g/FMS_g$

$FMS_{a,g}=POP_{a,g}/NFM_g$

나. 教育과 經濟活動

1) 教育

가) 中・高就學率 : enr

$$ln(1-enr)=-\underset{(0.1697)}{0.517014}+\underset{(0.122)}{0.672121}\,ln(POP_{13-18}/POP_{20+})-\underset{(0.0498)}{0.84053}lnPCY_{t-1}-\underset{(0.1016)}{0.194449}D_J$$

$R^2=0.9935,\ n=24$(한국・일본자료)

$D-W=0.934,\ D_J=$일본자료 더미

나) 高校卒業者比率 : $EDU_{a,s,g}$[5]

(1) $a=18$

$$ln(1-EDU)=\underset{(1.278)}{1.11217}+\underset{(0.255)}{0.0258019}\,ln\left(\frac{POP_{18}}{POP_{20+}}\right)-\underset{(0.0069)}{0.0192901}\,ln(T-1900)$$

$R^2=0.809,\ n=15,\ D-W=0.419$

$$ln\left(1-\frac{EDU_r}{EDU_u}\right)=\underset{(0.105)}{0.86828}-\underset{(0.00161)}{0.021569}(T-1900)$$

$R^2=0.928,\ n=16$(센서스 C-S자료)

$D-W=0.379$

$$ln\left(1-\frac{EDU_{f,g}}{EDU_{m,g}}\right)=\underset{(0.351)}{3.94283}-\underset{(0.00536)}{0.068231}(T-1900)-\underset{(0.0586)}{0.54936}D_u$$

$R^2=0.896,\ n=32$(센서스 C-S자료)

$D-W=0.411$

$$EDU_{18,u}=EDU_{18}/[POP_{18,u}/POP_{18}+(EDU_{18,r}/EDU_{18,u})(1-POP_{18,u}/POP_{18})]$$

$$EDU_{18,r}=EDU_{18}/[1-POP_{18,u}/POP_{18}+(EDU_{18,u}/EDU_{18,r})(POP_{18,u}/POP_{18})]$$

$$EDU_{18,g,m}=EDU_{18,g}/[POP_{18,g,m}/POP_{18,g}+(EDU_{18,g,f}/EDU_{18,g,m})(1-POP_{18,g,m}/POP_{18,g})]$$

$$EDU_{18,g,f}=EDU_{18,g}/[1-POP_{18,g,m}/POP_{18,g}+(EDU_{18,g,m}/EDU_{18,g,f})(POP_{18,g,m}/POP_{18,g})]$$

(2) $a>18$[6]

$$EDU_{a,s,r,t}=EDU_{a-1,s,r,t-1}$$

$$EDU_{a,s,u,t}=EDU_{a-1,s,u,t-1}\cdot\frac{(POP_{a,s,u,t}-MIG_{a,s,t})}{POP_{a,s,u,t}}+EDU_{a,s,r,t}\cdot\frac{MIG_{a,s,t}}{POP_{a,s,u,t}}$$

2) 經濟活動

가) 經濟活動參加率 : $LFR_{a,s,g}$[7]

(1) 男子市部 : $LFR_{a,m,u}$

5) 高校卒業者의 比率을 地域別로 區分하고 이를 다시 性別・年齡別로 區分하는데는 1975年 人口센서스에 나타난 年齡別「코호트」의 資料를 該當 卒業年度에 귀속시킴으로써 구하였다. 따라서 그간의 人口移動이 高等教育者 選擇性(Selectivity)이 높으면 높을수록 郡部의 高校卒業者比率은 過少推定, 市部의 高校卒業者比率은 過大推定되며 이러한 傾向은 移民의 露出期間(exposure period)이 보다 높은 나이 많은 연령계급일수록 深化된다.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면 都・農間 高校卒業者比率의 隔差는 實際보다 빨리 좁아지는 것으로 豫測되는 傾向이 있다.

6) 19세이상 人口의 고교졸업자 비율은 生殘率에 있어서 地域間, 教育水準別 隔差가 微微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였다.

7) 推定式에서 說明變數로서 就業率을 考慮하여 보았으나 非有意的이었다.

$$ln\left(\frac{LFR}{1-LFR}\right)=\underset{(0.0762)}{0.289336}+\underset{(0.0196)}{0.315758X_1}$$

$$+\underset{(0.2666)}{0.757779A\dot{P}L\cdot X_1}-\underset{(0.0136)}{0.011815X_2}$$

$$-\underset{(0.2519)}{0.70297X_3}-\underset{(0.2565)}{0.684345D_{60+}}$$

$$-\underset{(0.3142)}{1.25058D_{12.5,70}}-\underset{(0.3238)}{1.13448D_{27.5,70}}$$

$$-0.1D$$

$R^2=0.980, n=44$

$$X_1=(a-a_0)D_1$$

$$+(a_1-a_0)\left[(D_2+D_3)-\frac{a-a_2}{a_3-a_2}D_3\right]$$

$$X_2=(a-a_1)D_2$$

$$+(a_2-a_1)\left(1-\frac{a-a_2}{a_3-a_2}\right)D_3$$

$$X_3=\frac{a-a_2}{a_3-a_2}D_3$$

$D_1=1$ *if* $a<a_1$, $D_2=1$ *if* $a_1\leq a<a_2$

$D_3=1$ *if* $a\geq a_2$

$a_0=20$, $a_1=30$, $a_2=45$, $a_3=65$

D=계절조정 더미

$D_{60+}=1$ *if* $a>60$

$D_{22.5,70}=1$ *if* $T=1970$ and $20\leq a<25$

$D_{27.5,70}=1$ *if* $T=1970$ and $25\leq a<30$

$A\dot{P}L$=全産業就業者 平均生産性의 增加率

(2) 男子郡部 : $LFR_{a,m,r}$

$$ln\left(\frac{LFR}{1-LFR}\right)=-\underset{(0.0866)}{0.844238}$$

$$+\underset{(0.0157)}{0.414226X_1}+\underset{(0.1044)}{0.549658A\dot{P}L_1\cdot X_1}$$

$$+\underset{(0.0081)}{0.0161402X_2}+\underset{(0.2575)}{1.61805X_3}$$

$$-\underset{(0.1926)}{1.54526D_{60+}}-\underset{(0.2270)}{2.01028D_{22.5,70}}$$

$$-\underset{(0.2377)}{1.32499D_{27.5,70}}-0.15D$$

$R^2=0.990$, $n=33$

$a_0=15$, $a_1=25$, $a_2=45$, $a_3=70$

$A\dot{P}L_1$=農水産部門 就業者 平均 生産性 增加率

(3) 女子($20\leq a<45$)[8]

(가) 市部 : $(1-LFR_a)=\underset{(0.0286)}{0.6538}$

$$-\underset{(0.0082)}{0.0493D_{74,75}}-\underset{(0.0417)}{0.2376D_{20-24}}$$

$$+\underset{(0.0143)}{0.1243D_{25-29}}+\underset{(0.0113)}{0.1022D_{30-34}}$$

$$+\underset{(0.0106)}{0.0396D_{35-39}}$$

$$+(\underset{(0.0068)}{0.0256}+\underset{(0.04)}{0.19D_{20-24}})TFR_a$$

$R^2=0.980$, $n=25$

$D_{74,75}$=年度더미

$D_{20-24}\cdots$=年齡階級더미

(나) 郡部 : $(1-\widetilde{LFR_a})=\underset{(0.028)}{0.085}$

$$-\underset{(0.01)}{0.1162D_{74,75}}+\underset{(0.063)}{0.1149D_{25-29}}$$

$$+(\underset{(0.005)}{0.0698}+\underset{(0.017)}{0.319D_{20-24}}$$

$$+\underset{(0.002)}{0.0663D_{25-29}}+\underset{(0.003)}{0.0393D_{30-34}}$$

$$+\underset{(0.0025)}{0.0103D_{35-39}})TFR_a$$

$R^2=0.986$, $n=25$

(4) 女子 其他 年齡[9]

---

8) 市部의 경우 20~24세 계급을 제외하고는 전年齡階級에 대하여 出産力이 經濟活動率에 대하여 미치는 效果가 限界的으로(marginally) 一定함을 가정하였으며 郡部의 경우 25~29세 계급을 제외하고는 出産力이 零일때의 절편값이 年齡階級에 不問하고 一定함을 假定하였다.

9) 45세이상 女子 經濟活動率의 年齡「패턴」은 市部의 경우 주로 曲線의 기울기에 의하여, 郡部의 경우 절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5~19세 계급은 재학생비율이 經濟活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都·農 공히 (−30%)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재학생 비율과 고교졸업자 비율간에 거의 線型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高校卒業者 比率의 函數로 나타내었다.

(가) 市部

$$LFR^{45-60}_{a,f,u}=LFR^{40-44}_{u,f}+0.006$$

$$-\frac{a-47.5}{17.5}(LFR^{40-44}_{u,f}-0.087)$$

$$LFR^{60+}_{f,u}=0.059$$

$$LFR^{15-19}_{f,u}=0.555-1.4809TFR_a$$

$$-0.222EDU_{18-19,f,u}$$

$$LFR^{14}_{f,u}=0.175$$

(나) 郡部

$$\widetilde{LFR}^{45-60}_{a,f,r}=LFR^{40-44}_{r,t}-0.004$$

$$-0.036(D_{50-54}+3.1528D_{55-60})$$

$$\widetilde{LFR}^{60+}_{f,r}=0.333LFR^{55-59}_{f,r}+0.042$$

$$\widetilde{LFR}^{15-19}_{f,r}=0.7795-2.6879TFR_a$$

$$-0.4032EDU_{18-19,f,r}$$

$$\widetilde{LFR}^{14}_{f,r}=0.5LFR^{15-19}_{f,r}$$

나) 經濟活動人口 : $LFS_{a,s,g}$

$$LFS_{a,m,g}$$

$$=LFR_{a,m,g}\cdot(POP_{a,m,g}-SOL_{a,g})^{10)}$$

$$LFS_{a\,f,u}=LFR_{a,f,u}\cdot POP_{a,f,u}$$

$$LFS_{a,f,r}=(LFR_{a,f,r}-0.045)\cdot POP_{a,f,r}$$

: 0.045는 센서스와 써베이 활동율의 평균차이임.

다. 國民總生産의 決定과 雇傭構造

1) 國民總生産 : GNP_t

$$GNP_t=GNP_{t-1}\cdot e^{G\dot{N}P}$$

2) 最終需要의 部門別支出 : $\widetilde{GNPX_j}$

가) 消費支出(民間)[11] : CON_P

$$ln\left(\frac{CON_p}{X}\right)=-0.522177$$
$$(0.0209)$$

$$+0.787071\,ln\left(\frac{GNP}{X}\right)$$
$$(0.0227)$$

$R^2=0.990$, $n=14$(1966~79)

$D-W=0.8$

$$X=NFM\cdot(\sum_a U_a\cdot FMS_a)^{\theta}$$

$U_{0-2}=0.64286$, $U_{3-5}=0.65578$

$U_{6-13}=0.68456$, $U_{14+}=1$

$\theta=0.71092$

나) 消費支出(政府) : CON_G

$$CON_G=0.152532CON_P$$
$$(0.0016)$$

$R^2=0.987$, $n=19$(1961~79)

$D-W=1.16$

다) 總固定資本形成[12] : GCF

$$GCF_t=GCF_{t-1}\cdot e^{G\dot{C}F}$$

$$G\dot{C}F=G\dot{N}P+0.014D$$

$D=1$ if $1981<T\leq1986$

라) 商品輸出(XPT_C) 및 總輸出(XPT)

$$ln\frac{XPT_C}{POP}=-0.679178$$
$$(0.703)$$

$$+1.19483\,ln\frac{GNP}{POP}$$
$$(0.0374)$$

$$-0.199358\,ln\frac{LND}{POP}$$
$$(0.0474)$$

$$-0.283838\,ln\,POP$$
$$(0.0562)$$

$$+0.43538(1-D)$$
$$(0.131)$$

$R^2=0.8352$, $n=64$(各國資料)

$D=$65年더미

$$XPT=115.8+1.28945\,XPT_C$$
$$(56.3)\quad(0.027)$$

$R^2=0.993$, $n=19$(1961~79)

마) 商品輸入(MPT_C) 및 總輸入(MPT)

10) 15~19세(23), 20~24세(642), 25~29세(42), 30~34세(19), 35~39세(14), 40~44세(7), 45~49세(3), 計(750千名)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按分되었음.

11) 家口規模에 따른 消費支出의 彈力値(θ)와 14세이상 家口員의 消費를 1로한 家口員의 年齡階級別 消費率(U_a)은 1978年 都市家計調査 資料를 利用하여 우선 14세이상 家口員으로 구성된 家口만으로부터 θ와 엥겔彈力値를 反復推定에 의하여 구한후 이를 標本家口全體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서 推定하였다.

12) 1982~86年間 計劃資料, 1981年의 $G\dot{C}F$는 0.04를 적용.

$$ln\frac{MPT_C}{POP}=\underset{(0.468)}{1.30475}$$

$$+\underset{(0.057)}{0.941146}\,ln\frac{GNP}{POP}$$

$$-\underset{(0.0374)}{0.374635}\,ln\,POP$$

$$-\underset{(0.0315)}{0.158624}\,ln\frac{LND}{POP}$$

$$+\underset{(0.0872)}{0.37202}(1-D)$$

$R^2=0.897$, $n=64$(各國資料)

$D=65$年 더미

$$MPT=\underset{(33.3)}{-122.1}+\underset{(0.0107)}{1.25032}MPT_C$$

$R^2=0.999$, $n=19$(1961～79)

바) 部門別 支出國民所得의 調整 : $GNPX_j$

$$GNPX_j=\widetilde{GNPX}_j\frac{GNP}{\sum_j GNPX_j}$$

: $\widetilde{GNPX}_j$=調整前 支出國民所得 (CON_P, CON_G, GCF, XPT, MPT)

3) 附加價値 轉換行列$[C_{ij}]$[13]과 産業別 附加價値 (VAD_i)

$$C_{ij}=\widetilde{C_{ij}}/\sum_i C_{ij}$$

$$[VAD_i]=[C_{ij}][GNPX_j]$$

4) 雇傭 및 失業構造와 勞動生産性

가) 産業別 勞動生産性 豫測($\widetilde{APL_i}$)[14]과 需要人力(LFD_i)

農水産 : $\widetilde{APL_1}=\underset{(0.131)}{-0.176065}$

$$+\underset{(0.0003)}{0.0054083}(T-1900)$$

$$+\underset{(0.253)}{0.511565}\widetilde{APL}_{1,t-1}$$

$R^2=0.8639$, $n=16$(1963～78)

鑛工業 : $\widetilde{APL_2}=\underset{(0.65)}{-1.339}$

$$+\underset{(0.011)}{0.023853}(T-1900)$$

$$+\underset{(0.189)}{0.673587}\widetilde{APL}_{2,t-1}$$

$R^2=0.979$, $n=16$

社會間接 其他서비스 : $\widetilde{APL_3}=\underset{(0.518)}{-2.20595}$

$$+\underset{(0.0101)}{0.044088}(T-1900)$$

$$+\underset{(0.226)}{0.052478}\widetilde{APL}_{3,t-1}$$

$R^2=0.982$, $n=16$

$$LFD_i=VAD_i/\widetilde{APL_i}$$

나) 産業別 就業人口(EMP_i)[15]와 勞動生産性(APL_i)

$$EMP=\begin{cases}0.97\cdot LFS & if\ LFD\geq LFS\\ 0.5\cdot(LFS-LFD)+0.97\cdot LFD & if\ LFD<LFS\end{cases}$$

$$APL_i=\widetilde{APL_i}\cdot(EMP/LFD)$$

$$EMP_i=VAD_i/APL_i$$

$$APL=\sum_i APL_i\cdot(EMP_i/EMP)$$

다) 勞動生産性($APL_g{}'_i$)과 地域別 失業率

---

13) 最終需要의 部門別 支出을 産業別 附加價値로 轉換하는데는 産業別 附加價値를 部門別支出에 대하여 回歸分析함으로서 直接的으로 轉換係數를 推定하는 Kresge(1969)의 方法을 사용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時系列資料가 충분히 길지 못하며 部門別支出間의 多重共線關係때문에 有意的인 推定値를 얻기는 힘들다.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投入産出表」작성년도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지출의 산업별부가가치전환행렬을 출발점으로 하여 隣接年度의 轉換行列을 逐次的으로 調整推定한 KDI硏究資料를 土臺로 감소추세의 행렬계수는 $e^{\beta_0+\beta_1 T}$, 증가추세의 행렬계수는 $1-e^{r_0+r_1 T}$의 형태로 추정하였다.

14) 敎育部門에서 決定된 國民敎育水準이 勞動生産性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敎育水準의 향상이 産業別 就業者生産性에 미치는 純效果는 本模型의 體系에 관한 한 硏究가 必要하며 여기서는 일단 시간(T)에 의하여 그 추세와 技術發展등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15) 就業率은 초과수요下에서도 轉職, 情報不足등에 따른 마찰적失業(3%로 가정)을 除外한 水準에서 決定될 것이며 초과공급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過多한 求職者의 求職에 따라 마찰失業여지의 감소 및 기업가의 人力備蓄行爲등으로 就學率이 多少 上昇될 것이다. 여기서는 超過供給勞動力(마찰실업除外)의 50%가 이러한 형태로 吸收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UMPR_g)$[16]

$$UMPR_r = [UMPR - 0.0171 \cdot (LFS_u/LFS)]/[3.875 \cdot (LFS_u/LFS) + (LFS_r/LFS)]$$

$$UMPR_u = 0.0171 + 3.875 UMPR_r$$

$$EMP_r = LFS_r(1 - UMPR_r)$$

$$EMP_{r,1} = 0.94 \cdot EMP_1$$

$$EMP_{r,2} = 0.1 \cdot EMP_{r,1}$$

$$EMP_{r,3} = EMP_r - EMP_{r,1} - EMP_{r,2}$$

$$EMP_{u,i} = EMP_i - EMP_{r,i}$$

$$APL_g = \sum_i APL_i \cdot (EMP_{g,i}/EMP_g)$$

Ⅳ. 人口政策의 效果分析

本模型에서 外生的으로 決定되는 變數中 政策的으로 意味를 갖는 變數는 人口部門에서 合計出產力(TFR_g), 移民率(emi), 人口移動率($k \cdot m_{a,s}$)과 經濟部門에서 GNP成長率($\dot{GNP}$)과 附加價値 轉換係數(C_{ij})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經濟部門의 GNP成長率은 國民經濟의 量的擴大를 나타내는 한편 附加價値 轉換係數는 그 構造를 나타내는 指標가 되는데 經濟部門이 人口部門에 대하여 미치는 效果는 이들 두 指標에 대한 假定이 달라질 때 人口指標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봄으로서 分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此後의 課題로 하고 本稿에서는 人口部門의 主要 外生變數에 대한 假定이 달라짐에 따라 人口規模와 構成에 대한 諸指標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局限하기로 한다. 分析의 順序는 일단 旣存의 政策目標에 가장 符合되는 假定下에서 諸指標에 대한 基本展望을 提示한 후 模疑分析의 結果를 이와 比較檢討하기로 한다.

基本展望과 諸假定을 土台로 推計된 結果는 모든 內生變數에 대하여 細分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으나 이는 本稿의 主觀心事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推計된 結果中 主要指標만 附錄에 添附하였으며 本文에서는 附表에 提示된 指標中에도 核心이 되는 指標에 限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基本展望

GNP成長率과 移民率을 除外한 餘他의 政策變數는 이미 模型의 推定에서 時間의 函數(合計出產力과 附加價値 轉換係數) 혹은 勞動生產性의 函數(人口移動率)로서 그 基本的 趨勢가 推定되어 있다. 이러한 推定式에서 推計된 展望値가 基本展望値로서 看做될 수 있는 것은 過去의 趨勢値가 이미 政策의 介入效果分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向後의 政策方向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向後政策의 效果分은 趨勢線의 연장에 의하여 대체로 적절히 감안될 것이기 때문이다[17]. 移民率은 70~80年間의

16) 市部·郡部의 失業率推移를 資料가 具得可能한 農家·非農家의 推移로 대신 살펴보면 非農家失業率=0.0171+3.875農家失業率의 安定된 關係를 보인다. 都農區分을 農·非農資料로 대신하는 것은 인구센서스의 經濟活動人口의 市郡部區分과 經濟活動人口調査의 農·非農區分間에 深한 差異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產業別 就業人口의 地域區分은 ①農水產就業人口의 94%는 郡部에 屬하며 ②郡部就業人口中鑛工業에 종사하는 人口는 郡部農水產部門 就業人口의 10%에 該當한다는 두가지 가정에 의하여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66~75年間 센서스 資料의 地域別·產業別 就業者構成比를 根據로 한 것이다.

17) 第5次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인구부문계획(안)에 의하면 82~86年間 合計出產力의 目標水準은 2.6, 2.5, 2.4, 2.3, 2.3으로잡고 있는데 반하여 本稿에서는 2.63, 2.57, 2.52, 2.47, 2.43등으로 多少 높게 展望하고 있으나 그 差異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都市化率의 경우 前者(0.601, 0.615, 0.627, 0.640, 0.651) 보다 後者(0.594, 0.600, 0.610, 0.619, 0.629)가 多少 낮은데 그 部分的 理由로서는 前者의 數値가 目標水準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實積値와 5次5個年 計劃의 計劃値에 根據하여 總人口의 0.11% 水準으로 하였으며 推計期間中(1981~2050)不變으로 하였다. 그러나, GNP成長率은 1990年 까지는 5次5個年 計劃등을 참조하여 대체로 7% 내외[18]로 하였으며 2000年以後부터는 每 10年마다 0.5%씩 저하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基本展望〈表 2〉에 의한 合計出産力은 1981年 2.7, 1990年 2.3, 2000年 2.1로 單調減少하며 2010年 以後에도 거의 2.0에 接近함으로서 人口增加率은 1990年까지는 1.5% 內外의 水準에 머물다가 2000年 에는 1.0%, 이후 꾸준히 低下되어 2050年에는 負의 增加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그 結果 人口增加規模는 2000年까지의 20年間과 이후의 50年間이 비슷한 水準인 1,100萬 정도에 그친다. 純人口移動率은 1990年까지는 總人口의 1% 內外에 머물다가 이후 거의 每 10年마다 0.1%씩 低下되나 都市化率은 꾸준히 增大되어 推計期間의 마지막 年度인 2050年에는 91%에 달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扶養人口比는 1981年의 59.4%에서 1990年 50.7%로 앞으로 10年間은 현저히 低下되며 以後 低下幅이 둔화되어 2010年에 43.5%에 이르며 그후 다시 上昇될 것으로 展望된다. 人口構造의 이러한 變動에 따라 經濟活動人口의 規模는 2020年까지는 單調增加, 이후 單調減少함을 보이는데 이는 人口의 年齡構造變化에 더하여 經濟活動率이 2010年 以後 현저히 低下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失業率은 1990年까지는 5.3% 內外에 머물다가 이후 저하되어 2000年 以後에는 構造的 혹은 摩擦的 失業率 水準인 3%에 머물 것으로 展望된다.

2. 政府家族計劃事業의 效果

家族計劃의 實踐으로 인한 年年의 出産防止兒數는 대체로 前年度의 年齡別·方法別·避姙實踐人口(可姙期 女子)에 各方法別效率性과 家族計劃을 하지 않을 때의 潛在出産力을 고려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算出하여 볼수 있다.

〈表 2〉 基本展望에 의한 人口指標

		1981	1985	1990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38,707	41,191	44,457	50,239	54,467	60,095	60,321
人口增加率	1/1,000	15.2	15.8	14.6	10.0	7.2	1.9	−1.0
移民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産力	率	2.699	2.471	2.289	2.113	2.042	2.006	2.001
都市化率	率	0.587	0.619	0.665	0.733	0.787	0.867	0.911
純人口移動率	率	0.012	0.007	0.007	0.005	0.004	0.002	0.001
扶養人口比	率	0.594	0.542	0.507	0.482	0.435	0.505	0.551
經濟活動率	率	0.571	0.587	0.588	0.574	0.557	0.502	0.475
經濟活動人口	千名	14,793	16,782	18,542	21,181	23,465	24,073	23,131
(郡部)	千名	6,879	7,513	7,523	6,924	6,304	4,275	2,830
失業率	率	0.051	0.053	0.055	0.030	0.030	0.030	0.030

18) 81年 5.4%, 82~86年 7.5%, 87~90年 7.0%, 1991~2000年 6.0%.

즉 $B^t = \sum_i \sum_a P_{i,a}^{t-1} \cdot E_i \cdot \alpha$

B^t : t年度의 出產防止兒數

$P_{i,a}^{t-1}$: $t-1$年度의 年齡 a, 避姙方法 i를 使用하는 可姙期 女子人口數

E_i : 方法 i의 避姙效果(不姙術=1, IUD=0.9, Pill=0.7, 其他=0.6으로 假定)

α : 避姙을 하지 않을 때의 潛在出產率로서 대만의 경우에따라 0.328로 가정(*Sun*, 1975)

政府家族計劃事業에 의한 出產防止兒數는 總避姙實踐人口中 政府負擔에 의한 避姙實踐人口의 比率에 該當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며 이를 可姙期 女子人口 總數로 나누면 政府家族計劃事業에 의한 出產力低下分(ΔF)이 된다.

즉 $\Delta F = B_g^t \cdot (g^{t-1} / \sum_a P_a)$

B_g^t : 政府事業에 의한 出產防止兒數

g^{t-1} : 前年度의 避姙實踐人口中 政府負擔에 의한 避姙實踐人口

그러나, ΔF의 推定値를 100% 政府事業의 效果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政府支援이 없다면 從來 政府支援下에서 家族計劃을 實踐하고 있던 人口中 相當部分은 自費負擔으로도 계속 實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現在의 政府家族計劃事業의 支援을 받는 受惠者 全部가, 補助가 있기 때문에 家族計劃을 實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政府家族計劃事業이 폐지된다고 하여도 合計出產力이 당장 ΔF만큼 上昇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ΔF의 推定은 最近의 1개년에 限하지 않고 70年代 資料(가족계획연구원, 출산력조사보고서; 보사부)의 平均値(1.44)를 適用하였는데 이는 ΔF의 추세가 1972年 1.0, 1979年 2.0 등으로 계속 上昇하고 있으며 模疑分析의 始點이 1982年이므로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政府家族計劃事業이 中斷된다고 하여 出產力이 ΔF만큼 항상 높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從來의 受惠者中相當部分이 當年度에 自費負擔으로 轉向할 것이라는 假定과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도 歲月이 흐르면 차츰 自費負擔으로 轉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家族計劃事業이 中斷되는데 따른 出產力의 上昇分은 受惠者 全部가 自費負擔으로 轉向하는데 所要되는 適應期間과 年年의 適應率에 대한 函數로 看做할 수 있다. 이러한 函數關係는 實證的인 硏究를 통하여 보다 現實的인 假定을 모색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假定을 單純化하여 適應期間에 대하여만 (1) 5年 일 때와 (2) 10年 일 때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며 年年의 適應率은 適應期間에 均等分布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즉 適應期間 內에서의 適應率과 ΔF는 다음과 같다.

$$a_t = 1/\Delta T$$

$$\Delta F = 1.44\{1 - a_t(T-1900)\}$$

$$= 1.44\{1 - (T-1900)/\Delta T\}$$

a_t = 適應率

ΔT = 適應期間

T = 年度

가. 適應期間이 5年일 때(假定 $F-1$)

基本展望에서의 假定과 다른 점은 合計出產力의 水準이 都市·農村 다같이 政府家族計劃事業이 中斷된다고 假定하는 始點인 1982年부

터 政府家族計劃事業이 지속되었다면 寄與하였을 몫을 民間의 自費負擔으로 完全히 代替된다고 假定하는 1987年 前까지 基本展望에서의 合計出産力 水準보다 1.44의 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점이다. 出産力 水準에서의 이러한 差異로 인하여 人口規模는 1985年에 130萬名이 더 늘어나지만 追加的으로 出生된 人口가 可姙期 年齡에 充分히 到達하기 전인 2000年 이전에는 150萬名 내외의 差異에 머문다. 그러나 1982~86年間 追加的으로 出生된 人口가 完全히 可姙期에 접어드는 2010年에는 人口規模가 基本展望의 그것보다 223萬名 2030年에는 301萬名 2050年에는 384萬名으로 그 差異가 每 20年마다 거의 80萬名씩 더 벌어짐을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興味로운 점은 基本展望에서의 人口規模는 1985~2050年間 1.5倍 增加하는데 비하여 假定 $F-1$에 따른 人口規模 差 130萬名은 同期間 3倍 增加한다는 것으로서 人口成長의 잠재력이 年少人口의 規模에 크게 左右된다는 점을 示唆한다고 볼수 있다.

出産力 差異에 따라 扶養人口比는 追加的으로 出生된 人口가 靑年期(15세 이상)에 이르기 까지는 계속 增大되나 일단 靑年期에 든 以後부터는 오히려 減少하며 이후 이들의 生涯周期에 따라 增減을 反復하게 된다. 經濟活動率은 주로 出産力增大에 따른 可姙期 女子

〈表 3〉 假定 $F-1$에 따른 人口指標差

		1985	1990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1,299	1,552	1,532	2,232	3,007	3,842
人口增加率	1/1,000	5.9	−0.6	−0.3	2.2	0.5	−0.2
合計出産力	率	0.628	0.001	—	—	—	—
都市化率	率	0.007	0.000	−0.003	−0.005	−0.005	−0.003
純人口移動率	率	−0.002	—	—	—	—	—
扶養人口比	率	0.049	0.053	−0.009	0.001	−0.023	0.014
經濟活動率	率	−0.021	0.001	−0.008	0.004	0.006	−0.001
經濟活動人口	千名	−605	14	528	1,019	1,673	1,416
(郡部)	千名	−431	58	247	420	431	257
失業率	率	−0.017	—	—	—	—	—

〈表 4〉 假定 $F-2$에 의한 人口指標差

		1985	1990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1,582	3,318	3,860	4,854	7,394	9,675
人口增加率	1/1,000	9.5	5.2	−0.7	3.5	0.6	0.2
合計出産力	率	1.167	0.018	—	0.001	—	—
都市化率	率	0.011	0.004	−0.003	−0.010	−0.010	−0.007
純人口移動率	率	—	−0.001	—	—	—	—
扶養人口比	率	0.059	0.113	0.046	−0.015	−0.035	0.001
經濟活動率	率	−0.039	−0.021	−0.011	0.006	0.013	—
經濟活動人口	千名	−1,137	−679	677	2,388	3,773	3,528
(郡部)	千名	−809	−369	331	950	997	668
失業率	率	−0.023	−0.018	—	—	—	—

人口의 經濟活動率 低下 때문에 1985年까지는 基本展望의 活動率보다 낮으며 그 이후는 주로 追加的으로 出生된 人口가 成長함에 따라 發生하는 人口의 年齡構造의 差異에 따라 多少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經濟活動人口의 規模는 1985年 以後부터는 항상 基本展望에서보다 크며 失業率은 經濟活動人口의 減少에 따라 1988年까지는 基本展望에서보다 낮으나 그 以後는 差異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나. 適應期間이 10年일 때(假定 $F-2$)

假定을 달리하여 基本展望에서의 出產力趨勢가 政府家族計劃事業 이 中斷된 후 10年內에 民間의 自費負擔에 의하여 回復된다고 하였을 때 基本展望과의 人口規模 差異는 1990年에 332萬, 2050年에는 968萬으로 나타났다. 이는 假定 $F-1$의 規模差異보다도 1990年에 176萬, 2050年에는 583萬이 증가한 것으로서 適應期間의 長短이 出產力差異의 高低에 못지않게 重要함을 示唆하고 있다.

扶養人口比는 追加的인 出生人口의 成長에 따라 2000年까지는 基本展望보다 높다가 그 이후 오히려 낮아지며 經濟活動率은 이와 反對의 「패턴」을 보인다. 經濟活動人口의 規模는 1990年까지는 基本展望値보다 작지만 그 이후는 더욱 커지며 이에따라 失業率도 1990年까지는 基本展望値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海外移民

海外移民이 갖는 政策的 意義는 비단 國內人口問題의 解決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海外僑胞 送金을 통한 外貨獲得과 國際協力面에서의 基盤이 되는 등 經濟的·政治的 側面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移民이 人口政策的으로 갖는 效果 또한 移民의 量 뿐만 아니라 質的構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특히 開途國에서 先進國에로의 移民은 先進國의 質優先의 受民政策에 따라 開途國에서의 「頭腦流出」(brain drain)이 問題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質的側面을 度外視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諸側面은 現在의 模型體系 아래서는 適切한 分析을 할 수 없으므로 주로 國內人口의 規模에 대하여 미치는 效果에 대하여만 分析을 限定하기로 한다.

海外移民이 人口調節側面에서 갖는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①海外移民이 推計期間中 전혀 없는 경우와 ②1991年까지는 政府의 現政策目標대로 年間 0.11%의 移民을 送出하나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移民이 없는 경우의 두 가지 假定을 前提로 하였다.

가. 海外移民이 1982年부터 없을 때(假定 $E-1$)

海外移民이 없을 때 一定時點의 國內人口規模는 海外移民이 있는 경우보다 그 時點까지의 總移民人口가 國內에 남아 있었더라면 自然增加하였을 人口規模만큼 더 크다. 一定期間동안 移民으로 인한 國內人口의 減少分을 總移民人口로 나눈 比率을 海外移民의 人口調節效果를 나타내는 「乘數」(multiplier)라 할 때 이 乘數는 國內人口의 再生產率(net reproduction rate)이 1이면서 人口構造가 「停止人口」(stationary population)의 構造를 가질 때 1이 되며 주어진 人口構造下에서 出產力이 높을수록 死亡率이 낮을 수록, 커진다. 즉 乘數

는 國內人口의 自然增加率이 높을 수록 크게 마련인데 基本展望에 의한 自然增加率은 1985年의 1.69%로 부터 이후 單調減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海外移民이 갖는 乘數效果는 移民事業의 適用時期가 늦어질 수록, 작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基本展望에서의 海外移民에 대한 假定은 두 가지로 되어있다. 그 하나는 移民의 規模가 推計期間內에서 항상 國內人口의 0.11%에 該當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移民의 性別·年齡別·出身地域別 構成이 送出時點의 國內人口構造와 同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假定 아래서 海外移民으로인한 比較時點에서의 人口減少分(ΔP)은 移民人口의 人口構造가 國內人口와 같기 때문에 潛在的 自然增加率이 國內人口와 같으며 一定比率의 國內人口를 每年 送出하므로 比較時點의 移民人口에 比較期間(ΔT)만큼 곱한 것이 된다.

즉 $\Delta P_T = \alpha \cdot \Delta T \cdot P_T = \alpha \cdot \Delta T \cdot P_0 \prod_{t=1}^{T} [(1+RNI_{t-1})(1-\varepsilon)]$

왜냐하면 $P_T = P_0 \prod_{t=1}^{T} [(1+RNI_t)(1-\varepsilon)]$

$P_T = T$ 時點에서의 國內人口

ε = 移民率

$\alpha = \varepsilon/(1-\varepsilon)$

假定面에서의 이러한 硬直性으로 인하여 海外移民의 效果는 多少 過少評價될 可能性이 크다. 왜냐하면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移民人口의 構造는 相對的으로 靑·長年人口의 比重이 높아 國內人口보다는 潛在的으로 높은 自然增加率을 가지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模疑分析은 海外移民이 갖는 最低의 人口調節效果를 提示해 보는 데서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海外移民이 없을 때의 諸人口指標가 基本展望値와 다른 점은 〈表 5〉와 같다. 人口規模는 2000年에는 103萬, 2030年에는 320萬 2050年에는 457萬名이 더 많으며 人口構造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假定하였기 때문에 扶養人口比, 經濟活動率, 合計出產力등에는 아무런 差異가 없다. 그러나, 經濟活動人口의 規模가 人口規模에 거의 比例的으로 커짐으로서 失業率은 初期에는 多少 높아지며 都市化率도 2000年 以後에는 극히 微少하나마 낮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海外移民이 1992年부터 없을 때(假定 $E-2$)

本 假定은 基本展望과는 1992年 以後만 다르며 假定 $E-1$과는 1982~91年間 移民率의

〈表 5〉 假定 $E-1$에 의한 人口指標差

		1985	1990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177	430	1,031	1,717	3,204	4,570
人口增加率	1/1,000	1.1	1.1	1.1	1.1	1.1	1.0
移民率	1/1,000	−1.1	−1.1	−1.1	−1.1	−1.1	−1.1
都市化率	率	—	—	−0.003	−0.003	−0.004	−0.004
經濟活動人口	千名	78	195	473	792	1,358	1,836
(郡部)	千名	41	98	226	315	365	341
失業率	率	0.002	0.004	—	—	—	—

假定에서 差異가 있다. 海外移民의 比率과 그 構造에 대한 假定의 特殊性에 비추어 基本展望値와의 人口規模面에서의 差異는 基本展望人口規模에서 쉽게 算出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다는 오히려 海外移民의 規模나 構造面에서 假定의 變化를 구하여 보는 것이 좋을듯 하나 向後의 海外移民이 受民國의 態度與何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不確實性을 가지므로 하나의 參考資料로서 그 結果를 提示하여 보았다.

〈表 6〉에 提示된 바와같이 人口規模는 基本展望値보다 2000年에는 49萬名, 2010年에는 112萬名, 2050年에는 390萬名이 더 많으며 假定 $E-1$보다 2050年의 人口規模가 67萬名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2~91年間 50萬名의 海外移民規模에 比할 때 1.34倍가 된다. 都市化率, 經濟活動人口등 餘他指標에 있어서의 基本展望値와의 差異는 단지 그 幅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이외에는 가정 $E-1$의 「패턴」과 대동소이하다.

4. 人口移動

基本展望에 있어서 都市化率은 勞動生産性趨勢에 의하여 內生的으로 決定되며, 性別·年齡別 人口移動率 指數만이 外生으로 주어져서 移動人口의 構造를 決定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化率 推定式에 있어서 勞動生産性에 대한 都市化率의 回歸係數는 그간의 人口分散政策의 效果를 包含하고 있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都市化率 趨勢는 人口分散策이 有效한 만큼 緩和되었을 것이며 緩和된 水準 만큼 推

〈表 6〉 假定 $E-2$에 의한 人口指標差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487	1,124	2,548	3,904
人口增加率	1/1,000	1.1	1.1	1.1	1.0
移民率	1/1,000	−1.1	−1.1	−1.1	−1.1
都市化率	率	−0.001	−0.002	−0.003	−0.003
經濟活動人口	千名	220	519	1,081	1,565
(郡部)	千名	105	204	290	290

〈表 7〉 假定 $M-1$에 의한 人口指標差

		1985	1990	2000	2010	2030	2050
人口	千名	−5	−23	−61	−81	−143	−193
人口增加率	1/1,000	−0.1	−0.1	−0.1	—	—	−0.1
合計出産力	率	−0.008	−0.010	−0.007	−0.002	—	—
都市化率	率	0.027	0.042	0.061	0.068	0.062	0.055
純人口移動率	率	0.004	0.002	0.001	—	—	—
經濟活動率	率	−0.004	−0.007	−0.012	−0.014	0.014	−0.012
經濟活動人口	千名	−114	−231	−446	−622	−725	−678
(郡部)	千名	−525	−943	−1,616	−2,112	−2,050	−1,787
失業率	率	−0.003	−0.006	—	—	—	—

定回歸係數의 크기를 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口分散施策의 效果는 都市化率의 勞動生産性에 대한 彈力値에 대한 別個의 假定을 통하여 分析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現在의 資料事情 아래서는 人口分散施策의 效果를 直接 推定하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여기서는 人口分散施策이 本格化되기 이전인 1965~70年間의 性別·年齡別 人口移動率을 人口分散事業이 없는 狀態의 人口移動率로서 假定하기로 하며 人口分散事業이 ① 1982年부터 中斷될 때와 ② 1992年부터 中斷될 때의 두가지로 나누어 人口分散事業의 效果를 分析코자 하였다[19].

가. 1982年부터 人口分散事業이 中斷될 때 (假定 $M-1$)

本 假定의 結果 純人口移動率은 基本展望에 비하여 1985年에 0.4%「포인트」 높으며 그 差異는 이후 차츰 減少하여 2000年에는 0.1%「포인트」로 줄게 되나 그 結果 都市化率은 1990年에 4.2%「포인트」, 2010年에 6.8%「포인트」 높으며 2050年에는 5.5%「포인트」에 머문다. 都市化의 加速 結果 出産力은 基本展望値보다 2010年까지는 다소 下落하여 人口增加率과 規模面에서 基本展望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經濟活動人口는 주로 活動率이 낮아짐으로 해서 基本展望과, 特히 郡部에 있으서 深刻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失業率은 基本展望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1992年부터 人口分散事業이 中斷될 때 (假定 $M-2$)

純人口移動率은 1995年의 5.2%「포인트」에서 2000年에 0.2%「포인트」만큼 基本展望値보다 높으나 2010年 이후는 假定 $M-1$과 마찬가지로 基本展望値와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都市化率은 2000年의 2.7%「포인트」에서 2030年의 4.8%「포인트」로 基本展望値와의 差異가 擴大되나 그 이후는 一定함을 보이며 2050年의 都市化率이 假定 $M-1$보다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都市化 加速 결과 1990年代 以後부터 基本展望値보다 낮은 出産

〈表 8〉 假定 $M-2$에 의한 人口指標差

		2000	2010	2030	2050
人 口	千 名	−8	−17	−34	−49
合計出産率	率	−0.004	−0.002	—	—
都市化率	率	0.027	0.043	0.048	0.048
純人口移動率	率	0.002	—	—	—
經濟活動率	率	−0.005	−0.009	−0.011	−0.010
經濟活動人口	千 名	−186	−354	−527	−545
(郡部)	千 名	−726	−1,304	−1,626	−1,582

19) 1965~70年間이 産業化 및 都市化가 急進展된 기간이므로 以後 農村人口의 轉出率은 人口分散事業의 不在下에서도 低下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都市化가 진전됨에따라 보다 非流動的人口만이 農村에 殘留하게 됨은 自明한 理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의 方法에 의한 人口分散事業의 效果는 多分히 過大評價될 公算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本模疑分析은 事業效果를 推定한다기 보다는 效果의 上限을 提示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져야 할 것이다.

〔圖 2〕 諸假定에 따른 人口規模의 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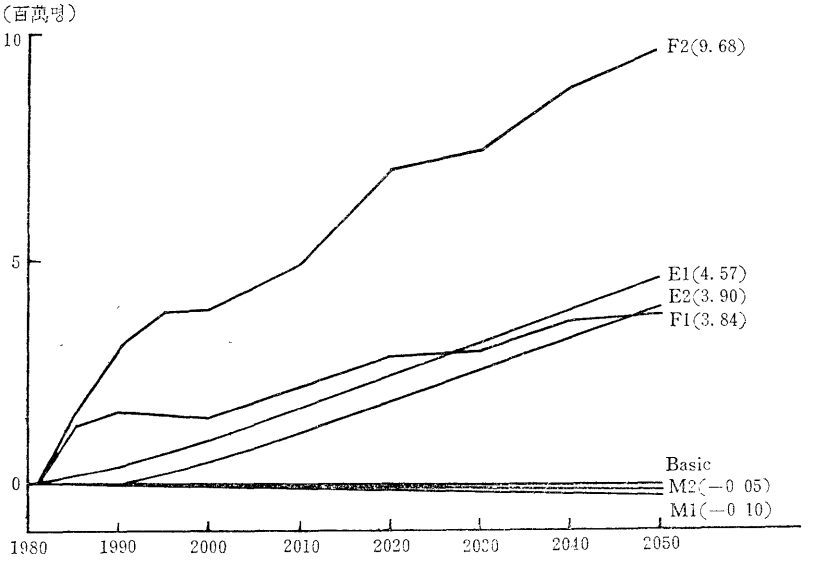

力水準과 이로 인한 人口規模差 및 經濟活動率 低下에 따라 郡部 經濟活動人口가 顯著히 減少하는 傾向은 假定($M-1$)과 비슷함을 보인다.

V. 要約 및 結論

基本展望値를 基準으로 할 때 諸假定에 따른 差異를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口規模는 〔圖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家族計劃事業, 移民事業의 展開方向에 따라 커다란 差異를 보이나 人口分散事業의 展開方向과는 比較的 無關하다. 人口分散(都市化率)이 規模에 대하여 미치는 影響이 微微한 것은 都·農間의 出産力 隔差가 이미 相當히 좁혀져 있는데다가(1979年 現在 合計出産力 水準이 都市 2.4, 農村 3.0) 그 差異가 推計期間 동안 더욱 좁혀지며 生殘率에서는 地域間 隔差가 없는 것으로 假定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國內人口의 量的調節에 있어서 各事業 效果가 過去趨勢대로 持續된다고 가정하는 한 家族計劃事業의 人口調節效果가 移民事業의 人口調節效果보다 높다. 이는 政府家族計劃事業이 당장 中斷되었을 때 民間이 自費負擔으로 5年 以內에 이를 完全히 代替한다($F-1$)고 하여도 年間 總人口의 0.11%에 달하는 海外移民이 1982年부터 전혀 없는 경우($E-1$)보다 더 큰 人口規模를 적어도 2020年 까지는 維持하며 海外移民이 1992年 부터 없는 경우($E-2$)보다는 거의 全 推計期間에 걸쳐 더 큰 人口規模를 維持하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세째, 만일 政府事業의 民間代替에 所要되는 期間이 10年이라면($F-2$)이로 인한 人口增加規模는 代替期間이 5年인 경우($F-1$)보다 全 推計期間에 걸쳐 2倍 이상 差異를 보인다. 그 理由는 두 假定에서 重復되는 期間인 1982~86年間의 出産力 水準이 $F-1$보다 $F-2$가 더 높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可姙期 女子人口의 比重(附表 1 참조)이 1982~86年間

보다 1987~91年間이 높아 潛在的으로 더 높은 出産率을 가지기 때문이다. 네째, 家族計劃事業과는 달리 移民事業은 移民의 規模가 現在의 추세대로 持續되고 性別·年齡別 構造面에서 國內人口와 顯著히 다르지 않는 한 人口調節效果面에서 다분히 制限되어 있다. 이는 1982~91年間 海外移民이 있는 경우($E-2$)와 그렇지 않은 경우($E-1$), 人口規模의 差異가 總移民人口의 差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E-1$, $E-2$曲線이 全 推計期間에 걸쳐 거의 平行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海外移民事業은 長期的으로 꾸준히 그 實績을 쌓아가도록 해야 하며 이미 人口의 自然增加率이 상당히 鈍化되어 效果 面에서 顯著한 差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自然增加率이 높은 現在 또는 가까운 將來에 重點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섯째, 都市化의 急進展이 向後의 人口規模에 미치는 影響은 이미 都·農間의 出産力 隔差가 상당히 좁혀진 터이므로 거의없다. 따라서 人口分散事業은 이미 顯在化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豫想되는 農村地方의 일손 不足과 大都市 人口集中이 더욱 惡化되지 않도록 보다 積極的인 次元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人口對策事業의 不斷한 推進이 갖는 效果는 현재 갓 出生된 人口가 平均壽命을 누리고 次後의 世帶에 의하여 完全히 대체되는 2050年 傾에는 累積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 海外移民事業 및 人口分散事業에 있어서 短期的으로는 實績이 不振하다 하더라도 人口對策事業은 꾸준히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家族計劃硏究院, 『出産力調査報告書』, 1971, 1973, 1976, 1979.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1980.

_____, 『經濟活動人口年報』, 1979.

_____, 『常住人口調査報告』, 名年度.

_____,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各年度.

高甲錫, 「向後10年間의 短期人口豫測」, 『人口問題論集』, 第1號, 人口問題硏究所, 1965.

金 鍊, 「未來의 韓國人口의 推計」, 『統計情報』, 第3卷1號, 1961.

內務部, 『都市統計年鑑』, 各年度.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各年度.

朴來榮, 『人口增加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硏究院, 1971.

保健社會部, 「1980年度 家族計劃事業 參考資料」.

人口問題硏究所, 『우리나라 人口變動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調査硏究』, 1969.

人口部門實務計劃班,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 人口部門計劃(案), 1981. 4.

崔仁鉉, 「大韓民國人口推計」, 『韓國統計月報』, 第6號, 第7號, 1963.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⑳, 1978.

金大泳,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 1960~2040』, 韓國開發硏究院, 1975. 7.

Becker, G.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

National Bureau Conference Series II.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60.

_____ , "A Theory of Marriage :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pp. 813~846, 1973.

Bilsborrow, Richard E. *Population in Development Planning: Background & Bibliograph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Chapel Hill, 1976.

Coale, A. J. and E. M. Hoover.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 Income Countries : A Case Study of India's Prospects*,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58.

Demeny, Paul. "Investment Allocation and Population Growth," *Demography*, Vol. 2, pp. 203~233, 1965.

Domar, Evsey D.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Enke, Stephen. "The Gains to India from Population Control : Some Money Measures and Incentive Schemes",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42, 1960.

_____, *Rising Per Capita Income Through Fewer Births*, Santa Barbara, TEMPO, General Electric Company, 1967.

Fei, John C., and Gustav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 Theory and Policy*. Homewood, Ill. : R.D. Irwin, 1964.

Harrod, Roy F. *Towards a Dynamic Economics*, London : Macmillan, 1948.

Japan Statistical Yearbook, 1960~1977.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pp. 200~203, 1977.

_____,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 Supplement III*, p. 41, 1981.

_____,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1978.

Kresge, David T. "Price and Output Conversion : A Modified Approach," Dusenberry, J.S. et al, ed., *The Brookings Model : Some Further Results*, Chicago : Rand McNally & Company, 1969.

Kwon, Tai-Hwan. "Estimates of Net Internal Migration for Korea, 1955~70,"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4, Nov.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NU, 1975.

_____, Hae Young Lee, Yunshik Chang and Eui-Young Yu,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NU, 1975.

Lewis, W.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 22, No. 2, pp. 139~191, 1954.

Malthus, Thomas R. *First Essay on Population*, London : Macmillan ; New York : St. Martin's Press, 1798.

Newman P. and R. H. Alle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icaragua*. Robert R. Nathan Assoc. Inc., Washington D.C., 1967.

Sigit, Hananto. *Demographic Change, Consumption Pattern and Planned Income Growt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5.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pp. 65~94, 1965.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77.

Suits, Daniel B. "The U.S. Farm Migration," Paper Presented at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ast-

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1980.

_____, and A. Mason. "Measuring the Gains to Population Control: Results from an Economeric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tlanta, Georgia, 1978.

Sun, T.H. "The Impact on Fertility of Taiwan's Family Planning Program" in *Measuring the Effect of Family Planning Programs on Fertility* 1975, p.464.

Swan, T.W. "Economic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Economic Record,* Vol. 32, No.63, pp.334~361, 1956.

U.N. Statistical Yearbook, 1978.

Zaidan, George C. *The Foregone Benefits and Costs of a Prevented Birth: Conceptual, Problems and an Application to the U.A.R.* Economic Departmant Working Paper No.11, IBRD, 1968.

〈附表 1〉 主要指標(基本展望)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304	39,916	40,546	41,191	41,846	44,457	50,239	54,467	60,095	60,321
都 市	1,000	22,721	23,363	23,966	24,722	25,505	26,321	29,586	36,822	42,867	52,079	54,942
農 村	1,000	15,986	15,941	15,949	15,823	15,687	15,525	14,872	13,417	11,600	8,017	5,380
增 加 率	1/1,000	15.2	15.3	15.5	15.7	15.8	15.8	14.6	10.0	7.2	1.9	−1.0
都 市	1/1,000	19.0	19.1	19.5	19.7	19.7	19.5	17.0	11.5	9.1	3.1	−0.1
農 村	1/1,000	10.0	9.9	9.6	9.6	9.7	9.7	9.9	6.0	0.4	−5.6	−10.2
粗 出 生 率	1/1,000	22.6	22.7	22.7	22.8	22.8	22.7	21.4	17.1	15.5	13.1	12.8
都 市	1/1,000	25.2	25.1	25.5	25.6	25.4	25.2	22.6	17.4	16.3	13.5	13.0
農 村	1/1,000	19.2	19.2	18.7	18.6	18.7	18.7	19.1	16.3	12.6	10.3	10.8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2	6.0	5.9	5.8	5.7	6.0	7.2	10.0	12.7
都 市	1/1,000	5.1	5.0	4.9	4.8	4.6	4.6	4.5	4.9	6.1	9.3	12.0
農 村	1/1,000	8.1	8.1	8.1	7.9	7.9	7.9	8.1	9.2	11.1	14.9	19.8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產率	率	2.699	2.630	2.571	2.519	2.471	2.427	2.289	2.113	2.042	2.006	2.001
都 市	率	2.530	2.483	2.440	2.401	2.366	2.334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2.942	2.859	2.783	2.714	2.651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20	1.18	1.16	1.14	1.12	1.07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13	1.12	1.11	1.09	1.08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1.34	1.31	1.28	1.25	1.23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00	0.610	0.619	0.629	0.665	0.733	0.787	0.867	0.911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04	0.007	0.007	0.008	0.007	0.005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9	0.006	0.011	0.012	0.012	0.011	0.008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3	0.009	0.017	0.018	0.020	0.021	0.020	0.017	0.015	0.010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81	0.569	0.555	0.542	0.531	0.507	0.482	0.435	0.505	0.551
都 市	比 率	0.534	0.530	0.527	0.521	0.513	0.506	0.492	0.451	0.408	0.490	0.536
農 村	比 率	0.687	0.662	0.636	0.611	0.590	0.574	0.538	0.577	0.543	0.607	0.718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4	0.486	0.488	0.491	0.493	0.496	0.484	0.452	0.399	0.375
都 市	比 率	0.538	0.536	0.534	0.533	0.533	0.532	0.529	0.511	0.467	0.412	0.383
農 村	比 率	0.402	0.407	0.414	0.419	0.423	0.426	0.432	0.411	0.396	0.316	0.296
家 口 數	1,000	8,438	8,661	8,889	9,126	9,370	9,620	10,649	13,227	15,607	19,852	22,244
都 市	1,000	5,126	5,323	5,514	5,743	5,982	6,233	7,272	9,878	12,451	17,323	20,334
農 村	1,000	3,312	3,338	3,375	3,383	3,388	3,388	3,377	3,348	3,155	2,530	1,911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40	0.756	0.769	0.784	0.842	0.903	0.941	0.975	0.988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5,528	15,938	16,386	16,782	17,172	18,542	21,181	23,465	24,073	23,131
都 市	1,000	7,915	8,329	8,587	8,930	9,269	9,627	11,019	14,257	17,160	19,798	20,301
農 村	1,000	6,879	7,199	7,352	7,456	7,513	7,544	7,523	6,924	6,304	4,275	2,830
參 加 率	率	0.571	0.585	0.586	0.588	0.587	0.587	0.588	0.574	0.557	0.502	0.475
都 市	率	0.515	0.525	0.526	0.527	0.527	0.528	0.532	0.528	0.519	0.479	0.460
農 村	率	0.653	0.675	0.676	0.681	0.684	0.686	0.696	0.699	0.693	0.650	0.631
高校卒業者率	比 率	0.241	0.251	0.259	0.268	0.276	0.285	0.319	0.398	0.476	0.622	0.735
都 市	比 率	0.334	0.341	0.349	0.355	0.361	0.366	0.391	0.451	0.518	0.648	0.750
農 村	比 率	0.109	0.116	0.123	0.130	0.138	0.146	0.178	0.251	0.320	0.457	0.588
失 業 率	率	0.051	0.053	0.051	0.052	0.053	0.054	0.055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85	0.081	0.082	0.082	0.082	0.081	0.042	0.039	0.035	0.034
農 村	率	0.016	0.017	0.017	0.017	0.017	0.017	0.016	0.006	0.006	0.005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09	1.14	1.20	1.26	1.33	1.63	2.53	3.96	9.98	21.98
都 市	百萬원	1.36	1.41	1.47	1.53	1.61	1.68	2.02	2.98	4.47	10.66	22.86
農 村	百萬원	0.72	0.74	0.78	0.82	0.86	0.90	1.09	1.63	2.60	6.90	15.83
人 當 GNP	1,000$	0.79	0.84	0.89	0.95	1.00	1.06	1.33	2.14	3.42	8.01	16.89
經 濟 成 長 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2〉 主要指標(F−1)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544	40,595	41,579	42,490	43,318	46,009	51,771	56,699	63,102	64,163
都 市	1,000	22,721	23,506	24,918	25,687	26,590	27,401	30,615	37,800	44,358	54,403	58,271
農 村	1,000	15,986	16,038	15,677	15,892	15,900	15,917	15,394	13,971	12,340	8,699	5,892
增 加 率	1/1,000	15.2	21.4	26.2	24.0	21.7	19.3	14.0	9.7	9.4	2.4	−1.2
都 市	1/1,000	19.0	26.2	31.8	28.8	26.5	23.5	16.3	11.1	11.3	3.6	−0.3
農 村	1/1,000	10.0	14.6	18.0	16.2	13.9	12.3	9.6	6.1	2.6	−4.6	−10.3
粗 出 生 率	1/1,000	22.6	28.8	33.6	31.1	28.7	26.2	20.7	16.7	17.4	13.2	12.4
都 市	1/1,000	25.2	32.3	37.9	34.7	32.2	29.1	21.8	16.9	18.3	13.6	12.6
農 村	1/1,000	19.2	23.9	27.2	25.4	22.9	21.3	18.6	16.2	14.3	10.6	10.2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3	6.1	5.9	5.8	5.6	5.9	6.9	9.6	12.5
都 市	1/1,000	5.1	5.0	5.0	4.8	4.7	4.6	4.4	4.7	5.9	8.9	11.8
農 村	1/1,000	8.1	8.1	8.1	8.1	7.9	7.9	7.9	8.9	10.6	14.1	19.4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產率	率	2.699	4.072	3.743	3.415	3.099	2.785	2.290	2.113	2.042	2.006	2.001
都 市	率	2.530	3.920	3.608	3.300	2.995	2.693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4.380	4.027	3.681	3.343	3.010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86	1.71	1.57	1.43	1.29	1.07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79	1.65	1.52	1.38	1.25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2.00	1.84	1.69	1.54	1.39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14	0.618	0.626	0.633	0.665	0.730	0.782	0.862	0.908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16	0.001	0.005	0.004	0.007	0.005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8	0.027	0.002	0.008	0.007	0.011	0.007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1	0.040	0.003	0.013	0.011	0.021	0.018	0.017	0.015	0.010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91	0.595	0.594	0.591	0.584	0.560	0.473	0.436	0.482	0.565
都 市	比 率	0.534	0.542	0.552	0.563	0.566	0.566	0.551	0.442	0.410	0.468	0.550
農 村	比 率	0.687	0.670	0.669	0.649	0.633	0.617	0.578	0.564	0.539	0.570	0.731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1	0.478	0.476	0.476	0.476	0.480	0.494	0.460	0.403	0.379
都 市	比 率	0.538	0.532	0.526	0.519	0.515	0.513	0.509	0.521	0.475	0.416	0.387
農 村	比 率	0.402	0.406	0.401	0.407	0.410	0.414	0.422	0.424	0.409	0.324	0.299
家 口 數	1,000	8,438	8,714	9,050	9,365	9,671	9,962	11,021	13,627	16,241	20,840	23,659
都 市	1,000	5,126	5,356	5,733	5,967	6,237	6,488	7,525	10,141	12,884	18,096	21,566
農 村	1,000	3,312	3,358	3,317	3,398	3,434	3,473	3,496	3,487	3,357	2,745	2,093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39	0.752	0.764	0.778	0.837	0.882	0.940	0.973	0.987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4,163	14,957	15,461	16,177	16,808	18,556	21,709	24,484	25,746	24,547
都 市	1,000	7,915	7,763	8,386	8,653	9,095	9,490	10,975	14,538	17,760	21,041	21,460
農 村	1,000	6,879	6,399	6,571	6,808	7,082	7,318	7,581	7,171	6,724	4,706	3,087
參 加 率	率	0.571	0.534	0.550	0.555	0.566	0.575	0.589	0.566	0.561	0.508	0.474
都 市	率	0.515	0.490	0.502	0.506	0.514	0.520	0.532	0.520	0.522	0.484	0.458
農 村	率	0.653	0.599	0.625	0.633	0.652	0.666	0.697	0.692	0.700	0.657	0.628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49	0.258	0.267	0.275	0.284	0.319	0.399	0.481	0.624	0.735
都 市	比 率	0.334	0.340	0.344	0.352	0.359	0.366	0.392	0.452	0.524	0.650	0.750
農 村	比 率	0.109	0.115	0.120	0.128	0.136	0.145	0.179	0.253	0.327	0.462	0.585
失 業 率	率	0.051	0.030	0.030	0.030	0.036	0.044	0.055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48	0.047	0.047	0.056	0.068	0.081	0.042	0.039	0.036	0.034
農 村	率	0.016	0.008	0.008	0.008	0.010	0.013	0.017	0.006	0.006	0.005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16	1.19	1.24	1.28	1.34	1.63	2.47	3.79	9.33	20.71
都 市	百萬원	1.36	1.51	1.53	1.59	1.64	1.70	2.02	2.92	4.30	9.98	21.57
農 村	百萬원	0.72	0.76	0.76	0.81	0.85	0.90	1.09	1.60	2.51	6.48	14.94
人 當 GNP	1,000$	0.79	0.83	0.88	0.92	0.97	1.03	1.28	2.07	3.28	7.63	15.88
經濟成長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3〉 主要指標(*F*−2)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544	40,625	41,703	42,773	43,828	47,775	54,099	59,321	67,489	69,996
都 市	1,000	22,721	23,506	24,937	25,865	26,946	27,942	31,974	39,472	46,068	57,824	63,289
農 村	1,000	15,986	16,038	15,688	15,838	15,826	15,886	15,801	14,627	13,252	9,664	6,707
增 加 率	1/1,000	15.2	21.4	27.0	26.2	25.3	24.4	19.8	9.3	10.7	2.5	−0.8
都 市	1/1,000	19.0	26.2	32.6	31.3	30.5	29.0	22.4	10.5	12.5	3.6	0.1
農 村	1/1,000	10.0	14.6	18.6	18.0	16.8	16.4	14.6	6.1	4.5	−3.7	−9.4
粗 出 生 率	1/1,000	22.6	28.8	34.3	33.3	32.3	31.3	26.4	16.0	18.4	12.7	12.2
都 市	1/1,000	25.2	32.3	38.8	37.2	36.3	34.7	27.8	16.1	19.3	13.1	12.5
農 村	1/1,000	19.2	23.9	27.8	27.2	25.8	25.4	23.5	15.7	15.5	10.4	9.9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3	6.1	5.9	5.8	5.5	5.7	6.7	9.1	11.9
都 市	1/1,000	5.1	5.0	5.0	4.8	4.7	4.6	4.3	4.6	5.7	8.4	11.2
農 村	1/1,000	8.1	8.1	8.1	8.1	7.9	7.9	7.8	8.6	10.0	13.0	18.3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産率	率	2.699	4.072	3.923	3.776	3.638	3.504	3.007	2.113	2.043	2.006	2.001
都 市	率	2.530	3.920	3.788	3.659	3.534	3.412	2.949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4.380	4.206	4.041	3.882	3.729	3.168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産率	1/1,000	1.23	1.86	1.79	1.74	1.68	1.62	1.40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79	1.73	1.68	1.63	1.58	1.37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2.00	1.92	1.86	1.79	1.72	1.48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14	0.620	0.630	0.638	0.669	0.730	0.777	0.857	0.904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16	0.003	0.007	0.005	0.006	0.005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8	0.027	0.005	0.011	0.007	0.010	0.006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1	0.040	0.008	0.017	0.013	0.019	0.017	0.016	0.014	0.011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91	0.596	0.599	0.601	0.603	0.620	0.528	0.420	0.470	0.552
都 市	比 率	0.534	0.542	0.553	0.567	0.576	0.585	0.615	0.497	0.395	0.458	0.537
農 村	比 率	0.687	0.670	0.670	0.655	0.645	0.636	0.630	0.616	0.516	0.543	0.704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1	0.473	0.475	0.473	0.471	0.462	0.478	0.478	0.422	0.381
都 市	比 率	0.538	0.532	0.526	0.518	0.513	0.507	0.489	0.503	0.492	0.434	0.389
農 村	比 率	0.402	0.406	0.400	0.405	0.406	0.408	0.409	0.413	0.432	0.347	0.301
家 口 數	1,000	8,438	8,714	9,057	9,395	9,739	10,083	11,447	14,240	16,986	22,283	25,805
都 市	1,000	5,126	5,356	5,737	6,009	6,320	6,617	7,859	10,589	13,381	19,234	23,423
農 村	1,000	3,312	3,358	3,320	3,386	3,418	3,466	3,588	3,650	3,605	3,049	2,382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39	0.752	0.764	0.777	0.833	0.868	0.937	0.969	0.986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4,163	14,770	15,119	15,645	16,093	17,863	21,858	25,853	27,846	26,659
都 市	1,000	7,915	7,763	8,306	8,550	8,941	9,270	10,709	14,603	18,599	22,574	23,161
農 村	1,000	6,879	6,399	6,464	6,569	6,704	6,822	7,154	7,255	7,254	5,272	3,498
參 加 率	率	0.571	0.534	0.543	0.542	0.548	0.550	0.567	0.563	0.563	0.515	0.475
都 市	率	0.515	0.490	0.498	0.498	0.502	0.504	0.518	0.516	0.523	0.489	0.458
農 村	率	0.653	0.599	0.615	0.614	0.624	0.629	0.661	0.688	0.701	0.665	0.629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49	0.257	0.266	0.274	0.283	0.318	0.399	0.488	0.626	0.736
都 市	比 率	0.334	0.340	0.344	0.351	0.357	0.363	0.390	0.452	0.532	0.653	0.752
農 村	比 率	0.109	0.115	0.120	0.127	0.134	0.143	0.177	0.254	0.336	0.468	0.592
失 業 率	率	0.051	0.030	0.030	0.030	0.030	0.030	0.037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48	0.047	0.047	0.047	0.047	0.056	0.042	0.039	0.036	0.034
農 村	率	0.016	0.008	0.008	0.008	0.008	0.008	0.010	0.006	0.006	0.005	0.004
平均生産性	百萬원	1.06	1.16	1.20	1.27	1.32	1.38	1.66	2.45	3.59	8.62	19.07
都 市	百萬원	1.36	1.51	1.55	1.62	1.68	1.75	2.06	2.90	4.08	9.25	19.89
農 村	百萬원	0.72	0.76	0.77	0.82	0.85	0.90	1.09	1.59	2.40	6.03	13.80
人 當 GNP	1,000$	0.79	0.83	0.88	0.92	0.97	1.02	1.23	1.99	3.14	7.13	14.56
經濟成長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4〉 主要指標($E-1$)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347	40,002	40,677	41,368	42,071	44,887	51,270	56,184	63,299	64,891
都 市	1,000	22,721	23,389	24,012	24,793	25,600	26,443	29,834	37,434	44,022	54,622	58,879
農 村	1,000	15,986	15,958	15,989	15,884	15,769	15,628	15,053	13,836	12,161	8,677	6,012
增 加 率	1/1,000	15.2	16.4	16.5	16.7	16.9	16.8	15.7	11.1	8.3	3.0	0.0
都 市	1/1,000	19.0	20.2	20.5	20.7	20.7	20.5	18.1	12.5	10.2	4.2	1.0
農 村	1/1,000	10.0	11.0	10.6	10.6	10.8	10.8	11.0	7.2	1.7	−4.3	−8.8
粗 出 生 率	1/1,000	22.6	22.7	22.7	22.8	22.8	22.7	21.4	17.1	15.5	13.1	12.8
都 市	1/1,000	25.2	25.1	25.5	25.6	25.4	25.2	22.6	17.4	16.3	13.5	13.0
農 村	1/1,000	19.2	19.2	18.7	18.6	18.7	18.7	19.2	16.4	12.7	10.4	10.8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2	6.1	5.9	5.9	5.8	6.1	7.2	10.1	12.8
都 市	1/1,000	5.1	5.0	4.9	4.8	4.7	4.6	4.5	4.9	6.1	9.3	12.1
農 村	1/1,000	8.1	8.1	8.1	7.9	7.9	7.9	8.2	9.2	11.0	14.7	19.6
移 民 率	1/1,000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合計出產率	率	2.699	2.630	2.571	2.519	2.471	2.427	2.290	2.113	2.042	2.006	2.001
都 市	率	2.530	2.483	2.440	2.401	2.366	2.334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2.942	2.859	2.783	2.714	2.651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20	1.18	1.16	1.14	1.12	1.07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13	1.12	1.11	1.09	1.08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1.34	1.31	1.28	1.25	1.23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00	0.610	0.619	0.629	0.665	0.730	0.784	0.863	0.907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03	0.007	0.007	0.007	0.007	0.005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9	0.006	0.011	0.011	0.012	0.011	0.007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3	0.009	0.017	0.018	0.020	0.021	0.019	0.016	0.015	0.010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81	0.568	0.555	0.542	0.530	0.506	0.482	0.434	0.504	0.551
都 市	比 率	0.534	0.530	0.527	0.521	0.513	0.506	0.492	0.450	0.407	0.490	0.536
農 村	比 率	0.687	0.662	0.636	0.611	0.590	0.573	0.537	0.574	0.541	0.601	0.713
可姓女性比	比 率	0.482	0.484	0.486	0.488	0.491	0.493	0.496	0.485	0.452	0.399	0.374
都 市	比 率	0.538	0.536	0.534	0.533	0.533	0.532	0.529	0.511	0.467	0.412	0.382
農 村	比 率	0.402	0.407	0.414	0.419	0.423	0.426	0.432	0.413	0.398	0.318	0.298
家 口 數	1,000	8,438	8,670	8,908	9,156	9,411	9,672	10,752	13,495	16,095	20,906	23,926
都 市	1,000	5,126	5,329	5,525	5,760	6,005	6,262	7,333	10,043	12,787	18,169	21,791
農 村	1,000	3,312	3,342	3,383	3,396	3,406	3,410	3,419	3,453	3,308	2,738	2,135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40	0.755	0.769	0.783	0.841	0.901	0.939	0.974	0.987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5,546	15,974	16,443	16,860	17,272	18,737	21,654	24,257	25,431	24,967
都 市	1,000	7,915	8,339	8,604	8,957	9,305	9,674	11,116	14,503	17,638	20,791	21,796
農 村	1,000	6,879	7,207	7,370	7,486	7,554	7,597	7,621	7,150	6,619	4,640	3,171
參 加 率	率	0.571	0.585	0.586	0.588	0.588	0.587	0.589	0.574	0.558	0.503	0.476
都 市	率	0.515	0.525	0.526	0.527	0.527	0.528	0.532	0.528	0.519	0.479	0.460
農 村	率	0.653	0.675	0.676	0.681	0.684	0.686	0.697	0.700	0.694	0.652	0.632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51	0.259	0.268	0.276	0.285	0.319	0.399	0.476	0.622	0.735
都 市	比 率	0.334	0.341	0.349	0.355	0.361	0.366	0.391	0.452	0.518	0.649	0.750
農 村	比 率	0.109	0.116	0.123	0.130	0.138	0.146	0.178	0.252	0.321	0.459	0.590
失 業 率	率	0.051	0.054	0.052	0.054	0.055	0.056	0.059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85	0.083	0.085	0.085	0.086	0.087	0.042	0.039	0.036	0.034
農 村	率	0.016	0.018	0.017	0.017	0.018	0.018	0.018	0.006	0.006	0.005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09	1.14	1.19	1.26	1.32	1.62	2.47	3.83	9.44	20.36
都 市	百萬원	1.36	1.41	1.47	1.53	1.60	1.68	2.01	2.92	4.33	10.11	21.21
農 村	百萬원	0.72	0.74	0.78	0.82	0.86	0.90	1.09	1.60	2.53	6.56	14.70
人 當 GNP	1.000$	0.79	0.84	0.89	0.94	1.00	1.06	1.31	2.09	3.31	7.60	15.70
經 濟 成 長 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5〉 主要指標(*E*−2)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304	39,916	40,546	41,191	41,846	44,457	50,726	55,591	62,643	64,225
都 市	1,000	22,721	23,363	23,966	24,722	25,505	26,321	29,586	37,115	43,626	54,104	58,307
農 村	1,000	15,986	15,941	15,949	15,823	15,687	15,525	14,872	13,611	11,964	8,540	5,917
增 加 率	1/1,000	15.2	15.3	15.5	15.7	15.8	15.8	14.6	11.1	8.3	3.0	0.0
都 市	1/1,000	19.0	19.1	19.5	19.7	19.7	19.5	17.0	12.5	10.2	4.2	1.0
農 村	1/1,000	10.0	9.9	9.6	9.6	9.7	9.7	9.9	7.2	1.7	−4.3	−8.8
粗 出 生 率	1/1,000	22.6	22.7	22.7	22.8	22.8	22.7	21.4	17.1	15.5	13.1	12.8
都 市	1/1,000	25.2	25.1	25.5	25.6	25.4	25.2	22.6	17.4	16.3	13.5	13.0
農 村	1/1,000	19.2	19.2	18.7	18.6	18.7	18.7	19.1	16.4	12.7	10.4	10.8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2	6.0	5.9	5.8	5.7	6.1	7.2	10.1	12.8
都 市	1/1,000	5.1	5.0	4.9	4.8	4.6	4.6	4.5	4.9	6.1	9.3	12.1
農 村	1/1,000	8.1	8.1	8.1	7.9	7.9	7.9	8.1	9.2	11.1	14.7	19.6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0.0	0.0	0.0	0.0
合計出產率	率	2.699	2.630	2.571	2.519	2.471	2.427	2.289	2.113	2.042	2.006	2.001
都 市	率	2.530	2.483	2.440	2.401	2.366	2.334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2.942	2.859	2.783	2.714	2.651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20	1.18	1.16	1.14	1.12	1.07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13	1.12	1.11	1.09	1.08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1.34	1.31	1.28	1.25	1.23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00	0.610	0.619	0.629	0.665	0.732	0.785	0.864	0.908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04	0.007	0.007	0.008	0.007	0.005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9	0.006	0.011	0.012	0.012	0.011	0.007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3	0.009	0.017	0.018	0.020	0.021	0.019	0.016	0.015	0.010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81	0.569	0.555	0.542	0.531	0.507	0.482	0.434	0.504	0.551
都 市	比 率	0.534	0.530	0.527	0.521	0.513	0.506	0.492	0.451	0.407	0.490	0.536
農 村	比 率	0.687	0.662	0.636	0.611	0.590	0.574	0.538	0.575	0.541	0.601	0.712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4	0.486	0.488	0.491	0.493	0.496	0.485	0.452	0.399	0.374
都 市	比 率	0.538	0.536	0.534	0.533	0.533	0.532	0.529	0.511	0.467	0.412	0.382
農 村	比 率	0.402	0.407	0.414	0.419	0.423	0.426	0.432	0.412	0.398	0.318	0.298
家 口 數	1,000	8,438	8,661	8,889	9,126	9,370	9,620	10,649	13,354	15,926	20,691	23,681
都 市	1,000	5,126	5,323	5,514	5,743	5,982	6,233	7,272	9,957	12,672	17,996	21,580
農 村	1,000	3,312	3,338	3,375	3,383	3,388	3,388	3,377	3,397	3,254	2,695	2,102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40	0.756	0.769	0.784	0.842	0.902	0.940	0.974	0.987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5,528	15,938	16,386	16,782	17,172	18,542	21,401	23,984	25,154	24,696
都 市	1,000	7,915	8,329	8,587	8,930	9,269	9,627	11,019	14,372	17,476	20,589	21,576
農 村	1,000	6,879	7,199	7,352	7,456	7,513	7,544	7,523	7,029	6,508	4,565	3,120
參 加 率	率	0.571	0.585	0.586	0.588	0.587	0.587	0.588	0.574	0.557	0.503	0.476
都 市	率	0.515	0.525	0.526	0.527	0.527	0.528	0.532	0.528	0.519	0.479	0.460
農 村	率	0.653	0.675	0.676	0.681	0.684	0.686	0.696	0.699	0.694	0.652	0.632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51	0.259	0.268	0.276	0.285	0.319	0.398	0.476	0.622	0.735
都 市	比 率	0.334	0.341	0.349	0.355	0.361	0.366	0.391	0.452	0.518	0.649	0.750
農 村	比 率	0.109	0.116	0.123	0.130	0.138	0.146	0.178	0.252	0.321	0.459	0.590
失 業 率	率	0.051	0.053	0.051	0.052	0.053	0.054	0.055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85	0.081	0.082	0.082	0.082	0.081	0.042	0.039	0.036	0.034
農 村	率	0.016	0.017	0.017	0.017	0.017	0.017	0.016	0.006	0.006	0.005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09	1.14	1.20	1.26	1.33	1.63	2.50	3.87	9.55	20.59
都 市	百萬원	1.36	1.41	1.47	1.53	1.61	1.68	2.02	2.96	4.38	10.22	21.44
農 村	百萬원	0.72	0.74	0.78	0.82	0.86	0.90	1.09	1.61	2.55	6.63	14.86
人 當 GNP	1,000 $	0.79	0.84	0.89	0.95	1.00	1.06	1.33	2.12	3.35	7.68	15.87
經濟成長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6〉 主要指標($M-1$)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304	39,915	40,544	41,186	41,838	44,434	50,178	54,386	59,952	60,128
都 市	1,000	22,721	23,732	24,671	25,627	26,597	27,572	31,411	39,852	46,520	55,671	58,064
農 村	1,000	15,986	15,571	15,244	14,916	14,590	14,266	13,022	10,326	7,866	4,281	2,065
增 加 率	1/1,000	15.2	15.3	15.4	15.6	15.7	15.7	14.5	9.9	7.2	1.9	−1.1
都 市	1/1,000	19.0	19.1	19.3	19.5	19.7	19.6	17.6	11.9	9.2	3.0	−0.4
農 村	1/1,000	10.0	9.9	9.6	9.2	8.9	8.6	7.5	2.5	−4.0	−11.5	−19.8
粗 出 生 率	1/1,000	22.6	22.7	22.7	22.7	22.7	22.6	21.3	17.1	15.5	13.1	12.8
都 市	1/1,000	25.2	25.1	25.2	25.4	25.4	25.2	23.0	17.8	16.2	13.4	13.0
農 村	1/1,000	19.2	19.2	18.9	18.5	18.2	17.9	17.4	14.6	11.2	9.0	8.0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2	6.0	5.9	5.8	5.7	6.0	7.2	10.1	12.8
都 市	1/1,000	5.1	5.0	4.9	4.7	4.6	4.5	4.4	4.7	6.0	9.3	12.3
農 村	1/1,000	8.1	8.1	8.2	8.2	8.2	8.3	8.8	10.9	14.1	19.4	26.8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產率	率	2.699	2.630	2.568	2.512	2.463	2.418	2.279	2.106	2.040	2.006	2.001
都 市	率	2.530	2.483	2.440	2.401	2.366	2.334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2.942	2.859	2.783	2.714	2.651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20	1.18	1.16	1.14	1.12	1.06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13	1.12	1.11	1.09	1.08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1.34	1.31	1.28	1.25	1.23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604	0.618	0.632	0.646	0.659	0.707	0.794	0.855	0.929	0.966
純 移 動 率	率	0.012	0.015	0.012	0.012	0.011	0.011	0.009	0.006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25	0.020	0.019	0.018	0.017	0.013	0.007	0.004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36	0.030	0.031	0.031	0.031	0.030	0.027	0.025	0.021	0.019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81	0.568	0.555	0.542	0.530	0.506	0.481	0.434	0.504	0.552
都 市	比 率	0.534	0.534	0.527	0.519	0.510	0.502	0.488	0.454	0.408	0.490	0.541
農 村	比 率	0.687	0.660	0.642	0.620	0.602	0.587	0.551	0.594	0.608	0.720	0.920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4	0.486	0.488	0.491	0.493	0.496	0.485	0.452	0.398	0.375
都 市	比 率	0.538	0.536	0.535	0.535	0.536	0.537	0.533	0.515	0.470	0.409	0.380
農 村	比 率	0.402	0.405	0.406	0.408	0.409	0.409	0.408	0.373	0.344	0.266	0.226
家 口 數	1,000	8,438	8,668	8,902	9,142	9,390	9,642	10,678	13,268	15,652	19,868	22,223
都 市	1,000	5,126	5,407	5,676	5,954	6,238	6,529	7,721	10,691	13,512	18,518	21,489
農 村	1,000	3,312	3,260	3,226	3,189	3,151	3,113	2,958	2,577	2,140	1,351	733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40	0.756	0.769	0.784	0.842	0.903	0.941	0.975	0.988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5,500	15,876	16,298	16,668	17,034	18,311	20,735	22,843	23,348	22,453
都 市	1,000	7,915	8,439	8,833	9,261	9,680	10,106	11,731	15,427	18,651	21,123	21,409
農 村	1,000	6,879	7,061	7,043	7,036	6,988	6,929	6,580	5,308	4,192	2,225	1,043
參 加 率	率	0.571	0.584	0.584	0.585	0.583	0.582	0.581	0.562	0.543	0.488	0.463
都 市	率	0.515	0.525	0.526	0.527	0.528	0.528	0.533	0.530	0.521	0.477	0.458
農 村	率	0.653	0.675	0.677	0.682	0.684	0.685	0.691	0.681	0.666	0.618	0.584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51	0.259	0.268	0.276	0.284	0.319	0.398	0.476	0.625	0.736
都 市	比 率	0.334	0.340	0.345	0.350	0.355	0.360	0.383	0.441	0.506	0.639	0.743
農 村	比 率	0.109	0.116	0.121	0.127	0.134	0.140	0.168	0.235	0.298	0.428	0.546
失 業 率	率	0.051	0.053	0.050	0.050	0.050	0.050	0.049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83	0.077	0.076	0.075	0.074	0.069	0.038	0.036	0.033	0.031
農 村	率	0.016	0.017	0.015	0.015	0.015	0.015	0.013	0.005	0.005	0.004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09	1.14	1.20	1.26	1.33	1.64	2.58	4.07	10.29	22.64
都 市	百萬원	1.36	1.41	1.47	1.54	1.61	1.69	2.02	3.00	4.50	10.76	23.08
農 村	百萬원	0.72	0.73	0.75	0.78	0.81	0.85	0.99	1.40	2.18	5.92	13.90
人 當 GNP	1,000$	0.79	0.84	0.89	0.95	1.00	1.06	1.33	2.14	3.42	8.03	16.95
經濟成長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附表 7〉 主要指標(*M*−2)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2010	2030	2050
人 口												
規 模	1,000	38,707	39,304	39,916	40,546	41,191	41,846	44,457	50,231	54,450	60,061	60,272
都 市	1,000	22,721	23,363	23,966	24,722	25,505	26,321	29,586	38,198	45,205	54,931	57,805
農 村	1,000	15,986	15,941	15,949	15,823	15,687	15,525	14,872	12,033	9,245	5,130	2,467
增 加 率	1/1,000	15.2	15.3	15.5	15.7	15.8	15.8	14.6	10.0	7.2	1.9	−1.0
都 市	1/1,000	19.0	19.1	19.5	19.7	19.7	19.5	17.0	11.9	9.3	3.2	−0.2
農 村	1/1,000	10.0	9.9	9.6	9.6	9.7	9.7	9.9	4.1	−2.8	−11.1	−19.8
粗 出 生 率	1/1,000	22.6	22.7	22.7	22.8	22.8	22.7	21.4	17.1	15.5	13.1	12.8
都 市	1/1,000	25.2	25.1	25.5	25.6	25.4	25.2	22.6	17.8	16.4	13.5	13.0
農 村	1/1,000	19.2	19.2	18.7	18.6	18.7	18.7	19.1	15.1	11.2	8.9	8.1
粗 死 亡 率	1/1,000	6.3	6.3	6.2	6.0	5.9	5.8	5.7	6.0	7.2	10.0	12.8
都 市	1/1,000	5.1	5.0	4.9	4.8	4.6	4.6	4.5	4.8	6.0	9.2	12.1
農 村	1/1,000	8.1	8.1	8.1	7.9	7.9	7.9	8.1	9.9	12.9	18.9	26.8
移 民 率	1/1,00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合計出產率	率	2.699	6.630	2.571	2.519	2.471	2.427	2.289	2.109	2.040	2.006	2.001
都 市	率	2.530	2.483	2.440	2.401	2.366	2.334	2.230	2.091	2.036	2.006	2.001
農 村	率	3.033	2.942	2.859	2.783	2.714	2.651	2.449	2.178	2.071	2.011	2.002
純再生產率	1/1,000	1.23	1.20	1.18	1.16	1.14	1.12	1.07	1.00	0.97	0.96	0.96
都 市	1/1,000	1.15	1.13	1.12	1.11	1.09	1.08	1.04	0.99	0.97	0.96	0.96
農 村	1/1,000	1.38	1.34	1.31	1.28	1.25	1.23	1.14	1.03	0.99	0.96	0.96
都 市 化 率	率	0.587	0.594	0.600	0.610	0.619	0.629	0.665	0.760	0.830	0.915	0.959
純 移 動 率	率	0.012	0.005	0.004	0.007	0.007	0.008	0.007	0.007	0.004	0.002	0.001
都 市	率	0.021	0.009	0.006	0.011	0.012	0.012	0.011	0.009	0.005	0.002	0.001
農 村	率	0.028	0.013	0.009	0.017	0.018	0.020	0.021	0.027	0.025	0.021	0.019
扶養人口比	比 率	0.594	0.581	0.569	0.555	0.542	0.531	0.507	0.482	0.434	0.504	0.551
都 市	比 率	0.534	0.530	0.527	0.521	0.513	0.506	0.492	0.451	0.409	0.487	0.539
農 村	比 率	0.687	0.662	0.636	0.611	0.590	0.574	0.538	0.590	0.570	0.721	0.910
可姙女性比	比 率	0.482	0.484	0.486	0.488	0.491	0.493	0.496	0.484	0.452	0.399	0.375
都 市	比 率	0.538	0.536	0.534	0.533	0.533	0.532	0.529	0.514	0.472	0.412	0.381
農 村	比 率	0.402	0.407	0.414	0.419	0.423	0.426	0.432	0.392	0.358	0.267	0.225
家 口 數	1,000	8,438	8,661	8,889	9,126	9,370	9,620	10,649	13,250	15,645	19,890	22,270
都 市	1,000	5,126	5,323	5,514	5,743	5,982	6,233	7,272	10,248	13,130	18,271	21,394
農 村	1,000	3,312	3,338	3,375	3,383	3,388	3,388	3,377	3,003	2,515	1,619	876
中・高校就學率	比 率	0.707	0.723	0.740	0.756	0.769	0.784	0.842	0.903	0.941	0.975	0.988
經 濟 活 動												
人 口	1,000	14,793	15,528	15,938	16,386	16,782	17,172	18,542	20,995	23,111	23,546	22,586
都 市	1,000	7,915	8,329	8,587	8,930	9,269	9,627	11,019	14,797	18,111	20,897	21,338
農 村	1,000	6,879	7,199	7,352	7,456	7,513	7,544	7,523	6,198	5,000	2,649	1,248
參 加 率	率	0.571	0.585	0.586	0.588	0.587	0.587	0.588	0.569	0.548	0.491	0.465
都 市	率	0.515	0.525	0.526	0.527	0.527	0.528	0.532	0.529	0.521	0.479	0.459
農 村	率	0.653	0.675	0.676	0.681	0.684	0.686	0.696	0.693	0.678	0.615	0.585
高校卒業者比	比 率	0.241	0.251	0.259	0.268	0.276	0.285	0.319	0.398	0.476	0.623	0.736
都 市	比 率	0.334	0.341	0.349	0.355	0.361	0.366	0.391	0.447	0.511	0.641	0.744
農 村	比 率	0.109	0.116	0.123	0.130	0.138	0.146	0.178	0.242	0.304	0.432	0.550
失 業 率	率	0.051	0.053	0.051	0.052	0.053	0.054	0.055	0.030	0.030	0.030	0.030
都 市	率	0.081	0.085	0.081	0.082	0.082	0.082	0.081	0.040	0.037	0.033	0.032
農 村	率	0.016	0.017	0.017	0.017	0.017	0.017	0.016	0.006	0.005	0.004	0.004
平均生產性	百萬원	1.06	1.09	1.14	1.20	1.26	1.33	1.63	2.55	4.02	10.20	22.51
都 市	百萬원	1.36	1.41	1.47	1.53	1.61	1.68	2.02	2.99	4.48	10.73	23.00
農 村	百萬원	0.72	0.74	0.78	0.82	0.86	0.90	1.09	1.54	2.39	6.26	14.43
人 當 GNP	1,000$	0.79	0.84	0.89	0.95	1.00	1.06	1.33	2.14	3.42	8.01	16.91
經濟成長率	率	0.054	0.075	0.075	0.075	0.075	0.075	0.070	0.060	0.055	0.045	0.035

國民福祉年金制度 實施와 所得再分配 效果

延 河 清

▷ 目 次 ◁

Ⅰ. 序 論
Ⅱ. 退職金制度와 所得再分配效果
Ⅲ. 現行 職域年金制度의 適用對象과 所得再分配
Ⅳ. 國民福祉年金制度導入과 所得再分配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所得再分配政策은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低所得階層의 直接的인 所得向上을 위한 所得再分配政策이며, 다른 하나는 低所得階層의 稼得能力(earning capacity) 向上을 지향하는 政策이다. 물론 各種 所得再分配政策은 위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기도 하나, 동시에 兩側面을 包括하기도 한다. 直接 所得向上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을 現金補助와 現物補助로 나누어 볼 때, 逆所得稅(the negative income tax)나 所得保障(the guaranteed income) 政策은 現金補助에 속하며, 給食·保健서비스·住宅 等에 대한 補助나 無料提供은 現物補助에 속한다. 한편 低所得階層에 대한 稼得能力向上政策은 일반적으로 就業과 관련된 모든 障碍를 除去하거나 혹은 生產性 向上을 통해서 稼得力을 培養시키는 조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低所得階層에게는 就業機會가 있더라도 技術不足, 健康上의 脆弱性과 같은 여러가지 障碍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어느 한가지 所得再分配政策만으로는 그 實效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所得再分配政策은 위의 두 가지 政策을 동시에 수행함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所得再分配方法에는 여러가지 側面이 있을 수 있다. 최근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모든 國家에서 社會保障政策이 所得再分配의 한 手段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開發途上國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所得階層間 相對的인 所得不均衡 때문에 社會保障政策에 의한 所得再分配가 더 절실하나, 各種 社會保障制度가 導入·定着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所得再分配政策選擇의 方法上 範圍가 先進國보다 더 廣範圍하다.

社會保障의 概念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論議가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疾病, 事故, 失業, 老齡, 廢疾 또는 死亡時의 所得中斷이나 喪失로 인한 經濟的 困窮으로부터 保護를 해 주고, 必要한 醫療서비스를 提供해 주며, 家族의 子女養育費를 補助해 주기 위한 一連의 包括的인 措置로 定義된다. 한편 社會保障의 基本性質에 관한 見解로는 傳統的인 社會保險으로 보는 見解와 公的 扶助로 보는 見解가 있는바, 어떤 입장을 택하든지 결국 社會保障制度의 實施를 통하여 所得階層間 所得의 移轉은 所得再分配效果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社會保障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는 水平的(horizontal) 再分配와 垂直的(vertical) 再分配로 구분된다.

水平的 再分配는 同一所得階層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所得再分配로서 健康한 者로부터 病者에게, 扶養者가 없는 勤勞者로부터 扶養者가 많은 勤勞者에게, 被雇傭者로부터 失業者에게, 혹은 經濟活動人口로부터 退職者에게로의 所得再分配 등을 말한다. 이를 特定 個個人에 대하여 볼 때, 特定 個人은 일생 동안 때로는 純寄與者로, 때로는 純受惠者로서의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한 個人의 全生涯로 볼 때 그의 寄與金 全體와 그의 給與受領額 全體가 均衡을 이룰 것이라는 保障은 기대할 수 없고, 단지 各種 事故를 당하여 經濟的·社會的으로 불리한 입장에 자주 처하게 되는 사람이 惠澤을 좀 더 많이 입게 된다.

政府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一環으로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所得再分配의 問題와 관련하여 이러한 水平的 所得再分配는 論外로 하고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에 따르는 垂直的인 再分配, 즉 각기 다른 所得階層間의 所得移轉問題를 주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 垂直的인 所得再分配問題는 傳統的으로 各 所得階層에 대한 稅金의 賦課와 관련하여서도 政府의 중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現行 社會保障制度의 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를 정확하게 算定해 내는 것은 可用統計上 또는 接近方法上 여러가지 難點으로 거의 不可能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實施가 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檢討하고, 아울러 現行 退職金制度를 所得再分配的 側面에서 分析하고자 한다.

Ⅱ. 退職金制度[1]와 所得再分配效果

1970年代 이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대다수 企業들은 企業年齡이 日淺하여 企業別 被雇傭者數가 적고 賃金水準이 낮아서 企業의 退職金負擔이 큰 問題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70年代 이후 急速한 經濟成長過程에서 企業規模의 擴大에 따른 賃金勤勞者의 增加와 賃金水準의 上昇 및 勤勞者의 勤續年數의 增加 等으로 退職金負擔이 加速的으로 增加하여

1) 우리나라의 退職金制度는 勤勞基準法 第28條에 의거하여 16人 以上 事業場에 從事하는 勤勞者가 退職하였을 경우 勤續年數 1年에 대해 平均賃金 30日分 이상에 해당하는 金額을 使用者가 一時金으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

企業의 退職金負擔能力 및 退職時 退職金給與 保障이 社會的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賃金勤勞者의 退職給與算出은 賃金水準, 勤續年數, 職種別, 職級別 企業停年制, 勤續에 따른 退職累進率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點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職種別 賃金勤勞者의 賃金構造, 勤勞者分布, 平均勤續年數 및 企業停年制度와 관련하여 現行退職金制度의 職種別, 職給別 退職給與衡平上의 問題를 分析하기로 한다.

〈表 1〉에서와 같이 1980年度 3月 現在 全職種 賃金勤勞者의 月平均賃金[2]은 173,200원으로서 이를 100으로 보았을 때, 行政·管理職, 專門技術職의 月平均賃金은 각각 298.7, 185.6으로서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고, 生產職, 販賣職과 같은 賃金勤勞者의 月平均賃金은 각각 75.5, 67.4로서, 高賃金인 行政·管理職과 低賃金인 生產職과의 賃金隔差는 4倍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勤續年數가 1年未滿일 때의 行政·管理職과 生產職間의 賃金隔差는 4倍를 나타내고 있으나, 勤續年數가 20年 以上일 경우에는 2.6倍로 職種別 勤勞者의 勤續年數가 증가함에 따라 賃金隔差는 相對的으로 減少하고 있다.

한편 職種別 勤續年數別 勤勞者數를 〈表 2〉에서 보면 行政·管理職, 專門·技術職과 같이 相對的으로 賃金水準이 높은 職種에 속하는 勤勞者數보다는 生產職과 같이 賃金水準이 낮은 職種의 勤勞者數가 훨씬 많아서 全職種 勤勞者中 6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勤續年數別로 보면 勤續年數가 1年未滿인 勤勞者의 경우에는, 相對的으로 生產職 等 低賃金水準에 속하는 勤勞者가 차지하는 比率이 높으나 勤續年數가 길어짐에 따라 比率이 낮아지며, 相對的으로 高賃金水準에 속하는 行政·管理職 및 專門·技術職의 勤勞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1.3%이나 勤續年數 20年 以上의 경우에는 26.1%로 높게 나타나, 勤續年數가 長期化할수록 高賃金水準勤勞者가 차지하는 比率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勤續年數가 增加함에 따라 우리나라 勞動市場構造가 高學歷의 行政·管理職, 專門·技術職을 優待하여 長期勤續을 誘導하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生產職, 販賣職과 같이 學歷이 낮은 賃金勤勞者는 勞動市場에 參加하는 年齡이 낮고 入·離職率이 高所得水準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企業이 職種別로 企業停年制를 實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企業停年制는 1949年부터 實施되어 初期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企業停年制 採擇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70年代에는 거의 모든 企業體가 停年制를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職級別 企業停年制는 勤勞基準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企業의 團體協約이나 就業規則 等 企業勤勞契約에 明示하고 있다. 韓國經營者協會의 報告[3]에 의하면 이와 같이 法的인 强制規定은 없으나 대부분의 企業들은 企業停年制를 實施하고 있고, 職種別 企業停年이 빠른 이유중의 하나로는 企業의 退職金累進率에 의한 退職金負擔 때문에 企業의 停年을 延長치 못하

2) 月平均 賃金은 定額給與와 超過給與 및 月平均特別給與額(前年 年間特別給與額÷12個月)을 포함한 賃金임.

3) 100人 以上 常用勤勞者雇傭 561個事業體 중 93.6%가 企業停年制를 採擇하고 있으며 그중 79.2%가 全職種 勤勞者平均 滿 55歲를 停年으로 하고 있다.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의 現況』, 1979 參照.

〈表 1〉 職種別 勤勞者勤續年數別 賃金分布(1980年 3月)

(단위 : 千원, %)

	1年未滿	1~4	5~9	10~14	15~19	20年以上	平均賃金
行政·管理職[1]	406.3 (341.1)	483.8 (293.0)	529.0 (199.9)	609.8 (165.7)	620.4 (149.9)	675.6 (142.6)	517.4 (298.7)
專門·技術職	226.6 (190.3)	297.9 (180.4)	391.9 (148.1)	492.4 (133.8)	516.8 (124.9)	593.9 (125.3)	321.5 (185.6)
事務·管理職[2]	146.7 (123.2)	199.3 (120.7)	288.1 (108.9)	356.9 (97.0)	376.2 (90.9)	385.3 (81.3)	211.7 (122.2)
農·林·蓄·水産業職	120.2 (100.9)	154.3 (93.4)	174.6 (66.0)	223.7 (60.8)	304.2 (73.5)	— —	144.4 (83.4)
서비스職	101.0 (84.8)	129.6 (78.5)	171.4 (64.8)	205.8 (55.9)	230.1 (55.6)	191.9 (40.5)	131.4 (75.9)
生産職	103.2 (86.6)	131.3 (79.5)	197.2 (74.5)	259.4 (70.5)	260.0 (62.8)	256.4 (54.1)	130.8 (75.5)
販賣職	95.0 (79.8)	118.0 (71.5)	213.0 (80.5)	224.8 (61.0)	— —	306.8 (64.7)	116.8 (67.4)
平均賃金	119.1 (100)/ (68.8)	165.1 (100)/ (95.3)	264.6 (100)/ (152.8)	368.0 (100)/ (212.5)	413.9 (100)/ (239.0)	473.8 (100)/ (273.6)	173.2 (100)/ (100.0)

註 : 1) 公企業이나 私企業體 등 運營機關에서 委任된 權限範圍內에서 運營方法所要施設 財政, 生産, 販賣 및 人事 등에 관한 일을 樹立·調整하고 決定하는 者로서 金融機關의 總裁, 銀行長, 監事, 理事와 學校經營者, 會社의 會長, 專務, 常務, 部長級까지를 말한다.

2) 公企業이나 私企業에서 근무하는 事務從事者의 日常業務를 組織, 監督하는 者로서 課長, 係長, 事務員, 係員, 秘書官, 管理員 등을 말한다.

資料 :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表 2〉 職種別 勤續年數別 勤勞者分布(1980年 3月)

(단위 : 名, %)

	1年未滿	1~4	5~9	10~14	15~19	20年以上	計
行政·管理職	10,412 (1.3)	39,958 (2.7)	25,495 (8.1)	13,528 (15.1)	5,200 (21.8)	2,641 (26.1)	97,129 (3.6)
專門·技術職	33,951 (4.3)	87,313 (5.8)	25,833 (8.2)	11,412 (12.8)	4,112 (17.2)	2.625 (26.0)	165,246 (6.1)
事務·管理職	122,668 (15.4)	328,698 (21.9)	88,812 (28.3)	26,398 (29.5)	6,697 (28.0)	1,838 (18.2)	575,111 (21.0)
農·林·畜·水産業職	606 (0.0008)	363 (0.0002)	94 (0.0003)	74 (0.0008)	15 (0.0006)	— —	1,152 (0.0004)
서비스職	36,385 (4.6)	60,713 (4.0)	17,522 (5.6)	5,008 (5.6)	1,135 (4.8)	522 (5.2)	121,285 (4.4)
生産職	583,478 (73.7)	975,165 (65.0)	154,865 (49.4)	32,786 (36.7)	6,719 (28.1)	2,472 (24.4)	1,755,477 (64.3)
販賣職	4,057 (0.005)	8,551 (0.006)	658 (0.002)	135 (0.002)	— —	4 (0.0004)	13,405 (0.0005)
計	791,549 (29.0)/ (100)	1,500,656 (55.0)/ (100)	313,279 (11.4)/ (100)	89,341 (3.3)/ (100)	23,878 (0.009)/ (100)	10,102 (0.004)/ (100)	2,728,805 (100)/ (100)

資料 :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 現在의 企業停年制度는 企業의 規模 및 職種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기업은 規模가 작을수록 企業停年年齡이 낮고, 企業停年年齡은 職級 및 職種에 따라 크게 다르다. 職種別로는 行政·管理職이 生産職의 勤勞者보다 企業停年年齡이 높으며, 職級에 따라서도 部長級 以上은 一般社員의 경우보다 높다. 특히 理事인 경우에는 企業停年年齡에 制限이 없는 경우가 60.4%나 되고 있다. 이러한 職級別 및 職種別 企業停年制에 의한 退職累進率適用은 低所得賃金階層에게 相對的으로 不利할 뿐만 아니라, 景氣沈滯期에 專門·技術職勤勞者보다 一般生産職種勤勞者의 非自發的인 解雇의 危險이 큼으로써[5] 退職給與의 累進率適用에 있어서는 不利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勤續年數別 勤勞者의 賃金構造 및 企業停年制度는 現行 退職金制度와 관련하여 볼 때, 職種別, 職級別 賃金隔差의 深化 및 勤續年數의 隔差는 退職給與衡平上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職種別 平均勤續年數를 〈表 3〉에서 보면, 行政·管理職이 6.3年, 生産職과 販賣職의 경우에는 2.3年과 2.2年으로 낮은 勤續年數를 보여주고 있고, 職級別로는 任員級이 6.2年, 一般社員이 2.7年이다(表 4 參照). 이와 같이 職種別, 職級別 平均勤續概念으로 볼 때 대부분의 勤勞者가 實質的으로 退職累進率의 適用을 받지 못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賃金을 받는 一部 行政·管理職 勤勞者의 경우에는 累進適用을 5年基準으로 하였을 때 累進率 適用을 받아 낮은 賃金職種의 勤勞者들보다는 相對的으로 높은 累進率適用으로 많은 退職金給與惠澤이 있다. 이와 같이 大部分의 低賃金階層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는 5年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實質的으로 退職金의 累進率適用을 받지

〈表 3〉 職種別 勤勞者退職金 給與占有率

	總月平均[1] 賃金 (원)	勤勞者數 (名)	平均 勤續年數	勤勞者個人別 給與占有率 (%)	職種別 給與占有率 (%)
行政管理職	517,432	97,129	6.3	49.6	20.9
專門技術職	321,530	165,246	4.0	19.6	14.1
事務管理職	211,678	575,111	3.3	10.6	26.6
農林畜水産業職	144,426	1,152	2.5	5.5	0.0003
서비스職	131,381	121,285	3.1	6.2	3.3
生産職	130,848	1,755,477	2.3	4.6	34.9
販賣職	116,815	13,405	2.2	3.9	0.002
平均 (計)	173,150	2,728,805	2.8	(100.0)	(100.0)

註 : 1) 定額給與와 超過給與 및 月平均特別給與額(前年 年間特別給與額÷12)을 包含한 賃金임.
資料 :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4) 一部企業에서는 平均壽命의 增加에 따라 停年年齡을 延長하는 경향이 있다. 그 重要理由는 노련한 經歷에 의한 熟練技能工의 確保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企業人事制度는 年功序列制를 채택하여 停年退職年齡을 延長하는 경우 全勤勞者의 昇進, 昇級의 不進招來, 人事停滯로 인한 新陳代謝의 沮害, 生産性減少 및 지나친 退職累進率로 인한 企業負擔의 加重 등의 이유로 企業停年을 延長하지 못하고 있다.

5) 景氣沈滯時 專門·技術職 혹은 行政·管理職勤勞者의 勞動限界生産性이 實質賃金水準을 上廻하는 한 解雇되지 않을 것이며, 實際로 技能人力과 資本은 補完的인 假設(complementarity hypothesis)이 成立되고 있는 반면, 非技能一般生産職勤勞者는 資本과 代替關係가 成立되므로 經濟不況期에 優先的으로 解雇될 危險이 크다.

못하고, 累進制의 惠擇을 받는 사람은 一部 長期勤續 高賃金階層勤勞者라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累進率이 職級과 職種에 따라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各 企業의 停年退職年齡과도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 停年制度는 職級에 따라 停年退職年齡이 크게 差異가 나고 있고, 退職累進率適用도 長期勤續者에게 有利하게 되어 있다. 職級이 높아짐에 따라 平均賃金도 높고 停年年齡이 높아 長期勤續도 可能하나, 職級이 낮은 경우에는 低賃金 뿐만 아니라 長期勤續을 하고 싶어도 停年年齡 때문에 長期勤續을 못하는 實情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볼 때, 現行 退職金制度는 結果的으로 職級이 높으면서 아울러 높은 賃金에 長期勤續이 可能한 少數에게 더 큰 惠澤을 주는 制度라 하겠다. 물론 退職金이 賃金後拂的인 性格과 恩惠功勞的인 補償이라는 側面에서 보면 높은 職級의 사람이 많은 退職金을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하겠으나, 이를 똑같은 勤勞者의 立場으로 退職後의 生活保障이라는 面에서 보면 所得의 逆分配라 생각된다. 後述한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와 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分析에서 高所得의 醵出金 一部가 低所得者의 給與에 充當되어 所得再分配效果가 큼이 分析되고 있으나, 現行 退職金制度下의 規模別, 職種別, 職級別 退職累進率과 停年退職年齡의 差異는 退職하는 勤勞者의 生活保障이라고 할 때 큰 問題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낮은 職級의 賃金勤勞者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停年年齡에 묶여 일을 더 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本意아니게 일찍 停年을 당하여 퇴직누진율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職級別, 職種別 退職給與衡平上의 問題가 제기된다.

〈表 4〉에서는 1980年度의 職級別 勤勞者數와 月平均賃金 및 職級別 平均勤續年數를 基準으로 法定下限인 年 8.33%의 退職給與만을 計算하여 全勤勞者退職給與總額에 대한 職級別 退職給與占有率을 推定하였다. 職級別 勤勞者個人別 退職給與占有率을 볼 때 任員이

〈表 4〉 職級別 勤勞者退職金 給與占有率

	總月平均[1] 賃金 (원)	勤勞者數 (名)	平均勤續年數 (名)	勤勞者個人別 給與占有率 (%)	職級別 給與占有率 (%)
任員	575,218	40,720	6.2	21.5	9.2
部長	480,646	40,359	6.0	17.4	7.3
次長	488,948	22,100	6.5	19.2	4.4
課長	378,711	66,647	5.4	12.4	8.6
係長	306,619	97,525	5.1	9.4	9.6
社員	275,347	99,929	2.7	4.5	4.7
社員補	200,033	189,913	3.4	4.1	8.1
女社員	122,964	180,219	2.3	1.7	3.2
班長	186,568	85,810	4.2	4.7	4.2
工員	111,175	1,354,501	2.1	1.4	19.9
其他	198,635	551,082	3.0	3.6	20.8
平均(計)	173,150	2,728,805	2.8	100.0	100.0

註 : 1) 〈表 3〉 參照.
資料 :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21.5%, 部長級이 17.4%인 反面에 一般社員은 4.7%, 그리고 一般生産職工員은 1.4%로 나타나 相對的으로 職級이 높으면서 平均賃金水準이 높은 高賃金階層의 退職給與占有率이 職級이 낮고 平均賃金水準이 낮은 低賃金階層의 退職給與占有率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3〉에서 1980年度의 職種別 勤勞者數와 總月平均賃金 및 職種別 平均勤續年數를 基準으로 全勤勞者退職給與總額에 대한 職種別 勤勞者個人別 退職給與占有率은 行政·管理職이 49.6%, 專門·技術職이 19.6%이고, 一般生産職은 4.6% 그리고 販賣職은 2.2%를 보여 주고 있어, 職級別 占有率分析에서와 같은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退職給與法定下限 年 8.33%를 適用한 職級別, 職種別 退職給與占有率로 보았을 때, 高賃金階層과 低賃金階層의 退職給與占有率의 隔差가 심한 것과 함께 現實的으로,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가 5年 未滿인데 比하여, 企業의 任員, 部長 等은 長期勤續으로 勤續年數에 比例하여 累積退職金이 增加되고 있으며, 企業停年이 職級別 및 職種別로 低賃金勤勞者에게 不利하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現行 退職金制度는 社會保障的인 側面에서 職級別, 職種別 所得逆分配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Ⅲ. 現行 職域年金制度의 適用對象과 所得再分配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問題와 관련하여 給與體系의 性格에 따라 年金保險에 加入한 勤勞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를 論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社會保險制度中에서 一部職域의 勤勞者만을 그 適用對象으로 하고 있는 職域別(軍人, 公務員, 私立學校敎職員) 年金保險制度가 어느 정도로 社會的 適切性(social adequacy)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現行 職域別 年金保險制度는 適用對象職域을 軍人, 公務員, 私立學校敎職員에 限定하고 있다. 그런데 政府가 醵出金의 一部를 負擔한다는 점에서 餘他職域에 비하여 이들 職域에게 所得再分配上 有利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年金保險事故의 主對象인 老齡, 廢疾, 遺族給與 이외에도 休業給與, 災害給與와 같은 各種 短期給與와 學資金貸與事業도 하고 있어서, 이들 職域에 더욱 유리한 惠澤을 주고 있다. 한편 年金保險이면서도 各 職域別로 給與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6], 年金의 主된 長期給與가 俸給水準과 勤續年數에 比例하도록 되어 있고, 低所得者에게 보다 관대한 給與規定이 없어서[7] 下向的인 所得再分配效果가 거의 없다. 그러나 各種 短期給與와 其他 福祉서비스의 惠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所得再分配效果를 나타낸다.

6) 예를 들면, 公務上 疾病이나 負傷으로 不具가 되었을 때 그 障害程度에 따라 給與가 支給되는데, 公務員과 私立學校敎職員은 14等級으로, 軍人은 3等級으로 나누어 支給되며, 公務員과 私立學校敎職員은 標準報酬月額의 15~80%까지, 軍人은 40~80%까지 支給받는다.

7) 國民福祉年金制度에는 基本年金額이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되어, 이중에서 均等部分은 全勤勞者 平均賃金으로부터 算出되기 때문에 低所得階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데 現行 職域年金保險制度는 報酬比例方式이므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相對的으로 低所得階層에게 더 관대하게 규정되어 있다.

社會保險財源調達의 問題는 醵出金의 歸着과 관련해서 所得再分配에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는바, 年金保險財政의 主要收入源은, ① 被保險者로부터의 寄與金, ② 使用者의 負擔金, ③ 政府의 補助金과 社會保險에 割當되는 特別稅收入 및 ④ 積立金으로부터의 利子收入 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4가지 財源調達方法은 國家에 따라 큰 差異가 있는데, 一般的으로 先進國에서 보다는 開發途上國에서 使用者의 負擔金이 被保險者의 寄與金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財源調達方法은 〈表 5〉에서와 같이 주로 被保險者와 使用者의 共同負擔에 의존하고 있고 政府의 補助는 미미하다. 그런데 被保險者로서 寄與金을 내는 保險加入者는 그 保險의 給與受給者인데, 先進國의 경우를 보면 被保險者들이 經濟活動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고 全所得階層에 비교적 골고루 分布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現行 年金保險制度에서는 給與를 受給하는 被保險者가 全人口中 一部分에 限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被保險人口는 比較的 높은 所得階層에 속한다는 점에서 所得再分配上 逆機能的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所得再分配的 觀點에서 볼 때 社會保險財政의 또 하나의 主要財源인 使用者 負擔金이 중요한데 使用者 負擔金은 실질적으로 使用者가 다 負擔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表 5〉 社會保險財源의 負擔者別 構成比

(단위 : 百萬원, %)

	被 傭 者[1),2)]			使 用 者[1),3)]			政 府[4)] 補助金	合 計
	一般企業	特殊職域	計	一般企業	特殊職域[6)]	計		
1965	—	931	931 (43.9)	230	932 (—)	1,162 (54.8)	25 (1.3)	2,118
1970	19	7,965	7,984 (42.0)	3,030	7,966 (—)	10,996 (57.8)	21 (0.2)	19,001
1975	133	20,049	20,182 (34.7)	14,641	19,103 (1,372)	32,372 (55.7)	5,507 (9.6)	58,061
1977	7,299	44,461	51,760 (35.8)	34,637	44,966 (2,975)	79,603 (55.3)	13,020 (8.9)	144,383
1978	18,829	57,752	76,581 (36.7)	59,612	58,875 (5,064)	118,487 (56.8)	13,457 (6.5)	208,525
1979	31,550	89,773	121,323 (37.3)	94,694	91,739 (6,308)	186,433 (57.3)	17,383 (5.4)	325,139
1980[5)]	39,472	122,579	162,051 (36.4)	118,850	119,829 (9,534)	238,679 (53.6)	44,548 (10.0)	445,278
1981[5)]	74,182	192,418	266,600 (38.3)	165,206	195,432 (14,083)	360,638 (51.8)	69,225 (9.9)	696,463

註 : 1) 年金保險(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 國民福祉年金), 醫療保險, 産災保險을 포함한 財源으로서 利子收入은 除外하였음.
2) 社會保險加入者의 保險料負擔金으로써 特殊職域은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年金加入者의 本人負擔額임.
3) 企業 및 學校法人, 政府(地方費包含)의 保險料負擔金(退職積立金負擔은 除外하였음).
4) 政府의 社會保險에 對한 補助金 合計.
5) 豫算値로 計算.
6) ( ) 안의 數値는 私立學校法人의 保險料負擔金임.

資料 : 總務處, 國防部,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保社部, 內部資料.
勞動廳, 『産災保險事業年報』, 1979, 1980.
經濟企劃院, 『豫算槪要』, 1981.
大韓民國, 『歲入歲出決算報告書』, 各年度.

그 이유는 使用者가 그들의 社會保障負擔金을 生產費로 취급하여 價格引上의 形態로 消費者에게 轉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推論에 따르면 使用者들의 負擔金으로부터 財政調達을 받은 社會保險給與는 消費者들로부터 被保險者인 被雇傭者들에게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特定賃金勤勞者에게만 年金保險을 실시하는 경우에, 總家口所得中 勤勞所得 以外의 所得이 많은 韓國的 現實에서는, 勤勞所得 以外의 所得階層으로부터 勤勞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衡平上의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또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 될 사실은 使用者가 社會保障負擔金의 一部를 實質賃金水準의 下落을 통하여 被傭勤勞者들에게 轉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賃金協商에 있어서 使用者는, 賃金만에 의해서 人件費를 協商하지 않고 社會保障負擔金과 같은 其他 費用도 人件費에 包含하여 결국 使用者의 負擔金은 總賃金(gross wages)의 一部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非熟練 및 半熟練勞動力이 많고 현실적으로 勞動組合의 團體交涉權이 微弱한 우리나라에서는, 使用者 負擔金이 被傭者들에게 轉嫁되기 쉽고, 반면에 勞動供給이 不足한 高度의 熟練人力의 경우에는 協商力이 强化되어 이러한 負擔金 轉嫁가 적어지게 되므로, 勤勞所得階層間의 賃金隔差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社會保險의 세번째 主要財源은 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險에 대한 政府補助金은 〈表 5〉에서와 같이 一般勤勞者를 위한 補助金은 그다지 크지 못하나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에 대하여는 使用者로서의 負擔金을 감안하더라도 크다.

한편, 社會保險制度의 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의 問題는 그 나라의 租稅制度에서 所得階層間에 各各 어떻게 賦課하도록 되어 있는가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社會保障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를 檢討하기 위하여 各 所得階層에 대한 租稅負擔率과 관련하여 租稅負擔實態가 어떠한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直接稅는 間接稅보다 훨씬 累進的(progressive)이고, 間接稅는 그 負擔率에 있어서 대체로 逆進的(regressive)이거나 또는 比例的(proportional)이다. 우리나라의 內國稅總額中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率을 보면 〈表 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80年에 直接稅가 33% 밖에 안 되고 間接稅가 67%인데, 間接稅의 移轉的 性格과 逆進性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年金保險制度의 實施는 相對的으로 低所得階層에게 좀 더 有利한 所

〈表 6〉 內國稅中 直接稅와 間接稅의 構成比[1)]

(단위 : %)

	1962	1966	1971	1976	1977	1978	1979	1980
直 接 稅	35.2	49.0	50.5	41.1	36.7	37.4	37.1	33.0
間 接 稅	64.8	51.0	49.5	58.9	63.3	62.6	62.9	67.0

註 : 1) 直接稅로는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資產再評價稅 및 不當利得稅가 포함되어 있으며, 間接稅로는 附加價値稅, 酒稅, 特別消費稅, 證券去來稅, 電話稅, 印紙稅 等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 財務部, 『現行稅制의 現況과 租稅收入構造』, 1981. 3.

得再分配效果를 줄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現行 職域別 年金保險의 財源調達方法을 보면, 公務員, 軍人年金은 被保險者와 使用者인 政府가 각각 標準俸給額의 5.5%씩 부담하고, 그 밖에 基金公團運營費 等의 事務費와 災害補償金을 政府가 負擔하고 있다. 그리고 私立學校敎職員年金은 被保險者가 標準俸給額의 5.5%, 學校法人이 3.5%, 政府가 2%를 負擔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 制度에서는 本制度의 保護를 받지 못하는 一般勤勞者를 생각해 볼 때, 國家的 惠澤이 衡平을 기하지 못하여 결국은 所得再分配上 이러한 特殊職域階層에게 더욱 有利하게 作用하고 있다.

Ⅳ. 國民福祉年金制度導入과 所得再分配

1. 效果分析의 基本假定

이미 公的 年金保險制度가 성숙단계에 있는 先進諸國에서도 최근 公的 年金保險制度 實施에 따르는 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해서 肯定的 혹은 否定的 見解가 相衝하고 있다[8]. 이러한 見解差는 年金保險의 性格 중 각기 어느 한 部分에만 論點을 强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肯定論者들은 年金保險의 財源調達이 所得比例方式으로 寄與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給與體系는 所得比例部分과 均等部分으로 算定되는 基本年金과 扶養者數에 따라 算定되는 加給年金으로 構成되기 때문에 低所得階層에 相對的으로 유리하게 되어 所得再分配效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否定論者들은 高所得階層일수록 敎育水準이 높고 就業도 相對的으로 늦게하며 退職도 늦게 한다. 따라서 絶對額으로 볼 때 높은 給與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高所得階層에게 더 많은 給與를 준다는 점에서 年金保險이 所得再分配에 있어서 逆機能的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年金保險制度의 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한 肯定的·否定的 論議를 韓國의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分布現況에서 檢討하기 위하여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에 따르는 所得再分配效果를 다음과 같은 3가지 觀點에서 分析하였다. 첫째 勤勞所得階層別 賃金代替率[9]을 比較하였고, 둘째 同一時點에서 勤勞者個人別, 階層「그룹」別로 各 勤勞所得階層의 醵出占有率對 給與占有 率[10]을 比較하였으며, 세째 勤勞所得階層別 醵出料率을 給與水準에 따라서 修正한 有效醵出料率[11] (the effective tax rate)을 比較하였다.

이와 같은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한 檢討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基本假定을 하였다. 첫째 名目賃金上昇率은 年 15%를 적용하였고, 둘째 男子勤勞者는 法定年金受給年齡인 60歲에

8) Elizabeth Deran, "Income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National Tax Journal*, Vol.19., National Tax Association-Tax Institute of America, March 1966.

9) 賃金代替率(replacement rate)은 年金受給年齡에 達한 賃金勤勞者가 年金受給直前에 받던 賃金에 대한 年金受給年度의 年金額의 比率을 말한다.

10) 醵出占有率은 全勤勞者가 退職當時까지 醵出한 總醵出金에 대한 各 所得階層의 勤勞者가 寄與한 總醵出金의 比率을 의미하며, 給與占有率은 全勤勞者가 받는 總給與에 대한 各 所得階層의 當該勤勞者가 받는 總給與의 比率을 의미한다.

11) 總年金財政에 대하여 各 勤勞所得階層別로 實質的으로 寄與하는 年金保險醵出料率을 算定하기 위하여, 各 勤勞所得階層에 대하여 同一率이 적용되는 所得比例인 法定醵出料率을 醵出占有率에 대한 給與占有率의 比率로써 加重하여 修正한 醵出料率임.

서 期待餘命을 13年, 女性勤勞者는 法定年金受給年齡인 55歲에서 期待餘命을 23年으로 하였으며[12], 세째 利子率은 年 20%와 年 25%의 두 경우를 각기 적용하였다[13]. 네째 法定醵出料率은 4%, 5%, 6%의 경우를 假定하였고, 다섯째 給與體系가 現國民福祉年金法이 規定하고 있는 대로 계속된다는 假定下에서 給與算定은 國民福祉年金法에 依해서 算出하였다[14]. 이러한 基本假定下에서 所得階層別·年齡別 勤勞者分布資料[15]를 利用하였다.

2. 給與 및 醵出金의 算定

國民福祉年金法 施行에 따르는 第1種年金保險對象者인 賃金勤勞者의 給與 및 醵出金算定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가. 給與의 算定

國民福祉年金法에 의하면[16] 基本年金額은 報酬比例部分과 均等部分으로 나누어 算定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報酬比例部分은 當該勤勞者의 年金受給前 3年間의 平均賃金[17]을 基準으로 해서 算定되며, 均等部分은 年金受給前年度의 全勤勞者 平均賃金을 基準으로 算定된다. 그런데 同法 第39條에 의하면,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18]을 合한 金額이 當該勤勞者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給與의 算定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BYP_{ij} = BPP_{ij} \cdot \sum_{k=0}^{R_j-1} \left(\frac{1+\dot{w}}{1+i} \right)^k$$

$$BPP_{ij} = \min[BP_{ij},\ 12\,BS_{ij} \cdot 0.7]^{19)}$$

$$\begin{aligned} BP_{ij} &= MST_j + BST_{ij} \\ &= \left[MS_j \times \frac{240}{100} \right] + \left[BS_{ij} \cdot \left(1 + \frac{4n}{100} \right) \cdot \left(\frac{240+m}{100} \right) \right] \end{aligned}$$

$$BS_{ij} = w_i \cdot (1+\dot{w})^{S_j-4} \cdot \left[\frac{\sum_{k=1}^{3} (1+\dot{w})^k}{3} \right]$$

$$MS_j = \bar{w} \cdot r \cdot (1+\dot{w})^{S_j-1}$$

여기서,

- BYP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가(期待餘命期間 동안) 받는 總給與의 年金受給年齡에서의 現價
- BPP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에 대한 年間 給與
- R_j : j年齡 勤勞者의 年金受給年齡에서의 期待餘命年數
- $\dot{w}$: 年間 名目賃金上昇率
- i : 年間 利子率
- BP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基本年金額

12) 經濟企劃院, 『1978~79年의 한국인의 생명표』, 1980 참조.

13) 國民投資基金法 第14條 第3項 「……1年 以上의 債權에 대해서는 1年 滿期 定期預金利子率適用……」에 따라서 國民福祉年金의 財政이 年 19%의 定期預金利子率로 利殖할 수 있게 規定되어 있는 점과 本硏究目的上 貨幣의 時間選好面에서 個人에게 適用될 個人利子率로서의 性格을 考慮하여 年間 20%, 25%의 利子率을 假定하였다.

14) 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第39條 및 同法 施行令 第13條 參照.

15) 勞動廳,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16) 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3條 참조.

17) 平均賃金은 賃金勤勞者가 勞動의 對價로 받는 定額給與와 超過給與, 現物給與 및 年間特別償與金까지 合한 것임.

18) 本稿에서는 可用統計 및 推計上 問題點 때문에 加給年金額은 論外로 하였다. 따라서 同法 第39條에 의한 上限規定 適用을 基本年金에 限定시켰다.

19) BP_{ij}는 年基準金額이며 BS_{ij}는 月基準金額이다. 따라서 同一한 年基準으로 換算하기 위해서 BS_{ij}에 12를 곱했으며, 同法 第39條의 上限規定에 따른 70%를 적용하여 $12 \cdot BS_{ij}$에 0.7을 곱하였음.

BS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年金受給前 3年間의 月平均賃金

MST_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에 대한 基本年金額 중 均等部分

BST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에 대한 基本年金額 중 報酬比例部分

MS_j : j年齡 勤勞者의 年金受給前 年度에 全勤勞者 月平均賃金

n : 20年 超過醵出年數

m : 20年 超過醵出月數

S_j : 醵出金 納入年數

w_i : 1980年 3月 現在 i勤勞所得階層別 月勤勞所得水準

$\bar{w}$: 1980年 3月 現在 全勤勞者 月平均賃金

r : 1980年 3月 現在 55歲以上 勤勞者 平均賃金 對比 全勤勞者 平均賃金

나. 醵出金의 算定

國民福祉年金制度 實施에 따른 그 財源調達을 위해서는 4~6%의 所得比例의 法定醵出料率을 適用하였으며 各 年齡別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가 年金受給時까지 醵出하게 되는 總醵出金의 終價는 다음과 같이 算定된다.

$$PT_{ij}=12\cdot t\cdot w_i\cdot\sum_{k=0}^{S_j-1}[1+i)^{S_j-k}\cdot(1+\dot{w})^k]$$

여기서,

PT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年金受給時까지 醵出하게 되는 總醵出金의 年金受給年齡에서의 終價

t : 法定醵出料率

w_i : 1980年 3月 現在 i勤勞所得階層別 月平均賃金

S_j : 醵出金 納入年數

i : 年間 利子率

$\dot{w}$: 年間 名目賃金上昇率

3. 勤勞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

가. 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

〈表 7〉은 25~29歲 男子勤勞者의 平均賃金 月 4萬원 未滿階層에서 月 60萬원 以上階層까지 23階層으로 分類하여, 이들이 60歲에 退職한다는 假定下에 各 勤勞所得階層別 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各 勤勞所得階層別 賃金代替率의 比較를 통해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를 보면, 月 14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에서는 모두 退職當時 賃金에 대해서 一定한 比率인 53.2%를 給與로서 支給받게 된다[20].

한편 月 14萬원 以上의 勤勞所得階層은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退職當時賃金에 대해서 낮은 給與率을 적용받게 된다[21]. 例를 들면 月 30~35萬원의 勤勞所得階層에게는 退職當時 賃金의 45%를, 月 60萬원 以上의 勤勞所得階

20) 月 14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에 대해서 53.2%의 一定給與率이 適用되는 理由는 國民福祉年金法 第39條에 依해서, 給與가 當該勤勞者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70%를 超過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1) 月 14萬원 以上의 所得階層에게는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退職當時 賃金에 대해서 낮은 給與率(즉 낮은 賃金代替率)이 적용되는 理由는, 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3條에 의해서 給與가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되기 때문이다. 즉 高所得階層에게는 均等部分이 所得比例部分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되는 給與가 退職當時 賃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이다.

層에게는 退職當時 賃金의 41.9%를 給與로서 支給하게 된다. 이와 같이 勤勞所得이 높을수록 退職當時 賃金에 대해서 낮은 給與率이 적용되어, 즉, 勤勞所得이 높을수록 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이 낮다는 점에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圖 1〕에서는 男子勤勞者의 年齡分布에 따른 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을 볼 수 있다. 즉 他條件은 앞에서와 同一하고 단지 勤勞者의 醵出年數를 달리하였을 때 賃金代替率에 미치는 영향을 圖示하고 있다. 例를 들어 23年間 醵出金을 納入하는 男子勤勞者를 보면 月 7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에게는 年金受給年齡에서 53.2%의 賃金代替率을 보이고 있으며, 月 7萬원 以上의 勤勞所得階層에게는 所得이 높을수록 낮은 賃金代替率을 보여 준다. 한편 醵出金納入期間을 달리해서 38年으로 하면 全勤勞所得階層에 共히

〈表 7〉 勤勞所得階層別 年金受給年齡當時의 賃金代替率[1)]

(단위 : 千원, %)

	退職年度의 月給與[2)]			退職當時[2)] 月賃金	平均標準[2)] 報酬月額	給與	賃金 代替率
	均等部分	所得比例部分	計			平均標準報酬月額	
4萬원 未滿			38.0[3)]	71.4	54.3	70.0	53.2
4～ 5			42.8[3)]	80.3	61.1	70.0	53.2
5～ 6			52.3[3)]	98.1	74.7	70.0	53.2
6～ 7			61.8[3)]	116.0	88.2	70.0	53.2
7～ 8			71.3[3)]	133.8	101.8	70.0	53.2
8～ 9			80.8[3)]	151.7	115.4	70.0	53.2
9～10			90.3[3)]	169.5	129.0	70.0	53.2
10～11			99.8[3)]	187.3	142.6	70.0	53.2
11～12			109.3[3)]	205.2	156.2	70.0	53.2
12～14			123.6[3)]	231.9	176.5	70.0	53.2
14～19	40.1	102.2	142.3	267.6	203.8	69.8	53.1
16～18	40.1	115.8	155.9	303.3	230.9	67.5	51.3
18～20	40.1	129.4	169.5	339.0	258.4	65.6	49.9
20～22	40.1	143.0	183.1	374.7	285.2	64.2	48.8
22～24	40.1	156.7	196.7	410.4	312.8	62.9	47.9
24～26	40.1	170.3	210.4	446.0	339.8	61.9	47.1
26～28	40.1	183.9	224.0	481.7	367.2	61.0	46.4
28～30	40.1	197.5	237.6	517.4	394.0	60.3	45.9
30～35	40.1	221.4	261.4	579.9	441.6	59.2	45.0
35～40	40.1	255.4	295.5	669.1	509.5	58.0	44.1
40～50	40.1	306.5	346.4	802.9	611.3	56.7	43.1
50～60	40.1	374.6	414.7	981.3	747.2	55.5	42.2
60萬원 以上	40.1	408.7	448.8	1,070.5	815.9	55.0	41.9

註 : 1) 1980年 3月 現在 25～29歲의 男子勤勞者가 各 勤勞所得階層別로 法定醵出料를 納入하고 年金受給年齡인 60歲에 離職한다는 假定下에서 給與를 算定한 것임.
2) 名目賃金上昇率 年 15%, 物價上昇率 年 13% 以下에서 1980年度 不變價格임.
3) 基本年金額算定基準(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및 同 施行令 第13條)에 따른 給與가 同法 39條의 上限金額(標準報酬月額의 70%)을 超過하게 되어 標準報酬額의 70%를 給與로 確定한 것임.

〔圖 1〕 醵出金納入期間別 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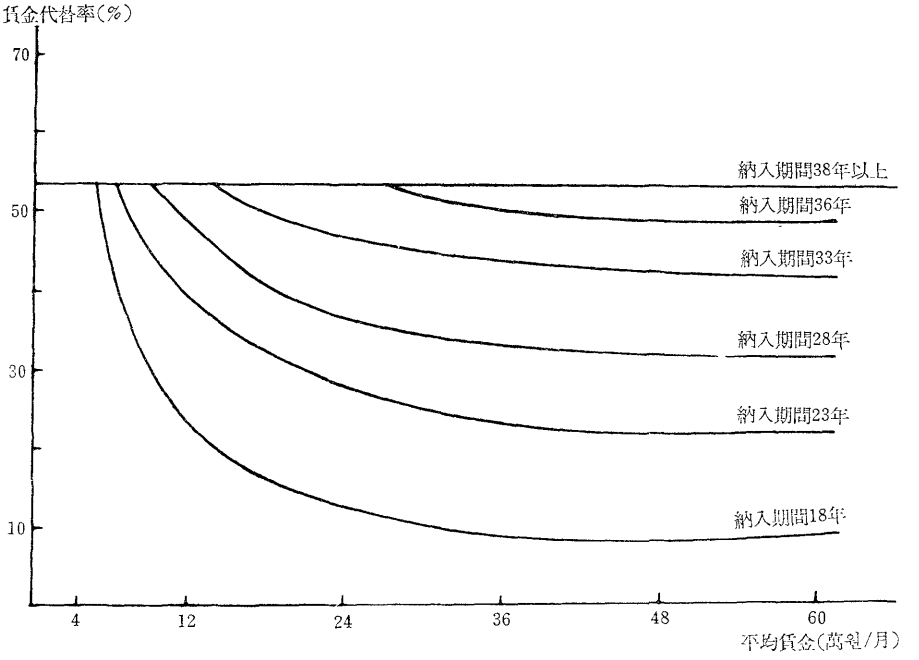

53.2%의 賃金代替率이 適用된다. 여기서 53.2%의 賃金代替率은, 〈表 7〉에서 보면, 上限規定인 平均標準報酬月額의 70%를 給與로 支給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納入期間이 길면 길수록 上限規定에 적용을 받는 勤勞所得階層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所得再分配의 觀點에서 보면 20~38年의 納入期間內에서는 肯定的인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을 示唆해 준다[22]. 法定年金受給年齡이 男子勤勞者보다 5年이 낮은 55歲인 女性勤勞者에 있어서는 給與 및 醵出金의 適用이, 納入期間이 5年 짧다는 것 以外에는 男子勤勞者와 同一한 대우를 받고 있다[23]. 따라서 〔圖 1〕에 依하여 男女勤勞者에 對한 納入期間別 賃金代替率을 比較해 보면, 1980年 3月 現在 25~29歲인 男子勤勞者는 納入期間이 33年으로서 年 14萬원 未滿에서 53.2%의 一定한 賃金代替率이 적용되며, 1980年 3月 現在 25~29歲의 女性勤勞者는 納入期間이 28年으로서 月 9萬원 未滿에서 53.2%의 一定한 賃金代替率이 적용된다. 즉 男女勤勞者는 納入期間 5年의 差異(이것은 法定年金受給年齡差로 因한 것임) 以外에는 國民福祉年金을 實施함에 있어서 同一한 勤勞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效果를 갖게 된다.

이제 觀點을 달리하여 勤勞所得階層間 平均賃金의 差異와 給與의 差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各 勤勞所得階層間 賃金隔差가 同一하게

22) 納入期間이 38年인 경우에는 높은 勤勞所得階層 勤勞者나 낮은 勤勞所得階層 勤勞者나 모두 退職前 賃金의 53.2%를 給與로 支給받게 되어, 退職後에도 退職前 賃金隔差와 同一한 隔差를 갖는 給與를 支給 받게 된다는 點에서 所得再分配機能을 수행치 못하게 되며, 納入期間이 23年인 경우에는 退職前 賃金隔差가 退職後에는 보다 완화된 隔差를 갖는 給與를 支給 받게 되어 肯定的인 所得再分配效果를 갖게 된다.

23) 國民福祉年金制度에서 男女勤勞者에 대한 差異로서는 年金受給年齡에서의 期待餘命의 差로 因한 年金受給期間이 달라지는 점이다. 그러나 賃金代替率은 年金受給直前의 賃金과 年金受給年齡에서의 給與만을 變數로 해서 결정되므로, 賃金代替率分析에서는 男女勤勞者間의 期待餘命差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表 8〉 勤勞者 個人單位로 본 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

(단위 : %)

	男子		女子		個人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4萬원 未滿	1.01	0.82	1.26	0.82	1.16	0.82
4～ 5	1.14	0.92	1.41	0.92	1.30	0.92
5～ 6	1.40	1.12	1.66	1.12	1.55	1.12
6～ 7	1.65	1.33	1.90	1.33	1.80	1.33
7～ 8	1.87	1.54	2.10	1.54	2.10	1.54
8～ 9	2.09	1.74	2.30	1.74	2.21	1.74
9～10	2.29	1.95	2.49	1.95	2.41	1.95
10～11	2.47	2.15	2.66	2.15	2.58	2.15
11～12	2.66	2.36	2.83	2.36	2.76	2.36
12～14	2.95	2.66	3.09	2.66	3.03	2.66
14～16	3.32	3.08	3.44	3.08	3.39	3.08
16～18	3.67	3.49	3.76	3.49	3.73	3.49
18～20	4.03	3.90	4.08	3.90	4.06	3.90
20～22	4.38	4.31	4.41	4.31	4.40	4.31
22～24	4.73	4.72	4.73	4.72	4.73	4.72
24～26	5.08	5.13	5.05	5.13	5.07	5.13
26～28	5.44	5.54	5.38	5.54	5.40	5.54
28～30	5.79	5.95	5.69	5.95	5.73	5.95
30～35	6.40	6.67	6.23	6.67	6.30	6.67
35～40	7.29	7.70	7.01	7.70	7.12	7.70
40～50	8.61	9.24	8.17	9.24	8.35	9.24
50～60	10.37	11.29	9.73	11.29	9.99	11.29
60萬원 以上	11.25	12.32	10.51	12.32	10.81	12.32
計	100	100	100	100	100	100

註 : 1) 1980年 3月 現在 各 所得階層別 勤勞者들의 年齡分布가 各 所得階層에 대해서 同一하게 各 年齡別로 1名씩 있다는 假定下에서 男女의 占有率을 各各 算出했으며 勤勞者 個人이라는(男女의 性을 따지지 않는) 單位의 占有率을 各 所得階層別 年齡別로 男女가 共히 1名씩 있다는 假定下에서 占有率을 算出한 것이다.

2) 여기에서 醵出占有率은 1980年 3月 時點에서 各 所得階層別 總醵出金의 終價를 가지고 占有率을 算定한 것이며, 給與占有率은 2000年 時點에서 各 所得階層別 總給與의 現價를 가지고 算定한 것이다.

3) 年利子率 20%, 名目賃金上昇率 年 15%를 假定하였다.

4)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實施對象을 常用勤勞者 30人 以上 事業體에 대해서 實施할 경우와 10人 以上 事業體에 대해서 實施할 경우는 個人別, 男女別, 醵出占有率과 給與占有率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各 所得階層別, 年齡別 勤勞者數가 個人單位의 占有率에는 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

維持된다고 假定하면, 各 勤勞所得階層別 法定年金受給直前의 賃金隔差는 1980年 3月 現在의 賃金隔差와 같게 된다. 따라서 〈表 7〉에서와 같이 1980年 3月 現在의 月 4萬원 賃金勤勞者와 月 60萬원 賃金勤勞者間의 賃金隔差인 15배와 年金受給年齡에서의 給與의 差異를 比較해 보면, 15倍의 差異를 보이던 賃金隔差가 11.8倍의 給與隔差로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勤勞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對比 給與占有率

1)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對比 給與占有率

〈表 8〉은 國民福祉年金制度를 實施했을 때, 向後 20年 時點에서 勤勞個人單位로 본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의 推計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이란, 勤勞者를 月 4萬원 未滿 勤勞所得階層에서 月 60萬원 以上 勤勞所得階層까지 23個의 勤勞所得階層으로 分類하고, 또 17歲에서 37歲까지 6個의 年齡階層으로 分類하여, 各勤勞所得階層別, 年齡別로 勤勞者가 各各 1名씩 있다고 假定하였을 경우의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을 意味한다. 또 이 경우의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이란, 各 勤勞所得階層別·年齡別 當該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給與現價 및 總醵出金終價(BYP_{ij}, PT_{ij})를 年間 利子率 20%를 적용하여 向後 20年 時點으로[24]割引하여 同一時點에서의 勤勞所得階層別·年齡別 總給與現價 및 總醵出金終價를 算出하고, 이를 基礎로 해서 各 勤勞所得階層別 合計(BYP_i, PT_i)를 算出하여, 各各의 全體合計($\sum_i BYP_i$, $\sum_i PT_i$)에 대한 各 勤勞所得階層別 合計(BYP_i, PT_i)의 比率을 구했을 때, 이 比率을 意味하며, 그 算出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RB_i = BYP_i / \Sigma BYP_i$$

$$RT_i = PT_i / \Sigma PT_i$$

$$BYP_i = \Sigma BYP_{ij} / (1+r)^{S_j - 20}$$

$$PT_i = \Sigma PT_{ij} / (1+r)^{S_j - 20}$$

여기서,

- RB_i : i 勤勞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
- BYP_i : 向後 20年時點에서 i 勤勞所得階層의 總給與現價의 合計
- RT_i : i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
- PT_i : 向後 20年時點에서 i 勤勞所得階層의 總醵出金終價의 合計
- BYP_{ij} : j 年齡階層別 i 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期待餘命期間 동안의 總給與現價
- S_j : j 年齡階層別 納入期間
- r : 年間 利子率
- PT_{ij} : j 年齡階層別 i 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納入期間 동안 納入한 總醵出金의 終價

〈表 8〉은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勤勞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과 醵出占有率을 보여 주는데

24) (1980+20=2000年) 따라서 基算點이 1980年 3月이므로 向後 20年 時點은 2000年 3月이 된다.

우선 男子勤勞者에 대해서 보면, 月 8～9萬원 勤勞所得階層에게는 給與占有率이 2.09%, 醵出占有率이 1.74%로써 給與占有率이 醵出占有率보다 높아서 相對的으로 有利하며, 月 35～45萬원 勤勞所得階層에서는 給與占有率이 7.29%, 醵出占有率이 7.7%로써 相對的으로 不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月 22～24萬원 勤勞所得階層에서는 給與占有率이 4.73%, 醵出占有率이 4.72%이며, 月 24～26萬원 勤勞所得階層에서는 給與占有率이 5.08% 醵出占有率이 5.13%이기 때문에, 男子勤勞者는 勤勞者個人單位로 볼 때, 月 24萬원의 勤勞所得水準을 境界로 해서 그 以下의 階層에게는 相對的으로 有利하며 그 以上의 階層에게는 相對的으로 不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1980年 3月 現在 全勤勞者 月平均賃金이 150,747

〈表 9〉 勤勞者數 加重한 所得階層「그룹」別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

(단위 : %)

	男子		女子		全體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給與占有率	醵出占有率
4萬원 未滿	0.05	0.07	0.76	0.71	0.33	0.25
4～ 5	0.18	0.23	2.70	2.71	1.16	0.94
5～ 6	0.48	0.57	7.19	7.36	3.08	2.54
6～ 7	0.84	1.00	13.06	13.25	5.58	4.55
7～ 8	1.48	1.64	15.65	15.73	6.98	5.72
8～ 9	2.22	2.34	14.92	14.93	7.15	5.99
9～10	2.87	2.86	10.87	10.72	5.97	5.13
10～11	3.53	3.44	8.40	8.29	5.42	4.85
11～12	3.88	3.73	6.29	6.17	4.81	4.44
12～14	9.73	9.23	9.95	9.65	9.81	9.35
14～16	9.78	9.24	3.67	3.60	7.41	7.60
16～18	8.77	8.36	2.19	2.18	6.22	6.57
18～20	8.77	8.45	1.72	1.74	6.03	6.51
20～22	8.39	8.20	0.92	0.96	5.49	6.10
22～24	6.95	6.90	0.37	0.40	4.39	5.01
24～26	6.15	6.18	0.45	0.50	3.94	4.53
26～28	4.67	4.75	0.24	0.27	2.95	3.45
28～30	3.81	3.92	0.13	0.16	2.38	2.83
30～35	7.13	7.49	0.23	0.28	4.45	5.40
35～40	3.92	4.21	0.06	0.09	2.42	3.02
40～50	3.72	4.11	0.11	0.16	2.32	2.97
50～60	1.51	1.72	0.008	0.01	0.92	1.23
60萬원 以上	1.09	1.25	0.01	0.02	0.67	0.90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1) 所得階層別, 年齡別 勤勞者數가 1980年「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同一한 狀態下에서 各 勤勞者가 法定退職年齡(男子 60歲, 女子 55歲)에서 退職한다는 假定을 가지고,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實施된다면 向後 20年時點에서 各 所得階層別 給與現價와 醵出金終價를 求하여 全所得階層에 대한 占有率을 求한 것이다.

2)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常用勤勞者 30人 以上 事業體에 適用實施된다는 假定下에서 利子率 年 20%, 名目賃金上昇率 年 15%를 適用한 것임.

원[25]임을 감안할 때 平均賃金水準 以上의 階層에서 低所得階層으로 所得이 再分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女性勤勞者에 대한 個人單位로 본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은 男子勤勞者의 경우와 同一하게 月 24萬원 勤勞所得水準을 境界로 해서 그 以上의 高所得階層에서 그 以下의 低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를 보여준다.

2) 勤勞者數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과는 달리, 1980年 3月 現在와 같은 年齡別·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分布를 갖는다는 假定下에서, 年齡別·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가 法定年金受給年齡까지 醵出金을 納入하고 給與를 받게 된다고 할 때, 年齡別·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에게 해당되는 總給與現價 및 總醵出金終價에 勤勞者數를 加重하여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을 구할 수 있다. 〈表 9〉는 國民福祉年金制度가 30人 以上 事業體에 實施될 때의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을 보여 주고 있고, 勤勞者數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과 醵出占有은 다음과 같이 算定하였다.

$$WRB_i = WBYP_i / \Sigma WBYP_i$$

$$WRT_i = WPT_i / \Sigma WPT_i$$

$$WBYP_i = \Sigma BYP_{ij} \times L_{ij} / (1+r)^{S_j - 20}$$

$$WPT_i = \Sigma PT_{ij} \times L_{ij} / (1+r)^{S_j - 20}$$

여기서,

WRB_i : 勤勞者數를 加重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

$WBYP_i$: 向後 20年時點에서 勤勞者數를 加重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現價 合計

WRT_i : 勤勞者數를 加重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醵出占有率

WPT_i : 向後 20年時點에서 勤勞者數를 加重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醵出金終價 合計

BYP_{ij} : j 年齡階層別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當該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期待餘命期間 동안 받는 總給與의 現價

L_{ij} : j 年齡階層別 i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數

r : 年間 利子率

S_j : j 年齡階層別 納入期間

PT_{ij} : j 年齡階層別 i 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醵出金의 終價

〈表 9〉에서와 같이 男子勤勞者에 대해서는 月 9~22萬원 勤勞所得階層「그룹」에게는 醵出占有率보다 給與占有率이 크므로 相對的으로 有利하고, 月 9萬원 未滿과 月 22萬원 以上 所得階層「그룹」에게는 醵出占有率이 給與占有率보다 커서 相對的으로 不利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勤勞所得階層別 醵出占有率과 給與占有率에 대한 結果와는 相異한데, 그 理由는 賃金階層別 勤勞者數分布에

25) 本稿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에서 使用한 平均賃金槪念은 可用統計의 制約上 定額 및 超過給與만을 포함한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의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數分布를 使用하였다.

基因한다. 즉 月 9萬원 未滿의 低所得階層에는 20歲 前後의 勤勞者가 많아서 그들에게는 納入期間이 길게 된다. 이와 關聯하여 納入期間에 따른 勤勞所得階層別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賃金代替率을 보여 주는 〔圖 1〕을 보면, 納入期間이 38年 以上일 때는 全勤勞所得階層에 대하여 一定率의 賃金代替率을 適用케 되어 勤勞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效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는 勤勞者의 年齡이 勤勞所得階層別로 1980年 3月 現在와 같은 分布를 이루고 있는 狀態에서의 分析이므로 〔圖 1〕과는 조금 다른데, 月 9萬원 未滿의 低所得階層에 대해서는 醵出金納入期間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들 階層의 대부분 勤勞者들이 退職할 當時의 全勤勞者 平均賃金을 均等部分으로 하여 構成되는 基本年金額이 當該勤勞者들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70%를 超過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給與는 全勤勞者 平均賃金을 그 構成要素로 하지 못하게 되고 自身들의 勤勞所得의 平均에 70%를 支給받는 정도로서 그치게 되어, 月 9萬원 未滿의 低所得階層에게도 給與占有率이 醵出占有率보다 작게 나타난다. 〈表 9〉에서 女性勤勞者의 경우도 男子勤勞者의 경우와 대체로 同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男女勤勞者를 包括한 勤勞者 全體에 대한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은 다음과 같이 算定되었다.

$$HRB_i = HBYP_i / \Sigma HBYP_i$$

$$HRT_i = HPT_i / \Sigma HPT_i$$

$$HBYP_i = MBYP_i + FBYP_i$$

$$HPT_i = MPT_i + FDT_i$$

$$MBYP_i = \Sigma BYPM_{ij} \times ML_{ij} / (1+r)^{MS_j - 20}$$

$$FBYP_i = \Sigma BYPF_{ij} \times FL_{ij} / (1+r)^{FS_j - 20}$$

$$MPT_i = \Sigma PTM_{ij} \times ML_{ij} / (1+r)^{MS_j - 20}$$

$$FPT_i = \Sigma PTF_{ij} \times FL_{ij} / (1+r)^{FS_j - 20}$$

여기서,

HRB_i : 全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占有率

$HBYP_i$: 向後 20年時點에서 全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現價 合計

HRT_i : 全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醵出占有率

HPT_i : 向後 20年時點에서 全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醵出金終價 合計

$MBYP_i$: 向後 20年時點에서 男子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現價 合計

$FBYP_i$: 向後 20年時點에서 女性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給與現價 合計

MPT_i : 向後 20年時點에서 男子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그룹」別 醵出金終價 合計

FPT_i : 向後 20年時點에서 女性勤勞者에 대한 i 勤勞所得層階「그룹」別 醵出金終價 合計

$BYPM_{ij}$: j 年齡別 i 勤勞所得層階「그룹」別 男子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給與의 現價

ML_{ij} : 1980年 3月 現在 j 年齡別 i 勤勞所得層階「그룹」別 男子勤勞者數

r : 年間 利子率

MS_j : 男子勤勞者의 年齡別 醵出金 納入年數

$BYPF_{ij}$: j年齡別 i勤勞所得層階「그룹」別 女性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給與의 現價

FL_{ij} : 1980年 3月 現在 j年齡別 i勤勞所得層階「그룹」別 女性勤勞者數

FS_j : 女性勤勞者의 年齡別 醵出金 納入年數

PTM_{ij} : j年齡別 i勤勞所得層階別 男子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醵出金의 終價

PTF_{ij} : j年齡別 i勤勞所得階層「그룹」別 女性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에서의 總醵出金의 終價.

男女勤勞者를 包括한 勤勞者全體에 대한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은 〈表 9〉에서와 같이 月 14萬원의 勤勞所得水準을 境界로 해서, 月 14萬원 以上의 勤勞所得層階「그룹」에게는 醵出占有率이 給與占有率보다 커서 相對的으로 不利하며, 月 14萬원 未滿의 勤勞所得層階「그룹」에게는 醵出占有率보다 給與占有率이 커서, 相對的으로 有利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有意할 점은 男女勤勞者의 醵出占有率과 給與占有率 比較에서, 低所得層階「그룹」에 젊은 年齡의 勤勞者가 많아서 納入期間이 길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不利했던 것이 勤勞者 全體로 볼 때는 그러한 相對的인 不利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 理由는 勤勞者 全體에 대한 醵出占有率 및 給與占有率은 男女勤勞者의 醵出 및 給與占有率을 合計한 것이 아니라 各 勤勞所得階層別 年齡別로 男女勤勞者 各各의 醵出金 및 給與를 合計하고, 이를 基礎로 해서 各 所得階層別로 所得階層全體에 대해서 醵出終價 및 給與現價의 比重을 구한 것으로서, 勤勞者全體에 대한 醵出 및 給與占有率로 하기 때문이다[26]. 즉 男女勤勞者를 包括한 勤勞者 全體에 대해서 보면,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에서와 같이 高所得階層에서 低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에서는 月 24萬원의 勤勞所得水準을 境界로 해서 月 24萬원 以上의 勤勞所得階層에서 月 24萬원 以下의 勤勞所得階層으로 所得이 移轉되는데 反해서, 全勤勞者數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로 볼 때는 月 14萬원을 境界로 해서 所得이 移轉되게 된다. 그 理由는 低所得階層의 賃金勤勞者가 高所得階層의 賃金勤勞者보다 많기 때문이다[27]. 한편 〈表 10〉은 우리나라의 勤勞所得階層別 所得稅負擔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勤勞所得階層別 所得稅負擔이 5人家族의 경우 月 155千원의 所得家口가 所得稅 免稅對象인 점을 감안하면, 社會全體的으로 볼 때 國民福祉年金制度 實施에 따라 月 14萬원 所得水

26) 이와 같이 本稿에서 男女勤勞者에 대하여 給與 및 醵出金을 따로 分離하여 算出한 理由는 ① 國民福祉年金法에 依한 男女勤勞者의 法定年金受給年齡差와 ② 男女勤勞者의 退職當時의 期待餘命期間이 다르기 때문이다.

27)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勞動廳, 1980)에 依하면, 30人 以上 事業體의 賃金勤勞者分布는 月 14萬원 以下 賃金勤勞者가 全勤勞者의 65.26%이며, 月 24萬원 以下 賃金勤勞者는 全賃金勤勞者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

〈表 10〉 勤勞所得階層別 稅負擔率(1979)

(단위 : %)

	負擔率 [防衛稅 住民稅 包含]	彈性値[1]	構成比		累計構成比	
			人員	稅額	人員	稅額
10萬원 未滿	0.3	—	57.9	1.8	57.9	1.8
10～ 20	1.3	4.23	25.0	10.8	82.9	12.6
20～ 30	2.6	2.01	10.1	14.9	93.0	27.4
30～ 50	5.4	2.04	5.5	25.0	98.5	52.4
50～ 70	10.9	2.03	1.0	13.8	99.5	66.2
70～100	17.4	1.59	0.4	12.4	99.8	78.6
100～200	27.7	1.46	0.2	11.2	100.0	89.8
200萬원 以上	62.4	2.25	0.01	10.2	100.0	100.0

註 : 1) 彈性値=稅負擔增加率/所得增加率.

資料 : 財務部, 『現行稅制의 現況과 租稅收入構造』, 1981. 3.

〈表 11〉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

(단위 : %)

	男子		女子		全體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4萬원 未滿	1.24	3.79	1.53	2.32	1.42	2.92
4～ 5	1.24	3.79	1.53	2.32	1.42	2.92
5～ 6	1.24	3.79	1.47	2.64	1.38	3.11
6～ 7	1.24	3.79	1.43	2.87	1.35	3.24
7～ 8	1.22	3.89	1.37	3.16	1.31	3.46
8～ 9	1.20	4.01	1.32	3.39	1.27	3.64
9～10	1.17	4.13	1.28	3.61	1.24	3.82
10～11	1.15	4.25	1.24	3.82	1.20	3.99
11～12	1.13	4.35	1.20	3.99	1.17	4.14
12～14	1.11	4.47	1.16	4.20	1.14	4.31
14～16	1.08	4.60	1.12	4.41	1.10	4.49
16～18	1.05	4.73	1.08	4.60	1.07	4.66
18～20	1.03	4.84	1.05	4.76	1.04	4.79
20～22	1.02	4.92	1.02	4.88	1.02	4.90
22～24	1.00	4.99	1.00	4.99	1.00	4.99
24～26	0.99	5.04	0.99	5.07	0.99	5.06
26～28	0.98	5.09	0.97	5.15	0.97	5.13
28～30	0.97	5.14	0.96	5.22	0.96	5.19
30～35	0.96	5.20	0.93	5.33	0.94	5.28
35～40	0.95	5.27	0.91	5.45	0.93	5.37
40～50	0.93	5.34	0.89	5.57	0.90	5.48
50～60	0.92	5.41	0.86	5.69	0.88	5.58
60萬원 以上	0.91	5.43	0.85	5.73	0.88	5.61
計		100.0		100.0		100.0

註 : 1) 法定醵出料率이 賃金에 대해서 5%로 適用될 경우, 向後 20年時點에서의 各 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과 醵出占有率로 法定醵出料率로 修正하여 各 所得階層別 實際歸屬分을 算定한 것이 有效醵出料率임.

2) 利子率 年 20%, 名目賃金上昇率 年 15%를 假定했음.

準을 境界로 해서 그 以上의 高所得階層에서 그 以下의 低所得階層으로 所得이 移轉된다는 結果는 國民福祉年金制度가 現行所得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을 補完할 수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다. 有效醵出料率로 본 所得再分配效果

法定醵出料負擔의 價値를 一定 時點에서 各 年齡別 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給與와 比較하여 實際로 各 年齡別 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醵出金負擔分을 算定하고, 이를 有效醵出料率(the effective tax rate)이라고 定義하였을 때[28] 各 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은 다음과 같이 算定하였다.

$$t_{ei}=t_s+t_s\left(1-\frac{HRB_i}{HRT_i}\right)$$

여기서,

t_{ei} : i 勤勞所得階層의 有效醵出料率

t_s : 法定醵出料率

HRB_i : 全勤勞所得階層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의 給與占有率

HRT_i : 全勤勞所得階層에 대한 i 勤勞所得階層의 醵出占有率

法定醵出料率은 各 勤勞所得階層勤勞者의 平均賃金에 대해서 同一한 比率을 適用하게 되지만, 有效醵出料率은 各 勤勞所得階層別로 다르게 된다. 그 理由는 法定醵出料率이 平均賃金에 대해서 同一率로서 適用되지만, 앞에서 分析檢討된 바와 같이 勤勞所得階層別 給與는 賃金水準과 같은 比率로 適用되지 않음으로써, 給與占有率 對比 醵出占有率(HRB_i/HRT_i)이 〈表 11, 12〉에서와 같이 勤勞所得階層別로 달라져 各 所得階層別로 有效醵出料率(t_{ei})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 有效醵出料率이란 槪念을 導入하게 되면,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에 대한 檢證이 매우 간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基本假定으로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所得再分配效果가 있다고 하게 되면 低勤勞所得階層의 醵出占有率은 給與占有率보다 작아야 하고, 따라서 $t_s(1-HRB_i/HRT_i)$項이 負의 값을 갖게 되어 低勤勞所得階層에 대한 有效醵出料率이 法定醵出料率보다 작게 되며($t_{ei}<t_s$), 高勤勞所得階層에게는 醵出占有率이 給與占有率보다 커야 하고, 결국 $t_s(1-HRB_i/HRT_i)$項이 正의 값을 갖게 되어 高勤勞所得階層에 대한 有效醵出料率은 法定醵出料率보다 커지게 된다. ($t_{ei}>t_s$) 이와 같은 檢證을 勤勞者個人의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勤勞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

〈表 11〉은 利子率 年 20%, 名目賃金上昇率 年 15%, 法定醵出料率 5%에서 各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個人에 대한 有效醵出料率을 보여 주고 있다. 즉, 月 4萬원 未滿 勤勞所得階層의 男子勤勞者個人에게는 3.79%, 月 22~24萬원 勤勞所得階層의 男子勤勞者個人에게는 4.98%로서, 月 24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에게는 法定醵出料率보다 낮은 水準의 有效醵出料率이 適用된다. 한편 月 24~27萬원 勤勞所得階層의 男子勤勞者個人에게는 5.04%,

28) 本稿에서는 Harvey 本來의 公式인 「勤勞者의 總醵出額價와 總給與現價의 比」를 各 勤勞所得階層의 全勤勞者階層에 대한 占有率比(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로 代替하여 勤勞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을 比較檢討하였다.
Ernest C. Harvey, "Social Security Taxes: Regressive or Progressive" *National Tax Journal*, Dec. 1965, pp.408~414.

月 60萬원以上 勤勞所得階層의 男子勤勞者 個人에게는 5.43%로서, 月 24萬원 以上 勤勞所得階層에게는 法定醵出料率보다 높은 有效醵出料率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月 24萬원 所得水準을 경계로 한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를 確認할 수 있다. 〈表 11〉은 女性勤勞者個人에 대해서도 同一한 結果를 보여 주고 있어서, 결국 男女勤勞者를 個人單位로 볼 때,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實施로 인해서 月 24萬원 所得水準을 경계로 해서 高勤勞所得階層에서 低勤勞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

2) 勤勞者數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 有效醵出料率

〈表 12〉 勤勞者數 加重한 所得階層「그룹」別 有效醵出料率

(단위 : %)

	男子		女子		全體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給與占有率／醵出占有率	有效醵出料率
4萬원 未滿	0.78	6.08	1.07	4.63	1.28	3.59
4～ 5	0.79	6.03	0.99	5.53	1.22	3.89
5～ 6	0.84	5.82	0.98	5.11	1.21	3.93
6～ 7	0.84	5.80	0.99	5.07	1.23	3.86
7～ 8	0.90	5.50	0.99	5.03	1.22	3.91
8～ 9	0.95	5.25	0.99	5.00	1.19	4.03
9～10	1.00	4.99	1.01	4.93	1.16	4.18
10～11	1.00	4.99	1.01	4.93	1.12	4.41
11～12	1.04	4.80	1.02	4.91	1.08	4.58
12～14	1.05	4.73	1.03	4.84	1.05	4.75
14～16	1.06	4.71	1.02	4.90	0.97	5.13
16～18	1.05	4.76	1.00	4.98	0.95	5.27
18～20	1.04	4.81	0.99	5.05	0.93	5.36
20～22	1.02	4.89	0.96	5.18	0.90	5.50
22～24	1.01	4.96	0.93	5.37	0.88	5.62
24～26	0.99	5.56	0.91	5.44	0.87	5.66
26～28	0.98	5.63	0.88	5.58	0.85	5.73
28～30	0.97	5.15	0.85	5.77	0.84	5.79
30～35	0.95	5.24	0.80	5.98	0.82	5.88
35～40	0.93	5.35	0.75	6.24	0.80	5.98
40～50	0.90	5.48	0.69	6.57	0.78	6.09
50～60	0.88	5.62	0.49	7.54	0.75	6.23
60萬원 以上	0.87	5.66	0.67	6.66	0.75	6.26
計		100.0		100.0		100.0

註 : 1) 所得階層別 年齡別 勤勞者數가 1980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同一한 狀態下에서 各 勤勞者가 法定退職年齡(男子 60歲, 女子 55歲)에서 退職한다는 假定을 가지고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實施된다면 向後 20年時點에서 各 所得階層別 給與現價와 醵出金終價를 求하여 全所得階層에 대한 占有率을 求한 것임.

2) 醵出料率 5%, 利子率 年 20%, 名目賃金上昇率 年 15%의 假定下에서 常用勤勞者 30人以上 事業體 勤勞者數를 加重한 有效醵出料率임.

3) 勤勞者數로 加重한 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 및 醵出占有率은 〈表 6〉 參照.

〔圖 2〕 有效醵出料率 曲線[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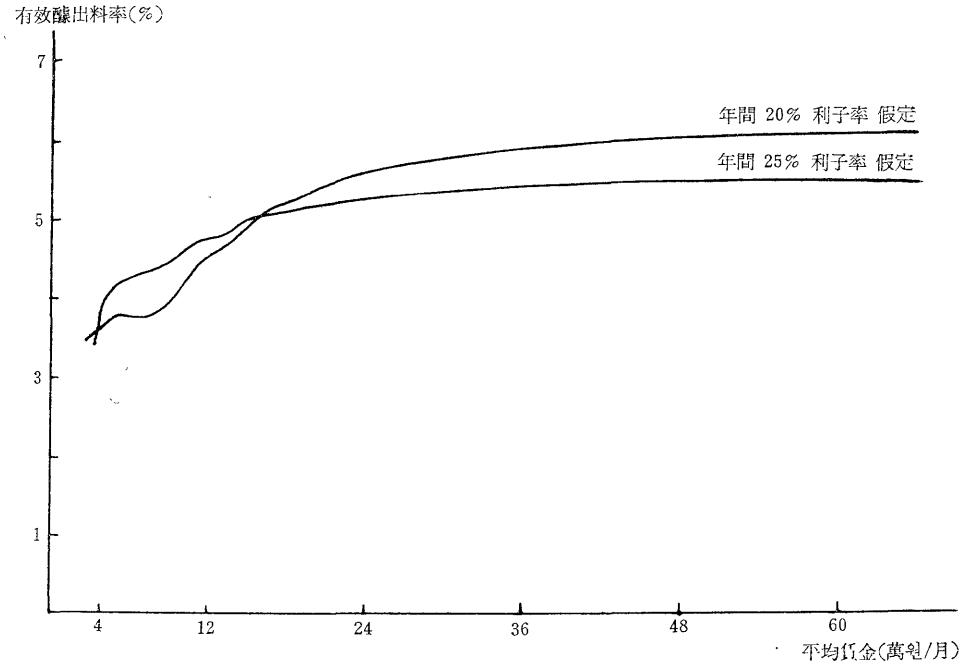

註 : 1) 法定 醵出料率 5%, 賃金上昇率 年 15%에서의 有效醵出料임.

〈表 12〉는 위와 同一한 假定下에서 30人 以上 事業體勤勞者數를 加重했을 때 勤勞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을 보여 주고 있다. 男子勤勞者數만 加重한 男子勤勞者의 勤勞所得階層「그룹」別 有效醵出料率을 보면, 月 9~24萬원 勤勞所得階層에서는 法定醵出料率보다 작고, 그 以外의 勤勞所得階層에서는 法定醵出料率보다 크다. 이와 같이 勤勞者數를 加重한 有效醵出料率이 勤勞者個人單位로 본 有效醵出料率과 그 所得再分配 樣相이 다른 이유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勤勞所得階層別 年齡分布가 月 9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에서는 대다수의 勤勞者가 20歲 前後의 젊은 年齡으로 納入期間이 38年 以上이 되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29)]. 女性勤勞者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 有效醵出料率도 이와 대체로 同一한 結果를 보여 준다. 한편 男女勤勞者를 包括한 勤勞者全體에 대한 有效醵出料率을 보면 男女別 勤勞者數를 加重한 勤勞所得階層「그룹」別 有效醵出料率과 다른 結果를 보여 주는데[30)], 즉, 有效醵出料率이 月 14萬원 未滿의 勤勞所得階層「그룹」에는 法定醵出料率 5%보다 낮으며, 月 14萬원 以上의 勤勞所得階層「그룹」에 대해서는 法定醵出料率 5%보다 높게 되어 있다. 따라서 國民福祉年金制度는 社會全體的으로 볼 때 매우 肯定的인 所得再分配機能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31)].

〔圖 2〕는 名目賃金上昇率 年 15%, 法定醵

29) 〔圖 1〕 參照.
30) 〈表 9〉 參照.
31)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分配效果에 對하여 10人 以上 事業體를 中心으로 勤勞所得個人階層別, 혹은 階層「그룹」別 分析檢討結果는 本稿에 30人 以上 事業體에 대한 所得再分配效果分析結果와 同一한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出料率 5%에서, 利子率 年 20%인 경우와 年 25%인 경우의 勤勞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의 變化를 圖示한 것이다. 여기에서 有意할 點은 有效醵出料率曲線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로 인해서 高勤勞所得階層으로부터 低勤勞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效果가 큼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이다. 즉, 利子率 年 20%에서는 月 14~17萬원 勤勞所得階層에서 法定醵出料率 5%와 同一한 水準의 有效醵出料率을 보여 주며, 그 以上의 勤勞所得階層에서는 勤勞所得水準이 높을수록 有效醵出料率이 法定醵出料率보다 높아지며, 그 以下의 勤勞所得階層에서는 勤勞所得水準이 낮을수록 有效醵出料率이 法定醵出料率보다 낮아서 月 14~17萬원을 境界로 해서 高勤勞所得階層에서 低勤勞所得階層으로 所得이 移轉되게 되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를 圖示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利子率 年 25%에서도 月 14~17萬원의 勤勞所得階層에서 有效醵出料率이 法定醵出料率과 同一하고, 그 以上의 高勤勞所得階層에서는 有效醵出料率이 높게 되며, 그 以下의 低勤勞所得階層에서는 有效醵出料率이 낮아서 利子率 年 20%에서와 마찬가지로 肯定的인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利子率 年 20%인 경우와 年 25%인 경우를 比較해 보면, 利子率 年 20%인 경우가 有效醵出料率曲線의 경사가 좀 더 急하게 되어, 利子率이 낮은 경우에 所得再分配的 機能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圖 2〕는 이와 같이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導入에 있어서, 利子率變化가 그 所得再分配效果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現行 우리나라의 社會保險制度는 分立的 社會保障制度로서, 國家經濟·社會開發計劃에 따라 綜合的 社會保障計劃에 의하여 導入·發展되어 온 것이 아니라, 60年代 이후 急速한 產業化過程에서 政治·經濟·社會的인 特殊한 與件에 의해 職種別, 企業規模別 또는 職域別로 導入·發展되었다. 따라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問題點이 內在하고 있어서 앞으로 制度의 均衡的 發展過程에서 많은 障碍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所得階層間 所得再分配를 歪曲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分立的 社會保險制度에 있어서 給與의 不平等, 社會的 危險과 費用의 非效率的 分散效果는 앞으로 國民全體를 위하여 확대 실시될 社會保障制度의 所得再分配機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現行 社會保險制度上의 問題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各種 保險의 對象人口가 全體人口에 비하여 特定一部人口에 限定되어 있으며[32], 특히 社會的 保護를 가장 필요로 하는 低所得人口階層에게까지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職域年金保險制度를 보면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만이 惠澤을 받고 있는 職域別 分立體制를 이루고 있어서 社會保障制度의 主機能의 하나인 國民連帶(national solidarity)의 役割을 수행치 못하고 있으며, 所得再分配的

32) 1980年 現在 經濟活動人口가 14,454,000名인데 비하여, 現行 年金保險의 對象人口는 880,000名으로서 經濟活動人口의 6.1%에 불과하다.

觀點에서도 問題點으로 제기된다. 年金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的 效果는 各國의 社會·政治的 背景은 물론 經濟開發의 水準에 따라서도 相異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先進國에서는 公務員, 軍人 및 私立學校敎職員의 人口가 그 나라의 所得階層의 最上 또는 最下位 範圍內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各 所得階層에 골고루 分布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階層이 一部 大企業의 賃金勤勞者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俸給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低賃金勤勞者와 零細自營者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社會的으로 비교적 安定되고 높은 所得階層에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小數의 人口階層에만 限定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行 職域年金保險制度는 所得의 逆進的 再分配效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常用勤勞者 16人 以上 事業場의 被雇傭者를 위해서는 使用者責任의 退職金制度가 있으나, 老齡, 死亡이라는 危險에 대한 保障策으로서는 별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고, 退職給與가 産業 및 企業別로 차이가 크며, 部分的으로는 一種의 短期失業保險의 機能을 하고 있다. 이러한 退職金制度는 個人別 平均賃金水準, 勤續期間, 企業停年, 退職累進率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高所得, 長期勤續者에게 많은 惠澤이 돌아가게 되어 現行 職域年金保險에 더하여 所得再分配의 逆進的 效果를 加重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세째, 이와 같은 逆進的 所得再分配現象은 年金保險의 財源을 檢討에 보아도 같다. 先進國에 있어서 低所得階層은 被保險者로서의 寄與金과 使用者의 負擔金을 통해 直接的으로 寄與하는 한편, 一般課稅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自身을 포함한 全勤勞階層을 위하여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現行 職域年金의 保護를 받지 못하는 低所得階層은 一般課稅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特殊職域만을 위한 寄與金 負擔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一般課稅의 性格이 間接稅爲主로서 所得再分配面에서 直接稅爲主制度보다는 相對的으로 逆進的이라는 것이다.

네째, 우리나라의 社會保險體制는 分立的으로 形成되어 매우 複雜한 體制를 가지고 있고, 社會的 危險과 費用의 分散效果가 근소하다. 이것은 近代福祉國家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經濟生活에 대한 諸般危險으로부터 모든 個人을 진정한 國民的 連帶에 의하여 社會的으로 保護해 준다는 社會保障의 目的에서 볼 때 극히 不合理하며, 또한 職域別, 所得階層別로 不均衡的인 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本稿에서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實施가 우리나라의 年齡別, 所得階層別 勤勞者分布下에서 階層間 所得再分配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分析·檢討하기 위하여, 첫째 各 勤勞所得階層別, 勤勞者個人別로 法定年金受給年齡時 賃金代替率을 비교하였고, 둘째, 向後 20年 時點에서 各 勤勞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과 醵出占有率을 比較·檢討하였으며, 세째, 各 所得階層別 有效醵出料率을 檢討하였다. 이상의 3가지 分析에서 國民福祉年金制度는 공히 高所得勤勞階層으로부터 低所得勤勞階層으로 所得이 移轉됨으로써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이 分析되었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모든 階層의 賃金勤勞者가 退職年齡(男子는 60歲, 女子는 55歲)까지 모두 被保險者로서

醵出金을 내고 一定期待餘命期間 동안 給與를 받는다는 基本假定下의 分析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各 勤勞者에 대한 停年이나 期待餘命期間이 같을 수 없으므로 本分析에서 提示된 諸結果는 法定年金受給年齡 當時의 勤勞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만을 檢討한 것이다.

現行 社會保險制度 및 退職金制度의 所得再分配上의 問題點과 年金保險이 갖고 있는 所得再分配上의 長點을 볼 때 社會保障에 逆進的 所得再分配現象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退職金制度를 補完하고, 年金保險의 適用範圍를 一般賃金勤勞者에까지 적용되도록 早速히 擴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社會保障制度는 이와 같은 擴張을 통해서 長期的으로 賃金階層間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有意할 점은 年金保險制度의 役割을 評價함에 있어서 상이한 各 所得階層間의 所得再分配가 年金保險의 有一한 目的이거나 主된 目的이 아니라는 것이다. 主目的은 역시 各種 社會的 事故(contingencies)로부터의 危險을 緩化시키는 것이고, 高所得階層으로부터 低所得階層으로의 所得再分配는 이러한 廣範한 目的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先進國에서는 年金保險制度가 最低所得階層에까지 適用되어 所得再分配를 위한 다른 政策手段을 補完해주고 있다. 따라서 所得再分配效果를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年金保險 導入時 一部大企業의 勤勞者에게만 適用하기보다는 保險對象範圍를 넓게 하여야 하겠다. 더구나 急速한 產業人口의 增加와 人口構造의 老齡化趨勢에 따른 老人問題의 深化를 감안하면 年金保險制度의 擴大實施가 소망스럽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1978~79 한국인의 생명표』, 1980.

高麗大學校 企業經營硏究所, 『社會保障稅制에 관한 硏究』, 1979.

勞 動 廳, 『產災保險事業年報』, 1979.

_____,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大韓民國, 『歲入歲出決算報告書』, 1965~81.

朴宗淇 外, 『社會保障制度 改善을 위한 硏究報告書』, 韓國開發硏究院, 1981.

保健社會部, 『國民福祉年金關係法令集』, 1980.

財 務 部, 『現行稅制의 現況과 租稅收入構造』, 1981. 3.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_____, 『退職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978. 12.

Becker, Gery, *Human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1964.

Brittain, John A., *The Payroll Tax for Social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2.

Deran, Elizabeth, "Income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National Tax Journal*, Vol.19, Mar. 1966.

Harvey, Ernest C., "Social Security Taxes: Regressive or Progressive", *National Tax Journal*, Vol.18, Dec. 1965.

Paukert, Felix, "Social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98, Nov. 1968.

自由化接近模型과 韓國의 開放政策

金 重 雄

▷ 目 次 ◁

Ⅰ. 序 論
Ⅱ. 自由化의 本質
Ⅲ. 主要國의 自由化와 自由化模型
Ⅳ. 韓國의 對外去來自由化政策

Ⅰ. 序 論

自由主義 國際經濟下에서는 各國의 經濟가 相互依存性과 補完性의 關係에서 相互間에 影響을 주고 받으며 發展한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自由化라고 할 때는 一國經濟의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을 뜻하고 貿易障壁등으로 人爲的인 制限과 統制를 加하기 보다 各國間의 對外去來에 關한 經濟活動의 自由保障을 前提로 한다. 다만 個別國家의 自由化 展開에는 當該國家의 固有한 政治·社會的 與件과 經濟構造 및 發展段階 때문에 自由化戰略 및 內容이 相異하고 段階的인 自由化 順序와 限界가 있다.

世界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위해서 對外去來自由化가 必要하다는 主張은 比較優位論에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으나 具體的인 自由化 要請은 1930年代에 先進各國이 自國通貨의 平價切下와 輸入制限 等의 自由化制限措置를 競爭的으로 取함으로써, 도리어 國際貿易이 激減되고 世界經濟의 大恐慌을 招來하게 되자 이러한 經濟惡循環을 斷切하기 위해서는 自由로운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과 國際的인 協助가 必要하다는 自覺에서 緣由된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協力精神이 1945年에 IMF를, 1947年에 GATT를 發足케 했고 이들 國際機構를 通한 貿易 및 外換自由化를 基盤으로 1961年에는 OECD를 設立케 함으로써 國際間 資本移動의 自由化까지 推進하게 되어 60年代의 世界經濟의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60年代末 以後 美國등 先進國의 慢性的인 國際收支 赤字의 累積으로 因한 國際收支 防禦政策과 石油波動으로 世界不況이 深化되면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이 論考는 近刊 豫定인 筆者의『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를 一部 要約한 것이다. 詳細한 것은 同報告書를 參照할 것.

서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輸入規制를 强化하는 등 新保護貿易主義[1]가 대두되고 있어 傳統的 意味의 自由化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 特히 自由化問題를 活發히 論議하고 있는 것은 우리 經濟에 內在하는 當面問題와 關聯하여 第5共和國 出帆 以後 政府의 基本政策으로 追求해온 開放政策을 對外去來의 經濟的 側面에서 支援하고자 하는 政策意志와 轉換期[2]를 맞은 우리 經濟의 運用을 自由로운 市場機能에 맡겨 經濟效率을 높이고자 하는 自律化 내지 自由化 思想을 背景으로 第5次 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 必要한 不足財源의 海外調達窓口와 手段을 多樣化하고 80年代後半에는 500億弗을 넘는 輸出規模 擴大 展望에 따라 國際的인 自由化 壓力이 한층 强化될 것에 對備하며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우리 經濟의 경우에도 對外去來의 自由化推進이 必要하다는 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는 積極說[3]과 自由化 前提條件이 成熟한 後에 愼重히 추진해야 한다는 愼重論으로 갈리고 있을 뿐이지 그 內容 時期 등 自由化 實施方案에 關해서는 經濟發展段階와 自由化 前提條件의 成熟에 따른 對外去來 全般에 대한 具體的이고 綜合的인 政策提示가 未洽하다.

1) 開發途上國그룹은 新國際秩序를 要求하여 先進國들의 關稅, 非關稅障壁 철폐를 主張함.
2) 一般的으로 轉換期라 함은 一國經濟의 對外·對內均衡, 특히 國際收支 黑字基調가 定着化되는 時期를 뜻하나, 여기서는 우리의 經濟運用을 民間主導와 自律的인 市場機能에 맡겨 經濟效率을 높이려는 經濟運用基調 轉換期를 意味하는 뜻으로 使用함.
3) 嚴永錫, 「資本自由化의 問題點」, 韓國經濟新聞, 1981. 2. 11.

이에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對外去來自由化의 階階的 實施方案을 檢討하고자 먼저 自由化의 基礎理論을 살펴보고,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內容을 比較·檢討하여 여기서 抽出한 共通의 自由化 成功要件과 政策手段을 土臺로 4段階 自由化接近模型을 設定해서, 自由化計劃의 例示的 「시나리오」로서 段階別 自由化措置를 提示한 後 마지막으로 이 模型과 連繫하여 自由化戰略의 基本立場과 우리經濟의 現與件에 비추어 具體的인 段階別 實施方案과 補完措置를 例示하고자 한다.

Ⅱ. 自由化의 本質

1. 自由化의 意義

一般的으로 經濟體制의 自由化라 함은 財貨 및 用役과 資本의 移動에 있어서 國際間의 원활한 經濟去來를 沮害하는 여러가지 要素를 緩和하거나 撤廢하는 것으로서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을 뜻한다. 이를 經濟去來의 形態에 따라 나누어 보면 貿易去來의 自由化, 外換去來의 自由化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로 區分할 수 있으며 廣義로는 外換去來의 自由化를 資本自由化에 包含시켜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自由化 體制가 갖는 經濟的 意義는 國內經濟의 外延的 擴大의 結果로 國內外를 通해 個別的 保護 혹은 干涉이 없는 自由로운 狀況下에서 他經濟와의 交流를 보다 緊密히 하며 國家間의 比較優位産業에 대한 國際分業體制의 利點을 最大로 살려 國內産業 및 經濟體制를 高度化하고 體質改善을 通한 對外

競爭을 培養하는 등 效率的인 經濟體制로의 基盤을 굳히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內部經濟의 外部露出로 因하여 反對給付的 不利한 影響도 받게되기 때문에 自國利益 優先의 國際經濟秩序下에서 個別國家利益의 追求와 同時에 國際間의 經濟協力을 通하여 어떻게 世界經濟의 均衡된 發展을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自由化問題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다.

貿易自由化[4]는 本來 商品의 輸出入을 나타내는 좁은 意味의 貿易去來를 對象으로 하나 特히 輸入을 制限하는 關稅 및 各種 非關稅障壁 등의 여러가지 規制를 철폐하는 輸入自由化[5]를 指稱한다.

外換去來의 自由化에 關해서는 IMF協定第8條에 그 뜻이 잘 規定되어 있는데 보통 外換去來의 自由化라 함은 經常的 支拂에 대한 制限이나 差別的 通貨措置를 撤廢하여 經常的 外換去來를 自由化함으로써 貿易自由化를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資本自由化[6]란 直接投資나 間接投資를 不問하고 政府 혹은 民間部門에서 第3國에 대해서 資本을 自由롭게 供給하거나 또는 導入을 通해 同資本의 使用目的이나 方法등에 대하여 如何한 干涉도 받지 않음은 물론 더나아가 同資本에 대한 元金과 利潤의 償還 등 國家間에 資本의 移動이 自由로운 것을 意味하며 外資導入의 自由化와 海外投資의 自由化를 包含한다. 商品의 國際間 移動을 對象으로 하는 傳統的인 國際貿易理論에 있어서는 資本등 生產要素의 國際間 非移動性이 基本前提로 되어 있으나 古典的 假說은 OECD登場과 더불어 現實的으로 妥當性을 잃게 된다. 이는 直·間接投資를 莫論하고 資本의 高收益 指向性을 反映하여 自由로운 資本의 國際間 移動은 經濟的 效率性의 提高를 意味하는 것이다.

2. 自由化論議의 基礎理論

貿易이나 資本去來를 自由化함으로써 世界經濟가 自由化하기 以前보다 더 均衡된 發展을 할 수 있다는 理論은 많은 學者들이 展開하고 있는바 여기에 主要한 몇가지 基礎理論을 簡略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比較優位學說 世界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爲해서 自由化가 必要하다는 主張은 David Ricardo에 依해 主唱되고 J.S. Mill등에 의해 發展되어 온 比較優位의 原理에 그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다. 各國은 歷史的·社會的·自然的 環境이 서로 다르고 賦存資源 및 技術發達의 程度등이 各各 相異하고 또 그 나라의 固有한 特性이 있는 까닭에 生產費가 낮은 財貨 즉 自國이 比較優位를 가지는 財貨를 生產하

4) 19世紀의 自由貿易은 輸入制限등 一切의 國家的 干涉을 排除하여 國際貿易을 自由롭고 無差別的으로 行해지도록 하는 것이나 2次大戰後 自由化는 OEEC의 自由化規約에서 始發하는 것으로 貿易에 대한 旣存制限철폐와 通貨의 交換性回復을 主張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古典的인 自由化와 差異가 있음.

5) 우리나라의 경우 輸入自由化문제 뿐만 아니라 對外去來自由化 추진을 爲해서는 우리의 輸出擴大에는 별로 큰 利益이 없으면서 수출경쟁국에게 抗議의 구실을 주는 恣意的인 政策조작이나 飢餓 輸出로부터의 輸出自由化도 緊要하다고 하겠음.

6) OECD의 自由化 規約은 「經常貿易外去來의 自由化에 關한 規約(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資本移動에 關한 自由化規約(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의 兩部分으로 構成되는 데 이는 OEEC의 自由化規約을 母體로 하여 承繼發展된 것으로 1961年 9月 採擇됨. OECD의 自由化 規約中 貿易外經常去來自由化規約은 그 機能面에서 IMF規定보다 具體的이고 拘束力이 强한 點이 相異하고 資本移動自由化規約은 OECD의 獨自的 領域이며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에 重要한 指標가 됨.
河合俊三, 『OECD의 話』, 日本經濟新聞社, 1976, pp. 152~183.

고 이를 特化하여 自由貿易을 通해 比較優位商品을 交換함으로써 資源利用의 效率性과 經濟的 厚生을 極大化시킬 수 있다는 主張이다[7].

一般特惠關稅制度 貿易自由化의 促進은 소망스러운 것이나 經濟發展段階가 다른 各國은 自國의 產業을 保護育成한다는 趣旨下에서 例外的으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後進國은 經濟構造의 後進性과 貿易構造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先後進諸國間에 無差別的인 貿易自由化 내지 劃一的인 規制는 오히려 南北問題의 深化를 招來하게 되자 이의 解決을 爲해 先進國들은 1970年 9月 4次 UNCTAD特別委員會에서 開發途上國의 一般特惠關稅制度(The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를 認定하여 開途國으로부터 輸入을 增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開途國의 輸出이 증대되고, 그 結果 開途國國民의 所得이 늘어나면 結局은 開途國의 輸入도 增大되어 世界貿易은 伸張되고 世界各國이 均衡된 發展을 하게 된다는데 그 理論的 根據를 두고 있다[8].

資本自由化와 直接投資理論 資本自由化는 生產要素價格 決定에 있어서의 完全競爭理論의 利點을 背景으로 生產要素의 國際間 移動을 自由化하는 데 있으며 現實的으로는 直接投資의 形態로 具體化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에 대한 理論을 보면 海外投資는 그 動機와 類型이 다를 수 있겠지만 根本的으로는 國內에서 比較劣位에 있는 產業의 資本·技術 및 經營能力을 이를 必要로 하는 外國에 移轉시켜 相互補完關係를 갖게 함으로써 兩國間의 國際分業을 通한 貿易擴大는 물론 第3國에 대해서도 競爭力이 强化된다는 貿易指向 直接投資說[9], 生產要素의 不完全競爭狀態나 혹은 寡占的 要素를 强調하여 直接投資가 誘發되는 原因은 投資國企業의 獨占的 優位性이라는 不完全競爭「모델」에 依한 國際獨占論[10], 直接投資에 依하여 R&D要素의 相對的 賦存狀態의 優位性이 美國에 있다는 것을 前提로 美國의 技術開發과 美國企業의 海外進出性向間에 生產物週期와 같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는 Vernon의 生產物週期說[11], 關稅地域이나 通貨地域의 경계선이 없다면 對外直接投資와 國內投資間의 差異가 없다고 보아 直接投資에 特有한 對外性要素(Foreignness)를 强調하는 Aliber의 對外性理論[12]등이 있다.

要컨대 先進諸國間에 추진되어 온 自由化는 相互間의 貿易擴大와 資本의 效率的인 配分에 依해 高度成長을 持續하는 데 貢獻을 하였으나 產業構造와 輸出競爭力의 脆弱性으로 對等한 立場에서 自由化를 추진할 수 없었던 開途國은 間接的으로 枝葉的인 自由化의 惠澤을 받

7) Heller, H. Robert, *International Trad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8, pp.45~53.
Fredrich, Klaus, *International Economics*, Mc Graw-Hill, Inc., 1974, pp.25~45.

8) 後進國의 경우 產業構造의 後進性과 貿易構造의 脆弱性 때문에,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은 本來先進國型經濟狀態에서만 可能함. 따라서 一般特惠關稅제도는 後進國을 爲한 先進國의 貿易自由化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Balassa Bela & Kreinin, Mordechai E.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Kennedy Round" *The Static Effec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7.

9) Reuber, Grant L,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73, pp. 73~76.

10) Kindle berger, C.P. (ed.), A Symposium,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參照.

11)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12)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Kindleberger, 前揭書, pp.17~34 參照).

았을 뿐 先進諸國의 自由化成果에 比例하여 南北間의 格差가 더욱 擴大되어 온 것이 事實이었다. 따라서 對外去來自由化의 理論的 基礎는 基本的으로 比較優位說에 根據를 두고 진전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制約이 不可避하였고 資本自由化 特히 對外直接投資의 理論的 接近은 아직 確固하게 定立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開途國은 經濟成長에 必要한 外資와 技術導入이 必要하지만 過度한 外資導入은 自國企業의 育成과 發展을 沮害할 危險이 크기 때문에 經營合理化와 規模經濟로의 轉換을 通한 國際競爭力 强化에 政策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3. 自由化의 效果와 限界

먼저 貿易自由化의 效果를 보면 短期的으로는 生產要素의 追加雇傭이나 生產技術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假定할때 貿易自由化는 輸入絕對額의 增加 및 輸入商品 構成과 價格體系의 變化와 同時에 輸出增加 및 輸出商品構成의 變化 등 直接的인 變化를 招來하고 產業內部間의 專門化를 촉진한다[13]. 長期的으로는 市場擴大에 따른 規模의 經濟와 生產技術의 改善(Competition and Improvements in Production Methods)을 通하여 費用이 切減되는 效果가 나타난다. 한편 資本自由化의 核心인 直接投資의 效果를 보면 生產費의 低下와 生產量의 增大등 被投資國에 直接的으로 有利한 效果와 함께 被投資國의 勞動 및 資源이라고 하는 生產要素의 價格引上 效果를 通한 資源配分의 效果를 수반한다. 間接投資의 경우에도 證券投資나 商業「베이스」에 依한 貸出行爲를 通하여 投資가 이루어질 때에는 國際間의 金利隔差가 原因이 되어 發生하는 資本의 移動이기 때문에 企業 그 自體의 國際間 移動인 直接投資와는 그 性格이 다르다고는 하겠지만 資本過剩國으로부터 資本不足國으로의 資本移動이 일어남으로써 效率的인 資源配分이 된다는 點에서 經營資源의 配分을 隨伴하는 直接投資의 效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이 對外去來를 自由化하면 資源이 效率的으로 配分되고 交易이 擴大되는등 國際經濟 全體의 均衡的인 成長을 達成할 수 있겠지만, 理論과는 달리 現實的으로 自由化에는 一定 限界가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比較優位의 特定 產業에만 各國이 特化해야 한다는 傳統理論에 立脚하면 產業構造를 現與件위에서 固着시키게 되어 固着化된 產業構造가 世界 需要構造의 長期的인 變化에도 잘 適應할 수 있는 最適의 構造라고는 할 수는 없으며 둘째, 傳統的 理論은 交易條件의 變動을 通한 交易量調節에 依하여 國際收支가 均衡된다고 하나 價格機能에 依한 完全한 國際收支 調整은 現實的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國際收支 不均衡에 따라 自由貿易이 制約을 받게 된다[14]. 세째, 開途國의 경우 脆弱한 產業構造와 낮은 技術水準에서 資本去來를 自由化하면 外國의 直接投資가 大量 들어와 產業秩序를

13) Balassa는 短期的 效果를 靜態的 效果라고 하며 輸出入擴大效果와 產業內部間의 專門化效果를 듬. Balassa는 各國의 個別 商品에 대한 輸入差額의 크기를 輸出入總額에 대한 比率로 計算하여, EEC會員國은 EEC形成以後 關稅引下에 따라 域內諸國의 產業部門에서 專門化가 促進된 것을 立證함. Bella Ballassa,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Objectives & Alternatives," McGraw-Hill Co., 1967, pp.66~92.

14) 韓國銀行, 「貿易自由化와 產業政策의 方向」, 『調査月報』, 1977.12, pp.6~7 參照.

攪亂시키고 企業의 競爭力을 弱化시킬 危險[15]이 常存하고 있기 때문에 後進國들은 外換 및 資本去來에 대한 自由化 推進에 消極的 態度를 取하게 된다.

Ⅲ. 主要國의 自由化와 自由化模型

1.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

自由化를 실현한 先進國中 自由化接近方法이 對照的인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過程을 간략히 살펴본 후 自由化의 成功要因과 先行條件을 찾아 보기로 한다.

가. 日本의 自由化

背景 日本은 1961年부터 1970年代 前半에 이르기까지 長期間에 걸쳐 段階的으로 自由化政策을 추진하여 輸入自由化는 1961年부터 1965年 사이에 關稅政策 등 치밀한 補完措置를 講究하면서 自由化를 一段落하였고 資本自由化는 1967年부터 1975年에 걸쳐 對內投資 및 對外投資別로 점진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였다. 日本이 自由化를 추진하게된 원인은 美國이 國際收支 惡化를 이유로 自由化를 강력히 요구한 데서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根本的으로는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되는 등 經濟力이 向上되었고 經濟構造의 效率化 및 產業合理化 등 國際競爭力을 제고하는 自由化政策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 緣由한다.

經濟與件 當時 日本은 1955年부터 1961年까지 年平均 10%以上의 實質成長과 年平均 25%以上의 設備投資率을 示顯하였고 產業構造도 高度化(重化學工業化率 1965年 63.7%)되어 國際競爭力이 강화되는 등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 國際收支에 있어서도 1950年부터 1964年동안 經常收支의 小幅的인 黑字를 反復하다가 1965年 以後에는 大幅 黑字期로 轉換되었다.

日本의 自由化政策特徵 日本의 基本經濟政策이 對外指向的 高度成長政策의 추구였기 때문에 日本經濟의 開放化 내지 對外去來自由化推進은 必然的이었으며 비록 自由化始初에 先進國의 外部壓力이 크게 作用했지만 根本的으로는 國際收支黑字轉換 등 日本經濟力의 向上에 依한 自信感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爲해 추진되었다. 特히 國內外 經濟與件을 감안하여 철저한 補完對策을 併行 實施하여 長期的 受動的 그리고 段階的으로 愼重히 진행되어 成功한 點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나. 西獨의 自由化

背景 西獨은 1955年부터 1959年까지 比較的 短期間內에 對外去來의 自由化를 集中的으로 추진하여 貿易·外換·資本 등 對外去來全般에 걸쳐 실질적인 自由化를 실현하였다. 西獨의 對外去來自由化를 추진하게 한 요인은 歐州協力機構의 域內自由化 決定과 歐州支拂同盟의 結成을 契機로 自由化를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自由로운 市場機能에 依한 經濟

15) Kindleberger는 開途國에 대한 直接投資效果에 대해 Non-Zero-Sum-Game理論을 適用하여, 直接投資의 役割이나 效果에 否定的인 面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長期的으로 볼때는 대체로 與件變化에 따라 game의 主導權이 投資國으로 부터 被投資國側에 移轉되는 肯定的인 面을 强調함.
Kindleberger, C.P.,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Yale Univ. Press, 1969, p.150.

運用이라는 新自由主義理念을 배경으로 自由化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經濟與件 西獨은 1950年以後 經常收支黑字基調가 定着化되고 1956年 以後에는 黑字幅이 대폭 확대되어 外換保有高도 急增하게 되었다. 實質經濟成長도 年平均 10%의 높은 수준에 달성하여 自由化 推進期間中 物價安定下에 堅實한 高度成長을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西獨이 自由化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戰前의 蓄積된 資本과 技術을 바탕으로 해서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經濟의 確立과 民間企業의 創意的 活動을 保障했기 때문이다.

特徵 西獨의 自由化政策의 特徵으로는

첫째, 新自由主義理念에 입각하여 自由化政策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點

둘째, 國際收支가 黑字化되기 前부터 輸入自由化가 시작되어 去來形態別로 外換·資本自由化가 順序대로 진행된 點

세째, 價格機能의 活性化를 通해 物價安定과 競爭促進을 달성케 한 對內自由化가 着實하게 先行된 點과 높은 國際競爭力을 들 수 있다.

다. 評價

日本의 對外去來自由化는 다른 先進國의 自由化壓力이 加해지는 가운데 國內外 先行與件이 成熟되었는가를 감안하여 政府의 적극적인

〔圖 1〕 自由化戰略 比較

	日 本	西 獨
自由化 接近方法	外部壓力下에 國內外經濟與件을 勘案하여 愼重하고 段階的인 長期的 自由化 推進(先條件充足 後自由化)	新自由主義 理念下에 市場經濟機能을 前提로 한 積極的 自由化 推進(先自由化 後條件 充足)
自由化時點	國際收支黑字轉換期	國際收支黑字轉換直前
主要自由化 措置年表	1958. 國際收支黑字轉換 1960. 貿易·外換自由化計劃 1962. Negative System 轉換 1964. 輸入自由化率 93% 1964. IMF 8條國 移行 1964. OECD 加入	1950. 貿易收支黑字轉換 1952. 數量制限措置 廢止 1956. 關稅引下 1957. 輸出所得에 대한 租稅減免廢止 1957. 輸入自由化率 93% 1958. IMF 8條國 移行
自由化 基本方針	ㅇ原資料確保에 優先 ㅇ新技術導入 積極 ㅇ重化學製品 輸出中心으로 轉換 ㅇ國內商品과 競爭이 작은 品目부터 自由化	ㅇ重化學製品 輸出中心 ㅇ原資材輸入 우선 自由化 ㅇ國產品과의 競爭이 작고 消費者에게 利益이 큰 品目부터 自由化
自由化 效果	ㅇ國際收支黑字 繼續 ㅇ日本企業의 國際競爭力 强化 ㅇ物價安定維持	ㅇ輸入自由化以後 國際收支黑字 累增 ㅇ輸人自由化가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됨
自由化 補完策	ㅇ치밀한 補完策 講究 ㅇ產業高度化를 위한 產業政策수립 ㅇ關稅「에스카레이션」과 消費財 重課를 위한 關稅政策 ㅇ農業改革을 위한 農業基本法 制定 ㅇ財源自立度를 提高하기 위한 貯蓄增大와 國民所得 培增計劃	

市場構造에의 介入下에 補完對策을 併行하면서 長期的인 觀點에서 受動的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진행된 반면에 西獨은 新自由主義理念下에 政府의 經濟活動介入을 最小化하여 市場經濟原理의 充實을 圖謀했고, 對外去來 自由化도 外部的壓力에 依해서가 아니라 能動的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物價安定과 經濟成長 및 對內外均衡을 同時에 達成하였다. 이와 같이 西獨이 적극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여 對內外均衡을 同時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基本的으로 工業化 基盤下의 蓄積된 技術 및 資本, 높은 投資率, 낮은 賃金上昇率과 國內物價 安定으로 뒷받침되는 對外競爭力의 基礎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兩國 自由化政策 推進過程에서 볼 수 있는 共通的인 事項은 高度成長이 지속되고 物價가 比較的 安定되어 自由化 當時 兩國産業의 국제경쟁력이 急速度로 제고되었고 무엇보다 國際收支가 好轉되어 自由化期間中 經常收支가 定着化된 點, 特히 西獨의 경우 自由市場經濟의 確立과 民間企業의 創意的 活動에 依한 效率的 資源配分 및 競爭促進과 이를 基盤으로 한 對外開放化·自由化의 擴散戰略이 自由化를 成功시킨 요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國家가 추진한 自由化過程을 경험삼아 우리도 自由化政策을 成功的으로 遂行하려면 다음과 같은 先進國經驗을 參考할 필요가 있다.

① 國際收支의 黑字를 前提로 한 自由化推進 : 國際收支惡化時에는 輸入附加稅, 「쿼타」制 등 輸入規制手段을 動員하는 것이 一般的이고 對外去來中 特히 資本自由化는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된 뒤에 그것도 貿易自由化, 外換自由化 및 金融의 國際化가 先行된 後 試圖되었다. 또 資本流入의 自由化가 促進된 後 資本流出의 自由化가 認定되는 과정을 밟았다.

② 補完措置의 併行 : 自由化의 推進과 同時에 産業合理化 및 輸出促進을 爲한 여러가지 支援措置를 取하는 등 補完措置가 併行된다.

③ 差別的 自由化 措置 : 交易相對國에 따라서 差別的인 自由化를 추진한다.

④ 價格機構에 依한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前提로 하는 對內自由化의 先行

⑤ 外換 및 資本自由化는 西獨(美國)등을 제외하고는 留保事項이 多數 常存한다.

2. 自由化與件

가. 先行要件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推進過程에서 抽出한 主要自由化 先行要素를 보면 自由化를 적극 展開하기 前에 이미 높은 經濟的 成長으로 經濟의 外延的 發展을 成就하였을 뿐만 아니라 對內均衡을 이루어 物價의 安定 등 經濟의 安定基盤도 어느 정도 確立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먼저 對外均衡을 이루어 國際收支黑字基調가 定着化되었고, 比較優位에 立脚한 産業構造도 高度化되어 國際的인 對外競爭에 充分히 對應할 수 있는 適應力을 具備하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金利 및 換率의 價格機能活性化로 金融·外換市場이 발달되어 있고 政策運用基調도 市場經濟原理의 適用·擴大로 民間主導의 經濟體制로 轉換된다.

그리고 對外去來展開의 順序도 貿易自由化와 外換自由化가 先行하여 이루어지고 난 後,

資本自由化가 推進된다.

즉 ① 國際收支 黑字基調定着

② 높은 國際競爭力

· 產業構造高度化

· 生產性向上

· 企業體質改善

③ 對內的 自由化達成

· 金利 · 換率 등 價格機能活性化

· 金融機關의 國際化와 自律化

· 資本市場의 安定化

④ 貿易 · 外換 · 資本의 段階的 自由化 등

이 共通的인 先行條件이다.

〈表 1〉 對外均衡達成時期의 經濟指標

	日本	西獨	(韓國)
國民所得			
成長率(%)	9.3	9.7	6.4
GNP(億弗)	370.0	282.0	600.7
1人當GNP(弗)	398.0	595.0	1,597
貯蓄 · 投資			
總投資率(%)	30.4	22.9	35.4
國內貯蓄率(%)	30.6	23.8	26.6
海外貯蓄率(%)	−0.2	−0.9	7.6
產業 · 雇傭			
失業率(%)	1.3	9.3	3.8
工業化率(%)	27.2	39.7	32.6
重化學工業化率(%)	63.8	60.8	51.2
產業構造			
1次產業(%)	16.2	0.9	18.8
2次產業(%)	34.4	50.7	33.9
3次產業(%)	49.4	39.4	47.3
對外去來			
輸入自由化率(%)	42.0	77.0	74.7
貿易依存度(%)	19.4	22.9	56.3
輸出(億弗)	34	32	147
輸入(億弗)	31	34	191
貿易收支(百萬弗)	333	−197	−4.396
經常收支(百萬弗)	256	345	−4,151
外換保有高(百萬弗)	1,336	479	5,708
物價 · 賃金 · 金利			
都賣物價上昇率(%)	−1.5	8.7	18.8
消費者物價上昇率(%)	1.5	5.0	18.3
實質賃金上昇率(%)	4.8	11.3	8.6
通貨增加率(%)	17.2	12.1	24.6
金利再割引率(%)	6.94～7.30	4.50～6.00	14.5～15.0

註 : 日本은 1958～60年平均(단 輸入自由化는 60年)
西獨은 1950～52年平均(단 輸入自由化는 52年)
韓國은 1979年(단 輸入自由化는 81年)

資料 : KIEI, 經濟基調轉換期의 政策對應 附屬統計.
KIEI, 國際比較統計.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0.

나. 韓國의 自由化與件

우리의 現經濟發展段階와 經濟與件이 위에서 考察한 自由化先行條件을 어느 程度 充足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指標를 좀더 細分하여

① 國際收支防禦能力

② 經濟成長潛在力

③ 價格機能과 金融機關의 發展 및 自律化

④ 企業의 競爭力

⑤ 資本市場의 成熟등의 기준에서 分析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收支防禦能力을 綜合評價해 보면 經常收支黑字는 80年代末까지 그 實現이 不可能한 것으로 豫測·展望되고 對外經常支拂能力인 外換保有高水準도 通常適正水準으로 보는 25%에 未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保有高構成도 短期資金이 차지하는 比重이 늘어나고 있어 健全하지 못하다. 더우기 外債殘額이 累增되고 있어 元利金償還比率이 아직 낮은 水準에 있고 外形的인 貿易去來規模가 相當水準에 있기는 하나 外債殘額의 對GNP比重이 81年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全體的으로 볼때 國際收支防禦能力은 自由化를 적극 추진하기에는 不安하다고 하겠다.

둘째,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보면 經濟規模(GNP, 1人當 GNP 등), 產業構造(工業化率,

〈表 2〉 外債規模와 構造

(단위 : 億弗)

	73~79 年平均	74	75	80	81[1)]
經常收支	△14	△20	△19	△53	△54
(對GNP比重, %)	(4.4)	(11.0)	(9.4)	(9.2)	(8.2)
外換保有高	31	11	15	64	70
(對經常支出比重, %)	(24.1)	(13.8)	(19.3)	(22.9)	(20.6)
外債殘額	110	59	85	272	337
(對GNP比重, %)	(36.2)	(39.2)	(41.8)	(46.4)	(50.1)
元利金償換額	13	6	7	30	35
(對GNP比重, %)	(4.3)	(4.0)	(3.6)	(5.0)	(5.3)
(對經常支出比重, %)	(12.3)	(11.4)	(12.5)	(13.2)	(13.0)
短期負債/外債殘額(%)	21.3	19.1	25.6	27.3	28.2

註 : 1) 推定値.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0, 1981.

〈表 3〉 에너지 自立度 推移

(단위 : 百萬톤, 石油換算)

	1962	66	71	76	79
總에너지	10.4	13.1	21.3	29.8	40.9
輸入依存度(%)	9.4	16.8	51.2	61.6	71.8
輸入에너지物量 (石油, 原子力, 有煙炭)	1.0	2.2	10.9	18.4	29.4
에너지自立度(%)	90.6	83.2	48.8	38.4	28.2
國內에너지物量 (無煙炭, 水力等)	9.4	10.9	10.4	11.4	11.5

資料 : 動力資源部

重化學工業化率 등), 投資率은 外形的으로 一應 自由化推進當時의 先進國水準에 達하고 있다고 보겠다(表 1 參照). 다만 基礎資源 및 에너지 自立度가 아주 낮다는 點에서 우리의 經濟成長力에 문제가 있다.

세째, 對內自由化條件에 關해서는 먼저 金融機關의 發展과 自律化에 대해서 보면 우리의 金融產業이 先進國보다 훨씬 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實物經濟發展에 비해서도 相對的으로 落後된 것이 事實이다[16].

이와 같이 金融產業의 發展이 落後된 根本的인 原因은 金融의 自律化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金利機能도 自律化되어 있지 않고 市場實勢金利와는 크게 乖離된 負의 實質金利를 維持하고 있으며 換率도 현재 流動換率制를 採擇하고 있기는 하나 換率의 年間變動幅을 政策的으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實效換率이 實勢를 反映하고 있지 못하는 등 伸縮性이 缺如되어 있는 實情이다. 다만 現在 政府가 金融機關의 民營化 추진을 通하여 金融機關의 自律化·國際化與件을 造成하고 있고 金利·換率의 價格機能도 自由化·活性化를 적극 推進하고 있는 等 對內自由化를 實現하려는 政府의 政策意志가 어느때보다 確固한 點에 비추어 볼 때 5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는 對內自由化與件이 成熟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4〉 主要基礎原資材의 海外依存度(1978)

	單位	需 要	輸入量	海外依存度
原 油	千kℓ	26,301	26,301	100.0
原 線	千M/T	311	311	100.0
原 糖	千M/T	566	566	100.0
原 麥	千M/T	6,674	1,638	97.8
原 木	千m	10,850	9,248	85.6
原 毛	千M/T	21.6	21.6	100.0
占 鐵	千M/T	3,010	1,695	56.3
鐵 鑛 石	千M/T	4,211	3,622	86.0
生 고 무	千M/T	117	117	100.0
펄 프	千M/T	526	400	81.7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978.

〈表 5〉 金融聯關比率의 國際比較

	1962	1965	1969	1973	1977	1978	1980
總通貨/GNP							
韓 國	0.15	0.12	0.33	0.38	0.35	0.36	0.36
日 本	0.69	0.80	0.77	0.87	0.85	0.87	0.86
西 獨	0.38	0.42	0.53	0.57	0.65	0.67	0.67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IMF, *IFS*, 1980.

〈表 6〉 銀行과 企業의 成長推移比較

(1970=100)

	1970	1973	1975	1977	1978
一般銀行總預金(A)	100	232	374	678	949
製造業賣出額(B)	100	266	589	1,074	1,466
10大業體賣出額(C)	100	268	827	1,728	—
A/B	1.00	0.87	0.63	0.63	0.65
A/C	1.00	0.86	0.45	0.39	—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經濟安定化施策政策資料』, 1981.

〈表 7〉 實質金利 國際比較

(단위 : %)

	韓國			日本	臺灣
	62~64	65~73	74~80	75~79	75~79
實質金利					
預 金	−8.6	+7.8	−4.3	+0.1	+4.7
貸 出	−9.5	+4.7	−3.1	+2.8	+5.9
通貨增加率	11.0	35.0	26.6	9.6	23.7
都賣物價上昇率	21.0	8.7	22.1	6.4	8.8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IMF, *IFS*, 1980, 1981.

16) 司空壹, 「金融과 經濟發展」, 『韓國開發硏究』, 1980. 9. pp.152~158. Raymond W. Gold Smith는 주로 金融資產殘額側面에서 FIR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金融資產이 多樣하지 못한 點에 비추어 여기서는 단순하게 GNP에 대한 總通貨比率을 보았다. Gold Smith, Raymond W., *The Determinents of Financial Structure*, OECD, 1966.

네째, 企業의 國際競爭力[17]을 企業의 財務構造 生產性面에서 檢討해 볼때 先進外國企業과 自由로운 競爭을 하기에는 그 基盤이 아주 脆弱하다. 즉 財務構造의 경우 他先進國에 비하여 自己資本비율이 낮은 反面 借入依存度는 높아 資本調達구조가 허약하고 特히 勞動生產性에 있어서 1單位 生產量을 生產하는데 드는 賃金費用이 日本이나 臺灣에 비해 아주 높아 價格競爭力이 弱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資本自由化의 必須的인 前提가 되는 資本市場의 成熟도 外形의 量的 成長은 國際水準(대략 世界 20位수준)에 까지 이르렀으나 證券人口의 規模(총人口의 2%)나 그 構成性格등(機關投資家와 小株主의 비중이 弱함) 資本市場安定化 要素面이라든가 資本市場의 價格機能등 質的 水準에서는 資本自由化에 앞

〈表 8〉 實質實効換率 推移

	1973	1975	1977	1978	1979	1980 2/4	1980 4/4
名目換率(₩/$)	399	484	484	484	484	597	657
弗當「인센티브」(원)	94	76	64	67	66	75	72
名目實効換率(₩/$)	492	560	548	551	550	672	729
相對價格(1975=100)	141	100	92	95	88	72	70
外國의 物價指數(1975=100)[1]	79	100	113	130	143	159	172
韓國의 都賣物價指數(1975=100)	56	100	122	137	162	223	246
實質實効換率(₩/$)	696	560	506	523	485	481	510

註 : 1) 外國의 物價指數는 주요 輸出對象國別로 都賣物價指數에다 弗貨로 표시된 換率指數를 곱한 다음 韓國의 輸出額 構成比率로 加重平均하여 계산함.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1, p.93.

〈表 9〉 勞動生產性 國際比較

		1975	1976	1977	1978	1979	年平均增加率 75~79
韓國	勞動生產性指數	100	107.5	118.2	132.9	153.9	11.4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25.3	151.8	182.2	202.3	19.2
	實質投資(10億원 75年價格)	2,543	3,695	3,695	5,153	5,647	
	(伸張率(%))		(14.7)	(26.6)	(39.4)	(9.6)	(22.6)
日本	勞動生產性指數	100	112.3	118.0	127.4	142.8	9.3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00.0	103.3	101.3	97.1	△0.7
	實質投資(億圓 70年價格)	306,429	316,341	332,799	366,181	398,261	
	(伸張率(%))		(3.2)	(5.2)	(10.0)	(8.8)	(6.8)
臺灣	勞動生產性指數	100	116.9	126.3	157.3	163.3	12.3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00.5	107.3	100.0	114.6	3.4
	實質投資(百萬NT$ 76年價格)	193,329	195,724	203,385	229,084	253,786	
	(伸張率(%))		(1.2)	(3.9)	(12.6)	(10.8)	(7.1)

資料 : 韓國銀行, 『韓國統計年報』, 各國統計.

17) 企業의 國際競爭力은 價格競爭力과 非價格競爭力으로 區分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企業의 경쟁體質을 經營基盤에서 그것도 財務構造 및 生產性側面에서만 簡略히 보았다. 詳細한 것은 拙著, 「對外去來의 自由化와 韓國經濟」 參照.

서 補完하고 解決해야 할 點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80年代의 開放經濟指向下에 第2의 經濟跳躍을 試圖하려는 우리로서는 모든 先行經濟與件이 造成되고 成熟된 然後에 對外去來自由化를 推進할 것이냐 아니면 必要條件이 成熟되기 前이라도 自由化를 爲한 前提條件 準備나 制度補完을 併行하면서 自由化措置도 積極的으로 함께 實施하느냐 하는 것은 自由化戰略 選擇의 政策判斷의 問題라고 하겠다.

〈表 10〉 財務構造의 國際比較

(단위 : 總資産에 관한 構成比, %)

	韓國			日本	西獨	臺灣	美國
	1977	1978	1979	1978	1977	1975	1977
流動資産	51.6	50.3	50.4	62.9	60.1	44.8	47.0
現金·預金	8.3	7.8	6.1	14.6	9.4	5.5	4.2
賣出債權	11.9	11.7	12.5	24.7	25.3	11.9	16.3
固定資産	46.6	47.8	48.4	36.9	39.5	48.1	35.3
流動負債	45.9	45.8	49.3	55.2	32.1	41.2	24.0
買入債務	12.7	11.2	12.7	24.2	—	—	8.8
短期借入金	19.0	20.3	21.9	17.8	—	22.1	4.2
固定負債	31.9	32.8	29.7	25.3	15.0	14.6	22.9
長期借入金	28.0	27.7	25.8	19.3	—	11.6	17.4
自己資本	22.2	21.4	21.0	18.3	31.7	38.4	53.1
流動比率	112.4	109.8	102.2	113.9	187.4	108.7	195.6
固定比率	209.8	223.4	231.0	201.4	124.6	125.2	100.0
負債比率	350.7	366.8	377.1	446.4	215.1	160.3	88.5
借入金依存度	47.0	48.0	48.4	37.1	—	—	26.2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0.

〈表 11〉 資本市場의 外延成長推移

		1969	75	76	77	78	79	成長倍數 (69年對比)
上場會社數	個	42	189	274	323	356	355	8.5
株主數	名	54,318	290,678	568,105	395,275	963,049	872,075	16.1
上場株式數	千株	141,042	824,983	1,583,349	2,177,166	2,959,390	3,506,744	24.9
上場資本金	百萬원	119,902	643,215	1,153,325	1,492,375	1,313,505	2,202,262	18.4
時價總額	百萬원	86,569	916,054	1,436,074	2,350,835	2,892,512	2,609,414	30.1
株式 1日 平均 去來量	千株	335	1,056	1,986	4,310	4,671	5,382	16.1
株式 1日平均去來代金	百萬원	143	1,136	2,110	4,662	5,934	4,579	32.0
債券 1日 平均 去來量	百萬枚	1	57	147	461	839	1,887	1,887.0
債券 1日平均去來代金	百萬원	1	46	123	442	815	1,804	1,804.0
證券會社資本金	百萬원	1,300	28,000	33,148	46,326	51,250	54,600	19.4
企業資金調達	百萬원	6,099	156,255	262,226	362,452	653,062	841,432	138.0

資料 : 韓國證券去來所, 『證券統計年報』, 1979.
韓國投資信託, 『韓國投資信託月報』, 1980. 2.
韓國證券金融, 『證券金融』, 1980. 7.

〈表 12〉 韓國經濟長期展望

		1962	1966	1971	1976	1981	1986	1990
G N P	80年不變億弗	127	181	287	465	609	900	1,189
	經常億弗	23	37	91	274	658	1,501	2,539
1 人當 G N P	80年不變弗	478	614	873	1,297	1,572	2,170	2,686
	經常弗	87	125	278	765	1,700	3,624	5,736
人口	千 人	26,513	29,436	32,883	35,863	38,723	41,839	44,261
經濟活動人口	千 人	8,346	8,970	10,540	13,060	14,744	16,948	19,162
失業者數	千 人	684	637	474	510	707	680	653
失業率	%	8.2	7.1	4.5	3.9	4.8	4.0	3.9
GNP디플레이터上昇率	%	18.4	14.5	7.5	17.7	20.0	9.5	7.0
總投資率	%	9.6	18.8	28.1	27.6	32.0	32.4	35.6
國內貯蓄率	%	3.2	11.8	15.4	23.1	22.9	29.6	35.1
商品輸出	經常億弗	0.5	2.5	11.3	78.1	210	530	1,022
商品輸入	經常億弗	3.9	6.8	21.8	84.1	252	555	1,021
貿易收支	經常億弗	−3.4	−4.3	−10.5	−6.0	−42	−25	1
經常收支	經常億弗	−0.6	−1.0	−8.5	−3.1	−54	−3.6	−10
(對 G N P 比重)	%	(2.6)	(2.7)	(9.3)	(1.1)	(8.2)	(2.4)	(0.8)
外換保有高	經常億弗	1.7	2.4	5.7	29.6	70.0	110	
(對經常收支比重)	%	(36.7)	(30.3)	(20.3)	(23.0)	(20.3)	(15.2)	

資料：經濟企劃院，韓國開發硏究院.

3. 自由化 接近模型

自由化를 成功的으로 推進한 日本, 西獨의 先進國事例에서 抽出한 共通의 成功要件과 自由化 政策手段을 土臺로 自由化 接近模型[18]을 設定하여 自由化計劃의 例示的인 「시나리오」로서 段階別 自由化戰略을 提示해본 後 이 模型과 關聯하여 우리經濟의 現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措置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다만 開放經濟體制에서는 모든 經濟活動의 最終結果가 國際收支結果로 綜合表示되고 自由資本主義國家에서는 開放化 推進의 成敗가 對外條件 못지 않게 市場經濟活性化 즉 對內自由化 達成程度에 크게 依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國際收支와 對內自由化의 두가지 條件을 基準으로 自由化體制準備期, 自由化實現期, 自由化活着期, 自由化 完成期의 4段階模型으로 區分한다.

가. 自由化體制 準備段階

經濟의 自由化를 推進하는 第1段階에서는 自由化를 積極추진하기에 앞서 外部經濟의 急激한 衝擊을 防止하기 爲하여 經濟의 自由化를 試驗的으로 추진해 보는 段階로서 비록 經常收支가 黑字로 轉換되지 않더라도 年次的으로 經常收支의 赤字幅이 減少趨勢에 있고(赤字幅도 經常GNP의 10%未滿) 外債償還負擔率도 20%未滿이어야 하는 등 소위 成熟債務國(mature debtor nation)[19]으로서의 發展可能

18) 여기의 自由化模型은 自由化戰略에 있어서 經濟與件을 勘案하여 段階的으로 自由化를 추진하되 同時에 先行條件造成과 補完措置를 併行하여 實施한다는 折衷的 立場을 前提로 設定하였음.

19) Samuelson은 一國의 經濟成長過程을 外資導入으로 因한 國際收支와의 關係로 未熟成長債務國段階, 成熟債務國段階, 新債權國段階, 成熟債權國의 4段階로 區分함. Paul A. Samuelson, *Economics*, 10th ed. Mc Graw-Hill Book ot. 1976, pp.660~661.

〔圖 2〕 自由化 接近模型

自由化模型(段階)	自 由 化 條 件	自 由 化 戰 略
第1段階 自由化體制準備期 —試驗的 推進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赤字幅 長期的 減小趨勢 또는 經常收支 黑字轉換의 過渡期 ·赤字幅 GNP의 10% 未滿 ·外債償還負擔率 20%未滿 ·外換保有高 經常去來 支出의 20%以上 —·未成熟成長債務國에서 成熟債務國으로의 轉換段階 ㅇ對內 自由化 條件 —·價格機能 活性化 基盤造成 ·金利機能 彈力化 ·國內外 金利差 長期的 縮小方向 ·換率機能의 伸縮性賦與(또는 換率의 流動化) —·金融產業育成 ·實物經濟發展과 併行하여 金融機關發展 및 自律化 促進 ·海外貯蓄 依存 減小 —·工業構造 高度化 推進	—·關稅保護下 自由化品目의 選別的 擴大 —·貿易外 支給의 部分的 自由化와 外換集中制의 漸次的 緩和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本調達 —·監視品目(準自動品目) 設定 —·資本市場 國際化를 위한 受容態勢 整備 ·證券會社의 大型化·國際化 推進 ·企業公示制度의 整備·確立 ·證券人口의 底邊擴大로 證市安定化基盤 確立 —·國際投資信託의 許容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이나 Country Fund등의 間接方法을 通해 證市開放 —·外國人의 直接投資規制 緩和 —·長期自由化計劃 樹立 發表
第2段階 自由化 實現期 —試驗的 推進範圍 擴大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轉換 또는 赤字幅 GNP의 5%未滿 ·外債償還負擔率 15%未滿 ·外債殘額의 對GNP比重 50%以下 ·外換保有高 經常去來支出의 15% 以上 —·成熟債務國段階 —·對內·對外 均衡化 接近 ㅇ對內自由化條件 —·價格機能 ·金利 國際水準 接近 ·換率機能 活性化 ·公正去來 保障 制度化 —·第2金融市場 發達 ·金融市場의 專門化·分業化 —·比較優位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技術投資 大幅 擴大	—·AA品目의 選別的 擴大 및 輸入限度制 廢止 ·輸入自由化率 90%以上 達成 —·技術導入 大幅 開放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積極 誘致하기 위한 外換管理法·外資導入法 등 關係法規 整備 —·國內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 部分的 許容 —·GATT協定 第11條, IMF協定 第8條 및 OECD 自由化規約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構築 —·保護 및 育成產業을 除外한 大部分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準自動品目)으로 轉換
第3段階 自由化 活着期 —自由化實現定着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基調 定着 —·對內·對外 均衡 達成 —·新債權國段階 ㅇ對內自由化條件 —·政策運用上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競爭原理 適用 擴大	—·關稅의 漸進的 引下, 輸出支援 縮小 ·短期輸出支援金融 廢止 ·延拂輸出中心의 輸出金融支援 —·外換集中制의 大幅 緩和 ·外國換 需給計劃 廢止 ·先物換去來의 擴大 —·國內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 投資範圍

〔圖 2〕의 계속

	—・價格機能自律化 및 公正去來 定着 —・金融產業國際化 ・金融機關 大型化・國際化 達成 ・資本市場 大型化・國際化 達成 —・重化學工業 등 工業構造 高度化 ・比較優位 競爭力 確保	擴大 —・國內證券의 海外發行 —・資源開發型 海外投資 및 金融機關의 外國證券投資 擴大 —・IMF 第8條國, OECD 加入
第4段階 自由化 完成期 —高度開放化・國際化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幅 累增 —・海外部門에서 惹起되는 流動性 衝擊 安全裝置 制度化 —・成熟債權國 段階 ㅇ對內自由化條件 —・價格機構에 依한 資源配分效率化 定着 ・物價安定으로 因한 金利의 國際水準 維持 ・換率變動의 安定性 維持 —・金融產業 國際化 達成 ・國內에 國際外換市場 形成 ・先物換市場 發達 —・工業構造 高度化 擴大 ・比較優位 技術集約產業定着	—・例外的인 品目을 除外한 全般的인 輸入自由化 實現 —・外換集中制, 指定通貨制 廢止 —・貿易外 去來의 原則的 自由化 —・民間의 海外有價證券 및 不動產投資의 制限的 許容 —・經濟協力型 海外投資의 本格 推進 —・後開發國에 대한 一般特專關稅制(GSP)供與

性이 明白히 보여야 한다(未成熟成長債務國에서 成熟債務國으로의 轉換段階).

한편 對內自由化 條件面에서도 價格機構 活性化 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自由化의 成敗는 結局은 自由競爭을 基本原理로 生產性을 提高하여 國際競爭力이 있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는데 이와같은 國際競爭力은 政府의 一方的인 特惠, 支援에 依해서 보다 國內產業間의 技術革新이나 經營合理化등 끊임없는 競爭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競爭力提高의 基礎가 되는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가능케 하기 爲해서는 金利・換率 등 價格機能이 正常的으로 움직일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또한 實物經濟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는 金融產業도 實物經濟成長과 併行하여 發展 및 育成될 것이 必要하다. 이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은 關稅保護下에 自由化品目을 選別的으로 擴大하고 輸入自由化 展開方向도 종래의 直接自由化(禁止・制限→自動承認)에서 間接自由化(禁止・制限→監視→自動承認) 形態를 取함으로써 自由化의 漸進性 및 彈力性을 賦與한다. 또한 貿易外支給의 部分的 自由化와 外換集中制를 漸進的으로 緩和하는 措置를 실시하고 金融機關이나 大企業이 債券發行등을 通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本調達을 擴大한다(圖 2 參照).

나. 自由化 實現段階

前段階에서 試驗的으로 推進하던 自由化의 範圍를 擴大하여 실현하는 段階로서 對外去來

規模가 世界去來의 總規模에서 占하는 比重이 커지고 對外均衡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기 直前의 狀態이기 때문에 開放化의 外部壓力이 漸增할 것에 대비하는, 다시말하면 OECD加入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構築時期로 成熟債務國段階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의 自由化條件은 먼저 國際收支條件에 있어서 經常收支가 黑字로 轉換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經常收支 赤字幅이 經常GNP의 5%以內로 對外均衡이 接近되고, 輸出構造도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爲主에서 資本 내지 技術集約的 重化學工業製品이 中心이 되도록(例 60%以上수준) 轉換된다. 對內自由化도 相當히 進前되어 國內金利가 國際金利水準에 접근하고 物價도 安定水準에 있어 換率變動이 安定되는 등 換率機能도 活性化되게 된다. 또 金融市場의 專門化·分業化는 크게 進前되어 金融資產이 多樣化되고 內資動員 極大化를 위한 體制가 정비된다. 따라서 短期資金市場과 資本市場등 第2金融圈이 크게 發達하여 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가 許容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된다.

第2段階에서의 自由化戰略을 例示하면 輸入限度制를 廢止하여 輸入自由化率도 90% 以上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產業構造 高度化를 爲한 技術導入을 完全 開放하는 措置가 필요하다. 따라서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적극 誘致하기 爲한 外換管理法·外資導入法上의 規制를 大幅 緩和하는 關係法規의 改定·整備가 필요하다. 이 期間에는 적어도 GATT協定 第11條, IMF協定 第8條 및 OECD自由化 規約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하거나 또는 비록 義務條項을 留保하더라도 積極的으로 OECD에 加入하는 措置가 要請된다.

다. 自由化 活着段階

이 경우에는 經濟의 對內·對外均衡이 달성되고 經濟政策運用도 創意와 能率이 尊重되는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經濟原理의 適用이 擴大된다. 또한 自由化試驗段階를 거쳐 國際競爭力이 어느 程度 優位를 確保하게 되어 積極的 開放化추진에 自信이 생긴 結果 資本去來의 自由化도 流入뿐만 아니라 流出面이 동시에 强調되는 이른바 新債權國(new creditor nation) 段階이다.

第3段階에 對應되는 自由化條件을 살펴보면 國際收支事情에 있어서도 經常收支 黑字가 계속되는 등 對外均衡基調가 定着化되어야 한다. 對內自由化 與件도 開放化로 因한 外部衝擊에 견딜 수 있을 만큼 價格機能 등 市場經濟機能의 自律性이 活着되어 명실공히 對內·對外均衡이 달성될 수 있는 與件이 조성된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 展開되는 自由化戰略은 먼저 政府의 經濟政策上 保護 및 育成이 필요한 產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半自動承認品目)으로 轉換해야한다. 關稅도 점진적으로 引下되고 輸出支援金融에 있어서도 短期輸出支援金融을 점차 廢止하고 延拂輸出中心의 長期輸出支援金融으로 轉換되어 政策金融支援을 크게 줄인다. 또한 外國換需給計劃을 廢止하는 등 강력한 外換集中制와 外換規制를 緩和하고 先物換去來 및 其他 補完措置를 확대하여야 한다. 資本去來에서는 國內 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範圍를 擴大하는 한편 資本流出面의 自由化도 강화된다.

라. 自由化 完成段階

이 段階에서는 物價安定으로 對內均衡이 定

着化되고 經常收支 黑字幅이 累增되는 결과 海外部門에서 惹起되는 流動性增加가 國內經濟安定을 攪亂시키는 衝擊을 最小化하도록 經濟의 開放化가 철저히 추진되어 對外去來自由化도 完成되는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國民所得 向上에 따라 輸出伸張에 비해 相對的으로 輸入需要가 크게 늘어나는 成熟債權國(mature creditor nation)에 進入하게 된다.

自由化 完成段階에서 要求되는 自由化條件은 經常收支 黑字가 累增될 뿐만 아니라 이로 因한 流動性을 적절히 吸收하여 調整할 수 있는 政策手段을 具備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對內的으로 價格機構에 의한 資源配分效率化가 극대화되고 國內金利도 物價安定으로 因해 國際水準에 일치하고 換率變動의 安定性을 維持해야 한다. 또한 金融市場의 國際化도 實現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國內에 國際外換市場이 形成되고 先物市場이 發達하게 된다.

自由化의 마지막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은 우선 輸入自由化의 側面에서는 例外的인 品目을 제외하고 全般的인 輸入自由化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外換集中制와 指定通貨制는 廢止하여 貿易外去來는 原則的으로 自由化시킨다. 또한 民間의 海外 有價證券이나 不動產에 대한 投資도 制限的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經濟協力型 海外投資를 本格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開發途上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GSP)도 供與하면서 GATT 第11條, IMF 第8條國으로 移行, OECD에 定式으로 加入하여 經濟去來의 自由化를 完成하게 된다.

Ⅳ. 韓國의 對外去來 自由化政策

1. 自由化 戰略

先進諸國의 對外去來 自由化推進過程을 보면 먼저 貿易自由化를 추진하고 다음 外換自由化를 實現한 後 資本自由化를 展開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國際收支事情 및 對內自由化條件 등의 制約要因때문에 段階別自由化를 推進하기 爲해 必要한 先行要件을 充足한 後에 그에 대응되는 自由化를 展開하고 自由化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補完措置를 마련하는 式의 「先條件充足 後自由化」의 漸進的·補完的 接近方法을 取한데 反하여 西獨은 「先自由化 後條件充足」패턴의 積極的인 自由化戰略을 使用하였다. 물론 西獨의 經濟는 基本的으로 工業構造高度化나 高生產性 등 經濟構造의 基盤이 日本에 비해 공고하였고 그 當時 新自由主義理念에 立脚하여 經濟政策을 樹立하였기 때문이긴 하지만 積極戰法으로 成功하였다. 이에 比해 우리의 경우는 經濟構造基盤이나 經濟運用慣行등이 先進國보다 훨씬 落後되어 있어 國際競爭力面에서 脆弱하기 때문에 積極的으로 自由化를 추진하면 國際收支不安, 國內市場攪亂 등 國內經濟의 安定을 害칠 危險性이 많다. 그러나 消極的으로 自由化先行條件이 전부 充足된 後에만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現國內外 經濟與件과 第5共和國의 指導的 政治理念인 開放化·自由化政策에 비추어 볼 때 急變하는 國際經濟에 能動的·伸縮的으로 適

應하여 第2의 經濟跳躍을 圖謀하려는 새시대 經濟理念에도 어긋나고 또 5次經濟開發計劃上 每年 100億弗以上 必要한 外資調達에도 蹉跌을 招來하게 된다. 勿論 資本自由化등 對外去來自由化는 意慾과 意志만으로 成就되는 것은 아니고 國內經濟의 成熟과 함께 國際環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政府가 開放經濟指向을 先導함과 더불어 企業·勤勞者·家計 등 모든 經濟主體의 自由化에의 努力이 끊임없이 傾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自由化基本戰略은 國際經濟環境에 伸縮的으로 對應하면서 自由化를 추진하되 우리經濟의 與件을 勘案하여 段階的으로, 그러나 先行條件造成과 補完措置를 併行하여 實施한다는 折衷的인 立場을 取해야 할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海外의 自由化壓力과 保護障壁에 對處하는 方案으로써 輸入自由化政策에 있어서 臺灣의 경우처럼 名目的인 自由化比率은 가능한 限 높이되 關稅率의 調整등으로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이 成熟될 때까지 實質自由化를 漸進的으로 추진하고 外換 및 資本自由化에 對해서는 長期自由化計劃을 樹立·宣言함으로써 國內企業으로 하여금 그에 對한 事前準備 내지 對應能力을 키우게 하는 한편 5次經濟開發計劃上 每年 100億弗 以上 필요한 外資調達을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外資導入의 窓口와 手段을 多樣化하면서, 또 金利·換率등 市場價格機能의 自律性을 제고하는 등 對內自由化 條件充足도 적극 併行·推進하면서 資本流入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制約을 果敢히 自由化할 必要가 있다.

2. 自由化 現況

현재 自由化에 關係되는 法規로는 貿易管理에 關해서는 貿易去來法, 外國換管理法, 關稅法 등이 있고 資本自由化에 關하여는 外資導入法, 外國換管理法 및 證券去來法 등이 있다[20].

지금까지 發表된 政府의 主要 自由化計劃의 基本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21].

◎輸入自由化基本方向

- 輸入自由化의 段階的 推進과 輸入豫示制의 活用으로 國內產業에 對한 충격을 最小化
- 非競爭輸入品目은 輸入自由化와 關稅引下를 併行
- 國內產業政策, 物價政策, 기타 關聯되는 政府施策과 連繫하여 相互補完的인 機能을 강화
- 競爭輸入品目(特히 資本材)은 段階的으로 自由化하되 必要時 關稅로 補完하여 81年 현재 74.7%의 輸入自由化率을 5次5個年末年에는 90% 以上으로 높임

◎資本自由化基本方向

特記할 만한 것은 최근 政府가 發表한 證券自由化計劃인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第1段階(84年까지) : 受容態勢整備段階
  - —國際投資信託의 制限的 許容
  - —外國證券會社의 國內事務所 設置許可
  - —證券關係機關의 人力養成 등 證券市場開放을 爲한 基礎整備
- 第2段階(85年頃) : 外國人의 直接投資 制限的 許容

20) 自由化內容에 따라 所管部處가 달라 政策의 樹立 및 實施에 統一性과 一貫性을 維持하기 困難한 制度上의 缺陷이 있음.

21) 輸入自由化計劃에 關해서는 78年 2.16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의 發表 및 81年5.13 5次經濟開發計劃(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資本自由化에 關해서는 81年 1.14 財務部의 證券自由化計劃에 基本內容이 들어있음.

〔圖 3〕 主要自由化措置 內容

		自 由 化 措 置
貿易	1967年	GATT 加入, 貿易計劃體制改編(Positive→Negative)
	1971年	輸入期別公告上 商品分類 基準을 SITC에서 BTN으로 變更함으로써 보다 國際的으로 共通的인 制度를 活用하게 됨.
	1978年 2月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 發足
	1978年 5月～1979年 1月	輸入自由化 基本方向 設定 第1次～3次 輸入自由化 實施
	1979年 下半期	改編된 CCCN體制에 맞추어 輸出入 期別公告를 改編
	1981年 5月26日	第4次 輸入自由化 實施, 改編된 CCCN 8單位體制에 맞추어 輸出入期別公告를 改編
外換 및 資本	1955年 8月	IMF, IBRD 加入
	1960年 1月	外資導入促進法 制定 外國換管理法 發效)—對外資本去來에 關한 基本法 制定
	1962年 7月	借款에 대한 支拂保證에 관한 法律(支拂保證法) 發效→外國人投資 및 商業借款의 法的 根據 確立
	1962年 10月	大韓石油公社 設立(Gulf와 合作)
	1965年 3月	IMF로부터 外換市場操作 安全基金으로 9,300萬弗의 Stand-by Credit 確保—最初의 國際金融機構借款契約
	1966年 8月	外資導入關係法令 統合, 外資導入에 대한 各種 稅制惠澤과 元利金送金保障
	1967年 5月	湖南精油 設立(Caltex와 合作)
	1967年 7月	外國銀行으로서는 처음으로 美國「체이스맨해턴」國內進出
	1970年 1月	"外貨國債의 發行에 關한 法律" 制定—우리나라 政府의 海外起債가 可能케 됨.
	1972年 10月	外銀支店의 對韓銀 還買條件附 外貨資金賣却(SWAP) 範圍 擴大—輸出金融에 限하던 것을 一般貸出財源 調達에도 許容
	1974年 10月	産業銀行이 우리나라 最初의 外貨債券 發行(Abu Dhabi 政府引受, 1,900萬弗)
	1978年 4月	1次技術導入 自由化—機械, 造船, 金屬, 電氣機器 등 部門의 一部 技術導入自由化
	1979年 1月	金融機關「리화이넌스」調達金利 自律化
	4月	借款金額 下限線 廢止, 第2次 技術導入 自由化—原子力 및 防衛産業을 除外한 全産業으로 擴大
	9月	韓國證券去來所, 國際證券去來所聯盟 加入
	1980年 1月	外資導入法 施行令 改定, 外資導入 事前申告對象金額을 引上 (借款 : 300萬弗以上→1,000萬弗以上) (外國人投資 : 100萬弗以上→200萬弗以上)
	5月	外資導入認可節次 簡素化 ○外資事業投資審議委員會의 議決限度 引上(100萬弗→1,000萬弗) ○外資導入 事前申告對象金額 引上(300萬弗以上→1,000萬弗以上)
	9月	外國人投資誘致擴大方案 發表 ○外國人投資適格事業의 範圍擴大 : 食品, 醫藥品, 流通 및 「서어비스」産業 등을 追加 ○元本回收에 대한 規制 廢止 ○外國人投資規模의 最低限度 引下(件當 50萬弗→10萬弗) ○外國人投資比率引上 : 輸出自由地域入住事業, 先進技術을 수반하는 事業 등 일부 事業에 대해서는 100%까지 投資를 許容
	1981年 1月	證券市場自由化推進計劃 發表
	7月	外國換去來節次의 簡素化등을 위한 外換管理規定 改定, 外國人 投資業種 擴大

- 第3段階(80年代 後半) : 外國人의 本格的 投資許容 및 國內證券의 海外發行
- 第4段階(90年代 前半) : 完全自由化로 資本流出을 許容

3. 段階別 實施方案과 補完措置

가. 現段階에서 추진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

위의 4段階 自由化接近模型中에서 현재의 韓國 經濟狀況은 第1段階에 해당하고 내년부터 始作되는 第5次 5個年經濟開發計劃 期間中은 1段階 내지 2段階에 相應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經濟의 現段階를 自由化模型條件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먼저 國際收支條件에서 비록 經常收支가 今年을 포함해서 第5次計劃期間中에 계속 赤字를 示顯할 것이 예상되지만 赤字幅이 縮小[22]되는 추세에 있고 外債償還負擔率도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外換保有高도 상당 水準에 있어 국제수지 방어능력이 있다고 判斷되며(表 12 한국경제의 長期展望 參照) 한편 對內自由化條件에 있어서도 必要條件이 전부 충족되어있지 않고는 있지만 政府가 最近 金利·換率 등 價格機構를 市場經濟原理에 依하여 流動시킴으로써 價格機能을 活性化하고, 한편 落後된 金融產業을 實物經濟成長과 같은 수준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民營化와 國際化를 段階的으로 試圖하는 등 自由化前提條件 基盤을 構築하는 데 政策的 努力을 集中하고 있는 現今의 經濟狀況과 政策意志에 비추어 判斷할 때, 自由化接近模型의 段階別로 要求되는 必要補完對策을 自由化 推進과 함께 講究한다면 自由化 1段階 및 2段階의 自由化戰略 展開가 可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自由化措置를 생각할 수 있겠다.

1) 長期 自由化計劃의 樹立·發表
- 現行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를 吸收하는 專門家로 構成된 自由化對策委員會를 組織
- 우리가 段階的으로 추진할 自由化戰略 內容에 關한 一貫性있는 長期 自由化計劃大綱(MASTER PLAN)을 樹立·發表하여 經濟活動 主體가 對應措置를 事前準備할 수 있게 함
- 現在 所管部處(經濟企劃院, 財務部, 商工部)別로 自由化措置를 發表하여 생기는 混線을 防止함

2) 輸入自由化品目의 擴大와 輸入制限要因 除去 : 例컨데 輸入推薦制度 및 實需要者制度 등을 段階的으로 除去함

3) 輸出支援制度의 再整備
- 支援對象을 漸次 國際競爭力上 比較優位를 占할 수 있는 產業分野로 縮小
- 中長期 延拂輸出支援을 擴大

4) 貿易外 支給制限의 緩和
- 小額의 送金 및 技術用役契約의 自由化
- 件別 支給認證에서 包括的 支給認證으로 轉換

5) 國際金融市場에서의 直接借入 擴大
- 現段階에서는 우리나라 企業의 信用度나 海外金融技法 등을 고려할 때 1次的으로

22) 經常收支赤字의 對GNP比重이 81年 8.4%, 86年 2.7%임(表 12 參照).

金融機關이 借入하여 企業에 轉貸하고 2次的으로는 浦鐵, 韓電 등의 政府投資機關이, 그 다음으로 資本金 300億원 以上의 大企業順으로 接近하도록 함

· 補完措置로써 金融機關의 國際業務의 多樣化와 金融仲介機能을 提高토록 함

6) 資本市場 國際化를 위한 受容態勞整備

· 證券會社의 大型化·國際化를 推進

· 國際標準의 企業의 公示制度를 改善·整備가 필요함.

나. 次順位(5次經濟計劃期間中)로 檢討해야할 自由化戰略

○輸入自由化

1) 國內產業 保護 및 國內經濟秩序 維持上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準自動品目)으로 轉換

· 예를들면 生必品 및 其他 消費財中 內外價格差가 顯著한 品目은 企業의 過剩保護를 止揚하고 消費者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監視品目으로 轉換

2) 一定한 適應期間이 지난 監視品目은 自動承認品目으로 轉換(輸入自由化率 90% 以上達成)

· 監視品目 轉換 2~3年內에 輸入이 크게 增加하지 않은 品目

· 監視品目으로 轉換直後 輸入이 크게 늘었으나 곧 自由化前의 輸入增加率 水準으로 回復된 品目

3) 輸入自由化體制에 附合한 制度改善 및 補完對策

· 關稅 및 輸入擔保金 積立率의 引下와 諸般行政規制 撤廢

· 監視品目은 전부 彈力關稅 對象品目에 包含시키는 등 彈力關稅 對象品目을 大幅擴大

· 國別 貿易不均衡의 深化程度와 各國의 對韓輸入規制狀況을 參酌하여 輸入開放의 部分的인 國別 差等措置

○外換自由化

1) 外換集中制의 大幅緩和와 先物換市場의 育成·發展

· 商社의 外換保有制 擴大

· 業務用 海外旅行 經費制限 撤廢

○資本自由化

1) 外國人의 國內證券投資의 制限的 許容

· 投資方法은 國際投資信託會社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이나 Korea Fund 등의 間接的인 投資方法으로 一元化할 것.

2) 外國人 直接投資 規制緩和

— 經濟企劃院의 許可를 받게되어 있는 外國人의 直接投資에 關하여 부분적으로 自動認可對象事業 設定(日本의 1次 直接投資 自由化時〈1967年〉 50個業種을 自由化)

· 高度技術과 大規模 資本所要 部門

· 「에너지」代替部門

· 海外原資材 確保產業

· 國內產業中 國際競爭力이 높은 部門 등의 產業中에서 自動認可對象 設定

— 長期間 果實送金을 하지 않는 條件의 경우에는 높은 外國人의 持株比率을 認定(現在 外國人의 持株率을 50% 以上 100%까지 許容할 수 있는 事業은 81年 7月, 1段

階로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10個産業 427個業種에 대해서 대폭 許容함)

○補完措置

1) 外國人의 投資範圍 制限

· 資本自由化 初期段階에서는 自由化對象을 列擧하는 Positive System을 取하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培養의 進展에 따라 그 範圍를 擴大하고, 80年代末에 가서는 모든 業種을 Negative System體制로 轉換

· 戰略産業, 金融産業 및 1次産業은 自由化對象에서 제외

· 特定産業에서의 偏重投資를 防止하기 위해 産業別 外國人持株比率의 上限을 規定할 것

2) 投資元金 回收에 段階的 制限

· 國際收支 및 資本市場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하여 元金回收는 一年 以上 居置期間과 長期分割回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할 것

3) 收益送金의 上限線 設定

· 國內物價上昇率, 國際金利 및 其他 所得을 감안한 年中送金 可能한 收益率 上限線을 規定하고, 이를 超過하는 果實送金에 대하여는 重課稅 與否를 伸縮的으로 調整할 것.

4) 換Risk의 防止를 위해서 先物換市場을 育成·發展시키는 것을 前提로 外國人의 國內投資의 元金評價를 「원」貨表示로 하여 換Risk는 外國人投資家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

5)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하기 爲한 外換管理法, 外資導入法 등 關係法規 整備

다. 90年代에 檢討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

우리나라 經濟의 長期展望을 보면 90年代初까지 經常收支 黑字를 實現하지 못하고 經常收支 均衡에 接近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결국 世界經濟 내지 우리 經濟與件이 變化하는 데 따라 우리의 自由化戰略도 이에 對應하여 伸縮的으로 추진되겠지만 換率, 金利 등 價格機能이 活性化되어 國際水準에 接近되고 金融市場이 先進國水準으로 發達되는 등 對內 自由化 條件이 相當水準까지 充足되고 對外的으로는 韓國經濟에 대한 對外信認度가 크게 向上되는 등 經濟與件이 우리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80年代末부터 90年代에 自由化接近模型의 3段階 내지 4段階의 自由化戰略을 展開할 수 있다.

○輸入自由化

1) 例外的인 品目을 제외한 全般的인 輸入自由化 實現

· 戰略的인 保護 및 育成分野와 安保上 制限品目과 國際協定上 制限이 必要한 경우 自由化를 留保하되

· 纖維, 原資材 및 施設材는 原則的으로 全面自由化

· 生必品 및 其他 消費財는 順次的으로 전부 自由化

2) 輸出去來 交涉品目目錄 事前準備

· 地域別로 輸出 Bargain品目 目錄을 作成準備

· 相對交易國의 우리나라 主要品目에 대한 輸入規制緩和가 없는 경우, 自由化를 留保

3) 後發開途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供與

· 後發開途國과의 通商 및 經協增進과 輸入市場의 多邊化 및 輸出市場 開拓을 위하여 後發開途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供與檢討

4) 輸出支援制度 및 輸入擔保金制度 廢止

· 短期輸出金融支援은 廢止하고 設備支援金融對象은 縮小

· 技術과 情報 支援擴大에 重點

○外換自由化

· 外國換需給計劃 廢止

· 資本自由化의 원활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外換規制 除去

· 海外旅行經費制限 廢止등 貿易外支給을 原則的으로 自由化

· 外換集中制 指定通貨制 廢止

○資本自由化

1) 非居住者의 國內直接投資 漸進的 自由化推進

· 自動認可 對象業種을 擴大

· 非居住者 持株比率 制限의 緩和

2) 非居住者의 國內證券去來 許容

· 取得對象 및 限度 擴大

3) 外國保險會社의 國內保險業務 許容

4) OECD加入, IMF 8條國으로 移行하여 外換 및 資本自由化 義務 受諾

5) 居住者의 海外證券投資 및 國內證券會社의 海外進出幅 擴大

6) 外國證券의 國內發行上場

7) 經濟協力型 對外投資의 積極推進

結論的으로 말하면 先進 自由資本主義國家들은 經濟의 開放化·自由化를 通하여 相互間의 貿易擴大와 資本의 效率的인 配分으로 高度의 經濟成長과 經濟繁榮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나 昨今의 世界經濟 및 交易現實은 自國의 輸出增大를 爲해 自由化를 주장하면서도, 한편 自國의 產業保護를 爲해 保護主義 障壁을 높이 쌓고 있는 결과 現代의 對外去來自由化는 國益에 따라 變하는 二律背反性으로 因하여 傳統的 意味의 自由化에는 限界가 있게 된다.

그러나 世界經濟가 自由開放經濟體制에 그 存立基盤을 두고 있는 限「自由化·國際化」의 추진은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世界經濟의 均衡된 發展을 爲해서 꼭 필요한 前提條件이며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으로서도 先進經濟圈에 進入하기 爲해 반드시 거쳐야 할 必然的인 過程이다. 다만 自由化를 爲해 經濟的 先行與件이 成熟되지 않은 상태에서 對外去來의 적극적인 自由化추진은 世界貿易構造의 變動推移와 동떨어진 國內產業構造의 定着化와 國際收支 惡化를 招來하여 오히려 經濟發展이 沮害될 염려도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따라서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弱肉强食의 貿易戰爭에서 生存하기 爲해서 能動的이고 伸縮的인 開放政策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포함한 產業內部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爲하여는 成長期待部門에 대한 支援施策 및 斜陽產業에 대한 轉換對策과 企業體質强化 對策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產業政策의 定立이 必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財政·金融·外換政策의 補完對策의 마련과 特히 綜合的인 自由化 MASTER PLAN을 樹立함으로서 現在 所管部處別로 自由化措

置를 實施하여 統一性과 一貫性을 缺如하고 있는 自由化政策을 再整備하는 것이 開放經濟體制의 追求와 관련해서 우리가 時急히 해결해야 할 當面調題라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國際經濟硏究院, 『經濟基調轉期의 政策對應』, 1980.

司空壹, 「金融과 經濟發展」, 『韓國開發硏究』, 1980. 9.

徐錫泰, 『日本 및 西歌의 輸入自由化過程과 補完對策』, 1978.

嚴永錫, 「資本主義의 問題點」, 韓國經濟新聞, 1981. 2. 11.

韓國銀行, 「貿易自由化와 產業政策의 方向」, 『調査月報』, 1977. 12.

_____, 「日本의 貿易 및 外換自由化推進」, 『海外調査資料』, 1978.

經濟企劃廳調査局編, 『經濟白書 25年』, 日本經濟新聞社, 1975.

吉村正晴, 『自由化와 日本經濟』, 岩波新書, 1964.

澄田・知小宮隆太郎・渡邊康編, 『多國籍企業의 實態』, 日本經濟新聞社, 1972.

神野正雄編, 『資本自由化와 國際競爭力』, 1966.

綜合政策硏究會, 『資本自由化의 本質과 對策』, 1967.

河合俊三, 『OECD의 話』, 日本經濟新聞社, 1976, 1977.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Balassa, Bella,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Objectives and Alternatives,* McGrow-Hill Co., 1967.

Balassa, Bela, Mordechai E. Krenin,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Kennedy Round," *The Static Effec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7.

Reuber, Grant L.,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73.

Gruber W. Mehta O. Vernon R. "The R&D Factor in Inter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Feb. 1967.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Kindleberger, C.P.,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 on Direct Investment,* Yale Univ. Press, 1969.

Kindleberger, C.P. (ed.), A Symposium,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march 1973.

_____,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June 1978.

Gold Smith, Raymond W., *The Determinents of Financial Structure,* Paris; OECD, 1966.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産業支援의 原則과 現況 및 改善方向

楊 秀 吉

▷ 目 次 ◁

Ⅰ. 序 言
Ⅱ. 産業支援의 原則
Ⅲ. 韓國工業化의 評價와 展望
Ⅳ. 産業支援의 現況
Ⅴ.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

Ⅰ. 序 言

우리經濟가 昨今 겪고 있는 痛症과 轉換은 過去의 産業支援方式上의 問題에 크게 基因한 것인 만큼 將次 우리經濟가 當面한 試鍊을 克服하고 얼마나 順坦한 發展의 軌道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은 經濟政策側面에서는 앞으로 採擇될 産業支援制度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現在 産業支援制度의 改編方向에 非常한 關心이 傾注되고 있음은 當然한 일이나 不幸히도 具體的 政策의 樹立에 實質的인 寄與를 할 수 있는 理論과 資料의 提示가 아쉬운 것이 事實이다.

本稿의 趣旨는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꾸어 보자는 데에 있다. 本稿의 目的은 産業開發政策의 理論的 根據와 要件을 整理, 樹立하고 또한 韓國의 産業支援現況을 實證的으로 把握하여 본 後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을 政策擔當者에게 提示하여 보자는 것이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韓國의 對外指向的 産業開發戰略의 理論的 根據를 檢討한 後 그에 準한 産業支援原則을 樹立한다. 第Ⅲ章에서는 昨今의 韓國의 産業化政策을 評價·反省하고 向後의 産業開發方向을 展望한다.

第Ⅳ章에서는 現産業支援體制의 構造와 特性을 把握하고 그것을 앞의 原則論에 비추어 批判한다. 第Ⅴ章에서는 結論的으로 앞으로의 改善方向을 概略的으로 提示하여 본다.

本稿는 韓國의 産業支援現況을 實證的으로 把握하고 그 結果를 體系化된 産業支援理論에 비추어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보자는 試圖인 것이 그 特徵이나 不幸히도 紙面關係上 별로 基礎資料를 收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한 諸般資料가 本稿와 同題目으로 곧 出刊될 報告書에 收錄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여기에 提示되는 見解와 資料는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이지만 產業政策에 關心있는 人士들의 硏究 및 討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于先 發表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Ⅱ. 產業支援의 原則

1. 對外指向의 論理

產業開發의 基本方向을 樹立함에 있어서 一國은 輸入代替에 의한 工業化와 輸出擴大에 의한 工業化의 두 戰略中 하나를 우선 택하여야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經濟의 成功的 工業化와 高度成長은 그동안 後者, 즉 소위 對外指向戰略에 의하여 可能하였고 또한 將次에도 마찬가지의 戰略을 必要로 하는 바 이러한 戰略의 最大活用을 위해서는 그 戰略의 論理的 根據를 確實히 把握하고 그에 充實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本節에서는 對外指向戰略의 優越性을 輸入代替戰略과 簡略히 比較·檢討한다[1].

輸入代替戰略과 對外指向戰略은 國際貿易의 消極的 利用과 積極的 利用을 各其 意圖한다. 이러한 立場의 差異는 國際貿易(增大)의 惠擇과 幣害의 比重을 달리 評價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國際貿易의 惠擇은 다음과 같이 列擧될 수 있다.

- 國際的 比較優位에 따른 生產은 分業과 交換으로 因한 消費領域增大效果를 준다.
- 分業은 또한 產業別市場擴大를 通해 規模經濟效果를 取得케 한다.
- 國際競爭으로 因해 生產效率化와 技術向上 및 品質改善의 努力이 强化되는 競爭力提高促進效果가 있다.
- 國際競爭으로 國內獨寡占이 牽制 또는 自動規制된다.
- 새로운 製品, 先進的 思考方式과 效率的 規範이 持續的으로 導入되는 發展導入效果가 있다.
- 天然資源賦存上의 制約을 克服케 한다.
- 資本과 技術의 不足을 導入에 의해서 克服케 한다.

反面에 國際貿易의 幣害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主張되곤 한다.

- 開途國의 比較優位는 一次產品에 있어 工業化가 어려우며 一次產品의 交易條件은 惡化되기 마련이다.
- 國家經濟가 國際經濟與件變化에 敏感하여진다.
- 輸入代替를 通한 學習의 機會를 喪失한다.

以上에서 國際貿易의 惠擇은 주로 論理的인 것이며 따라서 反論의 餘地가 別로 없는 것들인데 比하여 國際貿易의 幣害는 說得力이 弱한 經驗的 主張들이라 하겠다.

對外指向戰略下에 開途國의 工業化가 어렵다는 R. Prebisch敎授의 主張은 韓國 등 여러 新興工業國들의 登場이 그 反證이라 하겠고 또한 一次產品의 交易條件惡化論 自體도 70年代에 들어서서 無意味해졌다고 볼 수 있다.

國際經濟의 與件變化는 國內經濟自體는 相

1) Keesing(1979) 참조.

對的으로 安定되어 있을 때에 問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國內經濟의 變化가 外部로 傳播되고 때로는 國際經濟의 變化가 國內로 傳播되기도 하면서 內外經濟는 貿易을 通하여 갑작스런 與件을 나누어 吸收하는 相互保險關係가 있다는 觀點에서 國內外相關關係를 接近하여야 할 것이다.

開放體制를 止揚하는 나라도 對外交易을 全的으로 避할 수는 없으며 이런 點에서는 外部衝擊만을 考慮하더라도 對外指向體制의 强點이 浮刻된다. 即 輸入代替經濟도 石油波動과 같은 外部衝擊을 謀免할 길은 없는 데 對外指向經濟는 輸入緊縮의 餘裕(Compressibility)가 보다 커서 外部衝擊에 보다 伸縮的으로 對應할 수 있고 또한 國際競爭에서 단련된 企業들의 存在는 對外指向經濟의 伸縮的 對應能力을 높여 주는 것이다.

輸入代替가 學習現象이란 것은 妥當한 解析이다. 그러나 動態的 現象으로서의 產業發展自體 역시 하나의 學習現象인 것이다[2]. 따라서 包括的 輸入代替戰略과 對外指向戰略도 兩者 모두 궁극적으로 輸入代替에 대한 接近代案이며 效果的 學習에 대한 方法論인 것이다.

比較優位原理를 根幹으로 하는 對外指向戰略이 論理的 當爲性이 있다면 이와 對照的으로 輸入代替戰略은 自主主義的 本能에 대한 呼訴力이 强하다. 이러한 理由로 中南美諸國과 印度를 爲始한 東南亞國家들, 東歐의 社會主義國家들은 일찍부터 輸入代替戰略을 追求하여 왔으나 共通的으로 不振한 經濟發展을 記錄하였고 그 結果 알젠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開途國은 60年代中盤에 對外指向的 政策改革을 보았고 항가리와 같은 社會主義國의 經濟도 市場化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3].

2. 對外指向的 產業支援戰略

產業開發政策의 役割은 產業開發을 爲한 資源動員을 圓滑히 하는 한편 動員된 資源의 效率的 產業間 配分을 圖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後者와 같은 役割의 履行手段을 產業支援이라고 할 수 있다.

前節의 論議에 의하면 資源의 效率的 產業間 配分의 原則은 國際的 比較優位에 順應하는 產業構造의 追求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產業支援의 役割은 國際的 比較優位에 立脚한 產業化를 誘導하는 것이다.

原則的으로 比較優位에 立脚한 產業化 誘導는 市場의 機能이다. 國內外의 經濟與件은 恒時 複雜하게 變하고 있고 또한 그 復雜度는 增加一路에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比較優位原理가 市場에서 作用한다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것은 政府 또는 特定機關의 科學的 分析能力 및 管理能力이 極히 制限되어 있어 政府의 能動的 市場管理에는 危險負擔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市場은 初級比較優位理論에서 假定하는 만큼 完全하지 않으며 市場의 不完全은 政府의 介入을 正當化한다.

產業支援은 바로 이러한 介入의 手段인 것이다. 市場經濟理論에 依할 때 政府는 公共財의 適正生產以外에도 規模經濟生產 및 外部經濟生產의 適正化, 人爲的 市場歪曲의 除去 등을 위하여 市場에 介入할 수 있다[4]. 이러한

2) Keesing(1979) 참조.
3) B. Balassa(1980a) 참조.
4) Musgrave(1959) 참조.

理論에 비추어 市場自律下의 産業支援은 다음과 같은 目標를 갖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가. 幼稚産業의 育成

産業間의 差別的 優待支援의 原則的 境遇이다. 새로운 生産活動의 初期에는 損失을 보기 마련인데 그것은 經營 및 生産技術의 習得 또는 有名競爭者에 대한 知名度劣位克服에 時日과 經驗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成長初期의 産業 即 幼稚産業에 대해서는 市場自律的 投資가 不在하던지 또는 不足할 수 있다. 即 私的 危險負擔이 過大하든지, 將次의 利潤을 市場이 過少評價하든지, 習得技術에 外部經濟效果가 있던지 혹은 資本市場의 不完全으로 初期財政이 不可할 境遇가 그것인데 이러한 境遇에는 特別優待支援이 正當化된다[5].

幼稚産業支援論은 매우 操心스럽게 消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선 모든 産業이 成長初期에는 幼稚産業인 反面 幼稚産業支援은 極히 制限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優待支援이 모든 産業에 適用된다면 言語槪念上의 矛盾이 될 것이다. 經濟槪念上으로 보자면 優待支援은 制限된 資源을 주어진 部門에 보다 더 割當하고 反面 餘他部門의 몫을 줄이는 것임으로 모든 産業에 대한 優待支援은 不可能하다.

이것은 即 優待支援은 選別的 政策이며 또한 對象이 制限될수록 效果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效果的 幼稚産業育成을 爲해서는 優待支援對象産業을 受惠要件에 따라 엄격히 審査하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期待되는 技術向上速度와 初期費用의 相對的 低位度등을 考慮하여 嚴選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重要한 但書는 幼稚産業의 支援이 限時的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幼稚産業支援의 論理上 當然하다. 나아가서 幼稚産業支援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豫示的 段階的으로 縮少되는 規模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6]. 이것은 幼稚産業의 成長을 確認하는 意味가 있다.

나. 外部經濟源의 支援

情報開發, 技術開發 및 人力養成은 外部經濟效果가 있음으로 支援對象이 된다.

工業化自體도 間接的으로 이러한 機能이 있음으로 工業全般에 대한 支援이 正當化된다는 主張도 있으나 本格的 工業化過程에서 唯獨 工業部門만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懷疑가 强하다[7].

다. 規模經濟의 支援[8]

交通, 電氣 등의 公益産業, 各種重化學工業에 흔한 規模經濟는 費用遞減現象으로 因해 獨占生産體制를 誘導하며 이러한 獨占化는 經濟效率上 正當化된다. 同時에 適正價格誘導를 包含하여 獨占規制가 必要하다. 이때 適正價格은 平均生産費用보다 낮은 限界生産費用이며 따라서 政府의 補助가 있어야 하되 물론 이러한 政策의 基本的인 前提는 適正生産時의 國內 平均生産費가 輸入價格보다 낮다는 것이다.

라. 人爲的 市場歪曲의 對處

市場에는 人爲的 獨寡占, 價格의 硬直, 社會政策的 各種施策등의 人爲的 歪曲要因이 許多

5) Little, et, al (1970) 참조.
6) Balassa (1977a) 참조.
7) Little, et, al(1970) 및 Keesing(1979) 참조.
8) Little, et, al(1970) 참조.

하다. 이에 대한 最善策은 歪曲要因의 除去이고 次善策은 그 相殺를 위한 政府介入이다.

人爲的 市場歪曲의 許多한 境遇는 政府의 經濟施策에 基因한다[9]. 商品市場에서의 各種 價格規制 및 關稅와 輸入規制등의 輸入障壁이 그 例이다. 輸入障壁은 高費用企業에 의한 輸入代替를 促進하고 輸出産業을 阻害한다.

資本市場을 보면 높은 인플레下의 金融資産에 對한 實質利子의 不安定性, 名目金利水準의 抑壓 및 與信配給등의 歪曲이 있다.

높은 인플레率은 인플레率의 不安定性을 意味하며 따라서 높은 인플레下에서는 金融資産에 대한 實質利子의 동요가 크고 이로 因해 金融仲介活動이 萎縮된다.

높은 인플레하에서 名目金利를 낮게 維持하는 政策으로 實質金利가 마이너스가 되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것은 물론 貯蓄을 沮害하고 또한 海外投資를 助長한다. 게다가 低利潤投資를 助長하여 貯蓄不足과 國際收支逆調를 深化시키고 資本集約度를 提高시키고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킨다. 企業財務構造의 惡化도 그 한 結果이다. 低金利下에서는 與信配給이 不可避한데 與信配給은 金融의 生産的 活用을 沮害한다. 그 理由는 與信配給下에서는 與信取及單價의 考慮로 因해 大企業이 有利한 立場이 되고 信用度의 考慮로 因해 過去 貸出實績이 많은 企業이 有利하며 또한 擔保能力이 큰 獨占業者나 富者가 有利하며 知名度가 높은 企業이 有利하여 創意的 活動에 대한 與信이 沮害되기 때문이다[10]. 또한 與信配給制下에서 私債市場이 發達하는 것은 물론이다.

勞動市場에는 最低賃金制, 勞動組合 등으로 因한 歪曲이 있어 勞動力의 活用을 沮害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 市場歪曲的 經濟施策은 價格機能抑壓을 共通的 性格으로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最善對策은 大體로 自由化 혹은 自律化인 것이 特徵이다. 即 輸入障壁은 縮少廢止하되 必要에 따라 對應하는 國內支援을 設定하고 資本市場에 대해서는 名目金利를 期待인플레率보다 높게 두는 同時에 財政緊縮으로 인플레期待를 낮추며 아울러 私債市場을 陽性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勞動市場에 대해서는 雇傭에 대한 直間接補助의 提供, 雇傭規制의 緩和 및 勞使關係의 適正化誘導등이 바람직하다.

以上의 論議를 檢討하여 볼 때 對外指向的 産業開發戰略下의 差別的 産業支援은 大體로 幼稚産業育成과 國際競爭力이 있는 規模經濟産業의 規制 및 支援에 目標를 두어야 할 것임을 結論지울 수 있다. 反面에 情報開發, 技術開發 및 人力開發등에 對한 支援은 一般的 産業支援의 分野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産業支援以前段階에서 對外指向戰略은 經濟全般에 걸친 自律化를 要求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韓國工業化의 評價와 展望

1. 開途國의 典型的 産業化 過程[11]

戰後 20餘年間 開途國은 一般的으로 輸入代替를 經濟開發戰略으로 삼아왔다. 輸入代替는

9) 以下關聯部分 Balassa(1977a) 참조.
10) McKinnon(1980) 참조.
11) 本節은 주로 Balassa(1980a)의 要約이다.

大體로 容易한 初期段階와 產業開發이 不振한 後期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初期段階의 輸入代替는 衣類, 신발 家庭用品등에 걸친 非耐久性 消費財와 纖維, 가죽, 木材 등의 同原材料에서 이루어지는데 開途國들은 이러한 非耐久性 財貨에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製品들이 單純勞動集約的이고, 部品供給의 需要, 適正生產規模, 生產技術水準등이 모두 낮기 때문이다.

단지, 이 段階에서 開途國들은 比較優位與件上 必要없이 높은 保護을 쌓아 高費用企業을 生成시키고 國內生產一般을 高費用化하며 나아가서는 輸出을 阻害하는 愚를 犯한다.

다음 段階에서는 輸入代替 自體의 限界에 早晩間 부닥치게 된다[12]. 즉, 非耐久性消費財의 輸入代替가 完了되면 여러가지 中間財와 耐久財에서 輸入代替가 試圖되는데 一般的으로 開途國들은 이 分野에 比較優位가 없는 것이다.

中間財와 耐久財는 一般的으로 規模經濟의 現象이 强해서 適正生產規模가 크고 管理 및 技術上의 非能率의 代價가 크다. 石油化學, 鐵鋼 등의 中間財는 매우 資本集約的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機械와 같은 耐久生產財, 自動車, 冷藏庫등의 耐久消費財의 境遇 規模經濟效果는 施設規模에 있는 것이 아니고 大量生產下에 可能한 適正規模의 獨立工場間의 水平的, 垂直的 分業을 通한 各種部品의 標準化와 大量生產에 있는데 耐久財部品은 精密度와 技術水準이 높아 熟練勞動 및 技術人力 即 人的 資本에 대한 需要가 높다. 그러나, 開途國은 國內市場이 相對的으로 狹少하고 物的資本과 人的資本이 不足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不利한 條件下의 輸入代替는 當然히 높은 生產費用을 超來하고 同時에 材料 및 部品에 대한 不可避한 輸入依存으로 因한 外貨需要도 크다. 勿論, 高費用生產은 他製品의 輸出條件을 不利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狀況을 持續시켜 주는 것이 對外保護障壁인 것이다.

不幸히도 輸入代替投資가 일단 始作되고 나면 어떠한 代價를 치루고라도 輸入代替를 遂行시키겠다는 傾向이 擡頭되는 데, 물론 輸入代替는 점점 比較劣位가 强한 分野로 擴大되어 保護障壁은 强化되고 永久化되며 이로 因한 輸出 및 經濟成長에 대한 沮害效果는 持續的으로 커지는 것이다.

無理한 輸入代替는 많은 問題와 市場歪曲的인 政策을 誘發하게 되는 데 이들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名目保護率의 產業間 不規則性과 歪曲的 產業間 實效保護效果
- 輸入代替投資를 爲한 마이너스의 實質金利維持와 特惠金融의 登場
- 全般的으로 價格機能이 抑壓되고 輸入規制, 金融配給등의 方法이 普遍化됨.
- 國內市場에서는 獨寡占化가 助長되어 消費者嗜好는 無視되고 部品生產專門化가 沮害되며 品質向上 및 生產性增大要因이 弱化됨.
- 마이너스의 實質金利, 高費用生產으로 因한 所得減少 및 資本係數의 增加등으로 貯蓄不足이 深化됨.
- 높은 輸入依存度, 낮은 輸出伸張率, 무리한 高成長推進 등으로 外換危機가 잦음.

이처럼 成長不振, 國際收支危機등의 反復에 處해 輸入代替의 限界를 느끼게 되자 이미 앞

12) 第Ⅱ章 第1節 끝 部分 參照.

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開途國이 對外指向戰略으로 轉換한 바 있다.

政策轉換의 基本方向은 價格歪曲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實質水準에서 安定化 시키는 同時에 또 그 產業間隔差를 줄이는 데에 있다. 具體的으로는 保護貿易障壁의 縮少, 工產品輸出의 支援, 換率의 流動化, 實質金利의 플러스化 및 價格의 一般的 自律化이다. 여기에서 輸出支援은 輸出特惠라기 보다는 各種 輸入代替的 施策으로 因한 輸出差別待遇效果를 相殺하여 주는 意味를 갖는다.

이와 같은 對外指向轉換은 곧 生產單價의 下落 및 資本係數의 下落으로 因한 生產과 雇傭의 增大, 外資流入의 增大등의 巨視的 反應을 가져오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2. 韓國의 70年代 產業政策

韓國은 1960年을 前後해서 初期輸入代替를 完了하였고 以後 成長不振과 政策改革試圖의 過度期를 거쳐 本格的 高度成長期에 進入하였는데 最近까지 持續되었던 高度成長과 工業化는 대체로 60年代 中般(1964~67)에 取해졌던 다음과 같은 一聯의 對外指向的 自律化措置에 基盤을 둔다고 하겠다[13].

- 換率의 單一化
- 換率의 流動化 및 其他 輸出支援의 强化措置
- 金利現實化
- 稅制改善, 通貨緊縮, 財政均衡化 등을 通한 經濟安定化
-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한 輸入制限制度의 採擇 및 關稅保護縮少
- 外資導入의 擴大

以上의 措置들로 因하여 韓國經濟는 輕工製品 輸出의 急激한 伸張下에 높은 成長率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73年 前後의 外部衝擊期를 겪으면서 韓國의 經濟政策은 큰 變化를 보았다.

當時의 外部衝擊은 72年~74年의 海外 原資材價 및 原油價의 暴騰, 75年~76年의 世界的 不況, 그리고 先進國의 工產品輸入規制의 强化傾向등이다. 또한 當時 우리는 自主國防의 强化를 위한 防衛產業의 必要性과 아울러 豫想되는 國際比較優位版圖의 變化에 따라 所謂 工業構造高度化의 必要性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府는 中東進出을 包含한 外貨市場多邊化를 積極 推進하는 同時에 輕工業脫皮를 위한 產業構造改編을 强力히 推進하였다. 即 政府는 各種重化學業種의 育成計劃과 또 이를 위한 여러 租稅·金融上의 支援政策을 廣範圍하게 마련하고 企業의 投資計劃에 깊이 干涉하기 始作하였다.

〈表 1〉 輸入自由化의 推移

年 度[1]	總品目數	輸入自動承認品目數	自由化率(%)
1968	1,312	756	57.6
1972	1,312	668	50.9
1973	1,312	683	52.1
1974	1,312	665	50.7
1975	1,312	644	49.1
1976	1,312	669	51.0
1977	1,312	691	52.7
1978	1,097	673	61.3
1980	1,010	693	68.6
	7,465	5,183	69.4
1981	7,465	5,579	74.7

註 : 1) 下半期 基準.
資料 : 商工部, 期別公告.

13) 金光錫등(1976) 참조.

70年代의 이러한 重化學工業化政策은 當時부터 豫見되던 動能的 比較優位의 變化에 비추어보아 趣旨面에서 極히 適切한 政策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意圖에도 不拘하고 政策內容은 앞에서 論議했던 後期輸入代替性이 强했고 그以後 露呈된 政策效果도 後期輸入代替過程의 그것과 別差가 없었던 것이다. 即 政府는 各業種에 廣範圍하게 介入, 支援하며 企業活動을 指示하였고 그 結果 各種 인센티브가 業種間多岐化를 겪었으며 名目金利가 낮게 維持되는 同時에 金融配定과 優待金利가 濫用되었다.

〈表 2〉 主要製造業種間 要素集約度 比較

(1968年度 獨逸製造業 基準)

	人的資本／物的資本	單純勞動／物的資本 (순위)
輕金屬	2.243	5
신발類	2.016	4
革製品	1.608	1
一般機械	1.595	11
精密器機	1.551	6
電氣器機	1.551	9
造船	1.410	16
木製品	1.124	7
樂器・玩具・寶石・運動用品	1.115	3
유리	1.088	15
고무・石綿	1.080	13
印刷	1.072	14
金屬製品	1.058	8
플라스틱	0.938	12
陶磁器	0.976	10
衣類	0.764	2
化學	0.748	25
纖維	0.617	17
가죽	0.612	18
輸送機械	0.581	20
鐵鋼	0.567	23
非鐵金屬	0.536	21
窯業	0.448	22
製材	0.402	19
펄프 및 종이	0.391	24
平均	0.869	

資料 : Balassa(1977c).

輸入代替의 主要手段인 保護貿易障壁의 强化도 있었다. 即 〈表 1〉에 보인 바와 같이 73年부터 77年까지는 輸入自由化가 停滯 내지 縮少되었고[14] 金光錫과 웨스트팔(1976)에 의하면 1973年의 關稅調整의 結果로 重化學工業製品과 同中間財의 關稅率이 引上되었던 것이다.

70年代 重化學政策이 無理했던 점은 優待支援의 基準이었던 重化學이라는 槪念이 比較優位理論의 觀點에서 單一産業分野가 아닌 데서도 나타난다[15]. 〈表 2〉를 보면 重化學工業에 같이 包含되는 金屬, 機械, 化學, 鐵鋼分野의 産業들의 要素集約度가 極히 相異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이라는 劃一的 分類의 無意味 내지는 危險性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當時의 包括的 重化學化推進政策이 開放經濟的 順理를 無視한 政策發想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輸入代替過程의 論議의 한 敎訓은 그릇된 産業政策은 巨視的 政策手段을 硬直化, 歪曲시키고 끝내 成長과 安定을 威脅한다는 것이다. 70年代의 重化學工業政策의 結果 새로운 業種의 育成效果도 없지 않았으나 同時에 인플레의 惡化와 輸出競爭力의 喪失이 助長되었고 以後 79年～80年의 深刻한 不況이 倒來하였음은 그 한 例이며 또한 將次의 産業開發戰略을 爲한 重大한 敎訓이다.

14) 國內인플레의 加速으로 1978年에는 輸入自由化가 큰 進展을 봄.

15) Balassa(1977c) 참조.

3. 韓國의 動態的 比較優位와 幼稚產業

60年代에 勞動集約的 輕工製品의 輸出商品化로 對外指向的 工業化에 成功했던 韓國, 臺灣등의 所謂 新興工業國 혹은 中進開途國들은 70年代初以後 새로운 對外指向戰略段階에 접어들게 되었다. 即 그들의 國際比較優位가 變化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의 比較優位가 單純勞動集約的인 輕工消費財 및 同中間財에서 鈍化되고 있다. 韓國의 경우에는 國內勞動의 高價化이다. 最近 不況의 直接的 發端은 70年代後半의 賃金의 急上昇이었으며 이것은 失業率의 持續的 減少로 雇傭擴大라는 成長源이 거의 없어지는 段階에 도달했으며 低賃金이라는 輕工業化條件이 脫皮되고 있음을 말한다.

다음 國際市場의 與件이 韓國등 新興工業國의 勞動集約製品에 對한 比較優位弱化를 促進하고 있다. 即 印度, 필리핀, 中共 등 單純勞動의 賦存이 相對的으로 보다 豊富한 나라들이 新興工業國들을 追上할 潛在力과 形勢를 보이고 있고 또한 先進國의 對新興工業國保護貿易政策이 이러한 傾向을 强化시켜주고 있다[16].

比較優位는 移轉된다. 즉 以上의 推勢는 工業化段階와 關聯시켜 國際比較類型을 高低段階化할 때 新興工業國들의 比較優位가 高段階化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제 韓國등의 아시아新興工業國들은 勞動力의 敎育水準과 熟練潛在力이 커서 即 人的資本開發의 餘地가 커서 人的 資本集約的인 商品으로의 比較優位移轉을 겪고 있는 것이고 反面 南美新興工業國들은 物的資本集約的인 商品으로의 比較優位移轉을 겪고 있으며 先進國들은 一般的으로 高度技術集約的인 製品에서 强한 比較優位를 確保하고 있는 同時에 人的 및 物的資本集約的 製品에서 新興工業國과 比較優位를 共有하게 되는 것이다.

比較優位의 變化는 반드시 比較優位產業의 名稱을 바꾸지는 않는다. 例컨데 韓國의 比較優位가 人的資本集約的 製品에서 强化되고 있음은 韓國이 纖維, 衣類등의 從來의 主宗輸出品에서 그 品質을 높힘으로서 國際競爭力을 維持 또는 强化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17].

또 〈表 2〉에 依하면 將次 韓國의 比較優位는 輕金屬製品類, 一般機械, 精密機器, 造船등으로 構成되는 機械分野에서 가장 빨리 開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現在 이러한 機械分野가 韓國의 가장 有望한 幼稚產業임을 意味한다[18].

Ⅳ. 產業支援의 現況

1. 產業支援의 手段과 調整

主要產業支援手段은 〈表 3〉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現在 이러한 여러 支援手段이 實質的으로 各部處 및 部處內 機關에 分散 運營되고 있고 各手段別 機能도 分業化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一貫된 產業開發政策遂行을 沮害하고 있는 가장 重大한 要因의 하나일 것이다.

16) Chenery & Keesing(1979) 참조.
17) Balassa(1977c) 참조.
18) 前揭書들 以外에 Balassa(1980b) 참조.

따라서 各種政策手段의 運營指針을 總體的으로 樹立하는 部處間綜合協議決定機構의 設定은 重要한産業政策改善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各種支援手段의 現況과 問題點을 概略的으로 檢討한다.

2. 輸入制限

〈表 1〉에 提示한 바와 같이 現在 韓國의 輸入自由化率은 75%水準이고 78年度 以後에는 輸入自由化의 進展이 다소 빨랐다. 現在 輸入自由化된 것으로 計算되는 品目의 20%程度는 對日輸入을 抑制받는 輸入先多邊化品目 및 輸入監視品目이다. 自由化의 이러한 速度와 水準은 日本 혹은 臺灣〈表 4〉의 例에 비추어 지나치게 느리고 낮다. 即 韓國은 競爭國들에 비교하여 開發手段으로서의 輸入自由化를 지나치게 消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表 3〉 主要産業支援手段의 分類

政策分野	政策手段
貿易 및 産業	・輸入制限 ・保護關稅 ・企業規制
租稅	・內國稅 減免 ・關稅減免
財政	・商工行政 ・施設支援 ・出資 및 經營參與 ・基金의 助成 및 運營 ・補助
金融	・金融配定 ・金利優待

〈表 4〉 臺灣의 輸入自由化過程

(단위 : %)

	輸入自由化率
1970	62.5
1971	81.6
1972	82.5
1973	96.5

資料 : 國際經濟硏究院

輸入自由化에 對한 消極的 立場은 다음과 같은 現行輸入自由化要領에 잘 나타나 있다[19].

- 輸入制限의 實效性이 없는 品目의 自由化
- 關稅率의 調整으로 自由化가 可能한 品目의 自由化
- 景氣狀況과 奢侈品에 있어서 國民感情의 問題가 豫想되는 品目의 自由化 猶豫
- 輸入監視를 通한 不要不急品目 및 奢侈品의 實質的 輸入抑制

前章에서 우리는 極히 限定된 境遇以外에는 産業別 支援이 不必要하며 支援對象이 되는 幼稚産業과 規模經濟産業의 境遇에도 輸入制限을 避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原則에 비추어 위의 輸入自由化要領(特히 첫째와 둘째項)은 正反對의 政策意圖를 反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輸入制限은 選別的 支援의 次善策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는 데 이런 意味에서의 輸入制限은 幼稚産業에만 展限시켜야 하되 반드시 限時的 豫示的으로 適用하여야 한다.

세째項에서 國民感情의 問題가 言及된 것도 消極的 政策意志를 反映하는 施策이라 하겠다. 國民은 經濟現象에 많은 誤解를 갖지만, 이의 對應은 克服하는 것이지 迂迴하는 것이 아니다.

네째項은 可能한 限 많은 品目을 國産化하겠다는 慢性的 不完全雇傭下의 政策發想이며 舊態依然한 輸入代替精神의 發露이다. 輸入抑制는 國內生産을 促進한다. 오늘날 國內資源의

19) 商工部

不足을 느끼는 우리로서는 不足한 資源을 不要不急品目 및 奢侈品의 生產에 非効率的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比較優位分野의 生產에 活用하여 輸出을 擴大하고 增大된 輸出所得의 一部로 不要不急한 品目을 輸入하여오는 것이 보다 利로운 行爲이며 또한 國際收支의 好轉을 期하고 非常時의 輸入緊縮의 餘裕를 마련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볼 때 우리는 早速히 產業全般에 걸친 輸入自由化를 向後 3~4年에 걸쳐 全面的으로 實施하되 嚴選된 幼稚產業에 對한 輸入自由化만을 6~7年에 걸쳐 履行하는 方針을 眞摯하게 考慮할만하다.

別途의 資料에 依하면 產業別 輸入自由化現況에도 輸入制限政策이 對外指向戰略에 逆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輸入自由化率이 食飮料, 纖維, 衣類등의 輕工分野와 機械分野에서 特히 낮음은 그 좋은 例이다.

3. 保護關稅

現在 通關實積에 依한 平均法定關稅率은 1971年以後 11%代에 머물러 있고(表 5) 關稅는 一般政府收入의 15%內外의 만만치 않은 比重을 갖고 있다(表 6). 關稅도 輸入代替를 促進하고 輸出을 沮害하는 만큼 關稅率을 可能한 한 더 引下하여 財政依存度를 낮추는 同時에 輸出支援도 縮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法定基本關稅率은 大部分 60%以下이고 80%~150%帶에 CCCN 4單位 29個品目이 包含되는데(表 7) 이들은 커피, 초코렛, 酒精, 麥酒, 담배, 엽총, 귀금속 등과 같은 所謂 奢侈品들이다.

奢侈品에 對한 關稅는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表 5〉 法定關稅率 및 關稅徵收의 推移

	法定關稅率	實積關稅率	關稅減免比
1968	25.8	9.4	63.6
1973	23.8	4.9	71.4
1975	11.5	5.1	55.7
1980	11.1	5.6[1]	49.1

註 : 1) 關稅減免은 輸出用 原資材 輸入에 대한 關稅還給의 推定値를 包含함.
資料 : 金光錫・웨스트팔(1976), 關稅廳.

〈表 6〉 一般政府의 歲入構成

(단위 : 億원, %)

	1978		1979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總 收 入	40,405.5	100.0	55,073.3	100.0
國稅 및 防衛稅	33,722.6	83.5	44,017.1	80.0
內 國 稅	22,525.5	55.8	30,375.1	55.2
關 稅	6,464.3	16.0	7,322.9	13.3
防 衛 稅	4,732.9	11.7	6,319.0	11.5
專 賣 益 金	2,800.0	6.9	3,600.0	6.5
稅 外 收 入	1,140.9	2.8	1,676.6	3.0
預 收 金	75.0	0.2	83.0	0.2
借 款 收 入	822.2	2.0	905.6	1.6
其 他	1,844.8	4.6	4,791.0	8.7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表 7〉 法定基本關稅率의 分布

關稅率(%)	CCCN 4單位基準 品目數	構 成 比(%)
0	153	6.9
5	73	3.3
10	249	11.3
15	252	11.4
20	653	29.6
25	68	3.1
30	299	13.5
40/60	416	18.8
80/100/150	29	1.3
從 量 稅	17	0.8
計	2,209[1]	100.0

註 : 1) CCCN 4單位 同一品目(總 1,010個)도 相異한 關稅率의 發生數만큼 重複計算되었음.
資料 : 財務部

國內資源使用의 非効率化를 超來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奢侈品에 對해서는 消費를 直接抑制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實上 이러한 見地에서 所謂 奢侈品目에 대해서는 特消稅가 賦課되고 있으므로 高關稅制度는 資源浪費와 아울러 二重課稅의 効果를 갖고 있다. 따라서 高關稅率의 廢止가 合當한 政策일 것이다.

關稅率의 構造는 產業別 品目別로 多岐한 바 이것은 產業政策全般에 걸친 歪曲現象의 一面으로서 產業支援體制의 改編과 併行하여 均一化를 圖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輕工業, 特히 飮料, 纖維, 衣類등의 關稅率이 特히 높은 것은 留意하여 볼만하다.

4. 企業規制

輸入自由化 및 關稅引下는 直接的 企業規制등과 아울러 國內價格 및 企業規制의 强力한 手段이지만 輸入管理 및 關稅政策의 이러한 役割은 認識이 안되어 있는 實情이다. 가령, 〈表 8〉에 依할 때 生必品 및 獨寡占的 國內製品은 國際競爭에 開放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오히려 平均보다 더욱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關稅率表에 依하면 라면(60%), 化學조미료(60%), 메리야스內衣(60%) 등 수많은 生必品, 化學조미료, 라면, 선풍기(50%), 판유리(40%), 화장품(60%), 綿內衣(60%), 電子時計(50%)등 수많은 獨寡占的 製品에 높은 基本關稅率을 賦課하고 있다.

5. 實効保護効果

輸入障壁 및 國內價格規制의 產業間 多岐性 및 無一貫性은 產業別 實効保護率의 多岐性에 反映된다[20]. 貿易·產業政策의 改善은 實効保護率의 均一化를 指向하되 原則的으로 限時的으로 保護받는 幼稚產業以外에는 實効保護率이 零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關稅減免

關稅減免(關稅還給包含)은 輸出支援을 主要機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에도 國內重

〈表 8〉 生必品과 獨寡占品目에 대한 輸入制限現況

	企劃院 指定 總品目	該當 CCCN8-digit品目 分類 基準				
		總品目	輸入 自動承認	協會 또는 長官의 輸入 추천필요	輸入要領 別途公告	輸入自由化率, %
價格特別管理品目(生必品)	50	123	63	24	36	512
公正去來法指定 市場支配的 事業者 品目	42	80	44	28	8	55.0
年 生產規模 100億원 以上 市場支配力 行事可能 品目	64	132	86	20	26	65.2
全 產 業		7,465	5,579	—	—	74.7

20) 南宗鉉,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硏究院, 硏究調査報告 81-10卷, 1981. 9, 참조.

要產業支援을 爲始하여 여러 가지 關稅減免條項이 있어 〈表 5〉에 依하면 關稅減免比는 50%에 達한다. 이것은 法定關稅率이 無意味하게 높은 反面 關稅減免으로 因한 歪曲이 深刻함을 意味한다. 法定關稅率의 全般的인 引下와 더불어 特定國內產業에 대한 關稅減免特惠를 廢止하면 產業間 支援均一化와 더불어 關稅減免의 縮少가 이루어질 것이다.

7. 內國稅減免

內國稅減免은 10가지以上의 法에 依하여 複雜多端히 規定되어 있다. 稅種類別 減免構成은 〈表 9〉에 보인 바와 같다.

間接稅減免은 主로 外貨獲得用財貨에 對한 特消稅의 免除이다. 租稅減免은 壓倒的으로 租稅減免規制法에 依存하는데 特히 直接稅의 境遇 그러하다. 直接稅減免중 租減規制法指定 14個 重要產業에 대한 79년도 直接稅減免比重 37%는 相當한 偏重이라고 볼 수 있다.

8. 財政事業

經濟開發事業費는 輸送, 通信, 電氣등의 公益事業과 農水產開發에 大部分 쓰여지고 20% 未滿의 工業配定의 大部分이 重化學工業支援費이다.

9. 金融支援

總資金貸出은 總殘額 構成比로나 附加價値對比로나 製造業에 偏重되어 있다. 個別的으로는 化學以外의 重工業, 輕工業輸出業種 및 電氣事業에 몰려 있다.

〈表 10〉에 依하면 總貸出중 低利政策金融은 적어도 50% 水準이고 平均利差는 78年末의 9.0%에서 80年末의 3.0%로 大幅減少되었다.

政策金融制度는 우선 複雜하고 不安定한 構造를 갖추고 있다. 政策資金의 半程度는 外貨貸出 및 輸出支援金融으로서 一般銀行에 依하여 取及되고 그 나머지가 產業開發資金이라 하겠다. 또한 產業開發資金의 半程度가 製造

〈表 9〉 國稅減免現況

(단위 : 億원, %)

	1978		1979	
	減免額	構成比	減免額	構成比
內國稅	2,121.7	55.0	4,148.6	66.1
直接稅	1,152.3	29.9	2,923.3	46.6
所得稅	402.6	10.4	633.2	10.1
法人稅	749.7	19.4	2,290.1	36.5
間接稅	969.4	25.1	1,225.3	19.5
酒稅	39.6	1.0	43.5	0.7
特消稅	929.7	24.1	1,181.9	18.8
關稅	1,732.9	45.0	2,127.9	33.9
國稅(計)	3,854.6	100.0	6,276.5	100.0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表 10〉 低利政策金融의 資金供給 및 利子支援效果

(단위 : 億원, %)

	總貸出[1]	低利貸出
1978年末		
年末殘額	93,127.0	47,112.7
(總貸出對比)	(100.0%)	(50.6%)
利子支援效果		4,587.8
平均利差		9.0%
1980年末		
年末殘額	184,078.5	89,677.6
(總貸出對比)	(100.0%)	(48.7%)
利子支援效果		3,409.0
平均利差		3.0%

註 : 1) 全 預金銀行, 韓國產業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에 걸침.

業에 配定되는데 그중 大部分이 金屬 및 機械를 爲主로 하여 重化學에 配定되었다. 電氣 및 建設에 대한 資金支援도 크다.

10. 支援現況의 綜合

〈表 11〉에는 資金配定을 除外한 各種支援總額이 推定되어 있다. 總支援規模는 GDP의 10%規模이고 역시 財政支出이 가장 크고 다음 關稅還給에 의한 輸出支援이 크고 세째로 內國稅減免과 金利差支援은 비슷한 規模로 나타난다.

以上 本章에서 槪略的으로 産業支援現況을 檢討한 바 그 結果를 根據로 70年代의 産業開發政策에 對한 批判的 見解를 假設的으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政策手段의 管理가 多元化되어 있어 産業政策의 一貫性을 沮害하고,
- 높은 輸入障壁으로 많은 産業에 걸쳐 輸入代替誘因이 强한 편이며,
- 政策金融의 比重이 過大하여 通貨政策의 効果的 遂行에 負擔을 줄 뿐 아니라 金融配分上의 歪曲이 深하고,
- 政策이 租稅, 金融의 面을 包含해서 一般的으로 選別性이 지나치고 各 인센티브의 業種別 差異가 커서 比較優位의 自律的 示顯이 抑制되고,
- 全重化學을 幼稚産業的 支援對象으로 보고 있어 幼稚産業支援効果가 크게 抑壓되었으며,
- 眞正한 幼稚産業支援對象으로 볼 수 있는 機械産業은 過多保護를 받는 印象이 强한데 特히 높은 輸入制限率은 逆効果가 있었다고 推測된다.

〈表 11〉 各種支援規模의 推計

(단위 : 億원)

	1978	1979
財政支出	11,233.3	14,804.4
內國稅減免	2,121.7	4,148.6
·直接稅	1,152.3	2,923.3
·間接稅	969.4	1,225.3
關稅減免	1,732.9	2,127.9
關稅徵收猶豫(輸出用輸入)	5,503.3	6,007.8
金利差支援	2,554.7	4,057.2
合計	23,145.9	31,145.9
附加價値對比(%)	10.1	10.6

V. 産業支援政策의 改善方向

第Ⅱ章과 第Ⅲ章에서 우리는 韓國의 産業開發戰略이 對外指向的이어야 하며 또한 對外指向的 産業支援政策은 嚴選된 幼稚産業과 國際競爭力있는 規模經濟産業을 支援하는 以外에는 産業一般的이어야함을 確認하였고 또한 産業支援은 그 規模가 制限되어야 하고 韓國의 가장 有望한 幼稚産業은 機械産業이라고 主張하였다.

第Ⅳ章에서 우리는 70年代의 變化를 겪은 韓國의 産業支援體制가 全體的으로 對外指向的 産業支援戰略에 크게 逆行하고 있음을 具體的 資料에 依하여 確認하였다.

그렇다면 現在의 産業支援體制가 다음과 같이 改編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어렵지 않게 結論的으로 誘導될 수 있다.

- 各種 政策手段의 綜合的 運用指針과 産業開發戰略을 樹立하는 部處間協議·決定機構를 設置할 것.

· 輸入制限 및 關稅에 의한 産業保護를 果敢히 數年內에 걸쳐 縮少하고 보다 有意한 關稅率體系를 樹立할 것.

· 租稅誘因을 一般化하고 다음 分野에 걸쳐 境遇에 따라 强化할 것.

— 施設, 技術 및 人力에 대한 投資

— 品質管理, 에너지節減事業, 勞使關係 및 財務構造의 改善

— 各種 外貨獲得活動

— 對外開發資本進出

— 外國의 資本, 技術 및 人力의 國內導入

· 嚴密히 檢討된 幼稚産業(機械類)育成計劃을 樹立하고 實施하되

— 輸入制限으로 豫示된 限時的 保護를 주고,

— 開發金融을 供給하여 주고,

— 財政事業支援을 提供한다.

· 規模經濟가 强한 重化學分野의 大單位 投資는 政府의 中長期投資計劃管理下에 두되 制限된 財政支援을 實施한다.

· 工業部門의 産業開發金融(産銀資金 및 國民投資基金爲主)을 單一體系化하며 漸次縮少하여 幼稚産業支援爲主로 한다.

▷ 參 考 文 獻 ◁

金光錫, 래리 ·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韓國開發硏究院, 1976.

Balassa, B., "Reforming the System of Incen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a.

Balassa, B., "Incentive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b.

Balassa, B.,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Fourth Five-year Plan Period(1977-81)," Balassa,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977c.

Balassa, B., "The Changing Pattern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tured Good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 61, *No.* 2, May, 1979.

Balassa, B., "The Proc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436, 1980a.

Balassa, B., "Korea During the Fifth Five-year Plan Period(1982-86), An Advisory Report," 1980b.

Chenery, H.B., "Comparative Advantages and Development Policy," *Surveys of Economic Theory*, *V. II*, 1969.

Chenery, H.B., & D.B. Keesing, "The Changing Com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Export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14, 1979.

Corden, W.M., "Trade Policies," Cody, J., H. Hughes & D. Wall, *eds.*, *Policies for Industrial Progress in Developing Countries*, 1980.

Keesing, D.B., "Trade Policy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53, 1979.

Little, I., T. Scitovsky &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1970.

McKinnon, R.I., "Financial Policies," Cody,

J., H. Hughes & D. Wall, eds., *Policies for Industrial Progress in Developing Countries*, 1980.

Musgrave, R.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Westphal, L.E., "Empirical Justification for Infant Industry Protection," (Mimeograph), 1980.

國民福祉年金制度 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閔 載 成

▷ 目 次 ◁

Ⅰ. 序 論
Ⅱ. 制度의 性格과 內容
Ⅲ. 問題點과 政策代案
Ⅳ. 關聯制度와의 調整
Ⅴ. 結論 및 建議

Ⅰ. 序 論

우리나라의 現行 所得保障制度는 1960年의 公務員年金法을 嚆矢로 1963年에 軍人年金法, 1975年에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이 導入·實施中에 있으며, 이 이외에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1963)과 醫療保險法(1963年制定, 1977年 改正實施) 등이 現金給付의 部分的 所得保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公的 扶助의 所得保障制度는 生活保護法(1961), 軍事援護報償法(1961), 災害救護法(1962), 國家有功者 등 特別援護法(1962) 및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1968) 등이 中央政府의 一般會計豫算과 地方費를 財源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973年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은 3次에 걸친 實施延期로 7年이상 經過된 현재까지도 保留되고 있는 상태이다.

社會保障의 2大機能部門 중의 하나인 醫療保障은 1977年부터 醫療保險制度가 本格化되면서 1981年 현재 100人이상 事業場勤勞者, 公務員 및 敎職員과 一部 地域住民까지 적용함으로써 全人口의 27.2%(10,571千名)에 달하고 있으며, 醫療保護事業도 3,728千名에게 실시되어 總醫療保障適用對象은 全國民의 36.8%에 달하고 있다[1]. 그러나 다른 하나의 部門인 所得保障은 3個公的 年金(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年金)의 911千名(人口對比 2.3%), 公的 扶助의 生活保護對象者와 援護對象者를 포함하여 2,220千名(人口對比 5.7%)으로 全國民의 8.0%에 불과한 실정이다.

政府는 80年代 福祉政策의 하나로 全國民을

筆者: 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閔載成, 「社會保障」,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硏究院, 1981, p 529.

대상으로한 所得保障制度로서 國民福祉年金法을 施行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制度가 樹立될 當時와 現段階의 社會·經濟的 狀況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補完 혹은 修正作業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國民福祉年金法의 性格과 內容, 制度實施를 前提로 한 制度內的 問題點과 그 政策代案을 提示하고 他制度와의 관계 등을 硏究·分析하여 政府의 政策形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Ⅱ. 制度의 性格과 內容

1973年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은 年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國家에서 직접 管掌하는 公的 年金制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社會保障制度의 發展初期段階이고 國家財政의 制約으로 國民의 最低生活을 保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國民의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勤勞者를 1種, 自營業者와 農·漁民 및 一般住民 등을 2種으로하여 그들의 老齡, 廢疾 또는 死亡時에 最低生活을 保障할 수 있도록 制度가 마련되었다.

이 制度는 長期的 年金保險制度로서 對象者를 强制適用하며, 私保險制度와는 달리 個人의 欲求(needs)나 拂入한 總額(contributions)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이 年金額이 給與되는 社會保險制度이다. 즉, 年金額은 法定의 年金算定基準에 의해서만 支給된다. 算定基準에는 基本年金額과 加給年金額을 合算하도록 되어 있으며, 基本年金額의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은 所得再分配와 最終3年間의 所得水準을 反映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年金額의 實質價値를 유지하기 위하여 賃金水準이나 物價의 變動이 있을 때에는 制度的으로 調整하고 있다.

財源은 使用者·被傭者·政府의 3者負擔을 원칙으로 하되 2種의 경우 使用者가 없기 때문에 本人과 政府의 補助金에 의해서 調達되도록 하였고, 이와 아울러 年金財政의 運營은 保險數理의 計算方法을 활용하여 收支均衡을 유지하도록 附隨的으로 基金管理法을 制度化하였다.

給與의 種類로는 年金과 返還一時金으로 구분하여 年金에는 老齡年金(完全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및 特例老齡年金), 障害年金(3等級), 遺族年金(3個形態)이 설치되어 있으며, 年金을 支給할 수 없는 中途脫落者를 위하여 返還一時金制度가 있다. 특히 女性의 경우에는 社會的 脆弱點을 감안하여 男性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惠澤을 주고 있다.

行政組織은 保健社會部와 國稅廳으로 2元化되고 있으며, 制度의 管掌責任은 保健社會部長官이 맡고 있다.

Ⅲ. 問題點과 政策代案

1. 加入對象

가. 加入制限年齡(18歲)

加入對象者 중 18歲 이상만을 적용하는 加入

制限年齡은 加入對象者의 年齡分布, 經濟狀態, 受給時까지의 期間 및 女性의 地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80年의 우리나라 事業場勤勞者는 322萬名이나 이중 18歲 미만의 勤勞者는 2.8%에 해당되고 18~19歲의 勤勞者가 12.3%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 同一年齡(14~19歲)의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勤勞者의 比率은 39.3%로서 全體平均의 22.3%보다 높다(表 1 참조). 그런데 全體勤勞者의 性比(男子 : 女子)는 63 : 37인데 비해 18歲미만은 20 : 80, 18~19歲는 28 : 72, 20~24歲는 39 : 61로서 24歲 이하에서는 女性勤勞者가 훨씬 많다. 즉, 全女性勤勞者의 75.4%가 24歲이하의 勤勞者이며 25歲이상은 24.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男子는 大學進學이나 軍入隊 등으로 18~24歲 年齡階層에서의 就業率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女性은 25歲이후 結婚으로 인한 離職率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表 1〉 事業體勤勞者分布(1980)

(단위 : 千名, %)

	經濟活動人口 (A)	5人이상 勤勞者數			B/A
		男	女	計 (B)	
17歲이하	1,236[1]	18	73	91(2.8)	39.3[1]
18~19		111	284	395(12.3)	
20~24	1,971	342	532	874(27.1)	44.3
25~29	1,846	520	121	641(19.9)	34.7
30~39	3,597	630	95	725(22.5)	20.2
40~49	3,279	314	59	373(11.6)	11.4
50~59	1,808	97	13	110(3.4)	6.1
60歲이상	719	10	1	11(0.4)	1.5
計	14,454	2,042	1,178	3,220(100.0)	22.3

註 : 1) 14~19歲의 經濟活動人口와 이에 對한 比率임.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 1980.

한편 年少勤勞者의 賃金水準은 全勤勞者 平均賃金의 50%정도로서 所得水準이 낮고[2], 또 老齡年金受給年齡이 60歲이므로 加入期間이 최고 42年이나 된다. 이와 같이 賃金水準이 낮고 加入期間이 길며, 女性의 早期退職率이 높은 것은 年少勤勞者의 적용에 不利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早期加入이 필요한 것은 加入者의 不意의 障害나 死亡 등에 年金惠澤이 주어지므로 이들의 生活保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年少階層을 排除할 경우 業務上災害는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어느 정도 所得保障을 받을 수 있으나 業務外의 事故 등이나 2種加入者의 所得保障手段은 不充分하기 때문에 이들의 適用排除는 國家·社會發展에도 沮害要因이 될 수 있다.

또 西歐諸國의 年金制度에도 加入年齡을 制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自營業者나 農·漁民 등의 地域住民에 대해서는 經濟活動參與年齡을 기준하여 加入年齡을 制限하고 있다[3]. 따라서 事業場勤勞者(1種)와 自營者 및 地域住民(2種)을 모두 18歲이상으로 制限하고 있는 現制度를 分離하여 1種은 適用事業場의 規模에 따라 加入시키고, 2種은 그들의 所得能力과 學制 등을 감안 勤勞基準法의 保護年齡인 14歲이상을 加入對象으로 하였으면 한다. 다만 學生이나 軍服務者는 例外規定으로 除外함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老齡年金受給年齡 및 60歲 이상 者의 適用

2) 1980.4 현재 全勤勞者平均賃金은 150.7千원이나 17歲 미만 勤勞者의 平均賃金은 66.6千원(44.2%), 18~19歲勤勞者는 77.3千원(51.3%), 20~24歲勤勞者는 96.3千원(63.0%)에 해당되고 25歲이상은 平均賃金을 上廻하고 있다(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 調査報告書』, 1980).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表 2〉 停年企業[1]의 停年年齡分布

(단위 : %)

停年年齡(歲)	一律停年制企業[2]	性別 停年制 企業[3]	
		男 子	女 子
30	—	—	8.6
40	—	—	19.0
45	—	2.0[4]	19.0[5]
50	10.4[6]	8.0	31.0
55	79.2	70.0	10.3
60	10.4[7]	20.0	—
結婚時	—	—	12.1
計	100.0	100.0	100.0

註 : 1) 100人이상 事業體中 525個所의 停年企業體를 對象으로 한 調査結果임.
2) 231個 企業體의 分布임.
3) 96個 企業體의 分布임.
4) 48歲 停年企業임.
5) 47歲 停年企業(1.7%) 포함.
6) 52歲 停年企業(1.3%) 포함.
7) 61歲 停年企業(1.3%) 포함.

資料 :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pp.19~23.

〈表 3〉 一般年金制度의 通常受給資格年齡에 따른 國家數

通常受給年齡(歲)	男 子			女 子		
	A	B	C	A	B	C
67	4	—	—	4	—	—
65	15	7	10	7	3	6
62	1	—	—	2	—	—
61	1	—	—	—	—	—
60	9	21	7	8	12	9
57	—	1	—	2	1	—
55	—	9	5	7	20	6
50	—	1	—	—	3	1
計	30	39	22	30	39	22

註 : A ; 유럽 및 北美國家
B ; 1966年 이전의 諸國家
C ; 1966年 이후의 新生國家

資料 : ISSA,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Geneva, 1978, pp.15~17.

除外.

年金受給資格年齡을 60歲 (女子와 特殊職種者는 55歲)로 규정하고 있으나 老齡年金은 退職後의 老後生活을 保障하는 制度인 만큼 停年年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停年退職年齡은 〈表 2〉에서와 같이 企業의 79.2%가 55歲로 정하고 있으며, 50歲 및 60歲가 각각 9.1%씩 되어있다. 그리고 男子의 停年年齡은 55歲가 가장 많고, 女子의 경우는 50歲停年이 제일 많으나 30歲停年과 結婚과 同時退職시키는 企業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4].

따라서 60歲에 老齡年金을 支給할 경우 55歲 停年退職後 5年동안의 生活保障手段이 困難하게 된다. 그러나 經濟가 成長하고 勞動參加의 機會가 擴大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現在의 停年年齡은 60歲 이상으로 延長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外國의 老齡年金受給資格年齡을 보면 〈表 3〉과 같이 50~67歲로 多樣하나 男子의 경우 60歲가 40.7%로 가장 많고 女子는 55歲가 36.3%로 가장 많다[5].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停年年齡이나 平均餘命 및 個人의 年金收益面으로 보아 現水準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分析된다.

制度가 실시될 당시 55歲를 초과한 者에 대하여는 加入年齡의 上限制限으로 制度에서 除外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制度가 없어 保險料를 積立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年金惠澤을 賦與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制度는 社會保險制度로서 長期的으로는 全國民의 加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給付額水準은 작

4)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pp.19~23.
5) 先進國의 경우는 男子 65歲, 女子 60歲가 제일 많다.

더라도 이들을 위한 年金支給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日本의 경우에도 制度施行初期에는 無醵出福祉年金이라는 特別制度로서 拂入期間이나 納入金에 관계없이 一定額의 年金을 經過規程으로 設置하고 있다[6]. 이와 같은 문제는 制度實施初期이거나 國家財政이 不充分한 때에는 受給資格年齡을 70歲이상으로 上向調整하거나 最低生計費를 充當할 수 있는 범위로 給付額水準을 下向調整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制度에서는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에게만 加入資格을 限定함으로써 國外居住國民이나 國內居住外國人은 對象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國外居住勤勞者나 事業場勤務外國人을 제외한 國內居住外國人에게 문제가 된다[7]. 그러나 대부분의 國家는 國家間의 相互協定이 없으면 外國人을 受惠對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先進諸國에서는 이를 相互協定으로 締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相互協定時 加入시킬 수 있는 條項을 삽입함이 타당하며, 海外勤勞者의 年金受給權을 확보하기 위해 國內居住國民이란 단서를 國民으로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適用事業場의 規模와 低所得者의 加入制限

이 法의 施行令에서는 30人이상 事業體에 適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0年현재 5人이상 事業體勤勞者 322萬名 中 30人이상 事業體勤勞者는 263萬名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30人미만의 事業體勤勞者인 18.7%만 加入對象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事業體規模에 따른 平均賃金의 隔差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特別한 意味가 없게된다(表 4 참조). 더우기 16人이상의 事業場[8]은 勞動部에서 實施하는 産災保險適用事業場과 類似하므로 適用事業場의 파악이나 加入者登錄과 徵收業務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勞動力의 移動이나 就業期間을 감안하더라도 1種의 경우는 一律的으로 16人이상 全事業體에 適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表 4〉 事業體規模別 勤勞者 및 平均賃金의 分布 (1980)

(단위 : %)

事業體規模 (人)	勤勞者構成比			平均賃金에대한比率		
	男	女	計	男	女	計
5~9	7.8	7.4	7.6	—	—	—
10~15	4.6	3.4	4.1	93.4	105.7	101.4
16~29	7.3	5.4	6.6	93.4	105.7	101.4
30~99	20.6	17.4	19.4	94.4	102.3	97.0
100~299	19.2	21.0	19.8	101.8	98.8	100.8
300~499	8.4	9.5	8.8	106.4	98.5	103.6
500 이상	32.2	35.9	33.6	103.6	98.4	100.2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 1980.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그러나 給與, 徵收, 審査業務 등을 포함한 制度運營體系가 완전히 整備되지 않고 있으며, 醫療保險의 制度運營도 100人이상 事業體에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制度實施初期에는 實施可能한 事業場勤勞者로부터 시작하여 行政管理機構가 組織·强化되는 대로 段階的으로 全國民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低所得勤勞者의 保險料負擔을 덜어주

6)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厚生の指標(特集號)』, 第26卷 第13號, 1979, pp.143~146.
7) 適用事業場에 사용되고 있는 外國人은 그 申請에 따라 第1種加入者로 될 수 있다(法 第111條).
8) 16人이상 事業場이외에도 5人 이상의 事業場中 鑛業과 製造業中 化學, 石油, 石炭, 고무플라스틱製品製造業이 適用되고 있음.

고 年金財政을 保護하기위해 月報酬 15,000원 이하 者는 强制適用에서 除外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現行 賃金構造上 現實性이 없으며, 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社會保險制度의 意義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 즉, 低所得者에게는 醵出料를 免除하더라도 制度에 加入시켜야 所得再分配의 惠澤을 받을 수 있으며, 障害나 死亡時에 年金을 받을 수 있으므로 適用事業場 勤勞者에게는 加入年齡이나 所得의 制限없이 加入시켜야할 것이다.

특히 1980年현재 全勤勞者中 平均報酬 이하 勤勞者가 63.2%를 차지하고[9], 甲種勤勞所得稅의 免稅者가 75.2%[10]에 이르고 있어 低所得勤勞者를 정하기 위한 報酬의 下限設定에는 많은 隘路點이 있다. 또 低所得勤勞者가 任意加入한 경우 國庫에서 寄與金의 一部(1%)를 醵出하게 되어 있으나 國家財政의 制約으로 이의 補助가 順調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事業體勤勞者는 全部를 加入시키고 醵出料도 가능한 限 勞·使의 兩者負擔으로 納入토록 하되 低所得勤勞者의 寄與金은 使用者가 負擔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特殊職種勤勞者의 受給資格年齡

現制度에 의하면 乘船船員, 坑內鑛夫, 塔乘航空乘務員에게는 女子와 동일하게 55歲에 老齡年金을 受給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의 從事期間은 全年金加入期間의 4/5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女性의 경우와 달리 이들에게 年金受給資格을 早期에 獲得토록한 것은 肉體勤勞者로서 他職種者보다 退職年齡이 짧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11] 其他職種의 停年退職年齡도 55歲가 대부분인 현재로서는 특별한 意義가 없다. 더우기 特殊職種者에 대한 制度를 별도로 制度化하고 있는 國家[12]들과는 달리 全國民을 대상으로한 綜合的인 制度를 導入하고 있는 이상 受給資格年齡으로 惠澤을 주는 문제는 가급적 制限하여야 하며, 坑內夫와 같이 특별한 職種에 대하여는 坑內夫로서의 從事期間, 身體檢査結果 등이 受給資格要件에 追加되어야 한다. 그러나 塔乘航空乘務員 등은 비교적 所得水準이 높고 退職年齡의 制約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혜택을 주는 國家도 없다. 따라서 年金財政의 保護를 위해서도 制度施行初期에는 이들은 除外시키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2. 被保險對象者의 損益分析

1973年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66條 및 67條)에는 1種加入者의 醵出料는 標準報酬의 5~7%로 하고, 이중 3~4%는 使用者가, 2~3%는 加入者가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種加入者에게는 月 900원이상을 定額으로 醵出토록 하고 그 醵出料率과 醵出額은 施行令에 委任하고 있다. 그러나 醵出料의 決定은 加入者나 使用者의 負擔能力, 加入者의 損益分析結果, 年金財政 및 物價·貯蓄 등 國民經濟的 側面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9)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10) 韓國開發硏究院, 『第5次 5個年計劃 作成을 위한 經濟社會政策協議會 : 討議資料 및 內容』, 財政部門, 1980. 9, p.567.
11) 事故危險度가 높다는 理由는 障害 및 遺族年金의 支給事由에 해당되므로 說明力이 없음.
12)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은 年金制度를 特殊職種別로 分立體系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決定要因 중에서도 加入者의 損益分析은 國民의 關心이 至大하고, 加入者의 年金參與意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몇가지 假定을 前提로 醵出料率決定要因가운데 主要한 構成部分인 加入者의 損益을 分析하려고 한다.

1種加入者의 醵出料率은 老齡年金을 基準으로 年金加入期間동안의 利子를 감안한 納入醵出料總額과 生殘期間동안 受給할 老齡年金期待價値가 적어도 동일하도록 決定되는 것을 前提로 할 것이다. 納入醵出料總額(NWT)은 다음 式으로 算出할 수 있다.

$$NWT=\sum_{j=1}^{n}PT_j(1+i)^{n-j}$$

$$PT_j=12\cdot k\cdot WG_j=12\cdot k\cdot WG_1\cdot(1+\hat{r})^{j-1}$$

여기서, NWT : 加入期間동안의 納入醵出料의 元利金合計

PT_j : 加入後 j 年째의 年間醵出料納入額

WG_j : 加入 j 年後의 加入者의 月報酬

n : 年金加入期間(年)

i : 年間利子率

$\hat{r}$: 加入者의 年間賃金引上率

k : 醵出料率

그리고 老齡年金期待價値 즉, 年金受給期間동안 受給할 總年金額의 最初受給當時의 現價는 다음과 같다.

$$NWB=\sum_{l=0}^{m-1}12\cdot PE_0\cdot PX_l(1+R)^l/(1+i)^l$$

여기서, NWB : 受給할 年金總額의 最初受給當時의 現價

PE_0 : 最初年金受給月額

m : 年金受給期間 (즉, 年金受給當時에서의 平均餘命)

PX_l : 年金受給 l 年째의 生殘確率

R : 年金受給額 年間引上率

上記式을 이용하여 加入者의 損益分岐點, 즉, NWT와 NWB가 동일하게 되는 醵出料率(k)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frac{PE_0\sum_{l=0}^{m-1}PX_l\cdot(1+R)^l/(1+i)^l}{WG_1\sum_{j=1}^{n}(1+\hat{r})^{j-1}(1+i)^{n-j}}$$

이 경우 加入者의 報酬에 따라 年金額에 差異가 있기 때문에 加入者의 報酬가 全加入者의 平均報酬와 동일한 경우에만 限定하고[13], 利子率(i), 平均賃金引上率(r),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14] 및 年金額引上率(R) 등은 몇가지 경우로 假定하였다. 즉, 年間利子率은 銀行定期預金의 金利를 基準하여 18%와 20%의 2가지 경우를 가정하고[15],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引上率(r)과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은 10~20% 및 10~25% 범위에서 각각 설정하였으며[16], 年金額引上率(R)은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r)과 동일하게 調整할 경우로 限定하였다. 그리고 年金加入期間(n)은 最少老齡年金受給資格期間인 20年加入者와 30年加

13) 年金額은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되므로 加入者의 報酬水準(WG)에 따라 年金額(PE)에 差異가 생기게 되어 加入者全體의 平均報酬(W)와 加入者의 報酬가 같은 경우만을 對象으로 比較하였다.

14)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은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引上率(r)에 비해 昇進, 昇給 등에 의한 引上率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別途로 취급하였다.

15) 1969~81年間의 平均金利(1年滿期定期預金) 18.4%와 1981年 4月 현재 金利 19.5%를 감안한 것임(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0, p.135).

16) 1969~79年間의 平均名目賃金引上率은 26.3%(範圍 11.6~35.5%)였으나 앞으로의 賃金引上 抑制政策을 감안 10~20%로 假定하였으며, 個人賃金引上率은 平均賃金引上率보다 5% 높은 경우도 고려하였다.

〈表 5〉 加入者[1]의 損益分岐點(k)

(단위 : %)

利子率 (i)	賃金引上率(r) 및 年金額引上率(R)	加入者賃金引上率 ($\hat{r}$)	加入期間20年 男子[2]	加入期間20年 女子[3]	加入期間30年 男子[2]	加入期間30年 女子[3]
18	10	10	6.24	9.74	4.04	6.31
		15	6.97	10.88	6.51	10.17
	15	15	12.50	22.65	10.93	19.81
		20	12.94	23.45	14.92	27.04
	20	20	23.48	51.59	25.45	55.91
		25	22.77	50.02	29.94	65.77
20	10	10	4.21	7.05	2.39	4.00
		15	4.82	8.06	4.05	6.78
	15	15	9.58	16.32	7.52	12.81
		20	10.15	17.29	10.83	18.45
	20	20	18.25	36.93	18.29	37.01
		25	18.10	36.62	22.61	45.75

註 : 1) 加入者賃金(WG)이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W)과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2) 男子의 60歲의 平均餘命은 13年임(m=13).
3) 女子의 55歲의 平均餘命은 23年임(m=23).

入者인 경우를 比較하고, 年金受給期間(m)은 男子 13年, 女子 23年으로 하고 生殘確率(PX)은 生命表를 利用하였다[17].

이러한 假定을 前提로 被保險者의 損益分岐點을 算出한 결과는 〈表 5〉와 같다. 즉, 利子率이나 賃金引上率에 따라 損益分岐點은 큰 差異를 보이고, 男女間에도 큰 差異가 나타난다. 그리고 年金加入期間에 따라서도 損益分岐點은 相異하게 된다. 결국 賃金引上率이 높아지면 損益分岐點도 높아지게 되며, 年金加入期間에 따라서는 賃金引上率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女子는 平均餘命이 길고 受給年齡이 男子보다 낮아 損益分岐點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被保險者의 立場에서 본 醵出料率은 男子를 基準으로 하여 賃金引上과 利子率의 變動을 감안하여 調整되어야 하나, 現在의 20%의 利子率과 賃金引上率을 10%로 統制할 경우, 20年加入者 基準으로 4.2%이하의 醵出料率을 策定할 수 있다. 그러나 年金加入期間이 길면, 즉 30年加入者를 基準으로 할때에는 2.4%가 損益分岐點이 될 수 있다. 그런데 一般的인 醵出料率에는 個人寄與金뿐아니라 使用者負擔分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加入者個人의 寄與金만으로의 損益分岐點을 고려하면 이의 2倍까지도 醵出料率로 設定할 수 있게 된다[18]. 그러므로 30年加入者도 4%이하의 수준에서 醵出料率이 결정된다 하여도 加入者에게 損害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醵出料率을 個人의 損益分析結果만으로 決定할 경우 年金財政과 負擔能力의 問題가 惹起되기 때문에 加入者의 便益을 保障하면서도 年金財政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平均賃金加入者를 基準으로 하여 分析한 결과에 따라 損益分岐點의 醵出料率을 유지하면서 年金財政에도 영향이 없고[19], 企業이나 被傭者의 負擔能力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3~4% 수준에서 醵出料率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만약 이 3~4%수준에서 醵出料率이 결정될 경우와 현행 최저수준인 5%로 결정될 경우, 加入者의 收益率(NWB/NWT)를 비교하면 〈表 6〉과 같이 나타난다.

17) 1970年과 1979年의 生命表(經濟企劃院, 「1978~1979年 韓國人의 生命表」, 1980)를 이용 20年後인 2000年의 生命表를 換算한 결과 男子 60歲의 平均餘命이 13年, 女子 55歲의 平均餘命은 23年으로 나타났으며, 生殘確率은 各 年齡別 死亡確率로써 算出하였다.

18) 그러나 使用者負擔分은 勤勞者의 勤勞條件의 一部로 看做되므로 加入勤勞者가 負擔하는 것을 基準으로 醵出料全部를 加入者가 負擔한다고 보는것이 妥當하다.

19) 保健社會部의 國民福祉年金財政推計에 의하면 2005年에 賦課方式에 의한 醵出料率을 2.1%로 算出하고 있다.

〈表 6〉 年金保險加入者[1]의 收益率

(단위 : %)

利子率	賃金引上率	加入者賃金引上率	醵出料率 3.5%인 경우[2]				醵出料率 5.0%인 경우			
			加入期間 20年		加入期間 30年		加入期間 20年		加入期間 30年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18	10	10	178	278	115	180	125	195	81	126
		15	199	311	186	291	139	218	130	203
	15	15	357	647	312	566	250	453	219	396
		20	370	670	426	773	259	469	298	541
	20	20	671	1,474	727	1,597	470	1,032	509	1,118
		25	651	1,429	855	1,879	455	1,000	599	1,315
20	10	10	120	201	68	114	84	141	48	80
		15	138	230	116	194	96	161	81	136
	15	15	274	466	215	366	192	326	150	256
		20	290	494	309	527	203	346	217	369
	20	20	521	1,055	523	1,057	365	739	366	740
		25	517	1,046	646	1,307	362	732	452	915

註 : 1) 加入者賃金이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과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2) 醵出料率을 個人의 損益分岐點으로 計算했을 경우 3~4% 수준이 되나 여기서는 平均値인 3.5%로 看做하였음.

3. 年金額水準

가. 基本年金額

年金受給權者에게 支給되는 年金額은 個人의 報酬와 加入期間에 따라 支給되는 基本年金額과 扶養家族數에 의한 加給年金額으로 결정된다. 基本年金額은 全加入者의 平均報酬月額을 基準으로 計算되는 均等部分(MSP)과 加入者個人의 報酬(所得)月額을 기준으로 計算하는 報酬比例部分(BSP)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年金額決定의 基準으로 삼고 있다. 즉, 1種加入者의 月基本年金額(PE)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PE = MSP + BSP$$

$$MSP = 0.2MS$$

$$BSP = \{4n(n+5)/10,000\} \cdot BS$$

여기서, MS : 全 1種加入者의 年金受給前年度의 平均報酬月額

BS : 加入期間中 最終3年間의 加入者 平均標準報酬月額

n : 加入年數($n \geq 20$)

基本年金의 水準을 알기위해서 加入者의 最終3年間 平均標準報酬月額(BS)에 대한 比率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 年金加入當時의 全勤勞者平均報酬月額을 W_1이라하면 n年加入後의 MS는 W_{n-1}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賃金上昇率(r)에 따라 변하게 되어 $MS_n = W_1(1+r)^{n-1}$로 計算된다. 또 BS는 加入者個人의 平均報酬月額(WG)에 따라 결정되므로 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을 적용하여 受給前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을 計算할 수 있다.

$$BS_n = WG_1\{1+\hat{r})^{n-1} + (1+\hat{r})^{n-2} + (1+\hat{r})^{n-3}\}/3$$

그리고 (PE/BS)는 $(MSP/BS) + (BSP/BS)$

로 計算되므로 여기서 (BSP/BS)는 $4n(n+5)/10,000$으로 加入年數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므로 均等部分比率 즉, (MSP/BS)가 年金額水準(PE/BS)을 결정하게 된다.

報酬比例部分(BSP)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BS)에 대한 比率은 加入期間이 20年이면 20%, 25年은 30%, 30年에 42%, 35年에 56%, 40年에 72%를 차지하여 加入期間에 따라 累進的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年加入者의 경우 이 報酬比例部分만으로도 年金額支給上限인 70%[20]를 초과하게 되어 均等部分에 의한 年金支給은 無意味하게 된다.

年金加入當時의 個人의 月報酬(WG_1)가 加入當時의 全勤勞者의 平均月報酬(W_1)와 같은 경우에 賃金上昇率과 加入年數에 따른 基本年金額의 水準을 算出하면 〈表 7〉과 같다. 즉,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이고, 全勤勞者平均賃金

〈表 7〉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BS)에 대한 基本年金額(PE)의 比率

(단위 : %)

年間賃金上昇率		加 入 期 間			
平 均 (r)	個人 $(\hat{r})$	20年	30年	35年	40年
10	10	41.9	63.9	77.9	93.9
15	15	42.9	64.9	78.9	94.9
20	20	43.7	65.7	79.7	95.7
10	15	29.9	48.3	61.0	76.0
15	20	30.6	48.9	61.6	76.5
20	25	31.3	49.5	62.1	77.0

註 : 加入當時의 全勤勞者平均報酬와 個人의 平均報酬가 동일한 경우이며, 本表의 數値는 實計算値로써 年金額支給上限인 70%를 고려하지 않았음.

20) 國民福祉年金法 第39條에는 老齡年金의 月支給額은 最終3年間의 平均報酬月額의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1) 基本的廢疾 및 老齡給付는 受益者에게 被扶養者가 없을 경우 勤勞者賃金의 30%를 下廻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ILO勸告集(下卷)』, 立法參考資料 第73號, 1967, p.45).

引上率(r)과 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이 동일하게 15%일 경우 基本年金額은 最終3年間平均報酬의 42.9%가 되며 35年間 加入했을 경우는 78.9%로써 年金受給上限인 70%를 초과하게 된다.

基本年金額水準은 賃金引上率이 높을수록 增大되지만 個人의 賃金引上率이 平均賃金引上率보다 높을 경우는 같을 때보다 그 水準이 줄어든다.

한편 年金額水準은 均等部分에 의해 左右되어 報酬階層에 따라 差異가 생기게 된다. 즉, 報酬水準이 높을수록 基本年金額水準은 낮아지게 되는 반면 報酬水準이 낮은 階層은 加入期間에 따라선 年金額支給上限에 묶여 全額支給받지 못하는 결과가 招來된다(圖 1 참조).

이상과 같이 20年加入者의 경우 基本年金額水準이 最終3年間平均報酬의 40%정도에 불과하고 40年加入者는 全部 年金額支給上限에 묶이게 된다. 더우기 賃金上昇率이나 所得水準에 따라서는 20年加入한 경우 30%이하까지도 支給받게 되어 生活保障의 機能을 다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國際勞動機構(ILO)의 勸告[21]나 各國의 給與水準을 고려하여 下限과 上限을 두어 調整·改善하여야 할 것이다. 즉, 年金額支給上限은 旣存公的 年金制度의 退職年金上限인 76%이상으로 하되 加給年金을 고려, 80%로 設定함이 바람직하고 高所得者의 年金水準이 낮은 점을 감안, 年金額의下限을 35~40%정도로 設定하여야 高所得者의 不利益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加給年金額

年金受給權者中 減額老齡年金과 在職者老齡年金受給權者를 除外한 老齡·障害·遺族年金

〔圖 1〕 加入當時의 報酬等級別 基本年金額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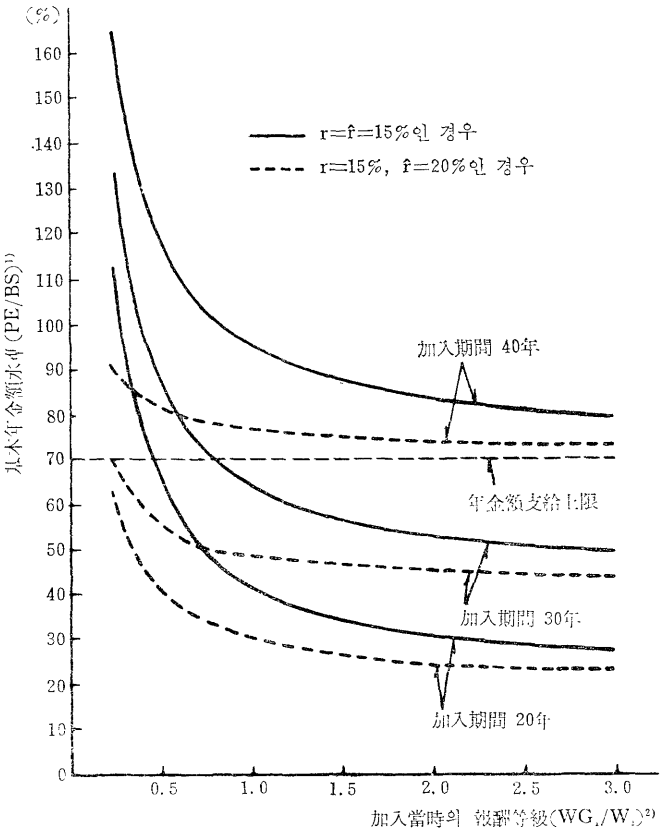

註 : 1) 基本年金額水準은 受給者의 最終3年間 平均報酬(*BS*)에 대한 基本年金額 (*PE*) 比率임.

2) 加入當時 全勤勞者 平均報酬(W_1)에 대한 加入當時 受給者報酬(WG_1)의 比率임.

* r :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 $\hat{r}$: 受給者個人의 賃金引上率.

의 受給權者가 扶養하는 配偶者와 18歲 미만 및 2級 이상 障害子女에 대해서는 月 2,000원 및 1,000원을 各各 年金額에 加算하여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22]. 加給年金額은 家族手當의 一種으로 被保險者의 家族規模에 따라 扶養生計費를 補助하는 데 目的이 있으므로 年金受給權者에게는 모두 支給되어야 論理的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減額 및 在職者老齡年金受給權者에게도 支給되어야 合理的이다.

加給年金額의 給與方法은 現制度와 같이 一定額으로 規定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物價上昇率이 높은 때에는 수시로 一定額을 變更해야 하는 不便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社會保障制度인 家族手當制度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家族數와 生活水準에 따른 定率制의 導入이 바람직하다. 例로서 配偶者에게는 基本年金額의 10%, 子女는 1人當 5%를 적용하는 方式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22) 國民福祉年金法 第27條 및 同 施行令 第14條 참조.

60歲 이상의 老齡年金受給權者는 실제로 配偶者만 혜택을 받게 되며, 단지 一部 障害子女들이 혜택을 받게될 것이다. 특히 外國의 경우에도 加給年金은 扶養家族補助金(dependents' supplements 또는 means-tested allowance)으로 支給되고 있으며, 定率制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가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23].

다. 年金額의 實質價値維持

國民福祉年金制度는 加入者와 그 家族의 生活保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年金額의 決定時에는 加入終了後 受給年齡까지의 待機期間에 대하여 全勤勞者의 平均報酬月額이 20% 이상 變動한 경우 加入者의 最終3年間平均報酬를 法定調整하며[24], 年金額決定 以後에는 國民의 生活水準·賃金·物價·其他經濟事情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 그 事情에 맞도록 調整·措置하도록 함으로써(法第4條) 年金水準의 實質價値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基本年金額算定時 待機期間에 대한 法定調整方法은 最終3年間 平均標準報酬(所得)月額을 受給前年度의 全勤勞者平均報酬月額이 加入最終年度의 그것보다 20% 이상 變動된 때에 20~100%까지 5等級으로 나누어 加減토록 함으로써 그 待機期間에 따라서는 賃金變動이 100% 이상 초과될 수도 있고, 規定된 變動下限인 20%에 미달하는 경우 (例로 19%)에는 그만큼 加入者에게 損害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法第26條 4項은 全勤勞者平均報酬의 變動率만큼을 그대로 적용하여 加入者의 受給前 最終3年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을 算定토록하고 同 施行令 第13條 3項은 削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年金額決定後의 實質價値維持方法인 年金額調整基準은 國家마다 그 나라의 經濟·社會的 與件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

〈表 8〉 老齡年金의 種類

	受給資格要件			年金額
	加入期間	受給年齡[1] (歲)	退職條件	算定方法
老齡年金	20年 이상	60(55)	退職後	基本年金額(PE)+加給年金額(AP)
減額老齡年金	10年 이상 20年 미만	60(55)	退職後	$PE\cdot\left\{\frac{45}{100}+\frac{5(n-10)}{100}\right\}$[2]
在職者老齡年金	20年 이상	60(55)	勤勞中	$PE\cdot\left\{\frac{40}{100}+\frac{10(X-60)}{100}\right\}$[3] 단, $60\leq X\leq 64$
在職者老齡年金	10年 이상 20年 미만	65(60)	勤勞中	減額老齡年金과 동일
特例老齡年金	$(492-8XM)$個月[4] 단, $40\leq XM\leq 54$	60(55)	退職後	$PE\cdot\left\{\frac{260-4XM}{100}\right\}+AP$[4] 단, $40\leq XM\leq 53$

註: 1) ( )안 年齡은 女子와 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임.
2) n은 加入年數임.
3) X는 受給時年齡이며, 65歲 이상者는 老齡年金額과 동일함.
4) XM은 特例老齡年金의 加入年齡(40歲 이상 55歲 미만者)이며, 女子와 特殊職種勤勞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者가 加入對象年齡이므로 이들에게는 5歲를 加算하여 適用하여야 함. 그리고 54歲의 年金額은 0.45PE가 됨.

2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24) 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第4項 및 同 施行令 第13條 第3項 참조.

우에는 名目賃金引上率이 物價上昇率을 앞질러 왔으며[25], 既存의 公的 年金制度가 賃金引上率을 反映하고 있으므로 制度의 衡平上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을 기준으로 自動調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給與範圍

가. 老齡年金

國民福祉年金의 基本的인 給付種類인 老齡年金은 〈表 8〉과 같이 4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老齡年金은 加入期間, 受給資格年齡, 退職與否에 따라 年金額이 決定되나 減額과 在職者老齡年金에는 上述한 바와 같이 加給年金額을 除外하고 있다.

加入期間要件은 年金財政과 密接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期間이 짧으면 年金受給者가 早期에 急增하게 되어 年金財政을 不安하게 할 것이며 加入期間이 길게되면 財政面에는 安定을 期할 수 있으나 反面에 加入者의 損益面[26]에서는 不利해질 수 있다. 이 法의 加入期間은 20年(240個月)을 基準으로하여 10年(120個月)부터 年金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어 年金財政面이나 被保險者의 收益面에서 妥當하다고 評價된다. 특히 先進國의 경우 加入期間은 〈表 9〉와 같이 0~240個月로 多樣하나 180個月(15年)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老齡年金의 特例(法 附則 3條)는 制度施行時 資格期間을 充當할 수 없는 對象者中 40歲 이상 55歲 미만者(단, 女子와 特殊職種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는 年金加入期間이 5年~14年 4個月만 되어도 資格要件은 充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特例老齡年金의 加入期間(y)은 加入當時의 年齡(x)에 따라 $y=492-8x(40\leqq x\leqq 54)$의 期間만 加入하면 基本 年金額의 $(260-4x)\%(40\leqq x\leqq 53$, 단, $x=54$인 경우는 45%)를 支給하고 여기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하도록 하였다.

〈表 9〉 先進諸國의 老齡年金 資格期間現況

(단위 : 個月)

國 名	最少資格期間	國 名	最少資格期間
브라질	60	日 本	240
덴마크	36	카나다	0
西 獨	180	노르웨이	36
프랑스	180	필리핀	60
英 國	0	스페인	120
이탈리아	180	터 키	180
美 國	18~120		

資料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The Influence of Early Pensions, of Defferred Pensions and of Continuation of Work on the Old-Age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78, pp. 62~65.

이렇게 될 경우 40歲 미만의 加入者나 制度實施이후 加入한 40歲 이상者가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때와 競合하게 되어 減額老齡年金受給者는 加入期間이나 給與되는 年金額에서 隔差가 심하게 된다. 더우기 後者는 加給年金額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表 10〉과 같이 그 隔差는 더욱 극심하게 된다. 따라서 特例老齡年金은 減額老齡年金受給者의 資格基準이나 加入期間 및 年金額水準에서 差異가 생기게 되므로 이 制度는 一元化하고 特例條項은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즉, 40~49歲(女子는 35~44歲)까지는 60歲까지 繼續加入하면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수 있는 適用對象者이기 때문에 이들은 除外하고 60歲까지 加入하여도

25)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26) 被保險者의 損益分析은 Ⅲ章 2節 참조.

〈表 10〉 特例老齡年金과 減額老齡年金의 比較

加入年齡	特例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加入期間(年)	年金額[1]	加入期間(年)	年金額[1]
50歲	$7\frac{2}{3}$	60%+AP	10	45%
48	9	68 +AP	12	55
46	$10\frac{1}{3}$	76 +AP	14	65
44	$11\frac{2}{3}$	84 +AP	16	75
42	13	92 +AP	18	85
40	$14\frac{1}{3}$	100 +AP	20	100

註 : 1) 年金額은 基本年金額에 대한 比率이며 AP는 加給年金임.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수 없는 50歲(女子 45歲) 이상者에 대해서는 旣存公的年金制度에서 實施했던 바와 같이 加入資格期間을 遡及適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遡及期間을 認定할 경우 잠정적으로 5~10年前까지만을 認定하여 每月 年金寄與金의 2倍 혹은 그 이상을 醵出토록 하여야 하며 10年이상의 期間을 充足하면 減額老齡年金 支給方法에 따라 給付토록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렇게 하여도 資格期間을 充足할 수 없을 때에는 返還一時金을 支給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年金額決定時 自營者 등을 除外한 被傭者는 退職을 資格要件으로 하고 있는데 非共產圈의 任意選定한 100個國을 調査한 資料에 의하면 退職해야만 受給資格을 賦與하는 國家는 69個國으로 退職에 관계없이 資格을 賦與하는 31個國보다 約 2倍나 되었다[27]. 그러나 이 制度에서는 在職者老齡年金에만 退職要件과 관계없이 年金을 支給하고 64歲까지는 基本年金額의 40~80%를, 65歲 이상은 100%를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年金制度의 目的이 最低生活保障에 있으므로 一定所得의 就業者를 給付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으나 政府의 福祉政策的 側面에서 老齡者의 就業을 促進하고 그들의 所得水準은 靑壯年勤勞者보다 낮을 것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이 制度는 계속 存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障害年金

障害年金[28]은 1年이상 加入한 者가 疾病이나 負傷으로 不具가 되었을 때 初診日로부터 2年 經過日(단, 이 期間안에 障害程度가 確定될 경우는 確定日)의 障害程度에 따라 1級은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支給하며 2級과 3級은 基本年金의 50%와 30%에 加給年金額을 각각 加算支給한다.

이 制度의 目的은 不具·廢疾로 인하여 肉體的 또는 精神的으로 正常的인 勤勞活動을 할 수 없는 加入者를 經濟的으로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써 勤勞能力의 減少程度(reduction of capacity for work), 評價되는 所得水準(accountable income), 被傭期間(duration of employment)를 考慮하여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年金額을 支給하는 것이 通常이다[29].

그러나 現行 醫療保險法(30條)에 의하면 療養給與期間을 6個月 이내로 限定하고 있어 그 이상의 治療를 要하는 慢性病系統患者의 경우는 6個月 이후의 醫療費負擔이 困難하게 된다. 더우기 이 制度에서도 障害年金은 2年이 경과한 후에야 支給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疾病이 進行中인 患者의 경우 6個月 내지 2年間의 生計保障이나 醫療保障對策이 없게 된다. 또한 이 法은 業務上이나 業務外의 廢疾區分없

2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ic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28) 國民福祉年金法 42條 및 43條 참조.

29) K. Palotal,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 ISSA, 1978, pp.2~4.

이 1年이상 加入하게 되면 受給資格要件을 充當하도록 되어 있으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種의 경우 同一한 資格要件으로 同種의 年金을 二重支給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國家가 運營하는 所得保障制度에서 二種支給하는 것은 所得保障目的에 위배되므로 受給權者가 兩者中 有利한 것을 選擇하게 하여야 한다.

勤勞能力이 없는 障害者(1級)의 경우 당연히 退職이 前提되면서 基本年金額의 100%와 加給年金額이 加算支給 된다. 그런데 障害年金의 對象者는 老齡年金受給者와는 달리 젊은 年齡階層이 많아 扶養家族이 相對的으로 많고 生計費支出도 크다. 더우기 障害의 治療·再活 등을 위한 過重한 醫療費가 必要하기 때문에 老齡年金額과 같은 水準의 給與를 支給하는데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障害年金에는 年金額의上限規定이 없어 現行 基本年金額 計算方法으로는 低所得者일수록 本人의 最終賃金水準보다 年金額이 많을 수 있고 高所得者에게는 별로 惠澤이 없다. 따라서 障害年金制度에서는 日本이나 西獨과 같이 基本年金額의 125% 이상을 支給할 수 있게 하던가 介護費를 別途로 支給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級 및 3級 障害年金은 基本年金額에 대한 一定比率을 適用支給하도록 되어있는데 醫療費의 追加支出을 감안 2級障害者의 경우 老齡年金額과 同一水準으로 하고 3級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上向調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法에서는 3個障害等級에 34個項目으로 障害基準을 設定하고 있으나 等級設定基準은 再檢討하여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例를 들어 1級의 경우 完全勞動不能狀態者로서 常時 介護를 要하게 되나 規定에는 兩眼의 視力이 0.02이하 者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狀態에서는 眼鏡을 着用함으로써 勤勞에 參加할 수 있으며, 2級의 경우 上肢의 외관절 이상을 잃은 者일지라도 義手足을 着用할 경우 高度의 勞動障害를 입은 狀態로는 보기가 어렵다. 또한 1種加入者의 경우 産災保險의 障害補償給與와 障害年金이 重複되나 等級基準이 相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相異한 受給權을 認定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制度의 障害等級基準은 産災保險의 障害補償給與等級基準과 調整할 必要가 있으며 障害等級基準設定의 合理化를 위하여 專門醫로 構成된 諮問委員會의 構成이 必要할 것이다.

다. 遺族年金

遺族年金額[30]은 1年이상 10年미만 加入者가 死亡時 基本年金額의 40%, 10~20年은 45%, 20年이상은 50%를 支給하고 加給年金額을 加算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遺族의 範圍(法 48條)에는 配偶者, 18歲 미만의 子女 또는 孫子女, 60歲 이상의 父母 또는 祖父母 그리고 2級이상 障害者가 包含되어 있다.

이 制度는 年金加入者가 所得의 源泉者로서 死亡時 그에 의하여 扶養하던 家族의 生活을 保護하는 데 目的이 있다. 따라서 加入者의 死亡時期, 加入期間에 따른 差等年金額, 遺族의 範圍, 年金額의 水準 등은 우리나라家族制度, 傳統文化 등의 社會的 背景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加入者의 死亡時期로 볼 때 一般的으로 加入

30) 國民福祉年金法 47條 및 49條와 同施行令 18條 참조.

期間이 긴 경우보다 짧은 경우 加入者의 年齡層이 젊고 年金額은 加入期間에 따른 差等給付보다 扶養家族數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合理的이다. 따라서 이 制度에서는 年金額을 加入期間과 관계없이 一律的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給付水準은 公務員이나 軍人年金額과 같이 最少限 基本年金額의 50%에 加給年金額을 合算하여 支給하는 것이 制度間의 均衡을 維持할 수 있다.

또한 被傭者(1種)인 경우에는 障害年金의 경우와 같이 產災保險과 重複될 수 있으므로 兩制度中 有利한 것을 擇一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또한 核家族化가 進行되고 老齡人口의 各種 福祉對策이 推進되고 있으므로 祖父母나 孫子女에게까지 遺族의 範圍를 擴大하는것보다 外國의 경우와 같이 未亡人年金(widow's pension)이나 孤兒年金(orphan's pension) 등으로 年金保護가 必要한 階層에게 惠澤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返還一時金

이 法[31]에서는 加入者가 年金을 受給할 수 있는 法定要件에 未達할 경우 返還一時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年金加入期間이 10年 미만인 者로서 60歲(女子와 特殊職種者는 55歲)에 達한 후 加入資格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加入資格喪失後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60歲(55歲)에 達한 때와 1年미만 加入者가 死亡한 때 支給하되, 女子의 경우는 年金加入期間에 관계없이 脫退한후 1年이 경과하면 返還一時金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返還一時金($TRIL$)은 加入期間동안 納入한 寄與金總額(TW)에 基本率(α) 및 制別加算率(β)을 적용하여 支給하며, 加入資格喪失後 返還一時金受給까지의 待機期間에 따른 利子率(δ)을 合算하여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施行令第19條). 즉, $TRIL=\alpha\cdot(\beta+\delta)\cdot TW$이 된다.

여기서 納入寄與金總額(TW)은 加入當時의 賃金(WG_1), 本人負擔保險料率($\hat{k}$), 賃金上昇率($\hat{r}$) 및 加入期間(n)에 따라 변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W=12\cdot\hat{k}\cdot WG_1\sum_{j=1}^{n}(1+\hat{r})^{j-1}$$

그래서 返還一時金은 다음과 같다.

$$TRIL=\alpha\cdot(\beta+\delta)\cdot 12\cdot\hat{k}\cdot WG_1\cdot\sum_{j=1}^{n}(1+\hat{r})^{j-1}$$

그런데 年金加入者가 納入한 寄與金을 利子率(i)을 적용하여 年間福利로 計算한 退職當時의 元利金合計($INWT$)는,

$$INWT=12\cdot\hat{k}\cdot WG_1\cdot\sum_{j=1}^{n}(1+\hat{r})^{j-1}(1+i)^{n-j}$$

가 된다.

年金制度는 社會保險的 性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返還一時金制度는 최대한 制限하고 年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狀況下에서는 女性의 離職率이 높고 企業(특히 中小企業)의 職場不安定, 自營業希望者가 많은 就業構造와 社會保障諸制度가 未備하므로 貯蓄性金利만큼은 返還해 주어야 國民이나 各利益團體의 迎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返還一時金($TRIL$)을 元利金($INWT$)과 동일하게 한다는 前提下에서 制度를 마련한다면 法定加算

31) 國民福祉年金法 第56條 및 第37條 4項 참조.

〈表 11〉 返還一時金의 加算率과 利子率

(단위 : %)

加入期間 및 待機期間	現行加算率			待機期間 0인 $\alpha(\beta+\delta)$	現行의 利子率(%)[3]		利子率 20%인 경우의 加算率[4]	
	基本率 (α)[1]	特別加算率 (β)[1]	待機期間利子率 (δ)[2]		$\alpha(\beta+\delta)$	α	$\hat{r}=0$	$\hat{r}=15$
0 年	1.00	—	1.00	1.000	—	—	1.000	1.000
1	1.00	—	1.06	1.000	—	—	1.100	1.093
2	1.03	0.03	1.12	1.061	12.2	6.0	1.213	1.193
3	1.06	0.05	1.19	1.113	11.0	6.0	1.342	1.300
4	1.09	0.10	1.26	1.199	12.3	5.9	1.488	1.415
5	1.12	0.16	1.34	1.299	13.1	5.7	1.655	1.538
6	1.15	0.22	1.42	1.403	13.5	5.6	1.845	1.668
7	1.18	0.28	1.50	1.510	13.6	5.5	2.062	1.808
8	1.21	0.34	1.59	1.621	13.5	5.4	2.311	1.956
9	1.24	0.40	1.69	1.736	13.3	5.3	2.596	2.114
10	1.27	0.46	1.79	1.854	13.2	5.2	2.923	2.282
15	1.44	0.76	2.40	2.534	12.2	5.0	4.802	3.056
19	1.58	1.00	3.02	3.160	11.5	4.8	8.144	4.017

註 : 1) 加入期間에 의한 算定率.
2) 待機期間(加入資格喪失後 返還一時金支給時까지의 期間)에 의한 率.
3) 待機期間이 0이고 賃金上昇이 없는 경우, 加入者의 損益分岐點(TRIL=INWT)이 되는 現行制度의 利子率.
4) 利子率이 20%이고 賃金上昇率($\hat{r}$)이 0% 및 15%일 때 加入者의 損益分岐點이 되는 返還一時金의 加算率 適用値.

率인 $\alpha(\beta+\delta)$는 다음과 같이 計算되어야 한다.

$$\alpha(\beta+\delta)=\frac{\sum_{j=1}^{n}(1+\hat{r})^{j-1}(1+i)^{n-j}}{\sum_{j=1}^{n}(1+\hat{r})^{j-1}}$$

이 公式을 이용하여 現行法規에 규정된 返還一時金 加算率의 年間利子率(i)을 20%로 유지하여 返還一時金을 支給할 경우의 加算率을 計算하면 〈表 11〉과 같다. 즉, 賃金上昇이 없을 경우 現行의 返還一時金加算率은 年利 11.0~13.6%의 利子率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利子率은 貯蓄性銀行金利에 미달된다. 더우기 特別加算率(β)이 적용되지 않는 10年 미만 加入女子의 경우[32]와 5年 미만의 男子加入者의 경우는 5~6%의 利子率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利子率이 더욱 낮다. 따라서 現制度의 返還一時金은 男性과 女性의 支給要件과 給付方法을 改正하여 10年 미만의 加入者가 脫退할 때는 銀行金利의 水準을 支給하도록 하고, 10年 이상의 女子의 返還一時金은 減額年金으로 代替해야 할 것이다. 또한 遺族年金을 받는 경우 死亡者에 대한 葬祭手當이 없기 때문에 설사 年金을 受給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葬祭費에 所要되는 費用을 一時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制度가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32) 55歲에 達하기 前에 返還一時金을 受給할 경우에 한한다.

Ⅳ. 關聯制度와의 調整

1. 現行退職金制度

國民福祉年金制度를 실시하게 되면 使用者

인 企業의 立場으로는 勤勞基準法 第28條에 의한 現行退職金制度와 새로운 年金制度로 負擔金이 加重하게 되므로 兩制度를 統合하여 負擔金을 輕減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現行退職金制度는 企業의 單獨負擔으로 그 負擔率(報酬의 8.3%)이 너무 높아 經營壓迫要因이 되고 있으며, 運營規定이 未備하여 충분한 支給保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社會問題까지도 유발하고 있다[33].

이와 같이 企業側으로는 退職金制度를 社會保障的 性格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退職金負擔을 감소시키려는 反面, 勤勞者側은 長期勤續의 功勞補償과 賃金後拂로 보기 때문에 兩制度의 성격상 調整되지 않기를 강력히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年金制度는 社會保障制度이고 現行退職金制度는 勞使間의 勤勞條件의 하나이므로 年金制度와는 別個로 운영하되 退職金自體의 問題點을 改善해 나가는 방향으로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즉, 現行의 强制適用方式을 勞使合意에 의한 自律的인 調整方法으로 유도하고, 社內에 留保되고 있는 退職給與充當金을 社外留保로 轉換시키는 制度的 裝置(金融 및 稅制惠澤 등)를 마련하여 이를 基盤으로 私的 年金制度인 企業年金으로 誘導함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企業負擔能力을 감안 年金制度와 결부시켜 退職金을 조정하게 될 경우 退職金의 支給方法, 支給率 등이 再檢討되어야 한다. 즉, 年金制度의 적용을 받게될 事業場의 旣存退職金制度는 受給權者의 要請時 中間淸算을 할 수 있게 하거나, 企業의 支給能力이 없을 때에는 政府가 保障하는 株式을 포함한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分割支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年金制度의 적용을 받게될 事業場의 被保險者가 희망할 경우 退職金의 年金化를 인정하던가, 企業側의 負擔을 고려하여 年金負擔金(3%)만큼을 감소하여 退職金負擔을 8.3%에서 5.3%(退職金支給을 30日分에서 23日分)정도로 감소시키는 것 등의 代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現行退職金制度는 長期的 政策方向으로서 自律的制度로 유도하여야 하나 現段階에서는 兩制度가 當分間 並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와의 受給權 調整

國民福祉年金制度의 遺族 및 障害年金과 産災保險의 遺族補償 및 障害補償年金과는 受給資格要件이 類似하고, 兩制度에서는 이를 規制하는 條項이 없기 때문에 兩面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兩制度는 國家가 운영하는 社會保障制度로서 동일한 支給事由로 年金을 2重으로 支給한다는 것은 最低生計費保障이라는 所得保障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現行 産災保險의 障害補償이나 遺族補償年金은 國民福祉年金法의 障害나 遺族年金보다도 給與水準이 높기 때문에[34] 國民福祉年金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兩制度間의 支給方法이 相異하고(産災에서는 一時金도 支給) 給與水準은 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受給權者가 擇一할 수 있도록 制度를 補完

33)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硏究』, 第2卷 第3號, 1980, pp. 113~130.

34) 例로 産災保險의 障害補償年金額은 報酬의 76.4%(1級)~60%(3級)인데 비해 國民福祉 年金의 障害年金은 基本年金額(報酬의 40%內外)의 100%(1級)~30%(3級)에 해당된다.

하여야 할 것이다.

3. 特殊職域年金制度와의 通算

旣存公的 年金(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年金)인 特殊職域年金制度와는 별도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導入되었기 때문에 各制度의 加入者가 移動時에는 兩制度間의 通算問題가 擡頭된다. 그런데 特殊職域年金制度는 退職을, 國民福祉年金制度는 老齡을 근간으로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있어 성격상 通算이 어렵게 되어 있다. 즉, 前者는 退職金制度와 年金制度를 동시에 적용하여 保險料率(總 11%)이 높고, 주로 一時金形態로 운영되고 있으며, 年金支給方法도 報酬比例方法만을 적용하므로 後者와는 큰 차이가 있어 年金加入期間 및 支給方法 등의 通算이 어려운 課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앞으로 公共機關과 企業의 勞動移動이 많아지고 國民皆保險이 이루어지는 段階가 될 때는 그때의 社會·經濟的 與件에 따라서 通算問題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結論 및 建議

1) 1973年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에 의하면 18歲미만의 加入者는 適用對象에서 除外하게 된다. 만약 이 法이 施行된다면 1980年을 基準으로 할때 全事業場被傭者의 2.8%만을 除外시키게 된다.

全勤勞者의 性比(男 : 女)는 63 : 37이나 18歲미만은 20 : 80이고 全女性勤勞者의 75.4%가 24歲미만으로 年少勤勞者의 대부분이 女性이다. 특히 이들의 所得水準은 全勤勞者平均賃金의 50%水準으로 매우 낮으며 24歲 이상의 女性은 대부분 結婚으로 인하여 離職率이 높다.

한편 外國의 年金保險制度는 事業場이 適用되면 모든 被傭者는 自動的으로 加入되나 自營業者나 地域住民은 社會的 背景이나 所得能力을 考慮하고 있다.

따라서 이 法의 1種(被傭者)은 年齡, 所得의 制限없이 全員을 加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2種의 경우에만 加入年齡을 勤勞基準法의 保護年齡인 14歲이상으로 하고 學生이나 軍服務者들은 適用除外하여야 할 것이다.

2) 1973年의 法에서는 制度가 實施될 때 55歲 이상者는 加入對象에서 除外되고 있으나 加入期間을 充當할 수 없다는 理由만으로 除外시키는 것은 이 制度가 全國民의 所得保障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不合理하다. 따라서 國家財政으로 充當할 수 있는 範圍안에서 最低生計費水準의 定額年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方案을 模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國內居住外國人에게 制度를 適用하는 問題는 2種의 경우 適用與否를 明文化하지 않음으로써 海外居住 韓國人의 權利를 保護하지 못하고 있다. 各國에서는 國家間의 相互協定에 의해서 適用하여 惠澤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制度的 補完이 필요하다.

4) 이 法은 30人이상 規模의 事業場에 强制適用하도록 되어 있으나 行政組織이 未備하고 現行 醫療保險制度에서도 100人이상의 事業場을 對象으로 實施하고 있으므로 이 制度는 實施可能한 規模의 事業場被傭勤勞者로부터 시

작하여 段階的으로 全國民에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特殊職種者는 坑內鑛夫, 船員, 航空塔乘者로서 女子와 同一하게 55歲에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特殊職勤務期間, 身體檢査結果 등이 受給資格要件에 追加되어야 할 것이며, 所得水準이 높은 航空塔乘者의 特殊職種賦與는 類似職種과의 均衡維持와 先進國의 經驗 등으로 보아 除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1種加入者의 醵出料는 月報酬의 5~7%이고 2種加入者는 月 900원이상을 定額 醵出토록 하였으나, 이 法의 年金算定方法으로 老齡年金을 基準한 被保險者의 損益分析結果에 따르면 利子率 20%, 賃金引上率 10%인 경우 20年加入者의 損益分岐點은 4.2%, 30年加入者는 2.4%로 推定된다. 그런데 醵出料率에는 本人과 使用者가 分擔하게 되므로 이의 2倍까지도 醵出料率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醵出料率은 個人의 損益 뿐만 아니라 企業의 負擔能力, 年金財政의 收支均衡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範圍內에서 決定되어야 하기 때문에 3~4% 수준에서 決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比例部分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에 대한 比率은 加入期間이 20年이면 20%, 30年 42%, 40年 72%로 累進的으로 增加하여 40年의 경우 年金額支給上限인 70%를 초과하게 되며 年金額水準은 賃金上昇率이 높을수록 增大한다. 따라서 基本年金額은 所得水準에 따라서 20年加入者는 報酬의 30% 이하까지도 支給받게 된다. 그러므로 年金額의 上限은 80%까지 조정하고 高所得者의 不利益을 最小限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年金額의 下限을 35~4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加給年金額은 家族手當의 一種으로 扶養家族의 生計費를 補助하는 데 目的이 있으므로 減額 및 在職者老齡年金 受給權者에게도 支給되어야 合理的이며 物價上昇率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行政의 便宜上 基本年金額에 加算率(例, 配偶者 10%, 子女1人當 5% 등)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年金額의 實質價値를 유지하기 위한 調整方法으로 年金額決定時 待機期間에 대해 平均報酬月額이 20% 變動할 때 마다 100%까지 5等級으로 平均標準報酬月額을 調整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도 變動될 수 있으므로 受給前平均報酬月額의 變動率만큼을 그대로 調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名目賃金引上率이 物價上昇率보다 높고 公的 年金制度가 賃金引上率을 反映하고 있으므로 制度의 衡平上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을 基準으로 年金額이 自動調整되도록 制度를 補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老齡年金의 特例에 의한 40歲이상 55歲(女子와 特殊職種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은 5年~14年4個月만 加入하면 受給資格을 賦與함으로써 減額老齡年金과 重複適用될뿐 아니라 給與水準이 심한 隔差를 나타내는 矛盾이 있다. 따라서 이 法의 特例老齡年金은 減額老齡年金과 一元化하고 그 대신 適用除外되는 高齡要救護者(例 65歲이상)에게 最低生計費를 定額給付할 수 있는 制度를 發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障害年金의 廢疾認定時期를 初診日로부터 2年(단, 確定時는 例外)으로 規定한 것은 現行醫療保險의 療養給與期間이 6個月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6~24個月사이의 長期疾患者들에게 問題가 되므로 兩制度를 調整할 必要가 있다. 또한 障害年金은 現行 産災保險의 障害補償年金과 競合되므로 受給者의 希望에 따라 擇一할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고, 兩制度의 障害等級基準, 給與水準 등을 均衡있게 發展시킬 수 있는 對策이 바람직하다.

12) 年金加入者가 死亡할 때 그 遺族의 生計保障을 目的으로하는 遺族年金을 加入期間에 따라 差等支給하는 것은 遺族들의 所得保障目的에 위배되므로 給與基準을 一律的으로 하고 公務員이나 軍人年金과 같이 基本年金額의 50%에 加給年金額을 合算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障害年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産災保險의 遺族給與와 競合되므로 選擇權을 賦與하는 것이 妥當하다.

13) 年金制度는 社會保險制度이므로 返還一時金制度는 가급적 制限하여야 하나 社會的與件이나 부득이한 中途脫退者를 위한 返還一時金制度는 存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法의 返還一時金制度는 對象의 重複, 算定基準의 矛循, 多樣한 給與支出方法 등으로 결함이 많으므로 10年 미만者에겐 醵出料總額에 貯蓄性銀行金利를 감안하여 返還하고, 女性의 結婚退職時에는 加算金을 支給토록 하며 死亡者에 대한 葬祭費가 追加로 設置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_____, 「1978~1979 韓國人의 生命表」, 1980.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ILO勸告集(下卷)』, 立法參考資料 第73號, 1967.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 1980.

_____,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硏究』, 第2卷第3號, 113~130, 1980.

_____, 「社會保障」,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硏究院, 1981.

韓國開發硏究院, 『第5次 5個年計劃作成을 위한 經濟社會政策協議會 : 討議資料 및 內容』, 1980. 9.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厚生の指標(特集號)』, 第26卷 第13號, 1979.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Geneva, 1978.

_____, *The Influence of Early Pensions, of Deffered Pensions and of Continuation of Work on the Old-Age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78.

K. Palotal,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ISSA, 1978.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 122 面 高級洋裝 · 1,2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 158 面 高級洋裝 · 1,89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2,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 146 面 高級洋裝 · 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 318 面 高級洋裝 · 4,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 254 面 高級洋裝 · 4,0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面 高級洋裝 · 4,000원

9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 202 面 高級洋裝 · 3,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 508 面 高級洋裝 · 4,0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492 面 高級洋裝 · 4,0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342 面 高級洋裝 · 4,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 532 面 高級洋裝 · 4,5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 252 面 高級洋裝 · 3,5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 370 面 高級洋裝 · 3,5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 244 面 高級洋裝 · 3,5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3,5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 194 面 高級洋裝 · 3,5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 204 面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 166 面 高級洋裝 · 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4,000원

㉘ 纖維 · 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 180 面 高級洋裝 · 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 192 面 高級洋裝 · 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 470 面 高級洋裝 · 5,500원

㉛ 韓國의 國土 · 都市 · 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5,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 270 面 高級洋裝 · 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㊱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000원

㊲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5,500원

㊳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㊴ 貿易 · 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 256 面 高級洋裝 · 4,000원

㊵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414 面 高級洋裝 · 5,000원

㊶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384 面 高級洋裝 · 5,000원

㊷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1975*
A. Keidel 著 18 切 判 · 268 面 高級洋裝 · 4,500원

㊸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 396 面 高級洋裝 · 6,000원

㊹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 288 面 高級洋裝 · 5,000원

㊺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500원

㊻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淸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4,000원

㊼ 韓國 經濟 · 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 · 530 面 高級洋裝 · 6,500원